

이러도 연구

leodo Journal

목 차

leodo Journal

특집 1 이어도 원형 탐색

영국 배의 소코트라 암초 발견과 측량의 역사적 의미_ 조성윤 | 007

에우토피아, 이어도의 존재론적 의미_ 김은석 | 038

이어도 지명의 유래와 그 의의_ 송성대 | 057

특집 2 동/남중국해 해양영토 분쟁과 이어도

한반도 주변수역 對中 갈등 요소와 대응방안 연구_ 김현수 · 양희철 | 99

독도 영유권에 비추어 본 이어도 해양관할권과 남해 해양주권의 확보_ 최병학 | 131

서구 시각에서 본 남중국해 해양영유권 분쟁과 중국의 패권주의_ 김희열 | 170

일반논문

마라도 방문객의 이어도에 대한 인식과 기념공원 조성 타당성 분석_ 김태일 | 199

이어도 기지 기상관측 기기의 자료 검증 및 개선 방안

_ 이동인 · 박성화 · 김정창 · 이준호 | 219

이어도 문화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_ 강병철 · 프리다크리스틴밀러 · 양금희 | 235

서평

이어도 분쟁에 대한 중국의 민족주의적 접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_ 윤황 | 265

고충석 · 강병철, [이어도 해양분쟁과 중국 민족주의](서울: 한국학술정보, 2013)에 대한 서평

발행인 고충석 편집위원 최연홍, 송성대, 강병철, 고경민, 이정원

발행처 이어도연구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1372-2 진흥BD(4F)

홈페이지 <http://www.ieodo.kr>

인쇄일 2013. 8. 발행일 2013. 8.

디자인 및 편집 운누리디앤피(Tel. 064-722-0086) 비매품

ISSN 2093-4874

※ 이 책의 저작권은 이어도연구회에 있으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SPECIAL THEME 1. Study of leodo Origin

British Discovery of Socotra Rock: Merchant Ship Socotra's Collision and Navy's Survey Report_ Sung-Yoon Cho | 007

Ontology Meaning of leodo_ Eun-Suk Kim | 038

A study on the toponym and existence of leodo_ Sung-Dae Song | 057

SPECIAL THEME 2. East/South China Sea Maritime territory Disputes and leodo

A Study on counter-schemes and conflicting factors against China of surrounding areas of the Korean Peninsula_ Hyun-Soo Kim, Hee-Cheol Yang | 99

Securing the Maritime Jurisdiction over leodo and the Maritime Sovereignty over the Southern Sea in Consideration of Korean Ownership of Dokdo Island_ Byoung Hahk Choi | 131

Analysis of the Chinese Supremacy in the South China Sea: A Western Point of View_ Hi-Youl Kim | 170

ARTICLES

A Study on Marado visitor's recognition with regard to leodo and property of leodo memorial park construction in Marado_ Tae-Il Kim | 199

Scientific Operation of leodo Ocean Research Station and Its Improvement Planning_ Dong-In Lee, Sung-Hwa Park, Jeong-Chang Kim, Jun-Ho Lee | 219

The Role of Civil Society in the Development of leodo Culture_ Byeong-Cheol Kang, Frieda Christine Miller, Geum-Hee Yang | 235

Book Review_ Yoon, Hwang | 265

Publisher Koh, Choong-Suk

Editor Choi, Yeam-Hong, Song, Sung-Dae, Kang, Byeong-Cheol, Koh, kyung-Min, Lee, Jeong-Won

Publishing Office Society of leodo Research

#Jinheun BD 4F, 1372-2, Yeon-dong, Jeju-city,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Korea **Homepage** <http://www.ieodo.kr>

Date of Printing August, 2013 **Date of Publishing** August, 2013

Design & Edit Onmuri D&P(+82-64-722-0086) **Not for sale**

이어도

원형 탐색

이어도 원형 탐색

영국 배의 소코트라 암초 발견과 측량의 역사적 의미_조성훈

에우토피아, 이어도의 존재론적 의미_김은석

이어도 지명의 유래와 그 의의_송성대

영국 배의 소코트라 암초 발견과 측량의 역사적 의미

조성윤
제주대 교수 · 사회학

1. 머리말

한국정부는 제주도 남쪽 해상의 바다 밑에 잠겨 있는 섬, 즉 소코트라 암초(Socotra Rock) 위에 무인 해양과학기지를 1995년 착공해 2003년 6월 완공하였다. 헬기 이착륙장, 첨단 관측 장비, 등대, 풍력 발전용 풍차, 안테나 등을 갖춘 표면 면적 255평, 해수면 위 15층 높이의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완성되자, 이곳은 많은 나라들로부터 관심을 끌게 되었다.¹ 해양지명위원회는 소코트라 암초 위에 건설된 종합해양과학기지에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라고 이름을 붙였다.

국립해양조사원은 남제주군 대정읍 마라도에서 서남쪽 150km 지점의 ‘소코트라 초(礁)’(Socotra Rock)를 ‘이어도’로 표기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소코트라 초를 이어도로 표기해달라는 중앙지명위원회 건의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항해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당분간 이어도와 소코트라 초를 병기하다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가 준공되는 2002년께부터 이어도 명칭만 표기할 계획이다.

소코트라 초는 1900년 영국 상선 소코트라호가 이 섬을 발견하면서 이어도의 해도 상 공식지명이 돼왔다. 국립해양조사원 관계자는 “해도 상 공식지명인 소코트라 초는 국제지명위원회에 등록돼 있지 않아 우리나라 연안 해도에서 이어도로 표기해 배포하면 국제적으로도 이어도로 불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²

1 현경병 · 박용안 · 고충석, 2010, 『대한민국 최남단 이어도』, 셋별 D&P. 107-113쪽.

이 지명위원회의 결정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동안 소코트라 암초(Socotra Rock)는 일찍부터 그 존재가 알려져 파랑도(波浪島)라고 불렸고, 여러 차례 한국 정부 또는 민간단체에 의해 탐사가 이루어졌다. 한편 제주도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어도라는 전설의 섬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는데, 지명위원회의 결정은 제주도 주민들의 환상의 섬 이어도와 현실의 소코트라 암초를 하나로 묶어 놓았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특히 해양과학기지가 들어선 암초와 제주도 주민들이 이어도라 부르는 환상의 섬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의견부터 제주도민들이 이어도라고 부르던 환상의 섬의 실체를 정부가 제대로 밝혔다는 의견까지 다양하다.

그런데 이러한 양자의 결합을 발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주도민 사이에 알려져 있던 신화적 존재로서의 이어도와 현실 속에 존재하는 소코트라 암초, 그리고 그 위에 건설된 해양과학기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주도민들 사이의 전설 속의 섬 이어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어느 정도 수집되고 정리된 바 있다.³ 물론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는 만큼,⁴ 앞으로 다양한 차원에서의 조사와 논의가 계속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소코트라 암초의 발견과 측량 과정에 관해서는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도 않고, 관심도 별로 없는 편이다. 물론 간단한 설명은 있지만, 설명에 대한 근거 자료가 부족하고, 더 이상 추적 조사도 진행된 바 없었다. 소코트라 암초의 초기 발견과 측량 과정에 대해서는 수십 편의 논문과 저작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다른 글에서 가져와 인용하는 정도에 머물렀고, 지금까지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정확하게 파악한 연구자는 한상복⁵과 정공훈⁶뿐이었다.

² 『한겨레신문』 2000년 12월 28일.

³ 다음 두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조성윤, 2011, 「이어도에 관한 제주도 주민들의 이미지」, 『탐라문화』 제39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주강현, 2012, 「이어도로 본 섬-이상향 서사의 탄생」, 『유토피아의 탄생: 섬-이상향/이어도의 심성사』, 돌베개.

⁴ 주강현, 2012, 원고.

⁵ 한상복, 1981, 「경제적인 해양조사를 위한 방법」, 『현대해양』 13권 4호, 現代海洋社; 한상복, 1984, 「『波浪島』 혹은 『소코트라巖』이라는 암초」, 『現代海洋』 16권 6호, 통권 170호, 現代海洋社; 한상복,

한상복은 소코트라호에 관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북위 31도에서 33도와 동경 123도에서 128도 사이에 있는 동지나해 북부 해역에는 어떤 섬도 없다. 제주도 남쪽 어디에도 섬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주도 전설 속에 나오는 섬인 “이어도”는 전설 속의 환상적이고 허구적인 섬일 뿐 실존하지 않는다. 다만 제주도 서남쪽 약 85해리 해역에 암초가 있는데, 이것은 1900년 영국 상선인 “Socotra”호에 의해서 최초로 발견되었다. “Socotra”호는 “P&O 선박회사(Penninsular and Oriental Steam Navigation Company)” 소속의 배로 1897년 건조된 총톤수 6,000톤급의 강선이다. 인도, 호주, 중국 등지에서 화물을 운반하며 우편배달업무도 수행하고 있었는데, 북위 32도 8분, 동경 125도 11분 해역에 암초가 있음을 발견하고 영국해군성에 항해위험해역으로 보고하였으며, 이듬해인 1901년 영국 해군 측량선 “Water Witch”호에 의해서 수심 3 fathoms 밖에 안 되는 위험한 암초로 확인 측량되어, 해도에 “Socotra Rock”으로 기재되기 시작했다.⁷

라고 정리하였다. 그러나 소속 회사인 P&O의 100년사를 인용한 것⁸을 제외하면,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인지를 밝히지 않았다. 한편 정공훈은 영국과 일본이 발행한 해도와 수로지, 그리고 영국 해군 수로국의 항행통보(Notices to Mariners)에서 소코트라 암초 관련 기사를 찾아냈다. 그는

Socotra礁도 1900년 6월 5일 밤 9시 40분경 영국기선 Socotra號가 북위 32° 01', 동경 125° 09' 지점에서 Socotra礁와 접촉사고를 일으킨 데 대하여, 이 보고에 접한 영국 해군성 수로국에서는 고시 1900년 제560호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 고시에 의하면 기선 Socotra號의 보고에 의해 고시하게 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즉

1991, 「해양학에서 본 <파랑도>의 가치」, 『해양정책연구』 제6권 2호, 한국해양연구소.

6 鄭公旿, 1985, 「Socotra礁의 由來에 대하여 -이어도와와의 관련을 덧붙여」, 『탐라문화』 第4號,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7 한상복, 1991, 윗글, 460p.

8 Boyd Cable, 1937, A hundred year history of the P. & O., Peninsular and Oriental Steam Navigation Company, 1837-1937, Ivor Nicholson & Watson, London.

1868년 기선 Costa Rica호에서 북위 32° 10', 동경 125° 03' 지점에서 항해에 위험한 淺所가 있다는 보고를 접한 영국 수로국에서는 測量船 Sylvia號를 파견하여 이를 조사케 하였으나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海圖를 改補하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1896년 기선 Shanghi 號로부터 북위 32° 01', 동경 125° 09' 지점에서 수심 9 Fathom(16.7m)인 淺所가 있다는 보고에 따라 告示 1896년 제618호로 改補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그러나 이 보고에 따라 측량선 Plover號를 파견하여 조사케 하였으나, 확인하지 못해 1897년 告示 제340호로 1896년 618호에 의거 改補한 水深을 삭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Socotra礁는 1900년 海圖에 3Fathom(5.5m)로 기재되기까지에는 많은 시일이 경과하였으며, 이미 1868년부터 이 해역에는 항해에 위험한 淺所가 있었다는 보고는 있었고, 그 확인과정에서 位置와 측량에 오차가 있으므로써 혼란을 일으켰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00년 Socotra號의 보고에 의해 고시되었던 1900년 제560호의 고시는 1901년 측량선 Water Witch 號에 의해 확인되어 오늘에 이르렀다.⁹

라고 하여 소코트라호의 발견이 사고에 의한 것이고,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사고가 있었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 보고 이후의 워터위치호의 측량 결과,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항행통보는 제시하지 않아, 워터위치호에 관한 자료를 어디서 보았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처럼 한계는 있지만 두 학자의 정리는 우리에게 소코트라 암초에 대한 초기 발견 과정에 대해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 이후에 발간된 각종 책자와 연구 논문, 그리고 최근의 인터넷 자료에서는 두 학자의 정리를 토대로 영국의 소코트라 암초 발견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두 연구자의 발표 이후 수십 편의 글과 인터넷 자료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인용하였지만, 더 이상의 내용상의 진전은 없었다. 두 연구자가 일러준 최소한의 정보가 우리에게 그동안 제공되었던 정보의 모든 것이었던 셈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소코트라 암초의 초기 발견 과정과 그 역사적 의미를 추가 자료 조사를 토대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려고 한다. 특히 소코트라호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던 상선이었는지, 그리고 영국 해군 측량

⁹ 鄭公忻, 1985, 芻稿, 77쪽.

선 워터위치호가 소코트라 암초를 측량하였다면, 측량 이후의 고시와 해도작성에 이르는 과정을 가능한 한 관련된 서류를 찾아 분석하려 한다. 이 작업을 위해서 영국 국립 문서 자료관과 영국 왕립 해양박물관 등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들을 찾아 보완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영국 배 소코트라호의 암초 발견과 워터위치호의 측량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한다.

2. 영국 배 소코트라호의 암초 발견

우선 소코트라 락(Socotra Rock)의 발견 과정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이 과정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는 1900년 영국 해군 수로국이 발표한 항행통보(Notices to Mariners)였다.

1900년 8월 22일자 정보는 P.&O.회사의 총 매니저로부터 수신한 것으로 일본에서 상하이로 항해하던 증기선 소코트라(S.S. Socotra)호가 1900년 6월 5일 오후 9시 40분에 양자 뱅크(Yan Tsu Bank)에서 북동쪽의 모래톱(shoal)에 충돌하였다. 위치는 대체로 북위 32도 9분, 동경 125도 7분이다. 나중에 수리를 하려고 도크에 들어갔을 때, 밑바닥의 손상된 부분에 진흙과 돌들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3페덤 밖에 안 되는 얇은 곳은 결국 그보다 더 위의 장소의 지도에 자리 잡고 있다.

1896년에 P.&O.회사의 증기선 상하이호(S.S. Shanghai)가 정오에 북위 32도 1분, 동경 120도 10분에서 9페덤의 소리를 포착했음을 보고했는데, 그 당시 날씨는 좋았지만, 안개가 있어서, 결국 어떤 천체 관측도 할 수 없었다; 이 보고를 접수하고 나서 1896년의 312호 항행통보(航行通報, Notice to mariners)가 발행되었고, 나중에 1896년 618호로 수정되었다.

1896년 12월에 해군함정 플로버(H.M.S. Plover)가 신고 받은 모래톱 조사를 위해 파견되었다. 그러나 그 주변 4마일 구역에서 그 정도 깊이의 모래톱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 정보를 접수하고 나서, 지도에서 9페덤 지역을 삭제한다는 항행통보를 1897년 340호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지역 모래톱에 관한 보고는 결코 이것만이 아니다. 1868년에 해군

조사선 실비아(H.M. Surveying Vessel Sylvia)가 PMSS 코스타리카(P.M.S.S. Costa Rica)가 북위 32도 10분, 동경 125도 3분의 위치를 보고해 온 것을, 15평방 마일의 공간을 (25페딤 깊이까지) 조사했는데 아무 것도 위험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더 이상 자주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이 양츠와 일본 사이의 자주 이용하는 노선에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어떤 무엇인가 뱅크(bank)가 지난 6월의 그 근방 어딘가에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 지역을 완전히 조사할 때까지, 이 지역을 피하도록 항해하는 선박들에게 경고를 알렸다.

이와 같은 뱅크가 홍수 때 양자강에 의해 아래로 운반된 퇴적물 때문에 우연히 형성되는 것은, 복서 계절풍이 불어오면 파도 때문에 결국은 흩어지므로, 불가능하다. (Noitice No. 560 of 1900)¹⁰

영국해군 수로국은 1837년부터 ‘항행통보’(Notices to Mariners)를 발표해왔다. 항행통보는 매주 발표되는 것도 있고, 일 년에 한 번씩 발표되는 ‘연간 요약’도 항해 시즌 시작 직전에 발표되는데, 새로운 정보가 많을 때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발표가 나오기도 한다.¹¹ 위에서 보는 항행통보는 1900년도에 발표된 것 중에서 560번째의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이란 암초에 부딪치는 것이다. 1795년부터 업무를 시작한 영국 해군 수로국은 영국 배들이 다니는 항로 주변 지역의 바다를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해도(海圖, Admiralty chart)를 작성하여 해군 함정은 물론 민간 선박에게도 제공해왔다. 조석(潮汐) 정보, 등대에 관한 정보, 기타 해저 상황의 변화 등 항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는 모두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다름 아닌 암초에 관한 정보였다. 선박이 항해할 때 항해자로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암초였다. 암초에 선체가 부딪치면 대개의 경우 선체는 파손되고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그렇기 때문

¹⁰ Noitice No. 560 of 1900, the Admiralty Hydrographic Office, U.K. 이 자료는 鄭公妍, 1985, 뒷글에 부록으로 실려 있다.

¹¹ Admiralty chart, Wikipedia 영어판, 2013년 5월 8일 검색.

에 항해자는 해도 상에 기재되어 있는 암초가 해도 상에 있으면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항로를 크게 우회하면서 선체의 안전을 기하는 것이 상례이다.¹²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해도였다. 회피해야 할 암초의 위치와 각종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도는 오랜 항해의 경험과 측량을 바탕으로 작성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해도 상에 아직 기재되지 않은 암초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연히 또는 사고 때문에 새로운 암초가 발견되었을 때는, 발견자가 이를 수로국에 알리고, 수로국은 암초를 확인하여 해도에 반영하는데, 해도에 반영하기 전에 먼저 항행통보를 통해 항해자들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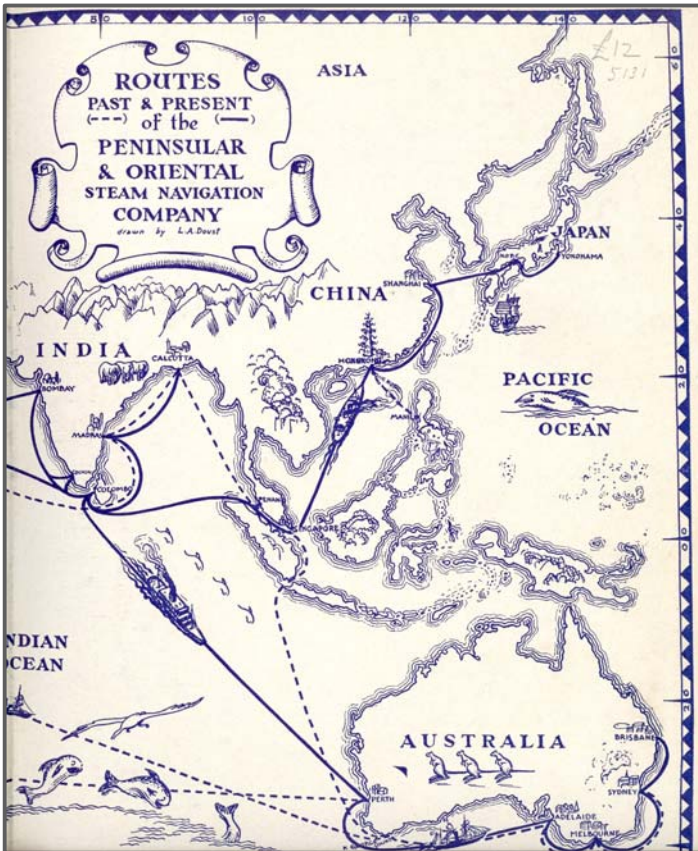
위의 인용한 항행통보를 보면, 1900년 6월 5일 오후 9시 40분에 일본에서 상하이로 가던 소코트라호가 해도 상에 나타나 있지 않은 암초에 부딪쳤다. 그런데 이 암초는 전에도 두 차례 보고된 바 있었고, 두 번 다 수로국 측량선이 확인차 나갔지만 찾지 못하고 돌아왔다. 1868년에 미국 기선 코스타리카(Costa Rica)호가 부딪쳤다고 보고해 왔을 때 영국 해군 수로국 소속 측량선 실비아(Sylvia)호가 확인, 측량을 위해 나갔다가 허탕을 쳤다.¹³ 그리고 불과 4년 전인 1896년에 영국 P.&O. 소속 증기선 상하이(Shanghi)호가 암초 발견 보고를 해왔을 때는 암초가 있으니 주의하라는 경고 항행통보를 발표했다가, 이번에도 영국 해군의 플로버(Plover)호가 나가서 조사했지만 역시 찾지 못하자, 1987년에는 이를 취소하는 해프닝까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소코트라호가 부딪쳐 사고를 냈으니, 세 번째의 사고였다. 당시 이 지역을 오가는 선박은 대부분이 영국과 미국 배였고, 따라서 수로국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항행통보에서 그동안의 일을 설명하면서, “완전히 조사할 때까지 이 지역을 피하라고 항해하는 선박들에게 경고”한 것이다.

¹² 鄭公忻, 1985, 뒷글, 77쪽.

¹³ 코스타리카호는 미국 태평양 우편 증기선 회사(Pacific Mail Steamship Company) 소속으로 요코하마에서 상하이를 왕복하는 노선을 운행하던 배였다. 이 회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홍콩과 요코하마를 다니는 노선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상하이까지 영역을 넓혔는데, 특히 일본인과 중국인의 아메리카 이민을 가능하게 했던 노선으로 유명하다.(Pacific Mail Steamship Company, Wikipedia 영문판 2013년 5월 9일 검색). 한편 상하이호와 소코트라호는 모두 P&O(Peninsular and Oriental Steam Navigation Company) 영국 해운회사 소속 배들이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소코트라(Socotra)”호라는 영국 화물선의 존재이다. 이 배는 P.&O.라는 약칭으로 널리 알려진 페닌슐라 오리엔탈 스팀 내비게이션 컴패니(The Peninsular and Oriental Steam Navigation Company)라는 회사 소속이다. 이 회사는 1837년에 설립되어 영국정부로부터 인도와 아시아 지역의 정기연락선 허가를 받아 줄곧 독점권을 누리던 대형 선박회사였으며, 20세

기 이후 크루즈 선박을 중심으로 한 회사로 종목을 바꾸기는 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회사이다. 이 회사는 이미 100년사 책자가 나와 있어 대략의 역사를 살펴 볼 수 있다.¹⁴ 물론 P&O는 우편 청부업만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 1840년대부터는 우편 청부계약의 도움을 받지 않은 채, 극동으로 사업을 확장시켜 갔는데, 그것은 회사가 인도에서 중국까지 아편을 운송하였기 때문이다.¹⁵ 이렇게 덩치를 키워간 P&O는 <지도 1>에서 보듯이 아시아 지역의 정기항로를 영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우편물과 각종 화



〈지도 1〉 P.&O.의 아시아 지역 정기 노선도¹⁶

¹⁴ Boyd Cable, 1937, A hundred year history of the P. & O., Peninsular and Oriental Steam Navigation Company, 1837-1937, Ivor Nicholson & Watson, London.

¹⁵ Freda Harcourt, 2006, Flagships of Imperialism: The P&O Company And the Politics of Empire from Its Origins to 1867, Manchester Univ Pr., p.6.

¹⁶ Boyd Cable, 1937, 위의 책, 앞표지.

물을 독점적으로 운항하고 있었다.

소코트라호는 1896년 건조되었는데, 6,009톤짜리 증기 기선이다. <사진 1>과 <사진 2>에서 보듯이 당시로서는 매우 규모가 크고, 나무가 아닌 철로 건조한 대형 증기선이었다. P.&O.가 사들여 1897년 중국으로 첫 항해를 한 이래, 인도, 호주, 중국을 오가면서 화물을 운반하며 우편배달업무도 수행하고 있었던 일반 정기 화물선(General cargo liner)이었다.¹⁷ 1915년까지 운항했던 기록을 갖고 있다.

그런데 소코트라호가 암초에 부딪쳐서 파손되었지만, 침몰한 것은 아니었다. 소코트라호에 관한 P.&O. 회사의 기록에는 이 충돌에 관한 사항이 나오지 않는데, 1915년 11월 26일 프랑스 르투케(Le Touquet)에서 좌초되기까지 중요 사항을 기록한 내용 중에 1903년 벨기에 해안에서 달링톤(Dallington)



<사진 1> 소코트라호의 모습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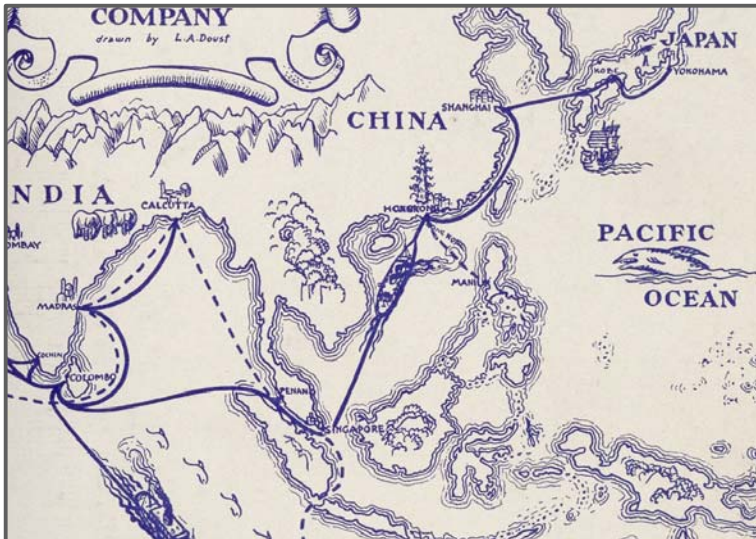
<사진 2> 소코트라호의 모습¹⁹

¹⁷ Career, Socotra 1897, The P&O Group Information Service, Issued by May 1982. 영국 왕립해양박물관(Royal Marines Museum) 자료실 소장문서.

¹⁸ 영국 왕립해양박물관(Royal Marines Museum) 소장 Socotra Ship 그림 엽서.

증기선과 부딪친 사고가 적혀 있을 뿐이다.²⁰ 따라서 당시 소코트라 암초에 부딪치면서 파손된 정도는 그리 심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상하이의 부두에서 수리를 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영국 해군 수로국에 연락한 것도 상하이였을 것이다. 그 뒤 소코트라호는 줄곧 P.&O.의 아시아 지역 화물 운송선으로 역할을 담당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항행통보에서는 소코트라호가 1900년 6월에 일본에서 상하이로 가고 있었다고 했다. <지도 2>의 P.&O.의 아시아 지역 정기 노선도를 보면, 일본의 요코하마(横浜)에서 고베(神戸)를 거쳐 상하이(上海)로 이동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지도 2〉 P.&O.의 아시아 지역 정기 노선도, 부분 확대

영국 상인들은 1600년대부터 동인도회사(East India Company)를 만들어 무역을 해왔다. 이 무역은 처음에는 아랍 지역과 동남아시아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인도로 확대되었고, 19세기부터는 인도 무역이 줄어들고, 대신에 중국 무역이 확대되고 있었다. 영국은 이미 19세기 이후에는 인도와

동남아시아가 아닌 중국 및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서 가장 큰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²¹ <지도 1>의 항로를 보면, 엄청나게 넓은 태평양은 물론 인도양까지 무

19 P&O CARGO SHIP SS SOCOTRA AGROUND LE TOUQUET VINTAGE SHIPWRECK POSTCARD PARIS, <http://www.ebay.co.uk/itm>.

20 Career, Socotra 1897, The P&O Group Information Service, Issued by May 1982. 영국 왕립해양박물관(Royal Marines Museum) 자료실 소장문서.

21 아사다 미노루, 2004, 『동인도회사』, 이하준 옮김, 도서출판 파피에; 보타ー, A. N., 1996, 『大英帝國歷史地圖』, 横井勝彦·山本正譯, 株式會社 東洋書林, 97쪽.

대로 삼아 활동하는 영국 상선의 존재로부터 당시 영국의 힘을 상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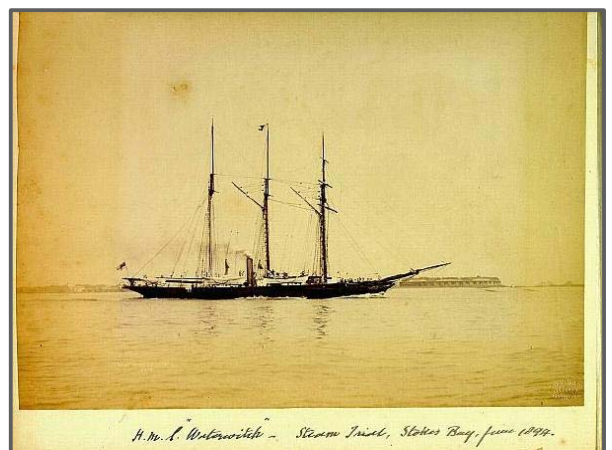
당시 영국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었고, 동중국해는 그들 영국의 배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바다였던 것이다. 그러니 동중국해의 사정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더 소상히 알고 교통에 방해되는 요소를 확인하고, 운전자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일, 말하자면 교통정리를 맡아보던 곳이 다름 아닌 영국 해군 수로국이였다. 또 그들로서는 소코트라암초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바다를 무대로 해도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소코트라 암초를 발견하고 확인하고, 나아가 해도에 표시하는 것은 그들의 당연한 일이었다.

3. 영국해군 측량선 워터위치호의 측량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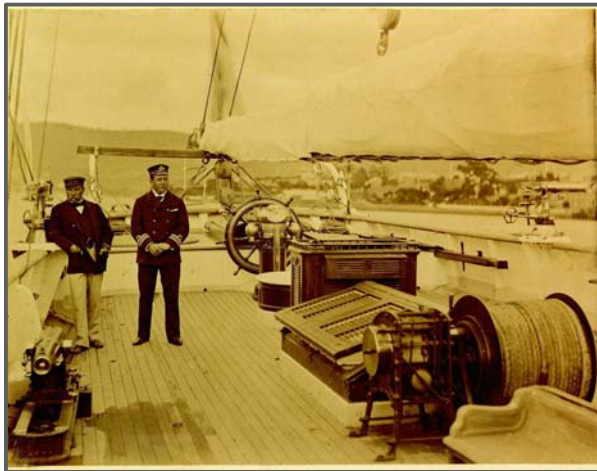
영국 해군 수로국이 소코트라 암초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한 선박은 영국 해군 측량선 워터위치(HMS Waterwitch)였다. 그동안 조사 결과, 워터위치호에 관해서는 비교적 다양한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우선 워터위치호의 사진이 두 군데의 도서관에 남아 있다. 사진부터 먼저 확인하기로 하자.



〈사진 3〉 시드니 항에 정박한 워터위치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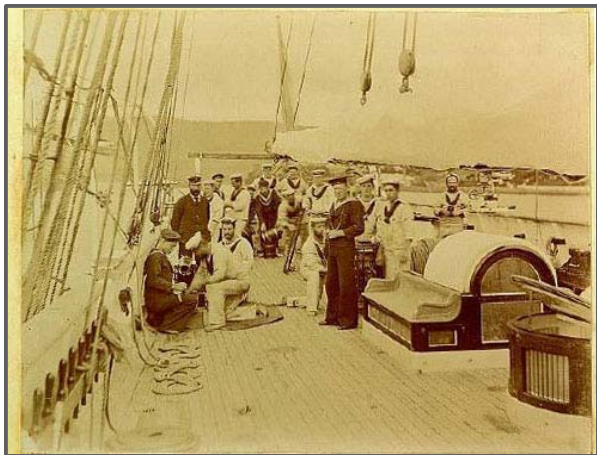
〈사진 4〉 호주 남쪽 섬 태즈메니아 호바트항에 정박한 워터위치호



〈사진 5〉 워터위치호. 선장과 선원의 모습



〈사진 6〉 워터위치호. 선장과 선원의 모습



〈사진 7〉 워터위치호. 선장과 선원의 모습

〈사진 3〉은 호주국립해양박물관(Australian National Maritime Museum)의 윌리엄 홀(William Hall) 컬렉션에 남아 있다. 박물관측의 설명에 의하면, 이 컬렉션 사진들은 189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시드니항에 있던 크고 작은 다양한 배들을 찍은 것으로 구성되었다. 사진에는 “Sydney, New South Wales, Australia, 1895”라고 하여 1895년경에 시드니항에서 촬영되었다고 설명이 붙어 있다.²²

〈사진 4〉부터 〈사진 7〉까지는 호주 퀸슬랜드 대학 도서관 소장품으로, 흠 일가의 사진 컬렉션(Hume Family Photograph Collection, Fryer Library, University of Queensland) 중에서 Image770부터 773까지의 사진이다.²³

²² HMS WATERWITCH partaking in a regatta on Sydney Harbour.
Flickr www.flickr.com/.../8052244035/

²³ “HMS Waterwitch, Hobart April 1895” site:www.library.uq.edu.au

위에서 소개한 두 컬렉션의 사진은 모두 워터위치호가 호주에서 활동을 시작한 초기에 찍은 것들이다. <그림 4>는 시드니 항구에서, <그림 5>부터 <그림 7>까지는 호주 남쪽 섬 태즈매니아(Tasmania)의 호바트(Hobart) 항구에서 찍은 것이다. 멀리서 찍은 것도 있지만, 뒤의 석장은 직접 워터위치호에 승선해서 선장과 선원들의 기념사진을 찍은 것들이다. 이 배는 원래 랭커셔 위치(Lancashire Witch)라는 이름의 개인 요트였는데, 1878년에 건조된 760톤짜리 목선(木船)이었다. 영국 해군이 이 배를 1893년에 사들여, 측량선 용도에 맞게 개조하였다. 사진을 찍은 시기가 모두 1895년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1894년까지 개조를 마치고, 1895년부터는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조사선으로 활동했던 1895년부터 1912년까지의 기간 동안의 움직임을 정리해보자.

1) 워터위치호는 1895년부터 호주 기지를 근거지로 삼고 일을 시작해서, 몇 년 동안 호주와 태평양 섬 일대의 측량 작업을 했는데, 피지 에스페란스만 조사 작업도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호주 기지를 떠난 것은 대략 1900년 경이라 알려져 있다.²⁴

2) 호주에 기지를 두고 진행했던 측량 작업 중에서 지금까지 잘 알려져 있는 것은 1895년부터 1897년까지는 호주북동부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산호초 지대인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Great Barrier Reef)를 조사하고, 해도를 작성했던 작업이었다.²⁵

3) 그 뒤 워터위치가 수행한 측량 작업 중 다수는 말레이시아 해역에서 이루어졌다. 승무원들이 보낸 우편엽서는 워터위치가 1908년 9월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의 남쪽에 있는 스웨텐햄 항구(Port Swettenham)에 있었음을 말해준다.²⁶

²⁴ Bastock, John, 1988, Ships on the Australia Station, Child & Associates Publishing Pty Ltd; Frenchs Forest, Australia. p.125.

²⁵ *Waterwitch Passage : 1898. Admiralty Hydrographer. Named after HMS Waterwitch, survey vessel on Australia Station 1895-98.

*1895-97-HMS Waterwitch : Hydrographic survey vessel HMS Waterwitch explored and charts sections of the Gt Barrier Reef in 1897.

<http://www.australiaforeveryone.com.au/discovery/names6.htm>

4) 워터위치호는 1912년 싱가포르 항에 정박해 있다가 갑작스런 사고로 침몰했다. 싱가포르 지사의 개인 배가 워터위치를 들이받았던 것이다. 해군 측량선으로서의 임무는 이것으로 끝이었다. 이 배는 나중에 수리를 해서 다시 팔렸다.²⁷

이상 내용을 보면, 워터위치는 호주 기지에서 활동을 시작해서 1900년경에 호주 기지를 떠났다. 그동안은 호주에 근거지를 두고, 호주 남쪽 지방과 피지 섬 등을 조사했는데, 호주는 물론 피지 역시 영국의 식민지였으므로, 영국 해군이 기지를 갖고 있거나, 자신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1900년 이후 어디로 갔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그리고 나서 1908년에 말레이시아 해역에서 다수의 측량 작업을 했다고만 나와 있다.

앞에서 한상복과 정공훈은 모두 1901년에 측량선 Water Witch호가 소코트라 암초를 측량했고, 그것이 항행통보로 발표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근거를 밝히지는 못했다. 그렇다면 소코트라호가 암초에 대해 보고를 한 1900년 8월 이후 암초를 측량해서 보고했다는 1901년 사이에 워터위치호가 영국 해군 수로국 본부로부터 암초의 위치를 전달받고 측량에 나섰을 것이다. 워터위치호의 활동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워터위치호가 해군 수로국에 측량 결과를 보고한 보고서를 찾아내 상세한 측량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영국 국립문서보존소(National Archives, UK)와 그리니치에 있는 영국 왕립해양박물관(Royal Marines Museum), 그리고 영국 왕립해군박물관(Royal Navy Museum)의 자료를 집중적으로 탐색하였다. 그 결과 영국 국립문서보존소(National Archives, UK)에서 워터위치호의 항해일지에 해당하는 Log Book을 다수 찾을 수 있었다. 반면에 수로국 문서들 중에서 그 시기에 해당하는 워터위치호의 보고서들은 보이지 않았다. 워터위치호의 활동을 기록한 매일 매일의 항해일지(Log Book)는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이 그 목록이다.

²⁶ HMS *Waterwitch*(1892), Wikipedia 영어판, 2013년 5월 8일 검색.

²⁷ 뒷글, 같은 곳.

목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워터위치호가 측량선으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수리를 마치고 본격적인 조사를 위해 활동하기 시작한 날짜는 1894년 6월 12일이었다. 그리고 싱가포르 항에서 다른 배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면서 활동을 중지한 날짜는 1912년 10월 12일이었다. 그런데 <표 1>을 보면, 이 기간 동안의 항해일지가 거의 완벽하게 남아 있다. 따라서 이 자료들을 검토하면 워터위치호의 항로와 활동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국립문서 보존소의 관리번호 ADM 53/16577은 1900년 4월 13일부터 1901년 8월 10일까지의 항해일지이다. 이 항해일지가 우리가 찾는 소코트라 락의 측량 활동을 보여 줄 수 있는 기록이라고 판단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표 1> 영국 해군 측량선 WATERWITCH호의 항해일지 목록(HMS Ship's Log)

기 간	목록 번호	비고
12 June 1894 - 12 November 1895	ADM 53/16573	
13 November 1895 - 20 April 1897	ADM 53/16574	
21 April 1897 - 26 September 1898	ADM 53/16574	
27 September 1898 - 12 April 1900	ADM 53/16576	
01 March 1900 - 31 March 1900	ADM 53/31961	
01 April 1900 - 12 April 1900	ADM 53/31962	
13 April 1900 - 10 August 1901	ADM 53/16577	해당 기간 자료
11 August 1901 - 27 January 1903	ADM 53/31964	
28 January 1903 - 14 May 1903	ADM 53/31965	
14 May 1903 - 07 May 1904	ADM 53/31966	
08 May 1904 - 29 April 1905	ADM 53/31967	
30 April 1905 - 28 February 1906	ADM 53/31968	
01 March 1906 - 10 June 1907	ADM 53/31969	
11 June 1907 - 05 March 1908	ADM 53/31970	
05 March 1908 - 28 February 1909	ADM 53/31971	
12 March 1910 - 27 February 1911	ADM 53/31973	
28 February 1911-19 February 1912	ADM 53/31974	
20 February 1912 - 08 October 1912	ADM 53/31975	

출처 : 영국 국립문서보관소(National Archive) 목록

우선 항해일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확인하였다. 특히 우리가 소코트라호가 보고를 해온 이후부터 1901년도까지의 기록을 검토하였다. 그러다가 1900년 4월 13일부터 1901년 8월 10일까지의 항해일지(ADM 53/16577)에서 맨 마지막 부

분인 1901년의 7월 28일부터 30일의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항해일지에는 이 날짜에 소코트라 암초에 가장 가까운 좌표가 기록되어 있었다. 워터위치호는 7월 28일 북위 32도 9분, 동경 125도 09 지점에서 배를 멈추고 바로 가까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beacon의 주위에서 측량작업을 계속했다. 현재 알려진 이어도의 위치가 북위 32도 9분, 동경 125도 07분이므로, 바로 이 위치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항해일지를 통해서 1901년 7월 30일에 워터위치호가 소코트라 락에 도착해 있는 상황을 확인하였다. 항해일지를 검토해 보면 워터위치호는 7월10일에는 홍콩에 정박해 있었다. 7월 15일자 항해일지에는 홍콩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9일자는 워터위치호가 홍콩(Hong Kong)을 출발하여 상해(Shanghai)로 이동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H.M.S. "Waterwitch", Sunday 28 th day of July 1901, IS													
From Hong Kong, To Shanghai, or At													
Hour.	Knots.	Tide.	Standard Compass Course.	Deviation of Stand. Comp.	Leeway, points.	Wind, Direction.	Force.	Weather.	State of the Sea.	Height of Bar.	Ther.	Temp. of the Sea.	REMARKS.
1	As												A.M.
2	requite												
3	Co												
4	Keep					1	ECLM	light	20 27	77	76	4-0-0	4.10 Steamer passed standing to W?
5	near												
6	beacon												Clearing ship.
7	as may be					W 5	57	BCOR					7.05 long W. 20 equal with rain from
8	close beacon					SE 1/2 E	37	BCF	"	20 33	77	76	8-0-0
9	As												9.15 G. as may be for sailing
10	requite												Provisions, not packed
11	for												Employed sailing
12	working					SE 1/2 E	3	CCF	"	20 33	77	76	12-0-0
Course & distance made good.		Distance run through the water.		Latitude.		Longitude.		True Bearing and Distance.		Water.		Coal Expended in 24 hours.	
				D. R.		D. R.		Shannon		Expended.		For Engines 3-5	
		Under steam								Ship			

〈문서 1〉 워터위치호의 항해일지 1901년 7월 28일

H.M.S. "Waterwitch", Monday 25 th day of July 1901, 19													
From Hong Kong, To Shanghai, or At													
Hours.	Knots.	Tenths.	Standard Compass Course.	Deviation of Standard Comp. Leeway, points.	Wind.		Weather.	State of the Sea.	Height of		Temperature of the Sea.	REMARKS.	
					Direction.	Force.			Bar.	Ther.			
1												A.M.	
2			Stopped										
3			near										
4			beacon		S 1 BCM	20 30 75 75					4-0-0		
5												5.10 Proceeded 60 revs. as req. for beacon	
6			as req.									6.15 200 revs. as req. for beacon.	
7			to close									Observing light.	
8			beacon		S 1 BC	20 37 78 76					2-0-0	7.17 Stopped	
9			Stopped									7.15 Proceeded, as req. for sounding	
10			as									Division, next prayers.	
11			requisite									Employed sounding, scraping	
12			for									gates as req.	
			sounding		S 1	20 38 77 83							

Course & distance made good.	Distance run through the water.	Latitude.	Longitude.	True Bearing and Distance.	Water.	Coal Expended in 24 hours.	No. on Sick List.
Under steam	miles.	D.R. 2	D.R. 2	Beacon	Expended.	For Engines 2-0	
" sail	"	Obs. 32-C/1/2	Chro. 175-C/1/2		1 1/2	" Ship 2	2
" steam & sail	"	Current in 24 hours.		Dist 0.1 miles	2	" Distilling 10	
Total		Tidal			Remaining	17-8	

〈문서 2〉 워터위치호의 항해일지 1901년 7월 29일

〈문서 1〉은 항해일지 7월 28일자 기록인데, 이날 위치는 북위 32.14, 동경 124.59였다. 그리고 〈문서 2〉는 다음 날인 29일인데, 전 날보다 약간 움직여서 북위 32.07, 동경 125.04로 암초 옆에 붙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암초를 비컨(Beacon)이라고 부르고 있다. 〈문서 3〉을 보면 그런 상태에서 30일에는 북위 32.09, 경도 125.09에 멈춰 섰다. 〈표 01〉과 〈표 02〉는 워터위치호의 항해일지 1901년 7월 30일치 기록을 옮겨 적은 것으로 비고란에 5시15분 “against tide to keep near beacon. as near to close beacon.”(파도를 거슬러 암초 가까이에 계속 머

8	Stopped									
9	As									
10	requisite									
11	for									
12	sailing				\$	1	4		29-98	79
Distance run through the water.		Latitude.		Longitude.		True Bearing and				
Under steam miles.		Obs. 32-07 1/2		Chro. 125-04 1/2		Bearing				
" sail		Current in 24 hours.				Fast				
" steam & sail										
Total										

〈문서 3〉 워터위치호의 항해일지 1901년 7월 29일의 경도 위도

물렀다. 암초에 가능한 한 가까이 붙었다.)고 하고 7시가 되면 stopped이라고 완 전히 멈춰 섰음을 말해주고 있다. 정리해 보면, 워터위치호는 28일에 이어도 가 까운 지점에 도착해서 30일까지 계속 머물렀다. 한 위치에서 계속 측량을 하고 나서 비로소 그 지점을 떠나 상해로 돌아왔다.

전체 경과를 다시 정리해 보자. 1901년 7월 초에 홍콩을 떠나 상해로 이동한 워터위치호는 한동안 상해에 머물다가 20일 이후에 상해를 출발하여 느린 속도 로 동중국해상을 항해하였다. 이미 보고되었던 좌표를 찾아서 간 것이다. 28일에 목적지에 도달하여 속도를 늦추고 조금씩 이동하면서 목표 지점을 조사하였다. 배를 한 곳에 멈추고 조사를 계속하다가 30일 저녁 6시를 넘어서야 다시 출발하 였다. 워터위치호는 8월 1일에 상해에 정박한다. 그리고 약 일 주일 가량을 머물 다가 9일에 다시 웨이하이웨이(Weihaiwei, 威海衛)를 향해 출발한다.

그 뒤에 워터위치호는 자신들이 측량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수로국(Hydrographic Department, Admiralty)에 보고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측량 사실을

H.M.S. 'Watercress', Sunday 30 th day of July 1901, H.										
From Hong Kong, To Shanghai, or At										
Hour.	Knots.	Tenths.	Standard Compass Course.	Deviation of Stand. Comp.	Leeway, points.	Wind.		State of the Sea.	Height of Temperature of the Sea.	REMARKS.
						Direction.	Force.			
1										A.M.
2										Steaming head slow.
3										
4										
5										515 Alt. 2. 28 and req. to close beam.
6										Back to 60 revs.
7										710 due to 70 revs.
8										Employed cleaning ship.
9										Division, head passed.
10										920 stopped, picked up beam.
11										935 stopped, 180 ft 75 revs.
12										1020 stopped, dropped a beam.

Course & distance made good.	Distance run through the water.	Latitude.	Longitude.	True Bearing and Distance.	Water.	Coal Expended in 24 hours.	No. on Sick List.
		of Beacon			Expend.	For Engines 6-1/6	
	Under steam	2	E	Beacon	1 1/4	Ship 2	2

〈문서 4〉 워터위치호의 항해일지 1901년 7월 30일

보고했던 보고서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워터위치가 측량에 성공한 사실만을 확인했을 뿐이다. 앞으로 좀더 지속적인 자료 탐색을 통해서 측량 당시의 각종 data를 확인할 생각이다.

4. 동중국해에서의 영국의 활동과 소코트라 압초

영국은 17세기와 18세기에 걸쳐 동인도회사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과의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 18세기까지는 주로 인도와의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19세기로 들어서면 인도와의 무역은 사양길로 접어들었고, 더 이상 이익을 내기가 어려워져 갔다. 대신에 각광을 받은 지역은 중국과 일본이었다. 특히 차가 가장 대표적인 교역품이 되었고, 여기에 비단과 도자기까지 품목은 점차 확대되어 갔다. 그러자 영국은 19세기부터는 아예 인도양이 아니라 동중국해를 주 무대로 삼게 되었다.²⁸

영국은 청으로부터 차나 도자기, 비단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었지만, 청나라로의 수출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은으로 대가를 치를 수 밖에 없었다. 물론 수입품을 런던으로 가져갔다가 유럽 각지로 재수출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교역에 필요한 은이 중국으로 계속해서 흘러들어 갈 수 밖에 없었다. 거기서 영국이 생각한 은 유출을 멈추는 방법이, 식민지 인도에서 만든 아편을 중국에서 유행시키고, 거기에서 은을 얻는 것이었다. 아편은 중국사회에 빠른 속도로 퍼졌고, 문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청나라도 이에 맞서, 아편을 몰수하고 처리를 하거나 아편을 반입하는 상선과의 거래를 금지하도록 하는 정책을 폈다. 이 대립은 결국 무력 대결로 치달았다.²⁹

1839년에 영국은 중국과의 첫 번째 아편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중국은 패배했

²⁸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할 것.

하마우즈 데쓰오, 2004, 『대영제국은 인도를 어떻게 통치하였는가 - 영국 동인도회사 1600-1858』, 김성동 옮김, 도서출판 심산문화.

하네다 마사시, 2012, 『동인도회사와 아시아의 바다』, 이수열·구지영 옮김, 도서출판 선인.

²⁹ 아사다 미노루, 2004, 『동인도회사』, 이하준 옮김, 도서출판 파피에, 212쪽.

고, 1842년 난징 조약의 조항에 동의했다. 홍콩 섬이 영국에 양도되었고, 상하이, 광저우 등의 특정 항구가 영국의 무역과 거주지로 개방되었다. 1856년에 제2차 아편 전쟁이 발발했고, 중국은 다시 패배, 영국은 텐진(天津)에서 중국에게 1858년 조약을 강요하였다. 텐진조약으로 중국은 새로운 무역항을 개방하였고, 외국인은 중국 내륙지방을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독교인들은 중국에서 자신의 종교를 전파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영국 상인들의 중국 진출은 점점 늘어만 갔다. 영국 상인들은 싱가포르를 거쳐, 홍콩, 그리고 상해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교역 거점을 확보하였다. 영국의 상선들은 이 거점을 최대로 활용하면서 중국의 항구는 물론 수시로 일본을 왕래하면서 교역품을 실어 날랐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영국 해군의 함선들이 상주하게 되었다.

그런데 상선은 물론 해군 함선들이 중국 연안 바다를 오가게 되고, 점차 항행하는 노선이 늘어감에 따라, 안전한 항해를 위한 해도의 필요성이 급증하였다. 물론 당시 동중국해에 관한 각종 해상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고, 가장 정확한 해도를 제작한 것도 영국 해군 수로국이었다. 영국은 이미 18세기부터 동중국해는 물론 황해, 동해, 그리고 홋카이도를 포함한 일본 전 지역에 이르기까지 측량선을 파견해 수십 차례 해도 작성을 위한 측량 작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지역과 관련해 수백 장의 해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영국을 포함한 유럽의 바다와 비교하면 그들에게 아시아의 바다는 아직도 미지의 세계였다. 1900년 소코트라호가 암초에 부딪혔다는 것은 당시 영국이 갖고 있던 동중국해 해도와 정보가 그만큼 불완전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소코트라호가 암초에 부딪친 위치를 P.&O. 회사 본부에 알리자, 본부 지배인이 이를 해군 수로국에 알렸다.

이미 1968년에 처음 사고가 있었고, 그 때 조사를 했지만 찾지 못했는데, 불과 4년 전에도 비슷한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그 때도 해군함정 플로버(H.M.S. Plover)가 출동하여 현지 확인 작업을 했었지만, 실패했었던 것이다.

때문에 영국 해군 수로국은 계속되는 사고에 민감하게 반응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홍콩 기지에 머물고 있던 측량선 워터위치호에게 암초의 위치를 확인하고

측량해 보고하라고 알릴 때는 이 점을 강조했을 것이다. 결국 1900년 6월에 소코트라호가 암초에 부딪치고 나서 1년 후인 1901년 7월말에 워터위치호가 직접 현장으로 출동했다. 그리고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3일에 걸친 측량 작업 끝에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하였다. 수로국은 이 사실을 항행통보를 통해서 발표하고, 해도에 반영했을 것이다.

앞서 정공혼은 1900년의 항행통보를 찾아 제시했고, 그 내용을 통해서 소코트라호가 충돌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반면 1901년의 항행통보는 확인하지 못했다. 나 역시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나, 당시의 일본 해군 수로국의 수로고시(水路告示)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1901년 일본 해군 수로국이 발표한 수로고시를 보자.

水路告示 제1250호 (1901 明治 34년)

제3252항

支那海 揚子江口外

大揚子沙東方의 險礁 발견.

1901년 8월 2일, 淸國各口巡工司 특별고시 제367호에 의하면, 영국측량함 「워터위치」(함장 W. O. Line)의 驗測과 관련한 수로보도를 게시하였다.

북위 32도 7분 15초, 동경 125도 11분의 자리에, 바다 밑에서 험하게 솟아오른 화산 모양 尖岩 정상에, 石花點礁灘이 있고, 그 북동에서 남서에 이르는 길이 약 1/4해리, 폭 약 60碼, 그리고 가장 얇은 쪽이 18척이면서도, 언제나보다 얇은 부분이 존재한다. 이 灘의 남서 끝에서 岩坡남서 조금 남쪽 방향으로 반 해리에 걸쳐 뻗는다.

그 가장 얇은 부분은 17심이다. 이 灘 위로 격렬한 湍潮와 激湍이 있고, 北東으로 약 반 해리, 南西로 1해리를 뻗는다. 가장 얇은 곳은 이 灘의 양끝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 北東끝에서는 꺾이는 波浪이 보인다. 또 海水가 疾流할 때는 灘 위의 한 면에 波浪이 일어난다.

湍潮와 激湍은 1해리 이상 떨어져 있어도 볼 수 있으며, 또 태양을 등에 지고 있을 때는 이 石花點灘 위에 얇은 초록빛 물(薄綠水)이 있음을 같은 거리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이 여울 주위의 岩坡는 擴延하는 곳을 제외한다면, 약 1/4해리 거리이며, 그 사이의 수심은 27심에서 30심에 이르는 沙泥이다. 그러므로 해저가 화산암과 灰塵, 懷石花로 이루어진 곳까지 닳을 내리는 것은 다시 지도를 하지 않음.

이 石花點灘은 1868(명치 원)년 報告「코스타리카」호의 파랑초(波浪礁), 1900(명치 33)년 6월의 「소코트라」호와 같은 해 9월 「추엔」호의 淺灘, 같은 해 10월 「보무베-」호의 變色水와 다분히 같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조류는 이 바위 위와 부근에서 강하게 흐른다. 그리고 그 性回旋을 한다. 군함 「위터·위치」호가 여기에 접근했을 때는 조류가 1시간 2절의 속도를 보이면서, 남쪽으로 흘러갔다고 한다.

1901(명치 34)년 8월 16일

수로부장 肝付兼行

水路告示 第1250号(明治34年)
第3252項
支那海 揚子江口外
大揚子沙東方の險礁発見

明治34年8月2日清国各口巡工司告示第367号に拠れば、英國測量艦「ウォーター・ウィッチ」(艦長ダブリュー・オ・ライン)の駛測に係る左の水路幅道を掲げたり。北緯32度7分15秒、東經125度11分の処に、海底より屹起する火山狀尖岩の頂上に、石花点礁あり。其北東至南西の長さ約4分の1海里幅約60碼、而して最淺部18呎なれども、尙之より淺き個所存在するが如し。

該礁の南西端より岩坡南西微南の方向に半海里抵延す。其の最淺部17尋なり。該礁上に激烈なる高潮及激浪ありて、北東へ約半海里、南西に1海里抵延す。最淺処は該礁の両端にあるが如し。而して其の北東端に於ては折々破浪するを見る。且海水疾流するときは、礁上一面に破浪するならん。

漲潮及激浪は少くも1海里より望み得べく、且太陽を背に食ふ時は、該石花点礁上に薄緑水あるを同距離より望み得べし。該礁周囲の岩波抵延する処を除けば、約4分の1海里の距離間水深27尋乃至30尋にして砂泥なり。故に海底が火山岩及び灰燼、礫石花となる処までは投錨は更に指導とならず。

この石花点礁は明治元年報告「コスタ리카」号の波浪礁、明治33年6月の「ソコトラ」号及同年9月「チュエン」号の淺礁、同年10月「ボムベ-」号の變色水と多分同物なるべし。潮流は該岩上及付近に於て強流す。而して其の性回旋なり。軍艦「ウォーター・ウィッチ」号の之に接せし時は、潮流1時間約2節の速度を以て南に走るといふ。

明治34年8月16日

水路部長 肝付兼行

〈문서 5〉

위터위치호가 측량을 마치고 현장을 떠난 것이 7월 30일이었다. 그런데 불과 3일 후에 청국각구순공사(淸國各口巡工司) 특별고시 제367호가 발표되었는데, 영국측량함 「위터 위치」의 측량 결과와 관련한 수로보도였다. 各口巡工司의 존재를 아직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당시 청국의 해관(海關) 산하기구로 보인다.

청국 해관은 영국 조계 안에 설치되어 있었고, 영국인들의 관리 아래 있었다. 따라서 이 기구는 영국 해군 수로국과 연결되어 상해에서 각종 정보를 항해자들에게 알리고, 동시에 해상에서 발생한 각종 해난 사고 관련 신고를 접수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니까 이 기구는 청국의 관청이지만, 동시에 영국 관리들이 장악하고 업무를 담당하던 기구였다.

위터위치호는 상해에 도착하자마자 암초의 위치를 측량한 결과를 보고했다. 그러자 이 기구에서는 보고를 토대로 특별고시 제367호로 발표했는데, 그 날짜가 1901년 8월 2일이었다. 위터위치호 도착 바로 다음 날, 동작 빠르게 항행통보가 나온 것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특별고시는 영국 해군 수로국 본부에서 내는 항행통보 이전에, 현지의 담당 부서에서 그 일대를 항해하는 선박에게 가장 신속하게 항행통보를 발표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고시에서는 앞서 신고를 했던 소코트라호 뿐만 아니라 9월에는 「추엔」호, 10월에는 「보무베-」호가 각각 신고를 해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이 신고 지점을 제대로 측량해서 확인했다는 발표를 한 것이었다.

그 뒤 영국 해군이 발행하는 해도와 수로지에 이 암초가 ‘소코트라 락’이라는 이름으로 실렸다.³⁰ 암초의 이름은 대체로 암초에 부딪쳤던 선박의 명칭을 사용한다고 한다.³¹ 이로서 위터위치호의 소코트라 암초의 측량은 끝났다. 이로서 영국은 보다 완벽한 해도를 작성하는 데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점은 영국이 소코트라 락을 발견하고 측량했던 의도와 활용에 관한 것이다. 영국 배 소코트라 호가 부딪친 것은 암초였으며, 영국 해군 수로국이 이 암초를 찾으려고 측량선 위터위치호를 보내고, 측량한 결과를 해도와 수로지에 실은 것은 어디까지나 소코트라 락이 암초였기 때

³⁰ "Chart 3480 : Banks and rocks - Great Yangtz bank with general depths of less Socotra rock (Lat. 32° 07' N, Long. 125° 11' E)", *China Sea Pilot VOL. III*, Second Edition, 1954, Hydrographic Department, Admiralty., Chapter VIII. Eastern Sea and Yellow Sea, p.394.

³¹ 정공훈은 이러한 설명을 하고나서, "우리나라의 근해에서의 예를 들면, 제주도 북서방 90해리에 있으며, 소흑산도 남서방 28해리에 있는 日向礁는 1927년 일본 군함 日向號에 의해서, Socotra礁의 남방 약 24해리에 있는 Le Bruix는 1907년 佛 汽船 Le Bruix에 의해서 명명되었다."고 덧붙였다. 정공훈, *뒷글*, 77쪽.

문이다. 소코트라 암초는 피해가야 할 장애물일 뿐이었다.

위터위치호는 1901년 8월 이후에도 한동안 홍콩, 상해를 비롯한 동중국해역을 무대로 활동하였다. 당시 영국은 동중국해 연안에 자신들의 영토를 확보하고 있었다. 홍콩은 이미 1940년대부터 영국이 청나라로부터 빌린 조차지로 영국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상해에도 조계지는 물론 해관까지 장악하고 있었다. 게다가 황해 북쪽 산둥반도의 웨이하이웨이(Weihaiwei, 威海衛)에도 영국 함대 기지가 있었다. 영국은 소코트라 락을 측량하기 3년 전인 1898년에 청나라로부터 웨이하이를 조차(租借)했다. 웨이하이는 이때부터 영국 해군의 관할 하에 놓여 「포트·에드워드(Port Edward)」라고 불렸다. 1900년에는 행정 장관서가 설치되어 영국 식민지성의 관할 하에 들어갔다.³² 물론 웨이하이웨이를 조차한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의 진출을 막기 위해서였는데, 이로서 영국 함대의 활동 영역이 더 넓어졌다.

이처럼 영국의 민간 선박뿐만 아니라 해군 함대들까지 몰려들어 동중국해와 황해 해역에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 해군 수로국은 그만큼 동중국해뿐만 아니라 황해 해역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해도를 작성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영국 배와 영국 해군 수로국의 관심은 암초에 있었고, 암초를 확인하고 피해 다닐 수 있게 된 다음, 영국은 더 이상 이 암초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통보를 받은 일본 해군 수로국이 소코트라락으로 측량선을 보내 직접 확인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일본 해군 수로국은 곧바로 영토로 만들겠다고 욕심을 부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활용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암초를 영토의 경계로 활용해야 할 만큼 해양영토문제가 심각하지 않았고, 영국 해군이 통보해준 암초를 그들이 이름붙인 대로 “Socotra Rock”으로 부르지 않고 「하로우스(破浪ス)」라고 기재하였다.³³

32 “租借地と租界”, 『世界飛び地領土研究會』Homepage 2013년 5월 2일 접속
<http://www.geocities.co.jp/SilkRoad-Lake/2917/index.html>

33 “日本 海圖 제1002호에서는 Breaks라는 용어 대신 이것을 번역하여 「破浪ス」라고 기재되어 있다.”
정공훈, 앞 글, 81쪽.

그러나 이미 이 시기가 되면 영국의 활동은 약해지고 있었고, 점차 동중국해는 일본의 바다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일본배가 이 지역을 수시로 항해하고 있었다. 일본은 영국 대신 동중국해의 각 항구를 돌면서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해 갔으며, 더 나아가 동중국해에 일본 함대를 띄우고 자신들의 무역선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게 되었다.

게다가 일본은 대부분의 해군 기술을 영국에서 배우고 있었다. 그리고 배도 영국배를 사들이고, 1910년대 이후에도 내내 영국과 일본의 해양 관계는 지속적인 협력 관계였다. 앞서 보았듯이, 1901년에 영국해군 측량선이 소코트라 암초를 발견한 사실을 일본 해군 수로국에 빠른 소식으로 알려주었다. 그만큼 상호 협조 관계가 구축되어 있었다고 하겠다.

일본은 1930년대 들어서서 비로소 다시 한 번 소코트라 락의 존재를 주목했다. 그것은 1937년 중일전쟁이 터지면서 일본과 중국 본토를 잇는 해저전선을 깔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해저전선을 까는 코스로 나가사키(長崎)-제주도-상해를 잇는 코스를 선택하면서부터였다. 나가사키에서 제주도를 잇는 코스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제주도에서 상해를 잇는 코스는 너무 멀어 중간 기착지가 필요했고, 이미 소코트라 암초의 존재를 알고 있던 일본인 기술자들이 소코트라 암초를 활용하여 중계 기지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물론 그 뒤에 태평양 전쟁이 이어지면서 건설 작업은 도중에 중단되었지만, 만약에 예정대로 건설되었다면, 오늘날의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건설은 불가능했을 지도 모른다.

5. 맺는 말

소코트라 암초(Socotra Rock)는 1901년 영국 화물선 소코트라호가 일본과 상해를 잇는 노선을 항행하다가 부딪치면서 그 존재가 알려졌다. 영국 해군 수로국이 측량선 워터위치호를 보내 측량에 성공하면서, 수로지와 해도에 기재하였다. 영국 해군 수로국이 소코트라 암초를 측량하고 수로지와 해도에 기재한 것은 어디까지나 이것이 선박 항행에 위험한 암초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이 암초의 존재

를 일본을 비롯한 각국 수로국에 통보하였고, 동중국해상을 왕래하는 선박들은 해도를 통해 이 암초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영국 다음으로 동중국해역을 지배한 일본 역시 자신들의 민간 선박과 함대의 안전을 위해 자신들의 해도에 암초를 기재하고 이를 피해서 다니도록 했다. 그러다가 1937년부터 일본과 중국을 잇는 해저전선을 부설하게 되자, 소코트라 암초의 존재에 주목하게 되었고, 그 위에 중계기지를 건설하고, 하나의 섬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물론 이것은 계획뿐이었고, 전쟁이 끝나면서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

그 이후 이 암초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탐사를 해온 것은 한국이었다. 1951년의 해군 탐사부터 시작해서 한국 정부와 한국의 민간기관이 여러 차례 탐사를 시도한 끝에 1984년에는 KBS와 제주대학교 해양대학 교수팀이 현지 확인 및 측량에 성공하였고, 그 뒤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

이 글에서는 소코트라 락의 초기 발견 과정과 측량, 그리고 그 역사적 의미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특히 영국 해군 수로국이 소코트라 락을 측량하고, 해도에 기재한 것은 당시 그들이 이 지역을 사실상 지배하는 세력이었으며, 항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였음을 밝혔다.

Abstract

British Discovery of Socotra Rock: Merchant Ship Socotra's Collision and Navy's Survey Report

Professor Cho Sung-yoon
Jeju National University Sociology

This paper is making an inquiry about British discovery of the Socotra Rock, underwater rock in the East China Sea, Jeodo, in 1901, after the British merchant ship Socotra hit the rock and reported the incident to the British naval hydrographic office in 1900. In the following year, the British navy assigned its survey ship, Water Witch, for an investigation of the presence of the rock, in order to avoid future accidents for the British merchant and naval ships sailing the East China Sea primarily and Chinese and Japanese ships secondarily.

This researcher attempts to investigate the mission of the Socotra Ship, and Water Witch, and map making processes in early 20th century to provide more precise information on the presence of the Socotra Rock and naming of the rock after the Socotra ship.

For this research paper, I visited England's National Archives, Royal Marine Museum in Greenwich, and Royal Navy Museum. In the National Archives, I found the Water Witch's Log Book, sailing diaries. That is most valuable information. I could not locate the Notices to Mariners issued by the Hydrographic Office, but I found the Chinese translation and Japanese translation of the Notices to Mariners immediately after the Water Witch report was released in August 1901.

Great Britain virtually controlled the East China Sea after it became victorious over China in two Opium Wars and expanded the trade volumes with China and Japan in the 19th century and early 20th century. Great Britain made an alliance with Japan to curb Russian influence in the East Asian region then. Japan seriously studied the construction of undersea cable line connecting Japan and China in 1937 via Cheju Island and Jeodo. It could not be carried out due to the defeat of Japan in the Pacific and Asian War in the 1940s.

Since 1951, South Korean Navy, the Korean Broadcasting System, and Cheju National University made a series of explorations of Jeodo and constructed the Jeodo Ocean Research Station in 2003.

Key Words: Jeodo, Socotra Ship, Water Witch, British Hydrographic Office,
Socotra Rock

참고문헌

- 아사다 미노루, 2004, 『동인도회사』, 이하준 옮김, 도서출판 파피에.
- 鄭公沂, 1985, 「Socotra 礁의 由來에 대하여-이어도와의 관련을 덧붙여-」, 『Tamma Culture』 no.4,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 조성운, 2011, 「이어도에 관한 제주도 주민들의 이미지」, 『耽羅文化』 제39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주강현, 2012, 「이어도로 본 섬 - 이상향 서사의 탄생」, 『유토피아의 탄생: 섬-이상향/ 이어도의 심성사』, 돌베개.
- 하네다 마사시, 2012, 『동인도회사와 아시아의 바다』, 이수열·구지영 옮김, 도서출판 선인.
- 하마우즈 데쓰오, 2004, 『대영제국은 인도를 어떻게 통치하였는가 - 영국 동인도회사 1600-1858』, 김성동 옮김, 도서출판 심산문화.
- 한상복, 1981, 「경제적인 해양조사를 위한 방법」, 『현대해양』 13권 4호, 現代海洋社
- 한상복, 1984, 「『波浪島』 혹은 『소코트라巖』이라는 암초」, 『現代海洋』 16권 6호, 통권 170호, 現代海洋社.
- 한상복, 1991, 「해양학에서 본 <파랑도>의 가치」, 『해양정책연구』 제6권 2호, 한국해양연구소.
- 현경병·박용안·고충석, 2010, 『대한민국 최남단 이어도』, 샛별 D&P.
- 海上保安廳水路部, 1971, 『日本水路史 1871~1971』, 日本水路協會
- 海運水路部編, 1920, 『日本水路誌』 第10卷, 東京: 海運水路部,
- 日本電信電話公社海底線施設事務所 編, 1971, 『海底線百年の歩み』.
- 籠谷直人・脇村孝平 編, 2009, 『帝國とアジア・ネットワーク: 長期の19世紀』, 世界思想社.
- ポーター, A. N., 1996, 『大英帝國歴史地圖』, 横井勝彦・山本正 譯, 株式會社 東洋書林.
- Armonskey, Ruth, 2012, *P. & O. A History*, Shire Library.
- Bastock, John, 1988, *Ships on the Australia Station*, Child & Associates Publishing Pty Ltd: Frenchs Forest, Australia.
- Blewitt, Mary, 1957, *Surveys of the Seas, a brief history of British hydrography*, Maggibbon & Kee.
- Boyd Cable, 1937, *A hundred year history of the P. & O., Peninsular and Oriental Steam Navigation Company, 1837-1937*, Ivor Nicholson & Watson, London.
- Day, Archibald, 1967, *The Admiralty Hydrographic Service 1795-1919*, London, Her Majesty's Stationary
- Harcourt, Freda, 2006, *Flagships of Imperialism - The P.&O. Company and the politics of Empire from its origins to 1867*,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Hydrographic Department, Admiralty, 1954, *China Sea Pilot VOL. III*, Second Edition, 1954.
- Kerry, Philip J., 2002, "HMS Waterwitch, 1893-1912 : In Memoriam", *Journal of Orders & Medals*.
- Richie, G. S., 1967, *The Admiralty Chart, British naval hydrography in the nineteenth century*, American Elsevier Publishing Company, Inc.

에우토피아, 이어도의 존재론적 의미

김은석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I. 머리말

우리는 나침반이 가리키는 최종적인 극점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발걸음은 언제나 나침반이 가리키는 지점을 향해 있다. 유토피아 역시 손에 닿을 수 없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과 같을지라도 그 존재의 객관적 사실로부터 또한 분리시킬 수는 없다(Mumford, 1922: 11).

이 글은 에우토피아(eutopia, good place)¹인 이어도²의 존재론적 의미를 살펴 보려는 데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크게 이어도의 외연적(extensional) 의미와 내포적(intensional) 의미에서 다루어져 왔다. 즉 이어도의 외연적 의미는 그것이 지칭하는 구체적 대상과 일치하는 관점에서, 그리고 이어도의 내포적 의미는 그 섬이 상징하는 유토피아적 성격과 연결시켜 왔다. 그 결과 이어도를 한편으로 2003년 세워진 현재 마라도 남서쪽 149km의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가리키는 구체적인 명칭으로 사용하는가 하면(송성대, 2010), 다른 한편으로 제주의 전설과 민요, 설화 등에서 그려지는 영원한 낙원, 즉 오우토피아(outopia, no place)로 이해해 왔다(정한숙, 1960; 이청준, 1974; 고은, 1976). 이어도에 대한 서로 다른 상들이 양립하면서 이어도는 20세기 창조된 허구라는 주장(주강현, 2012)까

1 이 말을 만든 토마스 모어(Thomas More)는 두 가지 의미로 유토피아를 사용했다. 그는 『국가 중 가장 좋은 국가와 유토피아라는 새로운 섬에 관하여』(1516)를 출간하면서 유토피아를 좋은 곳(good place)을 뜻하는 에우토피아(eutopia)와 어디에도 없는 곳(no place)을 의미하는 오우토피아(outopia)로 사용하고 있다.

2 이 명칭의 경우 '이어도', '이어도'로 표기할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이어도연구회가 사용하는 명칭으로 이어도로 표기함.

지 나타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³

이 글은 이어도에 대한 쟁점이 유토피아적 담론의 존재론적 해석에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즉 이어도의 외연적 의미와 내포적 의미의 상호 관련성을 바탕으로 에우토피아인 이어도가 단순한 상상의 섬인가,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현실 인식의 반영인가, 그리고 이어도가 현재 명명되는 지리적인 현실적 공간을 뜻한다면 유토피아적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등 이어도의 존재론적 문제를 다루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유토피아가 갖는 사회사상사적 중요성에서 비롯된다. 흔히 유토피아를 이데올로기와 마찬가지로 ‘현실초월적’(wirklichkeitstranszendent)의 식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유토피아는 환상과 같을 수 없다. 『유토피아의 형태』(*The Shape of Utopias*)의 저자, 엘리엇(R.C. Elliott)에 따르면 완전한 풍요, 영원한 에우토피아적 요소들은 도저히 손에 넣을 수 없는 말 그대로 꿈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토피아는 이때 존재하지 않는 오우토피아(outopia, no place)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지만 유토피아에 대한 열망은 때로는 절실한 경험, 때로는 아직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미완성의 소산이다. 이런 의미에서 유토피아는 그 형태가 어떠한든 구체적인 현실 인식의 범위 내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유토피아는 그 나름의 역사성과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Elliott, 1970: 24). 이런 점이 이어도가 갖는 일차적인 매력이자 우리가 주목하는 까닭이다.

이 글은 이어도의 존재를 <난파>→<낙원의 발견>→<전달>이라는 고전적 유토피아 형식에 주목하여(김은석, 1987: 348) 그 존재론적 의미를 결정하는 표상 체계(System von Zeichen)를 파악할 것이다(Mihalopoulou, 2001: 136). 이를 위해 하나의 준거틀(Deutungsmuster)로서 주민들의 의식 속에 <이어도의 등장>→<이어도의 토포스>→<에우토피아 이어도>로 형성되는 과정을 다루어 나가고자 한다. 물론 이어도의 존재론적 의미 분석에 이러한 작업이 얼마나 효율적일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지구상의 어떤 외진 곳도 지도

3 이어도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하순애의 글을 참조할 것(하순애, 2012).

상에 표기되고 알려진 오늘날과는 달리 과거 사람들은 자신을 둘러싼 미지의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을 규정하는 그들 나름의 세계관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기 마련이다. 이어도의 진실성은 이어도를 진실이라고 믿는 해석학적 공동체(hermeneutical community)가 존재하는 한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들을 통해 한 시대, 한 지역 주민의 표상에서 이어도가 가지는 상징적 가치뿐만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다양한 의식의 부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Eliode, 1978: 23).

II. 이어도의 등장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동물이다. 『유토피아 이야기』(*The Story of Utopias*)의 저자, 뎀포드(L. Mumford)에 따르면 지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즉 도시나 농촌, 전쟁과 외교의 역사는 따지고 보면 인류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하다. 우리는 두 개의 세계, 다시 말해서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에서 살고 있다. 그 중 내부 세계에 해당하는 관념의 세계, 즉 ‘이돌라’(idola) 역시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돌라란 인식주체인 인간과 실재하는 대상 사이에 존재하는 물질적 환경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만 우리의 행동양식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삶의 동력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과거에는 지구가 평평하다는 ‘믿음’이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보다 더 확고부동한 진실이었고 뱃사람들의 행동을 지배했다. 그들이 육지에 눈을 고정해서 항해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Mumford, 1922: 3).

유토피아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이다. 가령 요정들의 정원, 헤스페리데스(Hesperides)는 불로장생의 황금사과가 열려있는 낙원이다. 그 곳은 천상의 세계가 아닌 지상 어딘가에 있어 결국 접근이 가능하다. 헤스페리데스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은 고대나 르네상스 시대, 미지의 세계를 향한 대항해의 자극제였고, 역사 속의 대이주나 해상 활동의 원동력이었다. 또한 유토피아 문학의 창시자인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역시 관념적 유토피아가 지리적으로 관련성을 맺는 경우를 잘 보여준다. 신세계에 대한 관심을 일찍부터 갖던 모어의 치남은 유토

피아 섬을 구체적으로 존재한다는 생각 끝에 유토피아섬을 찾아 뉴펀들랜드에 도착했으며, 모어 자신도 재정적으로 이 사업을 후원까지 했다. 심지어 스토바트(L. Stobart)는 『유토피아』의 주인공, 히슬로디는 실존인물이며, 유토피아섬은 멕시코 유카탄반도라고 주장하기도 한다(*Guardian Weekly*, June 21, 1992). 한편 잃어버린 에덴동산이 아직까지 지상 어딘가에 감추어져 있다는 신화가 유럽인들의 마음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1584년 아서 발로우(Arthur Barlowe)는 아메리카를 황금시대의 지상낙원으로 묘사하는 등 발트제뮐러(Waldseemüller)의 『세계지입문』(*Cosmographie Introductio*, 1507), 피터 마이터(Peter Maytyr)의 『신세계』(*De orbe novo*, 1511) 등에서 그려지는 아메리카는 새로운 파라다이스 신화의 원천으로서 유토피아를 찾아 떠나는 모험을 고취시키는 원천이 되었다(김영한, 1983, 78). 그런가 하면 심지어 히말라야산맥 어딘가에 있다는 티벳 사람들의 낙원, 샴발라(Shanbala)는 오늘날까지 탐험가들의 도전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는가. MIT 역사학교수 브로노프스키와 메즐리쉬는 관념적 유토피아가 지리적으로 실재하게 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Bronovski & Mazlish, 1963: 75)

어느 시대, 어느 사회든 유토피아가 존재하는 것처럼 제주어민들에게도 구전으로 내려오는 유토피아들이 있다. 그것들 역시 지금 ‘저기’(there)에 있지만 ‘여기’(here)에서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을 만들어낸 이돌라이다. 용왕이 사는 용궁이든, 옥황상제가 있는 천상이든 유토피아의 이돌라가 그들의 행동을 규정하는 한, 그것은 제주어민의 삶의 중요한 동력이다. 1900년대 초 제주에서 각종 자료를 채집한 다카하시 도루(高橋 亨)는 다음과 같이 제주주민의 유토피아 중 이어도에 대한 내용을 전해주고 있다.

이 섬은 공상 속의 섬이며 제주와 중국과의 중간쯤에 있다고 믿어지고 있다. 가는 배이건 오는 배이건 이 섬까지만 오면 우선 안심한다는 곳이다. 그래서 떠나는 배에 대해서는 이허도까지 무사하라고 비는 것이며, 또 가서 돌아오지 않는 배가 있다면 최소한 이허도까지만 돌아오면 이 재난은 면할 수 있었을 것일 것이고 슬퍼한다. 노래에, 강남가는 해남을 보라 /이어도가 반이라 한다/ 이어말난

마랑근 가라/ 마랑가면 남이나옴나/ 이어말난/ 마란근가라/ 이어하면 나 눈물이 난다(제주시 우당도서관편, 1977: 141-2).

위 인용문에 따르면 이어도는 제주도와 중국 중간 쯤에 있다는 제주어민의 유토피아이다. 물론 문자가 정착되기 이전 구전을 통해 파편적으로 잔존해 오던 내용을 정리한 까닭에 다소 애매모호하고 때로는 산만하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현실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을 것 같은 호기심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하다.

위의 내용대로라면 그들은 왜 이어도라는 세계를 꿈꾸었을까? 또 그 곳은 어디일까? 최근 연구에 의하면 우리는 낮 동안 여러 경험을 하는데 밤에 자면서 마음 속으로 이것을 잘 정리하려고 한다. 과거에 나의 여러 경험에 비추어서 오늘 낮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과 생각을 반추해 보고 그것이 의미가 없으면 버리고, 기억해 둘 필요가 있으면 우리에게 익숙한 스토리로 가공한다(주경철, 2002: 255). 따라서 다카하시의 채록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즉 여기에는 지난 특정 사건을 일정 플롯에 의해 가공한 이야기지만 어민들 삶의 원형 속에 나타나는 절실하고 원초적인 염원이 짙게 깔려 있기 때문이다. 뎀포드의 표현을 빌자면 “이돌라가 ‘밖의 세계(external world)’를 대체한 것” (Mumford, 1922: 4)으로서 유토피아는 단지 한 사건의 서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삶의 표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온 행위의 표상이다. 신화를 진실이라 믿는 집단에게 그들 신화는 곧 진실이다. 따라서 이어도와 같은 이상사회에 대한 꿈들을 진실이라 믿는 해석학적 공동체가 존재하는 한, 그 꿈들은 단순한 서사에 머물지 않는다.

그렇다면 상징의 언어로 사유되는 이어도가 이 곳 주민의 삶 속에 현재화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리는 모두 꿈을 꾸다. 꿈 속에서는 우리의 갈망, 우리의 연민, 혹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그들에게는 늘 닥칠 수 있는 해상활동 중 절체절명의 순간, 이어도까지만 가게 된다면 ‘언제든지’(everywhen) 존재하는 믿음의 상징이다.

여기서 이어도의 신화적 의식세계와 종교적 의식 세계의 공통점을 마주하게

된다. 오늘날 우리는 무병장수와 영생을 기원하며, 신에게 정성껏 그 뜻을 전달 하면 청을 들어주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과거 사람의 경우 초월적 존재에 대한 숭배는 우리와 다르다. 그들도 위기의 순간 신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개인의 구복(救福)과는 거리가 멀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그 무엇도 원하지 않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하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세상은 자신들의 역할과 능력의 범위를 넘어선 경이롭고 불가사이한 세계 그 자체였다. 세상을 신비롭게 바라보는 이러한 태도가 우리들과는 다른 과거 사람들의 종교적 심성의 본질이다(Amstrong, 2011: 26). 이런 점이 ‘언제든지’ 존재한다는 과거 제주 어민들의 유토피아 세계에 보다 가까이 다가서는 길이다.

다카하시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어도는 상상의 섬으로서 미완성의 현실태(現實態), 즉 오우토피아(outopia, no place)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이어도는 어로활동 중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뱃사람들의 단순한 환영일까? 아니면 영영 돌아오지 않는 가족을 잃은 자의 고통과 슬픔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삶의 비극적 사실과 타협하는 심리적 위안물일까? 유토피아를 글자 그대로 흔적없이 사라지는 신기루로 읽어서는 안 된다. 만일 주민들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없는 곳’, 오우토피아(no place)를 꿈꾸는 데 만족했다라면 위에서 보는 것처럼 “이여하면 나 눈물이 난다”는 안타까움과 쓰라림의 고백은 불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들도 모든 조건이 충족된 아쉬움이 없는 황금시대의 신화 예컨대, 이집트의 라(Ra)시대, 인도의 크리타 유가(Krita Yuga)시대, 중국의 3황5제의 시대와 같은 황금시대를 상상하는데 만족했을 것이다.

바다를 발의 연장으로 삼아 살아가는 어민에게 있어서 잠잠하던 파도가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듯이 달려드는 물리적 세계만이 유일한 실재가 아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 요소들을 늘 안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들은 일상생활을 넘어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고경험’(thought experience)을 체득하게 된다. 그것이 반복되면서 때로는 좌절을 맛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희망의 끈을 단단히 붙들어 매는 ‘또 다른 어떤 것’을 담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만들어지는 그들의 유토피아들은 동화 속의 용궁 이야기가 아니라 스스로 불가사이한 세계 속의 신성을 경험했던 구체적인 형태로 태어난다.

이런 점에서 이어도의 등장은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에서 진행되는 의식세계의 또 다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미토스는 로고스와는 다르다. 로고스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실행하는 합리적인 지적 활동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객관적 사실과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예컨대 생계를 위한 어로활동, 즉 배를 만들고 움직이고 고기를 잡는 행위 그 자체는 로고스이다. 그러나 로고스는 효율적이고 실용적이지만 인간 삶의 궁극적인 물음에는 답을 줄 수 없다. 그들의 고통과 슬픔 또한 누그러뜨릴 수도 없다(Sleek, 1996:50-52, 68-76). 어로활동에서 그들의 노동은 “바다의 안정된 상태와 불안정한 상태”에 직면할 때마다 자연의 경이로운 힘을 경험하게 된다(이경엽, 2004: 206). 그러므로 그들에게 해상활동은 단순한 세속적 노동에 그치지 않는다. 거기에는 의식의 엄숙함을 부여하고 온갖 의례와 금기로 생활을 규정한다. 여기서 그들은 ‘언제든지’ 존재하는 영원한 초월적 실재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초자연적인 신성에 기원하는 영등굿, 용왕굿과 같은 종교적 제의를 일상화하게 된다(하순애 105).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의 실재를 완전히 초월하는 존재를 알게 되고, 자신의 유한한 처지를 뛰어넘어 감정과 상상력을 동원하여 일종의 경외심을 갖는 미토스를 만들어낸다. 이런 점에서 이어도는 ‘에피파니’(epiphany), 즉 신성한 힘의 현현(顯現)이다.

따라서 이어도에 대한 독해방식이 달라야 한다. 물론 오늘날 미토스가 주목받을 자리를 거의 없다. 현대사회가 중시하는 것은 로고스에 바탕을 둔 물질적, 과학적 세계이다. 이는 이어도를 해석함에 있어 직관적이고 신화적인 사유방식보다는 과학적, 합리주의적 방식을 선호하는 까닭이다. 그러나 과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삶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 로고스적 사유로는 한계가 있다. 그들의 삶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관념적, 정신적 세계이다. ‘언어로의 전환’(linguistic turn)을 통해 신화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한 최근, 신화를 가장 솔직한 현장의 목소리임을 강조하는 조야는 미토스야말로 진실 되고 믿을 수 있는 언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Zoja, 1995: 4).

‘사고경험’이 유토피아의 지적 원천임을 전제할 때 이어도의 존재에 대한 이해의 시작은 바로 이 지점이어야 한다. 유토피아의 출발선은 그 반대상인 ‘아직 없음’(noch-nicht)이다. 이것은 유토피아 사상이 갖는 공통된 요소이다(F.E. Manuel

& F. Manuel, 1980: 24). 어쩌면 화산회토의 척박한 땅에 살아가는 당시 주민에게 있어서 현실은 고통이었고, 한이 서린 땅이었다. 더욱이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라는 제한된 상황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그들 고립무원의 해상활동과 온갖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물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김은석, 1987: 351).

그러나 고통과 절망이 그들을 마냥 체념과 탄식에만 머물게 하지는 않는다. 절박한 상황일수록 선협적 갈망 또한 절실하게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즉 현실의 결핍과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뛰어 넘을 수 있는 꿈의 모태가 된다. 꿈을 꾸다는 것은 현실의 불완전성을 깨닫고 ‘아직 없음’(noch-nicht) 속에서 또 다른 세계를 추구한다는 의미이다. 사실 모두가 현실에 만족한다면 누가 그 상황을 바꾸려 하겠는가. 잘 알다시피 플라톤의 경우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의해 사회 기반이 근본적으로 무너지자 임시변통의 수단이나 개혁으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의 경우 잘못 설계된 국가라는 배가 풍랑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항해술 이상의 것이 필요했다. 배가 침몰할 위험에 있다면 그 배를 조선소로 끌고 가서 배를 만든 원리 자체를 검토하기 위해 『국가론』을 세상에 선보인 것이다. 이처럼 기존 현실의 결핍과 부족에서 우리의 상상력은 충족과 희망의 날줄과 씨줄로 촘촘해진 유토피아 세계들을 창조해 낸다. 이 때 그것은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 더 구체화된 현장의 목소리이다.

III. 이어도의 토포스

제주어민들의 유토피아는 그들이 본능적으로 체험하는 강력한 신성함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신성함은 그들이 직관적으로 감지하고 있던 실재에 구체적인 형태를 부여하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든 유기체는 그 스스로 욕구에 따라 <잠재성>(potentiality)에서 <실재성>(actuality)으로 전환된다고 했듯이(Harris, 1996: 111) 그들 유토피아는 불가사이한 세계에서 초월을 갈망하며 자신의 조건을 벗어난 신비스런 세계를 그려 넣음으로써 토포스를 갖추었다

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이런 점에서 이어도라는 의미 있는 공간 설정은 불가피했다는 하순애의 설명은 타당하다(하순애, 2012: 198). 그렇다면 이어도는 어떤 곳에,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는가? 다카하시가 채집한 내용은 이 점에서 중요하다. 그곳은 비록 애매하지만 제주도 남쪽 해상 가운데 있다는 주민들의 설명을 들려주고 있다.

이어도 하라/이어도 하라/이어 이어 이어도 하라/ 이어 소리에 나 눈물이 난다/
이어 말은 하지 말고 가거라/ 강남을 가는 海南을 보라/ 이어도가 반이엿해라

이어도의 토포스는 ‘강남을 가는 해남’ 어느 곳이다. 하이데거는 언어를 ‘존재의 집’이라고 한다(language is the house of all that is).⁴ 인간과 사물 사이에는 언어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언어의 집을 통해 사물을 인식한다. 인식은 사물에 대한 언어적 표상, 언어적 의미 과정이다. 따라서 이어도에 대한 인식은 사물 자체가 아니라 사물에 대한 언어적 표상의 과정이다.

여기서 김기혁의 이어도의 어원 분석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어도는 형태적으로 ‘이어’+도(島,) 즉 ‘이어’라는 섬이다. 그렇다면 ‘이어’는 무슨 의미일까? 김기혁은 그것을 ‘여’로 축약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여’는 물위에 안 보이는 물속에 숨어있는 바위, 즉 암초를 가리킨다(김기혁, 2006: 199) 제주민요에 따르면 “물도 싸민 여울이 나고/ 물도 들영 나얏일것가(물도 써면 여가 나고/물도 들어 내 앓을 것인가)”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물이 써면, 즉 물이 빠지면 ‘여’가 드러나고, ‘여’를 중심으로 미역이나 전복 등의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곳이다(김기혁, 2006: 203).

이를 토대로 제주도 남쪽 해상의 구체적인 지점에 주목하는 즉, 이어도의 외연적 의미를 강조하는 연구들은 북위 32도 07분, 동경 125도 10부상의 수중 암초인 ‘여’를 이어도로 파악한다. 그 과정을 보면 1901년 영국 해군 Socotra호가 이 곳에 좌초하면서 Socotra Rock으로 표기했고, 그 후 한국해양소년단 제주연

⁴ 언어란 단지 타인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수단이거나 개인의 내면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존재가 머물고 존재가 세계 및 사물과 만나는 곳이다. 따라서 언어는 존재의 근원이자 바탕이 된다.

맹이 주축이 된 탐사결과 이어도의 존재가 특정지점을 지시하는 명칭으로 회자되기 시작했다.⁵ 송성대에 따르면 일찍부터 제주주민들은 이 수중암초인 ‘여’를 ‘이어’로 파악하고 피항가능처로 인식함으로써 결국은 양가성을 갖는 이상향으로서의 이어도향 전설이 나타나게 된 것으로 설명한다. 그의 표현을 들어보자

간출암인 이어도는 1년의 대부분을 물밑에 숨어 해수면에 파랑을 일으키다가 간헐적으로 물위에 모습을 드러낸다. 춘분과 추분 무렵에는 확실하게 드러나고 그 외에도 -이어도의 평균파고는 3-6m가 되나 태풍 때는 16m 내외가 된다- 파도가 심할 때는 물위에 모습을 드러낸다(송성대, 2010: 415-6).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해양과학기지인 이어도가 초월에 대한 보편적 갈망을 드러내는 에우토피아 이어도와는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이어도의 외연적 의미와 내포적 의미의 상호관련성에서 문제를 이해하는 송성대의 주장은 이어도의 존재론에 비추어 볼 때 주목을 끌 수밖에 없다. 유토피아가 사람들에게 만질 수 없는 오우토피아 세계를 뛰어넘어 ‘다른 어떤 것’을 상정한다면 “해수면에 파랑을 일으키다가 간헐적으로 물위에 모습을” 드러내는 북위 32도 07분의 간출암은 가시적 세계에서 초월적 세계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만드는 물적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고대인들에게 돌은 단순한 물질 그 자체가 아니다. 돌은 힘과 영속성, 견고함을 담은 신성한 것이었고, 인간의 나약함과는 상반되는 확고한 존재방식을 표현한다. 고대인들의 거석숭배는 이 때문이다.

우리들에게 신성하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과거 사람들에게 신성한 경험은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물질적 세계보다 더 실재적이다(Armstrong, 2005: 20). 특히 바다의 독특한 조수 간만의 차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켜 왔다. 밀물과 썰물로 인해 바다의 섬이 커졌다 작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사라졌다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경이로움(취진량, 2008: 202) 앞에서라면 누가 사물에 신성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는가. 이 때문에 이어도의 외연적 의미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보면 바다 한가운데서 뜻

5 여기에 대해서는 주강현의 글을 참조할 것(주강현, 2012).

하지 않은 위기의 순간, 자신의 눈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수중 암초는 신성함의 드러남(聖顯), 즉 ‘하이에로파니(hierophany)’이다. 이 때 이 숨겨진 힘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따라서 사고경험의 전달과정에서 이 수중암초는 더 유력한 실체로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이 학술적으로 섬이나 아니냐, 또한 그 명칭이 이어도, 파랑도냐, 아니면 그것이 어느 영토 또는 영해에 속하느냐 하는 등의 논란은 전적으로 지금 우리들의 관심일 뿐이다. 자연을 불가사이한 세계로 바라보는 과거 제주 어민들의 세계관에 비추어 볼 때 남쪽 해상에 존재한다는 이어도는 절체절명의 순간,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토포스 만이 실재일 따름이다. 반복되는 사고경험을 통해 이 토포스에 대한 믿음이 더해지면서 그들의 행동을 규정하는 한, 이 이돌라는 견고하고 실질적인 그들 삶의 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 결국 신비로움과 두려움,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하는 토포스, 이어도는 바로 초월성의 본질 그 자체인 이돌라이다.

한 가지 의문은 그렇다면 토포스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을 주민이 왜 이어도의 위치에 대해 구체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까 라는 점이다. 이어도의 토포스는 제주도 근해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의 당시 지리관과 세계관의 결과물이다. 오늘날처럼 해도가 만들어지기 전 유토피아의 지리적 위치는 주로 시적, 은유적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콜럼버스가 마르크폴로의 여행기를 들고 중국을 향해 여행을 시작하고, 아메리카에 도착한 후 아시아 대륙의 일부를 발견했다고 믿을 만큼 세계의 크기도, 위치도 애매모호했던 시기, 이성적, 과학적 언어가 아닌 시적, 은유적 표현 방식이라고 해서 진실이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 과거를 기록할 때 사건의 의미에 더 비중을 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과거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적, 은유적 표현이 때로는 가장 자연스럽고 솔직한 표현 방식일 수가 있다(Harris, 1996: 71). ‘강남을 가는 해남’ 어디엔가 있다는 다소 막연함이 오히려 이어도의 신비감을 배가시킬 수 있다. 그리고 주민들의 관심은 이제 이어도가 제주도 남쪽 해상에 실재하는 세계와 일치시킴으로써 확신에 찬 자신들의 소망을 그려낼 수 있었던 것이다.

Ⅳ. 에우토피아, 이어도

유토피아란 그 세계를 꿈꾸는 사람들 안에서만 구체적으로 존재한다. 오늘날 아이티와 도미니카에 해당하는 히스파니올라의 타이노족이 금을 화폐교환 매체가 아니라 어린이들의 장난감으로 취급한다는 소식이 유럽에 전해졌을 때 토마스 모어에게 와서 그 곳은 유토피아 섬의 경제제도로 태어나고 있다. 이처럼 보이지 않지만 더욱 강력한 실재에 대한 믿음은 티벳고원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 ‘상그리 라’(Shangri-La)에 대한 그리움처럼 유토피아 장르의 한결같은 주제이다. ‘영원철학’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믿음은 과학적 근대가 도래하기 이전의 모든 사회의 미토스에 작용하고 있다. 과거 사람들은 초월을 갈망하면서 열악한 인간 조건을 벗어나 저편으로 갈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정신적 여행은 육체적 여정이 아니라 영혼을 통해 느끼는 황홀경과 연결된다. 그래서 과거 유토피아 신화에서 섬과 같은 토포스는 그토록 성스러웠던 것이다.

과거 유토피아 신화들 역시 지리상의 구체적인 토포스를 찾아 나서게 된 것이 이 때문이다. 그 단적인 예가 에덴동산 신화이다. 그것은 언제나 원초적 낙원의 상징으로서 유럽인에게는 강한 향수와 동경의 대상이었다. 많은 낙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은 에덴동산이 아직 지상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낳았고, 이 확신은 구체적으로 신대륙 발견과 개척에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김영한, 1994: 11). 처음부터 자신에게는 낙원을 발견할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콜럼버스가 세 번째 항해에서 발견한 에덴동산이 바로 베네수엘라이다(Cowan, 2011: 408-9). 20세기 중반 이후 이어도의 실재를 찾기 위한 노력들도 마찬가지이다. 제주도 남쪽 해상 어딘가에 있다는 누군가의 전언이 믿음이 되고 이것이 이어도라는 실재의 토포스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난파-발견-전파로 이어지는 고전적 유토피아의 형식에서 볼 수 있듯이 이어도는 ‘엑스 니힐로’(ex nihilo), 즉 무에서 유가 나온 것이 아니다. 문자가 정착되기 이전의 세계에서 상징은 그 상징의 보이지 않는 지시대상과 분리되지 않는다. 상징과 그 지시 대상간의 관련성은 일종의 동일성을 성립시킴으로써 그 대상의 이면에 보이지 않는 실재를 그 곳에 만든다. 여기에 존재하는 물 속에

잠겨있는 수중암초는 승배의 대상은 아니지만, 그 안에 숨겨진 힘을 믿기 때문에 비로소 신비로운 초월적 힘의 상징이 될 수 있다.

유토피아의 파토스(pathos)는 보다 나은 세계,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다. (Tuveson, 1964: 1-7) 제주도의 경우 특히 해상활동에서 주민들의 초월적(seinstranszendent) 경험은 그들 내적 세계의 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 주민들의 현실을 대체할 또 다른 피안의 세계를 향한 마음은 이미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록 그 세계가 막연하지만 간절한 마음은 집단적 문화가치와 행동양식에 정향성을 제공하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선다.

1) 좋은 술을 만들면/ 높은 곳에 앉아/ 나도 갈 섬이 어디냐

2) 나비야 그 날개는 누구의 날개인가/두 날개를 나에게 다오/ 마음가고 뜻가는 섬에/ 날아가고 싶구나(김은석, 1987: 350 재인용)

위의 노래들은 초월을 갈망하면서 열악한 자신의 조건을 벗어나 저편으로 가고자 하는 소망의 표현들이다. 그래서 미지의 섬은 자신들의 고달픈 삶을 대체해 줄 수 있는 낙원이다. 그들을 구속하는 조건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초월에 대한 보편적 갈망이 잘 드러나 있다. 물론 주민들의 강한 향수와 동경의 대상인 ‘나도 갈 섬’, ‘마음가고 뜻 가는 섬’은 비록 이성적으로는 증명할 길이 없다. 그러나 존재하는 것은 사실일 뿐이라는 실증주의적 입장에서 벗어나 존재하는 것은 해석이라는 주장을 따른다면(Nietzsche, 1988: 302) 주민들이 그리워하는 또 다른 섬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지각이라기보다는 주체의 지향성이 담긴 지각이고, 즉자존재(卽自存在)가 아니라 대자존재(對自存在)이다 (Talmon, 1989: 352-3). 그렇다면 위 민요에 등장하는 ‘나도 갈 섬’, ‘마음 가고 뜻 가는 섬’은 천상의 세계가 아닌 지상낙원 에우토피아이다. 이어도는 사실 제주 사람들의 심성에 자리하고 있는 향이 서로 다른 유토피아 가운데 하나이다. 그 향기로움은 고통이 소멸된 영원한 극락세계, 전복과 해산물이 풍부한 고갈도지 않는 풍요로운 자원의 세계, 신선들이 거주하는 무릉도원 등으로 묘사된다(김은석, 1987:

348-9).

따라서 유토피아 사상사적 측면에서 이어도는 ‘오우토피아, 이어도’와 ‘현실세계의 이어도’의 변증법적 관계를 통해 ‘황홀한 불가사이’(*mystreium tremendum terribile et fascinans*)로 나타난 에우토피아 이다(Otto, 1923: 5-41). 이런 점에서 이어도는 ‘실(失) 낙원’(Paradise Lost)이 아닌 현실에 존재하는 ‘실(實)낙원’(Paradise Here)이다. 사실 유토피아가 환희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유토피아이며, 더 이상 주목을 끌지도 못한다. 따라서 이어도의 에우토피아적 요소를 이성의 시대에 비추어 열등한 사유방식으로 치부한다면 잘못이다. 갑작스런 폭풍우가 몰아칠 때 자연의 경이로운 힘을 경험한 사람들은 두려움을 넘어 이어도의 에우토피아적 요소 때문에 이어도는 어느 곳엔가 존재하는 그리고 그 낙원을 찾고 싶은 간절함이 녹아들게 된다. 이 때 사람들은 기억 속의 장소, 개인이 동경하는 장소를 구체화하는 토포스를 찾아 나서게 된다.

V. 결론

이 연구는 이어도의 존재론적 의미에 대한 해석이다. 즉 외연적 의미와 내포적 의미의 고정된 이분법적 범주에 따라 이어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상반되면서도 서로 깊은 관련성이 있는 이 복합적인 이어도를 사회사상사적 측면에서 살펴본 것이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개인이든 집단이든 바람직한 사회, 행복한 삶을 제시해 오고 있다. 유토피아 연구는 토마스 모어, 프란시스 베이컨과 같은 개인의 경우이든 안달루시아의 농민들이나 천년왕국의 신봉자들의 경우이든 관계없이 모두 그들 시대의 지적풍토를 반영한다는 시각에서 설명한다. 이어도에 대한 이 글의 논의 또한 그것이 개인의 꿈이든 집단의 꿈이든 시대정신의 양상이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과거 제주어민들에게 이어도를 비롯한 에우토피아는 어떤 의미였을까? 로고스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없지만 미토스는 또 다른

세계를 상징함으로써 불가사이한 세계에 심경을 다스리도록 한다. 마치 세속의 왕의 토지가 농민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처럼, 용왕의 바다는 어민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신성한 영역이었으며, 따라서 바다는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여기서 스스로 신성을 겪는 구체적인 ‘사고경험’이 태어난다. 따라서 그 명칭이 이어도든 이허도든, 아니면 파랑도이든 아무런 관계가 없다. 중요한 것은 이어도로 상징되는 그들 유토피아가 무에서 유가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문자가 정착되기 이전의 세계에서 상징은 그 상징의 보이지 않는 지시대상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상징과 그 지시 대상간의 관련성은 일종의 동일성을 성립시킴으로써 보이지 않는 실재를 그 자리에 머물게 한다. 여기서 제주도 남쪽 해상의 섬의 존재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블로흐의 지적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가능성을 기대하고, 희망하며, 그리고 그것을 지향하는 것”(Bloch, 1977: 5)이 인간의식의 기본 형태이다. 이어도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 한번 일어난 사건, 한 개인에게 국한된 사건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시 늘 일어나고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하다. 다만 네비게이션에 의해 지구상의 어떤 곳도 미지의 세계로 남지 않게 된 오늘날 에우토피아, 이어도는 더 이상 제주주민의 이돌라로 존재할 수는 없다. 미지의 세계로 표상되는 신비로운 세계가 사람으로부터 신성함에 동참할 수 없게 된다면 그 세계는 멀어지고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어도 관련 민요나 신화를 제주사회에서 찾기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이어도의 존재론적 의미를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유토피아가 인간 존재에 내재한 영원성을 지향하는 표현방식임을 전제할 때 이어도와 관련한 초월적 경험이 늘 그들 경험의 일부를 차지하는 제주어민으로서는 일회성의 사건을 뛰어넘은 보편적인 사건이 된다(Walsh, 1962: 26). 제주의 삶의 현장에서 배태된 이상사회를 실재 믿고 살아가는 과거집단과 그렇지 않은 오늘날의 집단 사이에는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다. 이어도의 존재론 해석에 있어서도 이어도를 신비스런 희망의 섬으로 이해하는 사람과 ‘다른 무엇’(something else, 공상, 허구)으로 설명하려는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유토피아 신화는 불가사이한 세계를 경외감으로 바라보는 이들에게만

구체적 형태를 부여한다. 그만큼 그들에게 이어도는 쓸모없는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단순히 가공된 이야기 거리가 아니다. 그들 스스로 하여금 제주도 남쪽 해상에 존재한다는 섬을 내려놓지 않음으로써 그들 가슴 속에 신성한 경험을 부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어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자칫 놓치지 쉬운 우발적인 사건이나 의미를 뛰어넘어 한 사회의 시대정신에 다가가는 실재의 핵심을 목격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이어도에 대한 우리의 해석은 그것이 굳어버린 화석이 아니라 숨을 쉬는 유기체라는 일관된 문제의식에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Ontology Meaning of leodo

Eun Suk Kim

This paper is the study of the ontology of leodo. Previous studies have been made in terms of two meanings: extensional and intentional. On the one hand, leodo has been understood to refer Socotra Rock away from southeast of Marado, Jeju. On the other hand, leodo has been studied as an *eutopia*, good place.

First of all, I see leodo as jeju fishermen's dreams of a better world. The visualization of a better world is in part a subjective process. What will be seen as better depends, to some extent, upon the individual. At the same time, however, it is a reflection of existing circumstances, since visions can only be said to be 'better' by reference to some pre-existing standard or condition.

Second, be convinced about the reality of leodo. Nowhere may be an imaginary island, but leodo is real news. The world of ideas, beliefs is real whilst it is acted upon. If the story of leodo throws any light upon the story of Jeju fishermen it is this: leodo has been pitifully weak and inadequate.

In sum, We can never reach the points of the compass: and so no doubt we shall never live in utopia: but without the magnetic needle we should not be able to travel intelligently at all. It is absurd to dispose of leodo by saying that it exists only on paper.

Key Words: leodo, Jeju utopia,

참고문헌

- Amstrong, Karen, 『신화의 역사』 이다희 역, 서울: 문학동네, 2005.
- Bloch, Ernst, *Das Prinzip Hoffnung I*, Suhrkamp, Frankfurt/main, 1977.
- Bronovski, J & Mazlish, B., *The Western Intellectual Tradition*, London: A Perican Book, 1963.
- Cowan, J.L., "Francis Bacon's New Atlantis and the Alterity of the New World," *literature and Theology*, Vol. 25, No.4, 2011: 407-421.
- Eliado, Mircea, *A History of Religious Ideas: From the Stone Age to the Eleusinian Mysteries*, Vol 1,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 Elliot, R.C., *The Shape of Utopia*,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University, 1970.
- Harris, Richard, *Paradise: A Cultural Guide*, Singapore: Times Academy, 1996.
- Mihalopoulou, A.P., "Mapping Utopias: A Voyage to Placelessness," *Law and Critique*, Vol.12, 2001: 135-157.
- Nietzsche, F., 『권력에의 의지』 강남수 역, 서울: 청하, 1989.
- Otto, Rudolf, *The Idea of the Holy, An inquiry into the nonrational factor in the idea of the divine and its relation to the rational*, tr., Oxford: John Harvey, 1923.
- Sloek, Joannes, *Devotional Language*, tr., Henrik Mossin, Walter de Gruyter: Berlin and New York, 1996.
- Talmon, Y., "Millenarianism,"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X, 1989.
- Tuveson, E.L. *Millennium and Utopia*, New york: Haper Torchbooks, 1964.
- Walsh, Chad, *From Utopia To Nightmare*, Westport. Connect. Geoffrey Bles, 1962.
- Zoja, Luigi, *Growth and Guilt: Psychology and the Limits of Development*, tr., Henry Martin, London: Roulledge, 1995.
- 曲金良, 『중국의 해양문화와 사회』 서울: 민속원, 2008.
- 고 은, 『濟州島: 그 全體像의 發見』 서울: 일지사, 1986.
- 김기혁, "이어도의 형태와 의미," 『한국의 민속과 문화』, 제11집, 2006: 197-211.
- 김영한, "유토피아주의", 『서양의 지적운동』 김영한, 임지현 편, 지식산업사, 1994.
- 김은석, "이어도: 이상과 절망의 세계," 『한국학논집』, 제12집, 1987: 345-355.
- 이경엽, "서남해의 갯제와 용왕신앙," 『한국민속학』, Vol.39, 2004: 205-243.
- 송성대, "한·중간 이어도해 영유권 분쟁에 관한 지리학적 고찰," 『대한지리학회지』, 제45권, 2010: 414-429.

- 제주시우당도서관 편, 『제주도』의 옛기록: 1878-1940』 제주, 1977.
- 주강현, 『유토피아의 탄생』 2012, 서울: 돌베개.
- 주경철, 『테이레시아스의 역사』 서울: 산처럼, 2002.
- 하순애, “이어도 정체성의 철학적 탐색,” 『이어도 주변해역의 해양, 법적, 인문학적 기초연구 결과보고서 I』 이어도연구회위탁사업최종결과보고서, 2012.
- _____, “제주도의 토속신앙,” 『탐라이야기』,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편, 2012: 93-117.

이어도 지명의 유래와 그 의의

송성대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I. 서론

‘땅의 이름’ 즉 지명은 땅이 표현하는, 혹은 토지의 여러 양태에 대해 인간에 의해 붙여진 ‘곳’의 이름이다. 인간이 땅에 그 이름을 붙이는 것은 생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지점과 저 지점을 ‘식별하기 위하여’ 붙여진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인간이 지상에서 생활하면서 그 지형을 이용하는데 서로 구분하고 식별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지명을 붙일 필요가 없고 아무리 멀리 떨어진 지점이라도 이곳이 생활상 식별이 필요할 때에는 지명을 붙여서 실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한 기호는 언어로서 붙여진다. 다시 말해서 자음과 모음으로 분절될 수 있는 음성을 가지고 그 음성의 몇 개를 연결시켜 그것을 기호로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명은 기호로서 언어의 기호기도 하다.

지명은 영어로는 ‘toponym(혹은 toponymy)’, ‘geographical name’, 혹은 ‘place name’, ‘hydrographic feature name’으로 사용되며 이들은 저마다 정의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전자 셋은 육상의 지명을, 후자 하나는 해중 지명을 말한다.

지명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경우에는 일반명사와 대비되는 바로서의 ‘geographical name’을 사용하며, 토포님(toponym)은 자연물 또는 지형을 의미하며, ‘place name’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혹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장소의 지명을 의미하며, 수중(海·江·湖)의 지물 이름은 ‘hydrographic feature name’이라 한다.

지명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기호적 표상체계와 환경인지의 결과물이다. 지명은 인간에 의해 명명되는 것으로 ‘장소’에 대한 의미 있는 지시체이

다. 그렇지만 단지 지명을 단순히 지시체로서 이해한다면, 그 때 지명은 의미 없는 기표(記表)에 불과할 것이다. 그런데 지명에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기에 기표만 아니라 기의(記意) 또한 갖는다. 특히 지명 자체가 실어 나르고 있는 의미들에 천착한다면 그때 지명은 무수하게 많은 지리적 의미들을 엮어내고 있는 의미의 집합체가 된다.¹ 지명에 있어서의 지리적 의미란 바로 그렇게 이름이 붙게 된 이유(因以名之)와 정체성을 제시하는 것이며 그것은 또한 지명유래를 설명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지명경관에 대한 지리학적 접근은 그것의 형태(form)에 더하여 의미(meaning) 차원을 주요 관심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한 것은, 문화인류학자인 기어츠(Clifford Geertz)에 의하면 다양한 의미층이 존재하는 문화텍스트에 대한 접근은 법칙을 찾기 위한 실험적 과학이 아닌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증층기술(thick description)에 속한다. 증층기술은 단순 이해(understanding)를 위한 현상기술(thin description) 뛰어넘어 그것을 ‘설명(explanation)’할 수 있어야만 하는 해석인 것이다.²

지명으로 당시의 사고(思考), 의식 구조, 전통과 습관, 문화와 경제에 이르기까지를 알 수 있다. 근년에는 지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외국에서는 지명학(地名學)이 지리학의 새 분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지명은 국가간 영유권 분쟁 등 영토 관리 측면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주기도 하므로, 지리조사는 지명을 유일한 정보로 하여 그 탐색에 전념하였으며, 지리학의 소박한 초기 단계에서는 지명 연구의 비중이 높아서 지명은 지리학의 고향 같은 것으로 생각했던 과거도 있었다.³

지명 연구는 지리학, 역사학, 언어학, 민속학 등에서 이루어지지만 이른바 지명학(地名學, toponymy, toponomy, Ortsnamenkunde)이 따로 존재하기도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지리학계에서 지명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아왔으나, 오히려 국어학·언어학·역사학·사회학 등의 분야에서 더 깊은 연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지리학 분야의 지명연구는 지명에 나타난 지역의 역사

1 장의선(2004), “지리와 내용요소로서 ‘지명’의 의미 탐색과 교수-학습의 실제,” 『사회과교육』, 제43권 2호, p.228.

2 권선정(2004), “지명의 사회적 구성-과거 懷德縣의 ‘宋村’을 사례로-,” 『地理學研究』, 제38권 2호, p.168.

3 姜吉夫 편저(1985), 『郷土의 地名』, 정음사, p.15.

와 문화, 경관, 정체성, 그리고 지명변화의 과정과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권력관계와 갈등, 주민 삶의 변화 등을 밝히는 데 주력해 왔다.⁴

지명이란 과연 어떤 것이며 그것은 어떻게 발생하여 어떻게 이름지어지고 어떻게 변화되어 나아가느냐. 그 본질은 어떤 것이고, 그것은 학적으로 연구하는 성격과 의의는 어떤 것이며 학적 소속은 어떻게 귀속시키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 연구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서설적 작업들이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명연구의 여러 가지 논문들은 그 방법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일으키는 예가 없지 않다는 것이다.

오늘날 이어도가 국내외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전설 속의 이어도가 실제로 실재하는 섬인지 아니면 관념 속 상상의 섬으로 이름뿐인 섬인지 하는 논쟁, 국제적으로는 한·중간에 벌어지는 관할권 분쟁이다. 이 논쟁과 분쟁의 중심에 있는 것이 이어도라는 지명이다. 지명 위상 여하에 따라 이어도 해역에 대한 국제법적, 문화적 권원은 달라지게 된다. 이어도라는 해역 혹은 암초에 어느 나라가 먼저 인지하여 이름을 가졌느냐는 하는 것은 영토선점권의 행사와 관련된 것이며, 또한 국제적인 지명 표준화 과정에서도 해당 국가가 우선권을 갖기 때문에 관할권 주장에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 한국은 중국의 지명 연구와 정책 실현이 우선 영토와 관련시켜 진행되는 것에 비해 매우 소극적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자.

중국 정부는 지명관리를 위해 방대한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나라 건설을 위해 지명관리 목표를 국가지명표준화와 국내외지명 역사규범화(譯寫規範化)로 정했다. 지명 명명의 기본원칙은 (1) 나라통일, 주권과 영토 완전(完整)에 유리해야 하며 (2) 현지 인문지리 또는 자연지리 특징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3) 규범에 맞는 한자 혹은 소수민족문자를 사용해야 하며; (4) 외국인명, 지명으로 국내지명을 명명하지 못한다.⁵

4 주성재(2011), “유엔의 지명논의와 지리학적 지명연구에의 시사점,” 『대한지리학회지』 제6권 제4호(통권 145호), p.444.

5 田景(2002), “중국의 현대 지명표준화 小考,” 『地名과 地名研究』,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p.51.

1982년 개혁개방 정책 실시 직후 <중국외교부>와 1977년 설립된 <중국지명위원회>는 각 성급 지명관리기관에 지명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1979년 중국은 처음으로 전국적인 지명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중국정부는 국경지역 지명의 명명과 개명에 대해 상당히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개명하지 않아도 될 명칭은 함부로 고치지 않았으며 개명 또는 신명(新名)이 필요한 경우, 첫째, 나라의 영토주권고수에 유리해야 하며, 둘째, 외교사업에 유리해야 하며, 셋째, 지방의 민정(民政) 사업, 민족 사업, 대외교류사업에 유리해야 하며, 넷째, 필요한 절차를 엄격히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명사업의 장엄성과 엄숙성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일찍 1965년 11월 <국무원>은 역내 자연지리실체의 명명, 개명권한에 대해 상세히 규정한 바 있다.⁶

한국은 1996년 <해양수산부> 출범과 함께 <국제수로기구(IHO)>의 권고사항인 해양지명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2년 7월 1일 <국가지명위원회>가 출현하였다.

한국 <국가지명위원회>의 설립 목적 및 취지를 보면 “<국가지명위원회>는 지명 및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 및 해양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설치되었으며,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우리나라 해양지명의 표준화를 위하여 해양지명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해양지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결정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를 통하여 해양지명을 공식화한다. 또한 국제적인 교류·협력을 위해서 국제수로기구 산하 국제해저지명소위원회 관보(Gazetteer)에 등재하는 등 대외적인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다.⁷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해양지명’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수로업무법 제2조 13호에 의하면 “해양지명이라 함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양(ocean, sea)·해협(strait)·만(gulf, bay)·포(inlet) 및 수로(channel) 등의 해상지명(Sea Surface Names)과 초(礁reef)·퇴(堆bank)·해저협곡(submarine canyon)·해저분지(basin)

⁶ 상계서, p.53.

⁷ <http://www.khoa.go.kr>

· 해저산(seamount) · 해저산맥(ocean range) · 해령(海嶺ocean ridge) 및 해구(trench) 등의 해저지명(Undersea Features Names)을 말한다”라고 되어있어 만조시에도 물위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바위(육지개념)에 대해서는 해양지명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되어 있다.⁸

〈국제수로기구(IHO)〉 산하 해저지명위원회(SCUFN)의 해저지명의 국제표준화 원칙에는

지명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개인 및 관계기관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두 개의 명칭이 동일한 지형에 적용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오래 사용된 명칭이 채택되어야 한다.⁹

국제간에 지명의 갈등이 있을 때 ‘오래 사용된 명칭이 표준 명칭으로 채택되어야 한다’는 〈국제수로기구〉의 약속은 곧 채택된 명칭에 따라 대상의 귀속도 따라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먼저 명명된 명칭을 갖는 주체에게 대상물에 대한 선점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으로 보아 이어도의 지명에 대한 연구는 곧 이어도에 대한 존재론적 그리고 인식론적 연구, 부연해서 제주인의 세계관과 제주인의 지리관을 알 수 있는 터전이 됨을 알 수 있다.

II. ‘이어도’ 인지와 이름 붙이기

사상(事象)에 대한 인지는 소통을 위해 기호만들기 즉, 이름짓기로 이어진다. 탐라인들의 이어도에 대한 인지의 시점을 명증할 수는 없으나 역사지리적 내지 자

8 임영태·김동수·최윤수(2004), “해양지명의 표준화와 해양지명의 제정 및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지적학회학술대회논문집』, 2004. 12. p.125.

9 성효현, “해저지명의 국제표준화와 한국의 해저지명,” 『지리학과 언어학에서 본 지명』, 2009년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및 한국지명학회공동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한국지명학회, 2009. 11. p.111.

연지리적으로 개연성 있는 추론은 가능하다.

제주인들이 부르는 뗏돌노래나 방애노래는 다음의 내용으로 불리워진다.

이어도 허라 이어도 허라(이어도이어라 이어도이어라)
이어 이어 이어도 허라(이어 이어 이어도이어라)
이어 허맨 나 눈물 난다(이어하면 나 눈물난다)
이어 말은 마랑근 가라(이어란 말은 하지말고 가라)
강남을 가난 해남을 보라(강남을 가면 해남을 보라)
이어도가 반이엿 해라(이어도가 반삐이라고 하더라)

여기의 ‘이어도’는 ‘이여도’로도 표기되고 그 내용 또한 부르는 사람이나 지방에 따라 다양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동일하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민요－후렴구가 아닌－가사에 이미 중국의 ‘강남’이니 ‘해남’이니 하는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제주인들로서는 경험하지 않고 그냥 나올 수 없는 내용이다. 부연해서 제주 사람들은 이미 전시대에 중국의 강남을 오갔음을 의미한다.

고대에 즈음하여 한반도에 성립했던 나라들이 동아시아바다를 누비며 이루어 놓았던 항로들 중의 하나로서 중국과 제주도를 잇는, 제주해민들에 의한 「이어도항로」(필자조어, 탐라와 중국의 Ningbo 寧波를 잇는 항로)가 있다. 이어도는 바로 이어도항로의 중간에 존재하는 간출암 형태로 존재하는 암초이다. ‘간출암(干出岩)’¹⁰은 해중 암초의 정체(正體)를 보다 명확히 해주는 용어로 그 뜻은 밀물 때의 수위가 오를 때는 물에 잠기고, 수위가 내려가면 다시 섬의 형태로 나타나는 두 얼굴의 수중 암초를 말한다.

한라산(서귀포시)의 남해안 대포리(옛 중문면 소재) 및 대평리(지금의 안덕면 소재)의 옛 이름은 각기 ‘큰개’와 ‘당개’였는데 전자는 원나라 시대의 중국과 연결되는 포구라 알려졌고 후자는 당나라 시대의 중국과 연결되는 포구여서 그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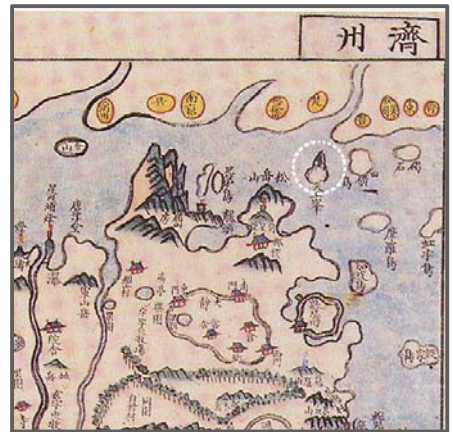
¹⁰ 위키백과사전 : 간출암은 해수면이 가장 높을 때인 만조시(약최고고저면상) 바닷물에 잠기는 여, 서(嶼), 암(岩) 등을 말한다.

지명을 갖게 되었다는 설이 있다.

항해에 있어서 절대거리(絶對距離)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육안항해를 할 수 있는 시인거리(視認距離)이지만, 제주도의 자연조건에서 맑은날 육안 시인거리는 약 170km(이어도와 마라도의 절대거리 149km)에 이른다고 한다.¹¹ 이러한 육안 시인거리라면 제주 본섬에서 <숨은여>인 이어도를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반대로 중국 갔던 배가 귀향할 때 이어도에 이르면 한라산이 보이고, 한라산이 보이면 그리운 가족들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목적지에 다 왔다는 안도의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이다. 공로(空路)인 하늘길이 일반화되기 이전 뱃길만 주로 이용했던 1970년대까지 출륙했다가 귀향하는 많은 제주인들은 제주해협상에서 한라산 정상부가 나타나 보이면 늘 이와 똑같은 경험을 하였다.

2천년전 고대에 일어난 해상왕국 탐라국은 고려에 병합되면서 해양국가로서의 명목은 사라지기 시작했다. 대륙세력인 명나라의 속국이 되어버린 조선 시대에 이르러서는 명의 정책에 따라 공도정책과 해금정책¹²을 행하는 등하여 완전히 제주섬 사람들은 바다를 잊어버리게 된다.

조선 시대의 사람들이 이어도에 대한 인지는 몇 곳의 기록으로 알 수 있는데, 먼저 <영남대학교박물관> 소장 「韓國의 옛地圖」에 송악산 서남쪽에 돌섬(石島) 모양의 봉우리가 ‘천왕봉’이라는 지명과 함께 그려져 있는데 주목되는 내용이다. 필자의 가설에 공감한 오상학은 이에 대해 천왕봉이 이어도일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그 증거로는 천왕봉이 이어도 해역에 속해 있으면서 산방산 앞의 형제도처럼 암석



자료 : 영남대학교박물관(1998), 『韓國의 옛地圖』, 영남대학교출판부. p.139.

11 <한라일보>입력날짜 : 2003. 04.09. 13:42:52 [섬의 역사 탐라의 역사]물류기지 역할...고려왕조 편입후 쇠퇴

14. 탐라는 동아시아중해의 핵심이었다

(1) 고대의 해상교역로

12 '출륙금지법'은 인조 7년(1629)부터 순조 25년(1825)에 이르기까지 약 200년 동안 계속되었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바다에 떠 있는 감옥으로 화하여 도민은 폐쇄된 생활을 영위하여야만 하였다.

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여타의 섬과 다르다는 것이다.¹³ 좀더 들여다보면 천왕봉은 첨봉(尖峰)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반해 여타의 크고 작은 섬들은 모두 평면적으로 그리고 있음을 보아 필자 역시 이에 동의한다. 오상학은 이어서 고지도에 표현된 이어도 해역의 인식과 더불어 문헌 자료에서도 이어도 해역에 대한 인식을 확인해 볼 수 있다면서 최부의 『표해록』(1488년, 성종 19)과 이형상의 기록을 예시한다.

제주 서남쪽에 백해(白海)가 있다는 말도 흥미롭다.

물결은 웅긋음치고 바다 빛은 희다. 예전에 정의 현감 채윤혜(蔡允惠)가 내게 했던 말이 생각난다. “제주 노인들이 말하기를, 맑게 갠 날 한라산 꼭대기에 오르면 멀리 서남쪽으로 아득히 떨어지 바다 밖에 백사장 같은 것이 보입니다”(최부, 『표해록』 제1권 무신년, 윤정월 7일)……

“내가 표류하여서 백해로 들어가 서북풍을 만나 남하하였을 때 산 모양 같은 것이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였다.(최부, 『표해록』, 제3권 무신년, 3월 29일)……

서쪽 하늘 닿는 끝을 바라보니 백색 사정(沙汀 : 물가 모래밭)같은 것이 있는데, 곧 『표해록』에 백해라고 칭한 곳이다.(이형상, 『한라산등정기』)

이상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의 이어도 해역은 ‘白海’라는 바다로 불리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도 서남쪽으로 보이는 백해라는 바다는 지금의 이어도 해역과 일치하기 때문이다.¹⁴

최부의 『표해록』에 기록인 ‘산 모양 같은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였다’는 내용은 오늘날에 기상이나 해황(수위)에 따라 이어도가 섬으로 그리고 때로는 암초로 보이는 것을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다. 최부는 바로 이어도항로를 따라 표류해간 것이다.

이상으로 보아 전시대에 ‘이어도’는 ‘이어도’ 외에 ‘천왕봉’, ‘백해’라 불리웠음을 알 수 있다.

¹³ 오상학(2010), “한·중·일 고지도에 표현된 이어도 해역 인식.” 『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 위탁연구사업 최종결정보고서(II)』 국토해양부국립해양조사원, p.368.

¹⁴ 상계서, p.369

이어도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이어도에 대해 서양적 이름이 붙여지면서부터이다. 이어도에 외국인들이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것은 대항해시대 이후 서구의 열강들이 앞다투어 동아시아 바다를 누비고 다니면서 부터이다. 그 열강들 중 영국은 단연 돋보였다. 영국은 청나라를 반식민지로 만들면서 동아시아 바다를 헤집고 다녔다. 그 과정에 제주도 주변바다도 예외가 아니었다.

〈헌종실록〉에 의하면 1840년(헌종 6년) 영국 함선 두 척이 가파도에 함포사격하고 40여명이 상륙해 흑우(黑牛)를 약탈해 갔다. 그리고 1841년에는 〈사마랑호〉의 지휘자로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해안선을 측량했던 영국의 해군장교 에드워드 벨처(1799~1877)는 1845년 5월부터 8월까지 제주도 주변 바다도 살살이 훑고 다녔다. 벨처는 제주엔 6월(음력) 우도에 기지를 두고 20여일간 이 일대를 측정해 ‘한국군도(Korean archipirago)’라는 책자를 남겼는데, 한국 역사학계에서는 ‘조선남해안도’로 통용된다.¹⁵

1868년(고종 5)년에는 영국 상선 Costaraca호가 제주도 남서쪽 바다를 항해하다가 미확인 암초를 발견하였다고 본국 정부에 타전한 바 있다. 이후 인도, 호주, 중국 등을 왕래하며 화물 및 우편물을 나르고 있던 영국 상선 Socotra호가 1900년 6월 5일 밤 9시 40분 경 동경 125도 11분, 북위 32도 8분 해역에서 암초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 상황을 영국 해군본부에 다시 보고하였다. 이 보고를 받은 영국 해군본부는 1901년 해군측량선인 워터 위치(Water Witch)호를 파견하여 이를 확인했는데, 당시 암초의 수심을 5.5m로 측량하고 Socotra Rock이라 명명하면서 이어도가 세계에 알려지게 된다.

소코트라락이 발견된 소식을 들은 일본은 곧 학술조사를 실시하여 수로지 기입하고 1938년에 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였다. 당시 아시아 일대를 지배하고 있던 일본은 나가사끼-고토(5島)-제주도-화조산도(花鳥山島)-상해를 연결하는 해저전선을 부설하고자 하였는데, 제주도에서 화조산도간의 거리가 450km가 넘어 중간에 중계기지의 필요성을 느꼈던 이 섬에 직경 15m, 해면 위 높이 35m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건설하여 중계기지를 설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차

¹⁵ <http://blog.daum.net/jhhospital/460>

대전의 발발하면서 보류되었다.¹⁶ 일본의 해저전선 설치 계획서에 고토와 화조 산도 사이의 이어도를 ‘소코트라락’으로도, ‘이어도’로도 표기하지 않고 그냥 ‘제주도’라한 것은 그것이 수면 위의 섬으로 존재하지 않은 수중 암초였기 때문일 것이다. 당시 일본은 지금의 이어도를 그냥 ‘물결이는곳(하로우수, 波浪ス)’으로 칭하고 있었다.

“1951년 여름, <한국산악회>의 홍종인(洪鍾仁:언론인)씨가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이 주동이 되어 해군의 협조를 얻어 ‘일본이 발행한 해도’를 가지고 파랑도를 찾아 나섰다.”¹⁷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서의 ‘일본이 발행한 해도’에는 모 방송국과 인터뷰에서 홍종인씨는 영어로 (이어도 자리에) ‘current breaks(물결이는곳)’라 표기되어 있었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2012년에 재확인된 내용이지만 1984년 <kbs제주방송국>과 함께 (이어도를) 탐사한 <제주대학교 해양학과> 교수였던 노홍길 교수는 당시 <제주대학 해양학과>가 갖고 있는 일본 해도상의 ‘하로우수(波浪ス)’를 보고 찾아 나섰다고 필자에게 분명히 말한 바 있다.¹⁸ 그런데 애매한 것은 이어도를 ‘하로우수’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이다. 노홍길 교수나 홍종인씨에 의하면 일본 해도에 ‘하로우수’ 혹은 ‘current breaks’라고 표기되어 있다고 하지만, 1984년 kbs탐사팀에 참가한 당시 kbs지방부차장이 다음의 글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인가...어느 해도(海圖)엔가 파랑도가 있는 곳에 소코트라 락 대신 파도가 깨진다는 ‘Breaks’로 표기되면서 소코트라 락은 파랑도로, 파랑도를 다시 이어도로 연상 해석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kbs취재팀 10명과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학술조사단은 수산진흥원 소속 1,200톤급 부산851호를 타고 3월 16일 오후 4시 제주항을 출발 파랑도탐사에 나섰다¹⁹.....

¹⁶ 김병렬(2007), 『이어도를 아십니까』, 홍일문화, pp.6~7.

¹⁷ <http://m.breaknews.com>

¹⁸ 1984년 이어도탐사 회고잡담회. 2012년 6월1일, 이어도연구회

¹⁹ 扈天雄(1984), “이어도는 환상의 섬인가,” 『신문과방송』, 제160호, p.74.

‘파랑을 일으키는 처소’라는 뜻의 ‘하로우수’의 영어가 ‘current breaks’인 것이다. 앞에서 말한 홍종인씨의 언급에 빠져 있지만 영어 ‘current breaks’와 함께 병기되거나, 아니면 일본어로만 ‘ハロウス’라고 표기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후 하로우수(波浪島)는 ‘파랑도(波浪島)’라 명명되어지기 때문이다. 혹자는 “1984년 제주대와 kbs가 소크트라 암초에 대한 공동탐사를 벌이면서 이를 『파랑도』라 불렀고 주변수역이 얇고 조류가 강해서 다른수역보다 파도가 강한점을 감안해 붙인 이름이다.”²⁰라 하여 마치 kbs와 제주대 탐사팀이 최초로 파랑도라 부른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일제시대까지 ‘하로우수’라고 불리던 지금의 이어도가 파랑도(波浪島)라 불리게 된 것은 해방후 최남선에 의해서 처음이다. 이 과정은 전 국회의원과 환경부장관을 지낸 김종위의 글에 소상하게 나타나는데 그 내용은 아래의 글로 정리된다.

해방된 조국!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까지 아무 누구도 우리의 영토가 어디 서부터 어디까지인가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북한의 남침으로 6·25를 겪게 된 정부는 1951년 1·4후퇴와 더불어 부산에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대 법제처장으로 제헌헌법을 기초하고 나서 이제는 전시 연합대학 일에 몰두하고 있던 현민(玄民) 유진오(兪鎭午) 박사에게 법무부 법무국장으로 있는 홍진기(洪璉基)씨가 미국의 대일(對日)강화조약(샌프란시스코 조약: 평화조약이라고도 함) 초안이 실린 일본신문을 들고 찾아 왔다. 그 초안에는 귀속재산 처리에 대한 것 외에 한국의 영토에 대한 조항도 들어 있었다. 영토조항에는 우리나라의 부속도서(附屬島嶼)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만이 예시되어 있고 분쟁의 여지가 아직도 남아 있는 독도가 빠져 있었다는 것이다. 현민은 혼자서 고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당시 총리인 장면(張勉)박사를 찾아가서 문제의 초안을 보여주고 정부 의견을 미측(美側)에 알리자는 데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즉시 현민은 역사에 밝은 육당(六堂) 최남선(崔南善)을 찾아 갔다.

육당은 이 자리에서 독도에 대한 자세한 내력을 설명하면서 몇 붙여 우리나라 목포와 일본의 나가사키(長崎), 중국의 상해를 연결하는 삼각형의 중심 쯤 되는

²⁰ http://www.chejuguide.com/guide/read.cgi?board=jeju_event&nnew=2&y_number=13
『이어도』는 제주도민 마음속에 자리잡은 상상의섬

바다에 ‘파랑도’라는 섬이 있는데 이 기회에 우리의 영토로 확실히 해놓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정부에서는 육당과 현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독도와 파랑도도 우리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공식문서를 작성하여 미국정부에 제출하기에 이른다. 여기서 ‘파랑도’라는 명칭이 처음 나오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1951년 7월 10일자로 한반도와 함께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 파랑도(이어도)’를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시켜 달라는(한국의 영토에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의 공식문서가 양유찬 주미한국대사에 의해 미국정부(텔레스국무장관)에 건네어 졌지만 귀속재산에 관한 우리의 의견은 받아드려졌으나 영토문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당시 이러한 요구를 받은 미국의 텔레스장관은 독도와 파랑도가 어디에 있는 섬이냐며 주미한국대사에게 문자 동행한 한국 대표는 부끄럽게도 ‘동해에 있는 작은 섬으로 대체로 울릉도 가까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답했다. 그리고 독도와 다케시마는 다른 섬이라고도 하자 그러면 한·일 양국이 다룰필요 없이 다케시마는 일본령으로, 독도는 한국령으로 하자는 결론을 내려버리기도 하였다. 제주도민이라면 마라도 서남방 수평선 너머에 있는 섬으로 어린 아이들도 알고 있는 이어도를 독도와 같이 울릉도 옆에 있을 것이라고 대답하는 촌극이 벌어진 것이다.²¹

이후 현민은 독도를 조약에 명기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하면서도 미국이 일본 점령군 최고사령부가 당시에 <맥아더선(線)>을 그을 때에 이미 독도를 맥아더선(線)밖에 두었기 때문에(즉 일본어선이 독도까지 오지 못하게 한 조치) 독도를 울릉도에 부속된 작은 암초섬으로 생각하고 그 조약에 명기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을 내 놓았다.

미국에 건의할 정부문서를 작성할 즈음인 1951년 여름, 현민과 절친했던 <한국산악회>의 홍종인(洪鍾仁: 언론인)씨가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이 주동이 되어 해군의 협조를 얻어 일본이 발행한 해도를 가지고 파랑도를 찾아 나선바 있다.²² 영토 관리상에 있어서 한국은 지금이나 예나 늘 뒷북을 치고는 했지만 전

²¹ 김병렬(1007), 전개서, 홍일문화, p.3.

²² <http://m.breaknews.com>

제주 해군기지 반대하는 사람들 국민인가?

김중위 칼럼니스트 | 2012.04.27 21:11

설과 신화, 그리고 민요 속에 나오는 이어도가 영토 문제와 관련하여 파랑도로 호칭되면서 실제 확인에 관심이 쏠아지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독도와 이어도를 한국의 영토로 삼는 데에 실패하고 그 해 9월에 해군과 언론인 홍종인씨에 의한 파랑도의 위치 확인 시도 또한 실패하자 정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된다. 그 결과 1951년에 <한국산악회>와 해군이 공동으로 파랑도를 발견하여 ‘대한민국 영토 파랑도’²³라고 새긴 동판을 내려 놓았고 그 이듬해인 1952년 1월 18일에는 대한민국 국무원 고시 제14호에 의해 독도와 이어도가 우리 영토에 포함되도록 하는 평화선(平和線, Peace Line, Syngman Rhee line)을 세계에 공표하게 된다.

중국이 파랑도를 처음 인지해서 자신들의 고유한 지명을 사용한 때는 언제일까? 중국이 파랑도를 인지하여 사회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그 중요성을 인식했다면 동시에 지명을 이미 붙였을 것이다.

중국측은 자신들의 관할권에 대한 문화적 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어도의 중국명인 ‘쑤엔자오蘇岩礁’가 이미 고대 때부터 쓰였다라면서, 그 증거를 그들의 신화지리서인 「山海經」을 내세운다. 중국의 꿈수가 전형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사례이다.

중국은 이어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는 근거를 BC.475-B.C.221년 경부터 쑤엔자오가 중국역사에 나타나는 바, 즉 《山海經》에 “東海之外……, 大荒之中, 有山名曰猗天蘇山”(동해 밖, 대황 가운데 산이 있으니, 이름하여 의천소산이라 한다)이라는 문구에서 찾는다. 그들은 그 문구의 끝 ‘蘇山’이 바로 ‘蘇岩’과 같으므로 이어도를 자오(礁)에 쑤엔(蘇岩)을 붙여 쑤엔자오라 이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름하기 시작했다’는 ‘시작’ 시점은 애매하게 남겨두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조성식 교수는 중국이 산해경 신화를 이어도 전설에 맞붙을 놓기 위하여 그 내용을 자의적으로 가감하여 급조하였다고 한다.

조성식은 구체적으로 중국측의 지명 날조 왜곡을 지적한다. 그에 의하면 산해경의 원문에는 ‘……猗天蘇山’이 아니라 ‘……猗天蘇門’이라 되어 있음에도 ‘蘇門’

²³ 동판의 내용에 ‘파랑도’가 아닌 ‘이어도’라 하는 경우도 있으나 당시까지는 이어도라 불리지 않았음.

의 ‘門’을 ‘山’이라 견강부회적으로 해석하고나서 이 ‘山’을 다시 ‘岩’이라고 지칭하여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높아서 아름다운 하늘’이라는 뜻인 ‘猗天’을 해석하기를 ‘하늘 가 아득한 곳’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그 의도가 너무 웅색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쑨옌자오란 명칭 부여에는 정당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왜곡 날조된 무국적 지명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대중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산해경(山海經)에도 신주(神州)⁴)와 동해봉래(東海蓬萊) 사이에 바다 밑 선산(仙山)이 있다는 기록이 있다.”라며 ‘선산(仙山)’이 소암초임을 주장하려 한다. 중국의 신화 왜곡은 여기서 극에 달한다.

《산해경》에 ‘東海蓬萊’란 문구는 없다. 다만 ‘蓬萊山 在海中’이라고만 되어 있고 이 내용은 해내동경이 아닌 해내북경에 기록되어 있다. ‘해내’란 중국의 영역권 내를 의미하며, ‘북경’이란 지리적으로 ‘발해’와 관련된다. 해내북경에 달려 있는 주(註)에는 분명히 ‘선인이 살고 있고(上有仙人)’ ‘발해 가운데 있다(在渤海中也)’고 표현하고 있다. 《史記》봉선서(封禪書)에도 “봉래 방장 영주의 삼신산은 발해 가운데 있다.…… 여러 신선과 불사약이 있다. 그곳의 물건이나 금수는 모두 희며, 황금과 백은으로 궁궐을 지었다(蓬萊 方丈 瀛州 此三神山者 在渤海中 蓋嘗有至者 諸仙人及不死藥在焉其物禽獸盡白 而黃金白銀爲宮闕)”라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渤海’는 해내경에서 보이는 北海(東海之內 北海之隅 有國名曰朝鮮天毒)와 동일한 것으로 봉래산이 설령 동해에 있다하더라도 그 동해는 오늘날의 동지나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는 황해를 일컫는 바다 이름이었다(<http://www.bc8937.pe.ne.kr>). 봉래산과 기천소문을 쑨옌자오(이어도)와 일치시키려는 중국의 왜곡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다음에 이어도에 대한 중국측 지명의 명명은 보다 구체적이 되는데, 중국 측 주장에 의하면 중국의 이어도 인지는 1880년-1890년 간이며, 한국은 이보다 100년이 늦은 1984년이라고 하고 있다.

이어도에 대한 인지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측이 부인할 수 없으면서도 언급하기 꺼끄러워하는 객관적 사실은 이어도가 1900년 영국 상선 Socotra 호에 의해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사실 여러 가지 근거들에 의할 때 중국 측의 이어도에 대

한 최초의 인지는 1963년 약진호(躍進號) 침몰사건 이후이며, 그 또한 국제 해도에 표기된 Socotra Rock을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근거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내세우는 “강소성(江蘇省) 외해(外海)의 암석, 해초(海礁)”라는 의미인 소위 ‘蘇岩礁’의 명칭이다²⁴. 강소성 외해에는 무수히 많은 암초가 있는데 왜 유독 이어도를 “蘇岩(礁)”이라고 했을까? 영국에서 대륙붕의 개념이 처음 나왔던 1887년과 비슷한 시기인 1880년에서 1890년 사이 이홍장(李鴻章)의 <북양수사(北洋水師)>²⁵는 어떻게 대륙붕의 개념을 알아서 ‘강소성 대륙이 외해에까지 연장된 대륙붕 위의 암석과 해초’라는 의미인 소위 “蘇岩(礁)”이라는 명칭을 붙였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은 하나 밖에 없다.

조성식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한다. 중국은 독자적으로 이어도를 인지한 바가 없다는 사실이다. 파랑도의 중국명인 “蘇岩(礁)는 Socotra의 음역인 “소격특랍 蘇格特拉”의 첫 글자 ‘蘇’와 Rock(拉)의 의역인 ‘岩’의 결합인 것이다.²⁶

무엇보다도 『亞洲週刊』등의 매체를 시작으로 중국의 각 방면에서 주장하는 <북양수사>의 해도에 소위 “蘇岩(礁)”이 “명확하게 표기되어있다”는 해도를 아직까지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즉 없는 해도가 20세기 이전에는 중국이 이어도를 인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국제적으로 각국이 대륙붕에 크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1945년 이후에도 중국은 바다에 별 관심을 갖지 못하였고 「대륙붕에 관한 협약」을 채택한 1958년 제1차 해양법회의에도 참여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1958년 8월부터 1960년 12월까지 근해 해역에 대한 종합조사를 벌였을 뿐이다. 매체 기사문에서 “20세기 50년대, 중국의 동해 함대가 쑤엔자오에 대해 현지 조사를 벌였다”라고 한 언급은 바로 이 종합조사를 말하는 듯한데, 그 시점에도 소위 이어도를 인지한 근거는

²⁴ http://blog.sina.com.cn/s/blog_4a983745010091qf.html

蘇岩礁의 BLOG 蘇岩即江蘇外海之岩石 海礁之意

²⁵ 북양군의 기원은 태평천국의 난이후 부각된 리홍장의 안후이 성 군대이다.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하고 북양대신에 오른 리홍장은 그의 군대를 현대화하고 함대를 제조하여 이른바 북양군과 북양함대로 키웠고 이것이 청일 전쟁을 거치면서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로 성장했다.

²⁶ 참고로 Coca-Cola의 중국어 음역은 ‘可口可樂’이 된다. 樂은 ‘樂’의 신자체이다.

없다. 있다면 그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중국의 이어도, 즉 소코트라에 대한 인지는 1963년 약진호 침몰 사건²⁷ 이후일 수밖에 없다.

중국의 이어도에 대한 자국의 지명 사용과 관련하여 조성식 교수는 중국 측 “약진호” 침몰관련 기사 또는 논문을 필자는 약 20여 편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²⁸ 여기서 특기할 사항은 2000년대 이후의 주장, 즉 소위 “蘇岩礁”해역이 중국의 전통해역으로서 중국 해도에도 이미 표기되어 있다는 주장과는 달리, 郭廷富, 「“躍進號”沈沒調查記」(『航海』 1981년 4기) 등의 자료에서 보이는 소위 “蘇岩礁”는 알려지지 않은 지역의 신비한 곳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이다.

“이 일대는 일본해로 진입하는 요해 통로로서 더 전진을 하면 유명한 오오쓰미 해협으로 미국 제7함대가 경계하는 해역이었다. 아울러 남한의 제주도와는 150km도 되지 않았으며, 블라디보스톡 기지에서 남하하는 소련 함대 또한 반드시 지나가는 곳이었다.”

“이러한 중대한 정치 임무를 어깨에 지고 우리 팀은 조국에서 멀리 떨어진 이 낯선 대양 위에 온 것이다.” 郭廷富, 上同

우리 심해 탐사 설비가 아직 매우 낙후하였던 60년대 초기, 저 광활한 심해 지역에서 암초를 하나 찾는다는 것은 바다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이처럼 조국을 멀리 떠나 심해 작업을 진행하는 것 또한 우리나라 해군 건군 이

²⁷ 1963년 중국 최초로 자체 설계 제조한 만오천톤급 증기선 원양화물선 “약진”호는 1만톤에 가까운 옥수수, 광물, 그리고 기타 잡화를 싣고서 4월 30일 청도항에서 일본 모지(門司)항과 나고야(名古屋)항을 향해 첫 항해를 하는 도중 해도의 미비로 인해 쓰촨자오 해역에서 좌초 침몰되고 40명의 선원이 전부 조난을 당했다.

²⁸ <http://www.ieodo.kr/>
수집된 자료를 중 직접 약진호 침몰 사고 해역에서 수색에 참여했던 금주함(金州艦)의 정치위원 꾸어팅푸(郭廷富)의 “약진호”침몰조사기(“躍進號”沈沒調查記), (『航海』 1981년 4기)와 저우언라이 총리를 수행했던 양청무(楊成武) 부총장의 수기(「我國第一艘萬噸輪沉沒調查始末」, 『僑園』 1994년 02期, 「揭開“躍進號”沉船之謎」, 『人民論壇』, 1994년 08期)는 비교적 초기의 자료로서 보다 많은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특기할 사항은 2000년대 이후의 주장, 즉 소위 “蘇岩礁”해역이 중국의 전통해역으로서 중국 해도에도 이미 표기되어 있다는 주장과는 달리, 이 자료에서 보이는 소위 “蘇岩礁”는 알려지지 않은 지역의 신비한 곳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이다.

래 최초의 것이기도 했다.²⁹

이어서 조성식 교수는

「海軍海洋測繪部隊東海蘇岩礁測量填補空白」, 『海洋科學』, 1993년 1월 제1기
본문 중, “당시 중국의 해양 측량 과학기술 수준의 한계로 쑨옌자오 해역은 장기간 동안 해도 제작을 위한 측량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항해 금지구역이 되어 중국의 해양개발에 심각한 장애가 되었다”는 언급에서 당시 그들에게는 소위 “蘇岩礁”가 표기된 해도가 없었음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 이외에 또 어떠한 증거가 필요할까? 저우언라이 총리의 “조속히 우리의 해도를 만들어야 하겠소!”(我們要盡快測出自己的海圖啊!)라는 말과 “당시 중국의 해양 측회(측량과 해도 제작) 수준의 한계로 인해 총리의 바람은 줄곧 실현될 수 없었고, 30년 동안 쑨옌자오 10해리 범위 내에는 선박의 왕래가 금지되고 쑨옌자오 해역은 동해의 “버뮤다삼각지”가 되어 경험이 많은 항해가들도 접근을 꺼리게 되었다“(『航海』1992年 第6期)는 언급 역시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당시 중국에 이어도 해역에 대한 해도가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상으로 보아 중국이 이어도를 인지한 것은 1963년이지만 이 파랑도에 스스로 지명을 붙여 자료를 낸 것은 아무리 빨라도 1987년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2007년 8월 22일자 <연합신문>은

후피자오와 야자오는 중국 해군 항보부(航保部)가 1963년 출판한 ‘황해·동해(동중국해)’ 해도(200만분의1)에 처음 나타난 이후 국가해양국 제2해양연구소와 상하이(上海)해양지질조사국이 각각 1987년과 1994년에 출판한 ‘동해 해저지형도’ 등에 ‘이어도’와 함께 표시됐다.³⁰

²⁹ <http://www.ieodo.kr/>

³⁰ 연합뉴스 2007.08.22 07:00이돈관 don@yna.co.kr

중국 해군이 1963년 출판한 <황해 및 동해>(1:200만), 1977년 출판한 <칭다오(靑島)·상하이 및 부산·모지(門司) 해도>(1:100만), 국가해양국 제2해양연구소가 1987년 출판한 <동해지형도>(1:100만), 상하이해양지질조사국이 출판한 <동해해저지형도> 등의 자료에 이어도와 함께 표기된 야자오



라고 하면서 지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야자오(鴨礁)의 바로 위의 ‘蘇岩礁’가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이어도인 것이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언제부터 파랑도, 즉 소코트라를 ‘이어도’라 공식화했는가? 즉, 파랑도 혹은 소코트라가 제주도민에게 회자되어온 전설 속의 이어도에 다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언제인가?

1951년부터 1983년까지 이어도의 호칭은 최남선이 ‘파랑도’라 칭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여 왔다. 전술한 바와 같이 최남선이 이어도를 파랑도라 칭한 것은 일본의 정보에 친숙했던 그가 일본인들이 사용했던 ‘하로우스(波浪ス)’에서 ‘스’ 대신 ‘島’를 넣어 ‘波浪島’라 부르면서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1984년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kbs와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탐>으로 구성된 탐사반이 파랑도를 확인하고 이것이 소코트라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알아내기 위하여 탐사를 했다. 3월의 탐사에서는 위치 확인에 실패를 했으나 5월의 탐사에서는 소코트라룩을 확인하고 이를 ‘파랑도’라고 밝혔다.

근대 이후 전설 속의 이어도라는 지명이 근대 이후 불리어 왔던 파랑도와 일치한다고 주장한 역사적 사건은 kbs와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 탐사반>이 탐사를 행했던 1984년 3월과 5월 사이에 이루어졌던 <한국해양소년단 제주연맹>의 1984년 4월 탐사에서 일어났다.

1984년 4월 6~9일에 걸쳐서 <한국해양소년단 제주연맹>(이어도탐사부대장 장순호)은 탐사대원 8명, <한국일보>기자 2명, 여진호 선원 3명이며 민간단체로서 처음 이어도 탐사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 파랑도라는 암초가 제주해민들이 불려왔던 이어도임을 만천하에 공표하게 된다. 당시의 상황을 <한국일보>(1984년 4월 11일자 1면, 11면)는 ‘전설의 섬 「이어도」, 수증확인성공’이라는

(鴨礁)·후피자오(虎皮礁)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하로 기사화하고 있다.

〈한국해양소년단 제주연맹〉탐사팀이 파랑초를 전설의 섬 이어도라고 확정한 것은 그들이 제주문화에 지식을 풍부히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최남선이 만악 제주민의 전설이나 신화 등 제주문화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면 그 역시 이어도라 불렀을 것이다.

〈한국해양소년단 제주연맹〉탐사팀의 부대장였던 장순호씨는 이어도 탐사 목적과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탐사)준비는 1982년부터 ‘이어도’섬이 어딘가에 있다는데 찾아보자는 뜻을 함께하여 해양전문가 및 각계 지인들을 찾아 모임을 갖게 되었으며 이미 차곡차곡 준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한국해양소년단 제주연맹〉의 중점 사업으로 정하여 본부 연맹에 의사 타진하고 협력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 격려의 답신을 받았다.

우리는 연맹장 고 최웅길 박사와 임원들을 비롯하여 〈제주대학〉 해양학 전문교수들과 해양연구에 경험이 있는 분들과 정보교환 및 서적 그리고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탐독 분석했다. 특히, 1953년 오산에서 출발 오끼나와로 가던 군 수송기가 갑자기 지도에 없는 섬을 발견하고 그 지점을 표시한 후 돌아오는 길에는 보이지 않았다고 한 이야기 등을 수집하여 탐사를 준비하였다.³¹

〈한국해양소년단 제주연맹〉탐사팀의 이어도 재발견은 탐라 천년의 해상왕국 시절을 일깨우는 계기되었고 이후 파랑도 대신 그 이름이 인구에 회자되기 시작

³¹ 1984년 이어도탐사 회고담담회. 2012년 6월1일, 이어도연구회, p.66.

한다.

1987년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은 파랑도를 ‘이어도’로 고쳤으며, <한국해양항만청>이 ‘이어도’라는 이름을 써붙인 항해 부표를 설치했다. 2001년 1월 22일 <한국국립지리원>과 <중앙지명위원회>가 ‘이어도’라는 이름을 확정했다.

미 지리정보국 사이트는 ‘소코트라 록’의 다른 이름으로 이어도, 파랑도, 소코트라 락 등을 한글과 영문으로 덧붙여냈으며, 중국 표기인 쑤옌자오, 일본 표기인 소간쇼 등도 열거해놓고 있다.

Ⅲ. ‘여(礮)’의 데자뷰로서 ‘이어도’

지명으로서 ‘이어도’에 대한 지명어학적(地名語學的)연구는 전무하다. 필자는 이어도에 대한 언어학적 이론을 알아보기 위해 제주방언 연구에 활발한 오창명 박사의 소고를 보았다. 그 소고에 관심을 가진 것은 그 주제가 “지명으로 본 이어도”로, 언어학자로는 최초로 이어도라는 지명에 대해 언어학적 접근을 한 글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기에 이어도에 대한 언어학적 언급은 어디에도 없고, 결론마저 빈칸으로 남기고 있었다. 다만, 그의 글에서 발췌할 만한 내용이 있었다면 다음 것이었다.

1984년 제주대학교가 이곳을 탐사한 뒤, 이 암초를 파랑도라 명명하고 이를 전설상의 이어도와 결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 암초가 실제 전설상의 이어도와 동일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육지에서 떨어진 외양의 암석초는 화산도의 일부이며, 해변보다 낮으면서도 바람이 불 때 그 부근의 파도로 알 수 있는 것을 파랑초(波浪礁)라 한다.³²……

우선 뒷글에서 ‘바람이 불 때 그 부근의 파도로 알 수 있는 것을 파랑초라 한

³² 오창명(2011), “지명으로 본 이어도,” 『제주의 유토피아 이어도를 만나다』, 제주문화예술재단. p.24, 35.

다'라고 하여 파랑초가 보통명사로 쓰인 양하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지식임을 밝혀둔다. 파랑초는 엄연히 고유명사로 쓰였을 뿐이다.

2012년 7월 20일 모 학술모임의 오찬 자리에서 필자는 한번 만나길 기대하던 오창명 박사를 만나게 되었고 왜 “지명으로본 이어도”라는 논고에 언어학적인 해석이나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의 대답은 간단했다. “‘이어도’라는 말은 민요사설의 후렴구일뿐 지명이 아니기 때문에 언어학적으로 연구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다. 즉, 오창명 박사의 지론은 ‘이어도’가 지명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어서 필자는 “그러면, 민요사설의 〈강남을 가면 해남을 보라/이어도가 반이엿 흥다〉할 때의 이어도가 지명이 아니라 ‘이어도 사나’와 같은 후렴구라는 말이야?”라고 반문을 하자 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세 번째, 거듭되는 질문이기는하나 “‘이어도’를 지명이라 여기는 학자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는 그들은 소설을 쓰고 있다고 했다. 오 박사는 이어도가 지명이 되려면, 마라도의 옛이름이 ‘마래섬’, 가파도의 옛이름이 ‘더바섬’이었듯이 고대에 만들어진 민요나 전설 등에서 이어도가 이를테면 ‘이어섬’이라 표현된 경우가 있어야만 하는데 그런 예가 없다는 것이다. 제주에서는 전통적으로 ‘~도(島)’가 아니라 ‘~섬’이라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오창명의 이어도가 옛 민요들에서 이어섬이라 표현되고 있지 않기에 이것이 지명이 아니라는 주장은 얼핏 설득력 있을 것 같기는 하나 너무 속단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에 이르러 ‘소섬’이 우도로, ‘마래섬’이 마라도로, ‘더바섬’이 가파도로 되어가듯이 문헌 기록화되는 과정에 ‘이어섬’ 또는 ‘여섬’이라는 것이 ‘이어도’로 전화되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이 역시 오창명 박사에 의하면 또다른 소설을 쓴다는 평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와 관련된 자료들이 실제로 나타난다.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어도란 이름 자체에 이미 물 속의 암초라는 명확한 의미가 숨어 있다. 이어도는 우리말인 ‘여섬’에서 비롯되었는데, ‘여’가 ‘이어’로 길게 발음되고 섬은 한자어 ‘도’로 바뀌면서 이어도가 된 것이다.”³³ ‘이어’는

33 <http://q8imcs.egloos.com/3048031> <http://blog.daum.net/qpemfh/5707009>

‘여’의 늘임말이라는 것이다.

각종 국어사전에도 ‘이어도’는 지명이라 하고 있다.

<http://krdic.naver.com>(네이버 국어사전)

이어도 離於島[발음: 이 : 어도]

〈지명〉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마라도로부터 남서쪽으로 149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수중 암초. 2003년 6월에 이어도 종합 해양 과학 기지가 설치되었다. ‘파랑도’(波浪島)라고도 한다. 면적은 수심 50m를 기준으로 약 2km².

‘이어’도인가 ‘이여’도인가, ‘여도’인가 하는 문제는 언어문법의 문제가 아니고 표현상의 문제인 것 같다. 혹자는 ‘이여도’는 상상의 섬이고, ‘이어도’는 실재의 섬이라 대비하여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표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어도’로 통일된 바 있고 다만 지명어학적으로 보았을 때 ‘이어’와 ‘여’와의 관계가 설명되어져야 할 것이다.

‘영차’와 ‘이영(영)차’의 관계에서 영차가 이영(영)차의 모음축약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동작의 완급에 따라 영차의 늘임말로서 ‘이영(영)차’가 되었는지는 표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것이 원형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어도와 여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어(도)는 여(도)의 늘임말로 표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분명한 것은 ‘여(도)’가 ‘이어(도)’ 혹은 ‘이여(도)’로 변화했다라고 한다면, 그 과정은 한국어 발음 및 조음의 법칙에 따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는 두 가지 주목할 만한 현상이 관찰된다. 첫째, ‘여’ ‘이어’ 혹은 ‘이여’로 늘임말로 변이된 것은 ‘모음축약’ 혹은 ‘모음동화’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러한 변화는 발음의 편이성과 경제성의 법칙에 역행하는 것이다. 둘째, 더 중요한 것으로 ‘여(도)’라는 지명이 ‘이어(도)’로 변화하면서 보통명사가 고유명사로 변이되고 그 결과 단어의 상징적 위상에도 변화가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은 ‘이어도’라는 명명의 발생 과정이 음운론적인(phonological)

‘이어도’의 語源 ‘여섬’은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 사이언스타임즈, 이어도의 유래 중에서 -

것이었다기 보다는 이 말이 속한 문화의 의식 혹은 무의식적인 의미 변동 혹은 어떤 사회적 계기들이 표상화되어간 표현론적인(representational) 과정이었음을 가정하게 한다.

‘지명은 그렇게 명명된 까닭이 있으며, 그 이름들은 명명 대상의 실체를 잘 나타내고 있다’라는 의미의 ‘因以名之’라는 옛구절은 지역 이해에 있어 언어적 방법으로서의 지명 분석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이름이 붙어 있는 이상, 그렇게 이름이 붙게 된 이유가 그 실체의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 경험에 의한 환경지각의 결과로서 지명은 객체로서의 장소가 가지는 특성과 명명 주체로서의 인간의 의식이 결합되어 형성된다. 따라서 지명 속에는 객체로서의 장소가 가지는 특성인 장소성과 지각주체의 의지, 감정, 세계관 등이 함축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명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주어진 자연 환경과 그에 대한 인간의 사유와 행위가 융합된 ‘의미의 집합체’이다. 넓은 개념으로서의 지명은 지리적 실체에 붙여진 고유명사를 뜻하는 것이다.

보통명사는 단순 기호일 수 있으나 고유명사는 그에 대한 인간의 사유와 행위가 융합된 ‘의미의 집합체’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보통명사인 ‘여’가 ‘이어도’로 되면서 고유명사가 되었다는 것이다. ‘여’가 고유화하려면 글자 그대로 표현상(기표)에 고유한 특성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여>여섬>이어도라는 형태적 변화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다.

우리에 의해 오늘날 이야기되는 ‘이어도’는 동지나해의 망망대해 한가운데에 위치하는 바위이다. 망망대해 중의 바위, 이러한 위치적 특성만으로 그 바위는 단순한 바위, 단순한 여가 아니고 신비를 간직한 섬(島), 즉 ‘여섬’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해저지명으로서의 여, 암, 초 등은 당연히 해안가에 위치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³⁴ 대양 중의 여섬은 연안 여의 데자뷰이기도 했다.

한강 하구의 강물 속 모래 둔덕인 ‘나들섬’ 역시 그런 위치적 특성 때문에 섬

34 임영태·김동수·최윤수(2004), 전제서. p.127.

이라 불리게 되었다. 나들섬 위치는 강화도 최북단에서 북서쪽, 교동도에서는 북동쪽 한강하구, 북녘의 예성강과 남녘의 한강이 합류하는 곳이다. 나들섬은 물밑에 잠겨있기는 해도 평균수심이 5미터밖에 되지 않아 가물거나 썰물 때면 작은 모래언덕이 나타난다. 통일로 가는 또 하나의 길목을 만드는 ‘나들섬 프로젝트’는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때 제시한 남북경협의 획기적 공약이었다. ‘나들섬’은 아직 지도에도 없는 가공의 섬 이름일뿐이다. “이어도처럼 나들섬은 물밑에 있다. 제주도 민초들에게 이어도가 이별의 고통이 없는 이상향이듯 언젠가 나들섬이 강물 위로 우뚝 솟구쳐 남북이 함께 누리는 ‘통일의 섬’이 되길 기원해 본다.”³⁵

이어도이든 나들섬이든 공통적으로 섬이 아님에도 섬처럼 보이게 됨은 그것들이 ‘이미지’가 되고 은유화되어 읽어내야할 텍스트로 존재하게 됨을 의미한다.

인문지리적인 약속에 의해 섬은 4면이 물로 둘러싸인 땅으로 그린란드 이하의 면적을 갖는 땅은 섬이라 하고, 오스트랄리아부터 그 이상의 큰 땅들은 대륙이라 한다. 또한 섬은 성인에 따라 일본열도(日本列島)·영국·뉴기니섬·뉴질랜드·마다가스카르섬·태즈메이니아섬 등과 같이 육지의 일부가 대륙이나 또는 대륙에 가까운 큰 섬에서 분리되어 형성된 육도(陸島)가 있고, 이와 대조적으로 하와이 제도·아이슬란드 등의 화산섬과 같이 육지와 관계없이 생성된 양도(洋島)가 있다. 웨이크섬·비키니섬·킬버트섬 등의 산호섬은 양도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똑같은 섬이라도 크기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는데 R.D. Hodgson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³⁶

암석(rock), ~0.001 S.mile : ~0.0026km²(2,600,000m²)

소도(islet, 0.001~1 S.mile : 0.0026km²~2.6km²)

중도(isle, 1~1,000 S.mile : 2.6km²~2,600km²)

대도(island, 1,000 S.mile~ : 2,600km²~

³⁵ <http://www.kcrc.or.kr>

르포 ‘나들섬’을 찾아서 『민족화해』 2008/05/06 (통권 제32호)

³⁶ 김병렬, “이어도주변어장에 관한 한·중·일간의 분쟁요인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2008 추계 이어도연구과제 발표회』, 이어도연구회, p.3.

섬은 규모에 따라 또는 행정구획상의 관례에 따라 행정구역내에서 가장 큰 체도(體島)가 있게 되고 그 아래로 속도(屬島), 낙도(落島)가 있게 된다. 제주도는 체도이고, 마라도는 속도이며, 이어도가 섬이라면 그것은 낙도가 된다.³⁷ 그러나 1981년 대한민국 <내무부> 지방개발계획자료인 『島嶼・落島 現況』에 의하면 섬이란 「만조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으로서 민간인이 생활근거를 두고, 연중 계속적으로 생업을 영위하며 살고 있는 지역」이라 하는데 이를 기준하면 이어도는 섬이 아닌 암초 내지 해산(海山)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유엔해양법협약(제121조 1항)상 섬이라 함은 “도서는 만조 시에 수면 위에 있고, 바다로 둘러싸인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기준에 의해 또한 이어도는 섬일 수 없다. 여기에 한국과 중국간에는 2001년 어업협정에서 이어도를 공동 수역으로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2006년에는 이어도가 수중 암초로서 섬이 아닌 만큼 영토분쟁의 대상이 아니라는데 합의한 바 있다. 이로써 한·중 어느쪽도 이어도를 섬이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어도에 그러한 규정은 이어도를 영해나 EEZ의 기점으로 삼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한·중 양국은 이어도를 섬으로서 자연스럽게 불러 한국측에서는 이어도, 중국어로는 苏岩礁의 ‘礁’를 영어로 reef나 rock을 쓰지 않고 소도(小島)를 뜻하는 ‘Islet’을 써서 Suyan Islet(苏岩礁)라 하고 있다.

전술한바도 있지만, 만약 이어도라는 그 바위가 연안에 있었다면 보통의 여중의 하나일 뿐이었지만 망망대해 중에 존재했기에 그것은 섬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연안에서 보이는 여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여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것은 ‘여섬’, 즉 이어도로 불리게 된 것이다. 여가 망망대해 중에 위치한다는 것은 신화시대에는 신비함 그 자체였다.

현재 해양과학기지가 있는 ‘이어도’는 조석(潮汐)이나 파랑의 높낮이에 따라 물 속에 잠겼다 드러났다하는 바위, 소위 우리말로 ‘여’에 해당한다. ‘여’는 사전에 따라 설명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행한 『개정증보 제주어사전(2009)』에는 “바닷가 바닥이 얇거나 조수가 썰 때 나타나 보이는 돌 따

³⁷ 본도(本島) : 군도나 열도와 같이 무리를 이룬 섬 가운데 주된 섬을 말한다.

위”, 송상조 엮고지음의 『제주말큰사전』(한국문화사, 2008)에는 “바다에 있는 암초가 돌출된 것. 밀물 때는 물 속에 잠겼다가 썰물 때는 물 위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임”이라 하고 있다. 네이버 국어사전(<http://krdic.naver.com>)에는 “여1 [명사]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않는 바위”라 하고 있으나 지식백과에서는 “물 속에 잠겨 있는 바위, 즉 암초(暗礁)는 여라고 하는데, 여에는 썰물이 되면 드러나는 잠길여³⁸와 그 반대인 속여가 있다. 여는 숨어 있는 바위라고 해서 숨은바위라고도 한다.”라 하고 있다. 두산백과사전(<http://ad.doopedia.co.kr>)을 인용한 <다음>의 사전에는 “여 [물속의 바위] a sunken rock in the sea; a reef”라 명기하고 있다.

암초(暗礁)는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아니하는 바위나 산호 등을 말하는 것으로 숨은바위·은암(隱巖)·초(礁)·초석(礁石)이라 하기도 한다. 그리고 흔히 바윗돌로 된 작은 섬이면 ‘염’, 물 속에 숨은 바위이면 ‘여’라 하여 구분하기도 한다. 또한 ‘여’를 ‘속여’와 ‘잠길여’로 구분도 하는데, 속여란 썰물 때에도 드러나지 않는 여를 의미하고 잠길여란 썰물 때 드러나는 여를 의미한다. 속여의 한자가 ‘暗礁’라면 ‘잠길여’의 한자는 ‘岩礁’가 될 것이며,礁의 형태적 지명은 ‘간출암(干出巖)’이 되는 것이다. 다만 여는 서(嶼)와 초(礁)의 중간에 위치한 암초(岩礁)라고 할 수는 있다. 먼바다의 해저 돌출물을 초라고 한다면, 이 초가 연안 가까이 있으면 대체로 ‘여’라고 불리우는 경향이다. 부연하자면, 여(초)는 바닷속의 암礁와 바다 위의 岩礁의 중간으로 해수면의 승강에 따라 바닷속에 잠기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하는 간출암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제표준지명으로, 초(礁), 즉 ‘여’는 reef(s)라 하고 있다. reef(s)는 해면 또는 해면 가까이에 위치한 바위 또는 경화된 물질로 구성된 암초로서 항해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해저지형으로 밀물 때 물에 잠기고 썰물에 들어나는 간출암(rock)에 대해 국제표준지명은 하나의 속명으로 통일되어 있다.³⁹ 부연하자면 리프는 『제주어사전』들에 나온 그대로 물 속의 바위 일반을 말하는데 항해와 관련하여 항

³⁸ 남해안에서 ‘여’의 끝자가 붙는 해저지명은 거의 없다시피하는데 경남 사천 향촌동의 뱃시포인트인 ‘잠길여’는 고유명사로 쓰이고 있다.

³⁹ 성효현, 전계서, p.123.

해에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가 되는 바위면 reef인 것이다. 국제표준 해도에 ‘이 어도’는 영어로 ‘leodo reef’라 표기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지리 속명이 지방마다 상이하게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초, 여에 해당되는 속성 명칭을 썸, 여, 덕, 추, 탄, 듸, 내기, 성애, 돌, 댕이, 험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워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속성 지명은 지역민들의 어로활동이나 지형의 형태에 따라 상이하게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동해안에서 댕이, 썸, 험의 경우 댕이는 물속에 있는 바위에 어른이 섰을 때 어른의 몸이 완전히 잠기지 않은 바위를 가르키며 썸은 물속에 있는 딱딱한 바위, 험은 모래나 빨로 되어 있는 경우를 일컫는다. 또한 썸은 선박 항해에는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깊은 곳에 위치하나 어로활동과 깊은 관계가 있는 곳이다. 또한 남해안에서도 특정 어류나 해산물이 잘 잡히는 지점에 듸라는 속성지명을 사용하여 해저지명을 명명한 예가 많다.⁴⁰ ‘여’는 우리나라에서는 남부 해안지방 조금 보이기는 하나 주로 제주도 연안에 나타나는 해저지형명이다. 육지(물)에 뿌리를 두고 바다로 돌출한 바위를 제주도에서는 ‘엉’ 혹은 ‘덕’이라 하여 여와 구별하기도 한다.

시인 정경자는 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⁴¹

여(磯) /정경자

물속에 잠겼더냐
물이 너를 삼켰더냐,
보이는 듯 마는 듯 신기루를 닮았구나

고독 속에 있으면
고독하지 아니하나
바닷물 새에 두고 외로움 주고받네

⁴⁰ 상계서, p.123.

⁴¹ <http://cafe.naver.com/dalcho/35088>

물새들 때로는
네게서 쉬어가니,
보이는 건 작아도 네 품 작다 아니하리

제주학연구소장·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논설위원이라고 소개되는 오창명 박사는 “여’를 한자로 쓸 때는 嶼(서) 또는 礪(여)로 썼다. 그래서 검은여를 한자로 쓸 때는 黑嶼(흑서) 또는 黑礪(흑여)로 써왔다”면서 중국 관광객을 위한 관광 안내 책자에 黑礪(흑여)라 표기해 놓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다.⁴²

이어도를 한자어로 離虛島⁴³, 離於島, 異魚島⁴⁴, 耳魚島⁴⁵, 以語島⁴⁶ 등으로 표기하나 이어도를 한자화하여 ‘離礪島’라 하는 경우는 한 건도 없다. 물론 그 어느 것이든 이어(여)도를 한자로 표기하는 것은 한자문화권내에서 소통을 위한 것이기는하나 거기에 의미는 전혀 없다. 우리나라의 사전,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에서 이어도의 한자표기는 ‘離於島’로 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해상왕국 탐라국의 역사를 지닌 제주도에는 똑같은 해양지명이라도 보다 다른 지방에 비해 다양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나타난다. ‘여’에 대한 지명 또한 예외가 아니다.

“.....물망사리 돌리지퍼 아끈여(小礪), 안여(육지 가까운 內礪), 밧여(外礪), 정살여(징검다리 礪), 도랑여(둥그런 작은 礪) 여곳 돌곳마다 아니 보아난 여곳엇고 아니 보아난 돌곳 엇이 텡기당.....”⁴⁷이라는 <북촌당 영등굿>의 대사, 그리고 “해각(海角)으로 누리민 난여(海上礪), 든여(海底礪), 숨은여(조석간만에 따라 잠졌다 드러났다하는 礪) 정살여 좋아히고.....”⁴⁸라는 <영감놀이 굿>의 대사가 있다. 이들 다양한 여들 중 본 논문의 주제 지명인 이어도 관련된 지명은 ‘숨은

⁴² 제주일보 | webmaster@jejunews.com 2012.02.16

⁴³ <http://www.ieodo.kr/> 1923년 강봉옥에 의해 처음 쓰임.

⁴⁴ 1977년 김기영 감독이 이창준의 중편소설 『이어도』를 영화화한 작품 이름

⁴⁵ 김병렬(2007), 전게서, p.78.

원래 이어도라는 말은 제주도 토박이 말이기 때문에 한자어 표기가 없다. 이어도 근방에서 귀상어가 나기 때문에 ‘귀고기가 나는 섬’이라는 의미의 耳魚島가 어떨까하고 생각해 본다.

⁴⁶ <http://blog.daum.net>

⁴⁷ 玄容駿(1980), 『濟州島巫俗事典』, 新丘文化社, p.533.

⁴⁸ 상계서, p.483.

여’로서 한반도의 ‘잠길여’에 해당한다. 이들 지명으로 보아 특히 제주의 해민들과 여는 불가분의 관계가짐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찾아도 찾을 수 없고 찾아가면 돌아올 수 없었던 이어도가 물속의 암초였음을 우리 선조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셈이다.

Ⅳ. 기억의 터(lieux)로서 ‘이어도’

앞 장에서 본 바와 같이 ‘이어도’가 지명이 아니라는 주장도 일부에서 나오지만, 만약 이어도가 지명이 아니라면 이어도는 실존하는 섬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물론 그러한 주장에는 이어도가 이상향 내지 환상의 섬이라 여겨지는 것과 관련된다. 파랑도가 <한국해양소년단 제주연맹>에 의해 현대에 들어와 ‘이어도’라 재차 다시 불리워져, 전설 속의 이어도가 실재하는 섬으로 인식하기 시작하게 되었음은 전술한 바 그대로다. <한국해양소년단 제주연맹>의 그러한 확인이 있자 맨처음 민속학자인 고(故) 김영돈 교수⁴⁹가 이어도는 실재와 무관한 오로지 상상의 섬일뿐이라는 반론을 제기했고 그러한 이어도 비실재론은 최근에는 오창명 박사나 주강현 교수⁵⁰, 고영환 교수(제주대 식품영양학과)에 의해 이어진다. 연구분야에서 이들 공통점은 자연과학도인 고영환 교수를 제외해서는 모두 민속학에 관련한 연구자들로 지명과 관련하여 이어도의 실재론을 부정한 인문학자들이라는 것이다.

먼저 김영돈의 주장을 보자.

⁴⁹ 전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본관은 김해(金海), 호는 현지(玄旨)이다. 1932년 2월 22일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리에서 태어났다. 제주도의 민속 분야를 집대성한 김영돈은 2001년 9월 『제주도민요연구』의 원고를 교정하던 중 향년 6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김영돈은 제주 민요에 관한 자료 수집과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제주 민요학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더 나아가 한국 민요 연구의 이론적 체계를 완성한 인물로 평가된다.

⁵⁰ 인터넷신문 <제주의소리>는 주강현을 한 기사(주강현 교수, “현대에 맞는 새로운 수놓음 필요” 데스크 승인 2012.09.10 19:34:14) 끝에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민속학자이자 해양문화사의 권위자인 주 교수는 한국역사민속학회 회장, 해양문화학회 부회장, 통일문화학회 회장 해양문화재단 연구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제주대학교 석좌교수직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우리문화의 수수께끼’, ‘제국의 바다’, ‘주강현의 우리문화’, ‘100가지 민족문화 상징사전’, ‘관해기’, ‘등대’ 등이 있다.

이른바 〈波浪島〉라 일컬어지는 그것이 동시에 〈이여도〉로 보는 그 인식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소위 〈波浪島〉는 **암초로든 섬으로든 實存하는 게 사실이고, 〈이여도〉는 實存하지 않는 幻想의 섬, 彼岸의 섬일뿐 이 둘 사이에는 어떠한 관련도 맺을 수 없다.**(굵은체는 필자에 의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소위 〈波浪島〉 곧 〈이여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을까. 實存과 虛構의 차이가 깔려 있기는 하지만, 이 兩者를 同一實體로 보아서 〈波浪島〉는 곧 〈이여도〉라고 인식되고 있는 까닭은 實存與否야 어떻든 이 둘이 비슷한 속성을 지녔기 때문인 줄 안다.

① 제주도 서남쪽 중국으로 가는 항로에 있다는 섬이라는 점

② 이 섬 주변은 파랑이 거세어 破船되고 사람들이 흔히 沒死했다고 전해진다는 점이다.

.....

또한 소위 〈파랑도〉 주변의 激浪으로 술한 도민들이 難破, 沒死했다는 설화를 전승하는 가운데 그런 史實을 환기하게 되고 제주도민의 民間心意에 질게 물들이게 함으로써 〈이여도〉설화를 낳게 되는 한갓 **동기가 되었음직은 하다.**(굵은체는 필자에 의함)⁵¹

다음에 고영환 교수의 주장을 보자.

1995년도에 이르러 몇몇 명망가들이 파랑도를 이여도로 개명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2001년도에 국립지리원은 국가지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여, 이여도로 확정, 등록하였다. 2003년 6월에는 수중 암반위에 플랫폼 형태의 종합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었는데, 그 명칭이 이여도종합해양과학기지이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소코트라 암초(파랑도)를 제주도의 설화와 민요 속에 등장하는 이여도와 동일화 시키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제주인의 도피처, 위로요, 희망이자, 민요, 설화 그리고 상상력의 근간인 이여도를 **격하시켰다.** 도대체 소코트라 암초를 이여도라 칭하게 된 논리적 정당성도 과학적 근거도 전혀 찾을 수 없다. 일면, 영토 또는 영해를 고려한 국익 확보차원에서 근거와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노력은 역력하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봐야 지구가 뒤집혀 지지 않는 이상 수중 **암초**가 사람 사는 **섬으로 둔갑 될 수는 없다.** 소코트라 암초

⁵¹ 김영돈(1985), “이여도와 제주민요,” 『濟研』, 濟州道問題研究會, p.10.

에 구태여 이어도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아도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들어오는 실존적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

더구나, 파랑도를 이어도로 명칭 변경함으로써 남방 해역 어딘가에 이어도가 존재할 가능성이 말살되었다⁵².

위의 김영돈 교수는 파랑도와 이어도(이어도)를 별개로 보아 파랑도는 실재의 섬, 이어도는 상상의 섬으로 차별화한다. 자연과학도인 고영환 교수는 이외로 인문학적인 상상력으로 이어도는 비실재의 실재로서 존재 가능한 섬이라고 형용모순적 주장을 하고 있다. 고 김영돈 교수와 고영환 교수 그리고 상당의 사람들은 파랑도가 이어도이었음이 밝혀지자 소위 ‘암스트롱 쇼크’를 받았다. 1969년 7월 20일 오후 1시 17분 40초 미국의 암스트롱(Neil A. Armstrong)이 달에 착륙하자 전근대적 자연주의 사상이 농후한 동양인들로서는 이태백이가 놀던 달도 아니었고, 계수나무도 옥토끼도, 옥토끼가 쪼던 방아도 없는 황량함에 쇼크를 받았다.⁵³ 『생각의 오류』 저자인 토머스 키다(Thomas Kida)⁵⁴는 다음의 주장을 한다.

통계수치보다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더 솔깃하다. 인간은 이야기를 좋아하는 생물체로 진화해왔다. 지적(知的)인 사람도 이야기만 들으면 눈을 반짝인다.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이야기꾼(storyteller) 기질이 내재돼 있는 것이다. 이는 특히 **구술문화가 발달한 동양의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 그러나 이야기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동종요법이나 다우징, 소통촉진법 같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대상도 쉽게 신봉하게 된다. 이러한 오류는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심리 때문**이다.

⁵² webmaster@jejunews.com 오피니언 이어도 유감(遺憾) 고영환 제주대학교 교수 / 논설위원 데스크승인 2013.01.22 제주일보 |

⁵³ [한국 요괴 대사전] 026. 옥토끼·달두꺼비[한국 요괴 대사전] 2011/09/15 20:39 <http://blog.naver.com> 과거 인간이 필연적으로 무지할 수 밖에 없었던 시절,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알 수 없었던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필요했다. 그런 필연적 무지에 의한 상상력이 가장 잘 반영된 대상이 바로 달이다. 달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설명하기 위해 그 모습에서 두꺼비와 절구를 찢는 토끼를 그려내고,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다. 월궁의 풍경을 새겨넣은 신라의 청동거울에 옥토끼와 달두꺼비가 나란히 있는 것이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닌 것은 수천년 동안 달이 가진 상상의 바다를 보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⁵⁴ 미국 매사추세츠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서양과학문명의 원천지 고대 그리스의 학자 디오판토스(Diophantos, 246~330)의 묘비명은 방정식(方程式)이었고 아르키메데스(Archimedes, BC287~BC212)의 묘비명은 도형(圖形)이었다.

이어도 실재론은 이어도 설화의 ‘탈신화화(demythologizing)’ 또는 ‘탈신비화(demystification)’를 가져와 나이브한 설화 신봉자들에게 그지없는 실망감을 안겼고 심지어는 저항하기에 이르기까지 한 것이다. 나이브하게 유토피아가 어딘가에 존재하리라 믿는, 혹은 믿게 하고자 희망하는 설화 신봉자들의 주장은 영적인 면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학문(과학)에서는 이를 분석하고 설명하려 한다.

김영돈 교수의 이어도 부재론이나 이어도의 작가 이청준의 작품 의도는 픽션에 대한 과학적인 <환원적 해석방법(설명적 해석학)>을 거부한다. 그래서 양자는 행위자의 입장에 서서 정서적 만족을 취하려는 <상징주의적 해석방법(확장적 해석학)>을 주장한다. 상징주의에서는 텍스트의 해석에서 중요한 것은 유일한 의미를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읽기 혹은 텍스트에 대한 성찰을 통해 그것의 다의성과 풍요성을 스스로 체험하면서 우리의 구체적 삶 속에서 그것들을 활성화시키면 족하다는 것이다. 상징주의적 해석방법은 전통적인 인문학의 패러다임이다.

과학에서는 나이브한 설화 신봉자들에 대한 주장에 무관심함을 보이지만, 아마 최남선도 이어도 전설에 대한 지식이 있었으면 일본인들의 명명(命名)에 연원한 ‘파랑도’란 지명을 쓰지 않고 바로 ‘이어도’라고 호칭했을 것이다. 김영돈 교수 역시 자신의 글에서 파랑도와 이어도가 동일 사물임을 암시하여 “兩者를 同一實體로 보아서 <波浪島>는 곧 <이어도>라고 인식되고 있는 까닭은 實存與否야 어쨌든 이 둘이 비슷한 속성을 지녔기 때문인 줄 안다.”라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김영돈 교수는 파랑도가 <이어도 설화>의 ‘동기가 되었음직은 하다’라고 하는 바, 이어도 실재론자들은 바로 그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실재의 섬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부연해서 이어도 실재론자들은 이어도라는 이상향, 그 이상향은 픽션으로 단지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현실에는 부재한 섬임을 누구보다 먼저 인정한다. 재언하면 이어도 실재론자들은 <이어도=이상향>이라는 등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동기가 된 구체적 사물을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이는 마치 <설문대할망설화>에서 설문대할망이 한라산 백록담에서 퍼다 놓아 된 것이 산방산이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산방산이 실재하지 않는 산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어도항로를 항해했던 과거의 제주해민들은 체험을 했기에 모두 이어도가 실재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파랑도, 즉 이어도가 이어도전설 내지 이어도토피아(이어도이상향, 이어도鄕이라고도 함)를 상상토록한 동기가 되었다는 주장은 <한라일보> 논설위원이며 문학평론가인 송상일도 동의하는바, 그는

아무리 공상이지만 거기에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 삼성혈의 구멍 세 개가 그 근거를 제시하듯이. 마찬가지로 이어도 역시 실체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삼성신화를 건국신화로 정당화한 것은 단순한 세 개의 구멍이면 되었다.

이어도신화로 작은 근거라도 있으면 되었다. 사람이 안 살아도 된다.

“이어도는 있으나 없고, 없으나 있다”.

이어도에 처음 관심을 가질 때는 관념의 섬으로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암초가 이어도를 자극했다고 본다.⁵⁵

라 하고 있다.

이어도 실재론자들에 있어서 이어도라는 지명을 가진 해저지형물은 ‘객관적 상관물(objective correlative)’이라는 것이다. 객관적 상관물은 감정을 객관화하거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공식 역할을 하는 대상물을 가리킨다. 엘리엇에 의하면 어떤 특별한 정서를 나타내기 위한 사물, 정황, 일련의 사건으로서, 바로 그 정서를 곧잘 환기시키도록 제시된 외부의 사실들이다. 구체적인 사물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정서를 환기시킨다.

주강현 교수는 이어도 설화에 서사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20세기의 조작물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어도 설화는 서정성을 갖는다 하겠는데 여기서 서사성은 진실과, 서정성은 거짓과 관계 있다는 주장도 역설이기는 하다. 신기한 것은 민속학자들 일부는 스스로 ‘진실의 반대가 거짓이 아니라 신화’임을 모르거나 외

⁵⁵ 송상일, 2008춘계이어도연구과제발표회, “이어도의 실체를 찾아서”, (사)이어도연구회.

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도 이야기들이 집단의 정서와 사상으로 인정될 경우 최초의 창작자는 자신의 시각·관점으로 실존하는 주위의 모든 대상 세계(사물)를 인식하고 해석하기 마련이다. 그들은 자신이 접하는 실존하는 모든 대상을 자신의 감정으로 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편의 신화나 전설은 작자의 정서, 곧 자신들의 서정 외의 어떤 세계의 개입이 없으며, 모든 대상은 작자의 감정에 따라 형상화(표현)된다. 시에서는 이를 흔히 화자(시적 자아, 서정적 자아)라 한다. 시의 화자는 자신의 주위에 있는 모든 대상 세계를 주관적으로 해석·형상화·표현한다. 이때 화자의 주위의 모든 대상(세계)은 그 자체로는 화자와 정서적 관련이 전혀 무관한 객관적 존재이나, 화자의 주관적 해석에 의해 관련을 맺게 되는데 이러한 주관적 관련성이 두드러진 존재(대상)를 ‘객관적 상관물’이라 일컫는다. 이러한 객관적 상관물 중에 화자의 감정과 동일시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감정 이입’의 대상인 것이다. 이어도토피아는 별리한 가족의 해후와 행복을 이어도에 감정이입하여 심리적 만족을 기하는 객관적 상관물인 것이다.

이상섭씨는 「시와 상상」에서 서정적인 상상은 〈미루어 마음 속에 형상을 그리 는 것〉이라 한다. 여기서 〈미루어〉 본다는 것은 순전한 공허 상태에서 생각으로 지어낸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실제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하여 그 위에 이룬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자면 상상은 실제 경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가 극히 미약하든가 극히 불완전할 때, 그것은 상상이 아니라 망상이 되어 버린다. 그러나 단순한 경험의 재현은 진정한 상상이 아니다.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기억이다. 상상은 기억을 재료로 하여 실제로 있지 않았던 형상을 그려내야 한다. 즉 구체화 하는 힘, 형상을 꾸미는 힘, 형성하는 힘이 상상인 것이다. 이름을 붙이는 행위도 사물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인만큼, 그것 역시 형상을 꾸미는 일의 한가지로 볼 수 있다.

이어도에 관해 전승되어지는 스토리를 설화라 하기도 하고 전설 혹은 신화라 불리기도 하지만 강봉옥, 다카하시 토오루, 진성기, 김영돈 등의 채집 기록물들에는 모두 이어도 스토리를 전설이라 하고 있다. 이어도 스토리가 전설이라 하는

것은 이어도 실재론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전설은 신화나 민담과 달리 **지역 단위** 이하의 장소와 인물에 관한 이야기로서 구체적 장소(지형·지물 등의 개별적 증거물)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현용준은 전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전설은 사실이 아니다. 제주도 사람들이 그 자연, 인물, 신앙에 대한 인식을 창작화한 것이다. 그렇다고 **전설은 전혀 거짓말이 아니다. 그 자연의 명칭, 인물의 연대, 이름, 역사적 사실 등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에 근거하여 제주도 사람들의 희구(希求), 열망(熱望), 꿈 등을 창작해 놓은 **반사실(半事實)의 문학**이다. 따라서 그 고장의 전설을 보면 그 고장 사람들의 꿈을 이해할 수 있다.⁵⁶

전설은 전승자가 신성하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으나 진실되었다고 믿고 실제로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야기이다. 전설은 사실의 오브제와 상상의 스토리로 구성된다. 전설은 바로 스토리에 해당한다. 전설의 세계는 일상적 경험을 떠나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전설(스토리)의 진실성은 끊임없이 의심된다. ‘사실이 아니고 전설일 따름이다.’라는 말이 가능하나, 전설은 사실로서의 근거를 전적으로 부인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증거물이 이를 입증한다.

전설의 증거물(오브제)은 자연물인 경우도 있고 인공적인 경우도 있고 인물인 경우도 있는데, 어느 것이나 전설을 떠나서도 알려질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전설은 이러한 ‘구체적인 증거물’을 가짐으로써, 이미 알려진 근거에 호소해 진실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거물에서부터 출발하여 그 유래나 특징을 이야기로 꾸며낸 것이며, 증거물이 실재하니 이야기 역시 실제로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꾸며낸 의의가 있다. 증거물을 상실한 전설은 전승이 중지되거나 민담으로 전환된다.

일반화된 전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진실성; 이야기의 연대, 사건 발생의 장소, 주인공 등이 명시되어 있고, 민중의 경험과 사건의 진실성이 표현되며, **구체적 증거물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전설

⁵⁶ 현용준(2009), 전거서, p.66.

은 화자나 청자가 다 진실로 믿으려고 한다. 전설들은 대체로 '어느 어느 시대에, 어느 어느 누가, 어떻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되었더라'하는 플롯 구조에 공통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요컨대 전설에는 실재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고 판단해도 좋겠다.

(2) 역사성; 전설은 스스로 역사화함으로써 자기를 합리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3) 체험성; 전설에 나타나는 사상들은 **생활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된다.**

(4) 설명성; 전설은 산천, 촌락, 사찰, 교량 등의 형성, 유래 등을 그 진위에 관계없이 설명하려는 특성이 있다.

(5) 비약성; 전설은 시간과 공간적인 면에서 구체성을 띠면서도 이야기의 서술이나 사건의 결과에서는 비약이 많다.

(6) 화술의 자유로움; 전설은 이야기의 서술 절차가 일정하지 않고 자유로우며, 소박하게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다.

전설의 전승자들은 전설이 진실되었다고 믿고, 증거물을 제시하며 그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승시켜 왔다. 그러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전설 전승자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그래서 전설의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는 측도 있지만, 믿지 않는 측도 생겨났다.

반복하지만, 이어도라는 지명에 대해 노인층과 해녀사회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어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현의 주장에는 오류가 있다. 이는 기억과 역사의 관계를 모른 처사에서 나온 경솔한 판단이다.

과거에 제주해민이라는 특정 집단의 주관적 체험들에 의해 만들어진 이어도 스토리에 대한 기억들이 있었다. 특정 집단의 주관적 체험에 의한 기억은 1920 년대에 프랑스의 사회학자 모리스 알바시(Maurice Halbwachs)에 의해 제시된 바 있는 '집단기억(memoire collective)'이라 말할 수 있다. 집단기억은 특정한 공간을 매개로 구축된다고 하는데, 이어도 스토리에 대한 집단기억으로서의 공간, 즉 매개체는 바로 이어도가 되었다. 프랑스의 역사가 피에르 노라(Pierre Nora)는 이 매개체로서의 공간을 '기억의 터(lieux de memoire)'라 불렀다. 기억의 터(lieux)는 구체적인 장소도 되지만 기타 모든 기억될 수 있는 사물과 어렴

꽃한 흔적을 암시하는 메타포에 해당된다.

기억의 터는 단순히 기억의 대상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기억의 “형태 변이”로서 기억 그 자체에 대한 성찰이다. 이어도토피아 역시 기억의 흔적이 깃든 기억의 터로서 기억이 머물고 있는 구체적인 장소들이라기보다 이어도토피아를 상상함으로써 오히려 진실한 기억의 부재를 나타내는 상징화된 이미지 메타포인 것이다. 때문에 나이브한 사람들에게 당연히 존재하는 이어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변한다.

오늘날 제주도 사람들이 이어도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한다는 것은 노라 식의 ‘기억의 터’가 보여주는 특징적인 점으로서 공간이 더 이상 환기력을 지니지 못하고 그저 과거가 기억되어온 흔적을 암시하는 불분명한 메타포로만 기능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역사와 대비되는 바로서의 기억이란 -역사화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기억의 주체가 되었던 특정 집단이 사라지게 되면 망각하게 마련이지만 인간은 생래적으로 그가 개인이든 집단이든 문화적(역사적)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존재이기에 영원한 망각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그 기억은 언제인가는 역사로 치환하여 적용하는 모티브로서 작용하며 이 ‘치환’을 통해 부분집단 자신은 광역적 민중과 동일시되고 그속의 긍정적 정신은 자연스럽게 강조되며, 또한 역사화된 기억은 교육에 의해 재생 재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어도(향)에 대한 오늘을 사는 제주인들의 기억은 구전 아닌 문헌적 전승에 의해 젊은 세대에서는 오히려 기억되거나 기성 세대에서는 많은 망각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어도 실재론에 있어서 연구의 대상에서는 자연물이지만, 방법론에서는 설명적 해석을 요하는, 즉 상대적 진리를 추구하는 사회과학적 연구가 된다. 현상에 대한 설명적 해석은 절대를 추구하는 인과적 환원이 아니라 다원성을 인정하는 인과적 관계의 밝힘이다. 인과적 해석이나 설명적 해석은 자연과학과 달리 인과적 개방성을 갖는다. 그것은 칼 포퍼가 이야기하는 열린학문이라는 뜻이다.

부연하자면, 사회과학은 필연성의 진리가 아니라 현상을 일반화한 개연성의 결론이기 때문에 이미 자체로 자연스럽게 반증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바로 사회과학적 명제에는 거의 대부분 “예외”가 포함되어있다는 소리이다.

V. 결론

이어도라는 지명은 ‘여(礪)’의 늘임말로 시적 언어이자 어떤 기의를 갖는 기표로서의 역할을 하는 고유명사로 등장한다. 여가 이어도가 되면서 고유명사가 된 것은 이어도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연안에 위치하는 암초(岩礁)가 아니라 대양 중에 출몰하는 여(礪)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여는 주로 한국의 남해안 지방에서 암초를 부르는 이름이다.

이어도란 말이 민요의 후렴구로도 나오지만 민요 가사 중에 (고유)명사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지명이 될 수밖에 없다. 이어도라는 지명에 대한 허실(虛實) 논쟁은 그것이 팩트로서 존재하는 지형(이어도)임과 동시에 상상의 섬(이어도鄉, 이어도토피아)으로 전설 속의 지명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즉, 이어도향이나 이어도토피아의 전설은 그야말로 픽션이기 때문에 전설 속의 이어도 역시 픽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화학(說話學)에서는 전설 속의 지명은 팩트가 된다고 한다. 전설을 ‘반사실(半事實)의 문학’이라 하는 소이도 여기에 있다.

이어도 존재론에 대한 논쟁은 기호학 이론에서 보이듯이 기호로서의 지명이 실제로 없는 것을, 지명(기호)을 통해 마치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모조(simulation)와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만드는 비모조(dissimulation)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상상의 장소로서의 이상향은 실존하지 않지만 마치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는 모조화 과정이 필요하고, 또 실제하는 지리적 사물을 실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주는 비모조화 과정도 동시에 필요한 것이다.

제주도민(한국인)의 이어도에 대한 인지는 구비문학으로 존재하는 바와 같이 문헌기록시대 이전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 중국인들 역시 이어도에 대해 고대사회에서 인지하고 있음을 쑨옌자오라는 이름을 내세워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논거는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참고문헌

- 姜吉夫 편저(1985), 『郷土の地名』, 정음사.
- 고용희(2006), 『바다에서 본 탈라의 역사』, 각.
- 권선정(2004), “지명의 사회적 구성-과거 懷德縣의 ‘宋村’을 사례로-,” 『地理學研究』, 제38권 2호.
- 김병렬(2007), 『이어도를 아십니까』, 홍일문화.
- 김병렬, “이어도 주변어장에 관한 한·중·일간의 분쟁요인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2008 추계이어도연구과제 발표회』, 이어도연구회.
- 김영돈(1985), “이어도와 제주민요,” 『濟研』, 濟州道問題研究會
- 김영화(1998), 『변방인의 세계』, 제주대학교출판부.
- 김은석(2012), “이어도의 존재론적 의미,” 『2012이어도연구중간발표회』, (사)이어도연구회.
- 다카하시 토오루(高橋 亨, 1933), “民謡에 나타난 濟州女性,” 『朝鮮』 212호, 昭和8年 4月號, 濟州市遇堂圖書館(1997), 『濟州島の 옛 記録 1878-1940』, 경신인쇄사.
- 성효현, “해저지명의 국제표준화와 한국의 해저지명,” 『지리학과 언어학에서 본 지명』, 2009년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및 한국지명학회공동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한국지명학회, 2009. 11.
- 오상학(2010), “한·중·일 고지도에 표현된 이어도 해역 인식,” 『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 위탁연구사업 최종결정보고서(II)』 국토해양부국립해양조사원.
- 오창명(2011), “지명으로 본 이어도,” 『제주의 유토피아 이어도를 만나다』, 제주문화예술재단.
- 임영태·김동수·최윤수(2004), “해양지명의 표준화와 해양지명의 제정 및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지적학회학술대회논문집』, 2004. 12.
- 장의선(2004), “지리와 내용요소로서 ‘지명’의 의미 탐색과 교수-학습의 실제,” 『사회과교육』, 제43권 2호.
- 田景(2002), “중국의 현대 지명표준화 小考,” 『地名과 地名研究』,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 주강현(2012), 『유토피아의 탄생-섬-이상향/이어도의 심성사』, 돌베게.
- 주성재(2011), “유엔의 지명논의와 지리학적 지명연구에의 시사점,” 『대한지리학회지』 제6권 제4호 (통권145호)
- 하순애(2012), “이어도 정체성에 관한 철학적 탐색,” 『2012이어도연구중간발표회』, (사)이어도연구회,
- 扨天雄(1984), “이어도는 환상의 섬인가,” 『신문과방송』, 제160호.
- 玄容駿(1980), 『濟州島巫俗事典』, 新丘文化社

동/남중국해 해양영토 분쟁과 이어도

동/남중국해 해양영토 분쟁과 이어도

한반도 주변수역 對中 갈등 요소와 대응방안 연구_김현수·양희철

독도 영유권에 비추어 본 이어도 해양관할권과 남해 해양주권의 확보_최병학

서구 시각에서 본 남중국해 해양영유권 분쟁과 중국의 패권주의_김희열

한반도 주변수역 對中 갈등 요소와 대응방안 연구

김현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 서론

도서는 국가 영토의 주요 구성 부분이면서 바닷물로 둘러싸여 그 자체로 독특한 지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문지리학적으로 도서는 사람이 거주하는 유인도와 무인도로 구분되는데, 광의적인 개념에서 도서라 함은 일국의 관할해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모든 섬, 암초, 사주와 저조(低潮)시 수면위에 있으나 고조(高潮)시 수면 아래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를 포함한다. 이중 ‘무인도’라 함은 통상적으로 사람이 상시 거주하지 않는 해양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를 의미하게 된다.

해양에서 도서가 가지는 법적 혹은 정치적 가치 외에, 각국은 공통적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해양개발의 수요와 해양산업적 측면에서의 도서개발 수요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경제의 성장과 생활의 질적 제고에 수반되는 이러한 수요는 필연적으로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정책 대응과 궤를 함께 하여야 하는 바, 각국의 도서정책 또한 이용개발과 보전의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국가의 도서정책이 주변 해역에서의 해양갈등의 문제와 분리되어 추진될 수 없는 복잡한 정치지리적 환경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삼국의 도서정책은 외부적 환경변화와 내부적 경

제환경을 적절히 조화하면서, 관련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 평가를 내릴 만 하다. 특히, 중국의 경우 급속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따른 도서 환경 파괴와 난개발에 대하여, 생태계 보전을 중점으로 하는 국내법을 제정, 추진하고 있다는 점 역시 도서가 가지는 복잡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정책 수립은 환경적 가치에 대한 분명한 정책의지를 담고 있다고 보여 진다.

반면, 각국의 도서정책에서 도서의 정치적 성격과 경제적 가치를 가장 적절히 구사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라고 보여 진다. 이는 한국의 도서가 비교적 근해에 집중되어 있고, 독도를 제외하고는 주변국과의 분쟁에서 자유롭다는 점, 그리고 폐쇄해로 둘러싸인 지리적 조건에서 해양과 도서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기에는 가장 적절한 모델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러한 배경을 기초로 한반도 주변수역 대중 갈등요소를 분석하여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국의 도서정책을 검토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의 직선기선이 중국의 도서정책과 일맥상통함을 도출하여 특히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의 영해 기점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결론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II. 유엔해양법협약과 도서의 가치변화

1.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도서 가치

1982년 채택(19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은 연안국에게 12해리 영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과 육지영토의 자연연장에 근거한 확장된 대륙붕을 부여하고 있다. UNCLOS는 제 121조를 통해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rocks)”을 제외하고,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으로 정의되는 섬(Island)은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섬과 암초의 구분에 대한 국

제사회의 다툼은 명확하지 않으나, “섬”은 기본적으로 육지영토와 동일한 해양관할권 창출 능력을 갖게 되며, 주변국과의 경계획정시 중요한 법적 근거로 작용 가능하다. UNCLOS에 근거하면 하나의 “섬”이 창출할 수 있는 면적은 약 43만 km^2 에 달하며, 이는 우리나라가 주장 가능한 해역의 면적 총합이 약 44만 6천 km^2 라는 점과 비교할 때 국가관할권, 국방안보, 경제적 측면 등에서 중대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UNCLOS상 섬은 국가 주권으로서의 영유권 외에, 관할권 확장, 해양자원, 해상교통로, 해양활동 거점으로서의 군사전략적 가치 등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권리 창출 기능을 가진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반면, 동북아시아 주요 삼국(한·중·일)은 모두 400해리 미만의 좁은 폐쇄 혹은 반폐쇄 해역으로 마주보고 있다는 점에서, 각국이 200해리를 주장할 경우 서로가 주장하는 관할권은 일정 부분 중첩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문제는 이러한 관할권 주장 중첩 현상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인데, UNCLOS는 EEZ와 대륙붕 경계획정에 대하여 “공평한 해결”이라는 모호한 태도를 견지, 삼국은 자국에 유리한 해결 방법(형평한 해결, 혹은 중간선 방법)을 주장하고 있는 바, 단시일 내에 해결될 수 없는 첨예한 대립요소로 등장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UNCLOS의 이러한 모호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국제판례에서는 최근 “가상 중간선 → 관련상황 및 특별한 사정(임시 중간선 조정요소 고려) → 비례성(최종 경계선 도출)”이라는 삼단계 접근 방식을 활용하여 해양경계획정에 접근하려는 추세가 뚜렷하다. 이때, 해양경계획정 중간단계에서 고려되는 요소로는 해안선 길이, 어업자원, 기점 및 기선, 도서의 존재 등이 있으며, 이 외에 광물(에너지) 자원은 경계획정에서 특히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 특히 대상 수역에 도서가 위치할 경우 이는 양국간 해양경계를 획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2. 중국의 해양전략과 이어도: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일본의 오키노토리시마에 대한 보전, 도서화 작업과 연계하여 중일의 해양전략이 충돌하는 대표적인 공간이 동중국해이다. 동중국해에는 이어도와 조어대를 중심

으로 하는 해역이 함께 논해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갈등 전개는 조어대 영유권 문제가 핵심으로 등장하는 바, 이어도는 상대적으로 외교적 협상 단계에서 조율되는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어도에 대한 한중간 가치 평가의 기준, 혹은 그 전략적 가치가 최소한 우리나라 내부에서 정확하게 평가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만 하다. 동북아 삼국간 해양관할권 경쟁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전략가치로 국방안보적 개념이 언급되면서도, 우리나라의 이어도 정책은 비교적 평시적 개념의 해양과학기지의 가치 이상으로 논의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이어도에 관한 가치평가와 해당 수역을 둘러싼 공간가치 평가가 달리 접근될 경우, 양국의 해양분쟁은 현재보다 보다 격하게 대립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본고에서는 이어도 주변수역이 그 공간적 가치에서는 조어대를 둘러싼 국방안보, 대양진출이라는 공간가치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조어대를 둘러싼 중·일간 해양전략 충돌 문제에 제한하여 서술하도록 한다. 다만, 이 문제는 이어도와 그 주변수역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전략이라는 점을 주지하여야 한다.

조어대는 중국어로는 조어대(釣魚台, DiaoYuTai) 혹은 조어대 열서(釣魚台列嶼)로 불리우며, 일본에서는 첨각열도(尖閣列島, Senkaku Islands)로 칭해진다. 조어대는 5개의 작은 무인도와 3개의 암초로 구성되며, 위치 및 거리상으로는 7개의 섬이 서쪽에 함께 모여 있으며 다른 하나가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즉 두 부분으로 분속되어 있다. 다른 7개의 섬과 떨어져 가장 동쪽에 독립하여 위치하고 있는 것이 赤尾嶼(약 0.06km²)이고, 7개의 섬 중에는 조어대 열서 문제의 중심에 있는 釣魚嶼(島)와 南小島, 北小島, 그리고 기타의 沖北岩, 沖南岩, 飛瀨 등이 있으며, 黃尾嶼는 沖北岩의 북방에 자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칭해지는 釣魚台는 8개의 섬들의 총칭이며, 가장 큰 섬인 釣魚嶼(대부분 '釣魚島'와 병용하며, 이하 조어도로 통일)에서 유래한다. 조어대는 尖峰처럼 돌출(해발 383m)되어 20~30km의 거리에서도 볼 수 있으며, 北小島·南小島·黃尾嶼 또한 모두 100m가 넘는 암석이 돌출되어 있어서 예로부터 해양항로의 지표로 작용하여 왔다. 서양인들은 釣魚台의 높은 고봉이 솟아 있는 탑처럼 보인다 하여 Pinnacle Islands라 칭(영국 해군 표기)하였으며, 일본은 도

서 분쟁이 제기된 이후 명칭상의 동일성을 피하기 위하여 尖閣列島(Senkaku Islands)라 칭하고 있다. 조어대에는 1978년 일본청년사(日本青年社)가 조어도에 설치한 등대(1988년 수리)와 1996년 북소도에 설치한 높이 5.6m, 무게 210kg의 등대가 있음. 등대는 2005년 일본 해상보안청 제11관구 해상보안본부가 관할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조어대 부근의 해역은 대만 북부의 쑤룽(基隆)·이란(宜蘭) 지역 어민들에게 주요 어업활동지였다. 대만 어민들은 장기간 조어대 부근에서 작업을 하였고, 바람을 피하기 위하여 혹은 淡水의 보충이나 海鳥蛋(바닷새 알)을 줍기 위하여 조어대에 상륙하곤 하였다. 이는 해류가 조어대 부근의 해역에서 풍부한 漁場을 생산하기 때문인데, 동중국해 대륙붕 해역에는 600종 이상의 어종이 분포하고 있으며, 산업적 가치를 가지는 것은 102종이고, 어류는 92종, 갑각류 5종, 연체류 5종 등으로 분류되고, 산업량이 가장 많은 10가지의 어종은 년평균 전체 어획량의 70%이상을 점하고 있다. 조어도와 黃尾嶼 그리고 南小島에는 류머티즘과 고혈압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약초(海芙蓉)가 생산됨으로 인해 어민들은 약초채취를 위해 상륙하곤 하였다.

어족자원 외에, 동중국해를 포함하여 중국 주변에는 약 89.6만km²에 달하는 10개의 대형 침적분지가 발달하고 있는데, 이들 해역에는 약 240억 톤의 석유와 1조 4천억m³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사실은 동북아 국가의 동중국해 자원 탐사 혹은 대륙붕 확장 경쟁 촉진은 1969년 ECAFE (UN Economic Commission for Asia and the Far East)의 CCOP (Coordination of Joint Prospecting for Mineral Resources in Asia Offshore Areas) 지원으로 수행된 Emery 보고서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및 한국 등 12명의 지질학자는 동중국해와 황해에서 6주간의 지구물리 탐사를 진행하고 1969년 그 연구결과를 당시 연구를 주도하였던 Emery의 이름으로 발표하였는데, 이 보고서를 일반적으로 “Emery Report”라 부른다. Emery보고서는 대만과 일본사이의 동중국해에 세계최대의 석유자원에 매장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낙관적인 평가를 함으로서 연안국의 비상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는데, 해당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음 :

본 지역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생성에 가장 유리한 부분은 바로 대만 東北方의 20만km²의 구역이다. 해당 지역의 침적물의 두께는 2km를 넘으며, 대만부근에서는 이것이 9km에 달하게 되는데, 그 중에 5km 두께의 신생대 3기에 해당하는 침적물이 있다. 대륙붕층 아래에 침적물은 대부분 모두 제3기 岩層에 속한다고 보여진다. … 일본과 한국 및 대만에서는 거의 모든 육지상의 석유와 가스는 제3기의 岩層에서 생성된다. 대만과 일본 간의 대륙붕층은 세계 석유매장량에서 가장 풍부한 지구중의 하나일 가능성이 극히 농후하다.

Emery 보고서 발표 이후, 우리나라가 7개의 광구를 설정한 것을 비롯하여 대만이 5개, 일본이 4개, 일본 반환前 오키나와 行政府가 설정한 1개 등 모두 17개의 광구가 설정되었는데, 이중 4개를 제외한 13개의 광구는 상호 중첩된 형태로 설정되었다.

자원 외에, 조어대 주변수역은 중국의 대양진출 정책, 일본의 대중국 방어정책과 연계하여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일본에게 이 지역은 러시아 극동함대의 이동통제 및 〈페르시아-인도양-말라카해협-동지나해-일본열도〉로 이어지는 일본 석유 수송로의 요충지이며, 대만의 경우, 조어대는 대만이 미국과 중국 세력의 완충지대로 조정역할을 견인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일본의 경우, 일본해상 航路는 혼슈(本州)에서 유구군도와 대만 東西線에 이르고, 필리핀의 西南群島 航線에 이르는 두 개의 열도선(列島線)이 있는데 조어대는 그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 즉, 조어대는 경제영역과 방위권을 확장하기 위한 南向戰略의 필수 전초기지로써 역할을 하여야 하며, 동시에 일본은 조어대의 남쪽 경계획정이 가지는 전략적 가치를 고수할 중요한 근거지로 작용한다. 중국의 경우, 이미 해안방어 혹은 근해 작전에서 광역방어와 원양 작전으로 전환하였는 바, 해군의 전략 또한 近岸방어(100해리)에서 近海방어(200해리)로 이를 조정하고 있으며, 괌(Guam)을 이서(以西)로 하는 해군강화의 목표로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조어대 분쟁은 섬에 대한 전통적 가치보다는 새로운 UNCLOS 질서하에서 가져올 수 있는 관할해역 창출과 막대한 경제적 가치에 기인한다. 그러나 갈등의 심각성은 동중국해가 그 자체로 동북아 국가 모두에게 국방안보와 경제교통의 핵심 요충지의 길목이라는 점, 조어대는 바로 각국의 해군이 遠

洋을 취하고 서태평양으로 진출하는 중요한 요도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경제적 가치로서의 중요성과 함께 주변해역을 둘러싸고 대만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라는 당사국간 군사 방위적 관계가 복잡하게 함께 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어대 갈등은 예기치 않게 외교 및 경제적 조치 이상의 상황으로 연계될 수 있다. 특히 조어대는 미국에게는 오키나와(沖縄)와 함께 중국을 겨냥할 수 있는 중요한 해상거점으로 작용하고, 중국은 해상방위와 해상교통 등 조어대가 주변국의 방위범위에 들어감으로써 가지는 국가 위험요소를 배제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여야 하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Ⅲ. 중국의 도서정책과 해양공간의 가치

1. 중국의 도서현황

중국은 大洋을 연접하고 있지는 않으나 육지와 인근 도서를 포함한 긴 해안선을 따라 연근해에 크고 작은 도서가 산재되어 있다¹. 중국의 도서자원 종합조사에 의하면 중국 전역에 500m² 면적 이상의 도서는 약 6,961개²에 이르며, 이중 유인도서는 약 433개, 무인도서는 약 6,528개이며, 면적이 500m²이하의 도서와 암초는 만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된다.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약 58%의 도서와 암초가 동중국해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28%가 남중국해, 약 14%가 황해와 발해에 위치하고 있다. 전체 도서중 무인도서가 약 94%를 차지하나, 총 면적은 전체 도서 총면적과 비교하여 볼 때 약 2%에 불과하다³. 더욱이, 이들 무인도서

1 중국의 해안선은 북한의 압록강 입구에서 남단 북창(北倉)하구까지 약 18,400.7km에 달하며, 각 해역별 대륙해안선의 길이는 발해 지역이 약 2,500km, 황해는 4,363.3km, 동중국해는 약 5,745.1km, 남중국해는 5,792.3km로 기록되고 있다. 1980년대 들어서 행한 전국 해안지대 조사와 1990년대의 전국 해도(海島) 자원조사에 의하면, 홍콩과 대만 그리고 마카오의 해안선 길이를 합할 경우 중국 해안선의 총 길이는 약 36,000km(대만을 제외하면, 34,243km)에 이른다. 1975년 6월 5일, [國務院發 197, 78號文件].; 권문상·박성욱·양희철, 『중국 해양관련법령 이해』, (서울: 삼신, 2008), p.12.

2 해남도는 섬으로 간주하지 않았으며, 기록에는 대만과 홍콩 및 마카오 등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이다.

는 절대 다수가 대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고 교통이 불편하며, 면적이 협소하고 자원생산량과 생활조건이 열악하여⁴, 개발이나 이용보다는 영토(관할권) 확보와 국방적 측면에서 활용되거나 방치되어 왔다.

중국에서 도서 정책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비교적 근래의 일이다. 주요 원인으로서는 주변국과의 영유권 분쟁이 있는 도서의 자원 및 국방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장기화되고, 중국의 국내 경제성장에 따라 도서와 그 주변수역을 이용한 경제적 활용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경제적 혹은 자원 가치 외에 국내법의 미비로 인해 도서 난개발과 관리 소홀이 야기한 생태계 파괴 및 도서 소실 현상 역시 국내법 제정의 증대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예컨대, 아래에서 설명하는 2009년 <도서보호법>은 관할권 확장에 대한 오해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아래 표(표 4 참조)에서 적시하는 바와 같은 “도서의 무질서한 개발과 생태계 파괴, 도서 감소”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 주요 입법 취지였다.

물론 상기와 같은 법제정 배경 및 취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도서정책 추진의 근간에는 도서가 갖는 근본 가치, 즉 자연자원으로서의 가치, 생태 경제학적 가치, 과학 연구의 가치, 군사이용 대상으로서의 가치, 해양영토 및 관할권 확장을 위한 권익 수호로서의 가치가 내재되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⁵. 더구나 중국이 동북아 및 세계 정세에서 차지하는 정치군사적 영향력으로 인해 중국의 도서정책은 사실 국내적 환경에 대한 대응이라기 보다는 국제적 정치환경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예컨대, 중국이 마주하고 있는 황해, 동중국해, 남중국해는 각각 중국의 국내경제의 확장, 관할권 확장, 영유권, 대양진출을 위한 중요한 교두보 이면서, 수세적(守勢的) 환경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교적 협상 대상이라기 보다는 제해권 확보를 위한 절대적 대상(표5참조)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3 권문상·박성욱·양희철, 『중국 해양관련법령 이해』, (서울: 삼신, 2008), p.13.

4 劉容子·齊連明, 『我國無居民海島價值體系研究』, (北京: 海洋出版社, 2006), pp.3-4.

5 郭院 等 編著, 『海島法律制度比較研究』, (青島: 中國海洋大學出版社, 2006), pp.4-5 ; 劉容子·齊連明, 『我國無居民海島價值體系研究』, (北京: 海洋出版社, 2006), pp. 4-6. ; 中國人大홍페이지, “海島保護法草案已提交全國人大常委會,”(2007.1.16.); 中國海洋報(<http://www.coi.gov.cn/oceannews/2004/hyb1285/12.htm>).

2. 중국의 도서정책

중국의 도서정책은 한동안 국가해양국이 민정부 및 총참모부와 연합하여 공포 시행한 <무인도 보호 및 이용관리에 관한 규정(無居民海島保護與利用管理規定), 이하 ‘規定’>이 유일하였다⁶. 그러나 이는 도서정책 전반에 관한 것이 아니고, 무인도서의 생태환경 및 국가의 해양권의 수호가 중요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생각건대 해당 <規定>은 중국의 법제상 법률에 해당하지 않고, 법률보다는 하위 단계인 행정법규에 해당한다는 점과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화와 도서 활용정책을 적절히 반영하는 데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⁷. 따라서 중국정부는 2009년 12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통해 <중국도서보호법(中國海島保護法), 이하 ‘도서보호법’이라 함>을 제정·공포하였는 바, 이 법은 2010년 3월 1일부로 정식 시행되고 있다. 단, 도서보호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2003년의 <규정>은 폐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중국도서보호법은 기존의 <규정>이 무인도서와 영해기점소재 무인도서의 보호를 주요 대상으로 한 것이 비하여, 유인도서와 무인도서, 특수용도의 도서(特殊用途海島)를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다. 더구나, 도서보호법은 ‘특수용도 도서’의 대상을 “영해기점 소재 도서, 국방용도 도서, 해양자연보호구역 내의 도서” 등으로 구체화(표 6 참조)하고⁸, 이들 대상 역시 <규정>보다는 확대된 유인도와 무인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

[표 1] 중국의 <규정> 과 도서보호법 상의 특수용도 도서 범위

	規定		해도보호법
특수용도 도서	영해기점 소재 무인도서	⇒	영해기점 소재 도서
	특수한 보호 가치있는 무인도와 그 주변해역의 해양(특별)보호구역	⇒	특수한 보호가치 있는 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해양(특별)보호구역
	-	⇒	국방용도의 도서

⁶ 2003년 國海發(2003) 10號로 공포되었고,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⁷ 중국의 해양관련 법령에 대한 구체적 이해는 양희철(梁熙鎭) 외 3인, 2009, 「중국 해양관련 법령의 발전과 입법체계에서의 지위 및 해석」, *Ocean and Polar Research*, Vol. 30(4), pp.427-444. 참조.

⁸ 중국 도서보호법 제3장 제4절.

한편, 중국의 도서보호법은 제정 과정에서 국가가 매 20년마다 도서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나⁹, 계획에 관한 구체적 기한은 사실상 다른 관련 법령을 통해 규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¹⁰ 최종안에는 삭제되었다¹¹. 또한 초안에서 제안되었던 《국가 - 省級 - 市級 - 鎮級 - 縣級 - 무인도서보호이용계획》의 6단계 도서보호계획 수립을 5단계(무인도서보호이용계획 삭제)로 축소하여 반영하고¹², 그 내용 역시 개략적 내용만을 언급하고 있다¹³. 물론 이들 도서보호계획은 도서와 그 주변수역 생태계 보호 및 개선, 도서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¹⁴. 또한 도서보호계획은 중국 정부사회경제발전계획 및 지방정부의 〈중국성향계획법(中國城鄉規劃法)〉과 연계되어 추진되며, 전국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과 밀접한 연계를 갖도록 하고 있다¹⁵.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의 〈도서보호법〉과 관련하여 소위 “해양권익(海洋權益)”이라고 총칭되는 용어의 함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도서보호법〉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이 “도서와 그 주변수역 생태계를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이용함으로써 국가 해양권익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¹⁶, 주변국과의 영유권 및 관할권 확장을 둘러싸고는 여전히 적용상의 갈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중국의 해도보호법은 그 제정과정에서 법안의 취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그 핵심 논쟁에는 주변국과의 영토 및 관할권 갈등에 대한 법안의 태도와 관련된다. 예컨대, 중국 전인대(全人大) 상무위원회 일부 위원들은 2009년 제9차 회의과정에서 법안(法案)이 도서의 생태계 보호에 중심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영토 안전 확보에 관한 法案이라는 오해를 준다는 점을 고려, 법안 명칭을 〈도서생태계보호법(海島生態係 保護法)〉으로 개칭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¹⁷. 더욱이, 초기

⁹ 중국도서보호법 초안 제8조 제2호.

¹⁰ 중국 人民代表大會 홈페이지(www.npc.gov.cn, 2009.12월 22일).

¹¹ 중국도서보호법 제8조.

¹² 중국도서보호법 초안 제8조에서 제16조.

¹³ 중국도서보호법 제8조에서 제15조.

¹⁴ 중국도서보호법 제8조 제2단.

¹⁵ 중국도서보호법 제9조.

¹⁶ 중국도서보호법 제1조.

법안은 당초 ‘특수용도의 도서’의 범위에 “국방용도의 도서”를 포함하고 있지 않았으나, 제2심 과정에서 “국방용도의 도서”가 해당 범주에 추가되고 있다는 점¹⁸, 중국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영해기점 소재 도서”와 “국방용도 무인도서”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은 동중국해 센카쿠열도(중국명: 조어대) 및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관할권 확대 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리라 본다. 더욱이, 중국의 경우 해양 및 도서의 이용과 관리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군(軍)’의 의사가 여전히 절대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영해기점과 군사적 용도의 지역(도서, 해역)에 대한 법률상의 연계성 확보는 보다 강한 대외적 정책 실현으로 가시화될 수 있다.

이미 중국은 내부적으로 해양권익 확대를 위한 해군력 증강을 표방한 바 있으며, 2009년 5월에는 외교부에 ‘경계와 해양사무사(邊界與海洋事務司)’를 설립하여 영유권 및 관할권 분쟁에 대한 대외교섭 임무를 전담토록 하였다는 점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¹⁹. 이는, 중국의 도서보호법의 주요 추진 동기가 “생태계 보호를 위한 도서와 주변해역에 대한 계획수립, 모니터링, 보호 및 관리 정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 해안선 변경과 영해기점 망실 ; (2) 부분 영해기점 도서의 침식으로 인한 훼손 위험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과 “(3) 도서 주변해역의 자원과 에너지”등의 수요에 따라 언제든지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획정, 영유권 분쟁 도서에 대한 적극적 관리정책으로 확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도서보호법〉 제정의 주요 동기가 생태환경과 무인도서의 불법점용에 따른 도서의 감소에 있다는 점과 도서 관리를 목적으로 도서에 대한 조사, 모니터링, 보호, 관리, 개발을 시행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잠재된 갈등 요소(도서)가 환경변화에 따라 표면화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내재되어 있다. 예컨대, 중국의 관할권에 관련된 특수용도의 도서에는 중국이 선포한 77개 영해기점(領

17 중국 人民代表大會 홈페이지, “分組審議海島保護法草案發言摘登(一)”(www.npc.gov.cn, 2009. 7월 24 일). 현재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이자 중국 전인대 위원인 고지국(高之國) 박사 역시 법안의 명칭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다.

18 중국 人民代表大會 홈페이지(http://www.npc.gov.cn/huiyi/cwh/1111/2009-10/27/content_1523389.htm) 참조.

19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fmprc.gov.cn/chn/pds/wjb/zjzg/bjhysws/>). 경계와 해양 사무사는 육지 및 해양경계획정, 해양관련 대외정책 조정, 해양의 공동개발 등의 문제에 관한 외교 협상 업무를 담당한다.

海基点) 소재 도서와 영해 기선점(領海基線点), 중력점, 천문점, 수위점, 전지구 위성 위치 통제점 등의 시설과 표식(標式)이 설치된 도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즉, 법이 해양에너지와 어업자원 보호를 위한 낙도와 주변해역 EEZ에 대한 자원 권익 보호 정책으로 구체화될 경우 동중국해 센카쿠열도(조어대), 남중국해 도서(암초)에 대한 영유권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특히, 2009년 미국 해군 조사선의 2차례에 걸친 중국 EEZ 진입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²⁰, 중국의 관할해역 및 해도 보호를 위한 군사행동을 동반한 정책 수위는 보다 보수적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영해기점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이 2003년 제정한 행정규칙인 〈規定〉과 〈도서보호법〉이 규정하는 영해기점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치다. 〈規定〉이 ‘무인도’의 범위를 “중국 관할 해역내에서 영주 가구의 거주지가 아닌 도서·암초·저조고지 등을 말한다”라고²¹ 정의하고 있는데 반하여, 도서보호법은 ‘저조고지(低潮高地)’가 도서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면서도²² ‘저조고지’가 ‘무인도’의 범위에 포함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²³. 그러나 해당 법에서 ‘도서’의 정의가 “고조시(高潮時) 수면보다 높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으로 규정되고 있고²⁴, 저조고지를 “저조시 사면이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고, 수면보다 높으나 고조시 몰입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조고지’를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대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도서보호법에도 불구하고 2003년 규정(행정법규)이 여전히 발효중이고 저조고지에 대한 중국의 정의와 태도는 여전히 불명확하며, 도서보호법 제56조가 “저조고지의 보호와 관리에 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2003년 규정상의 저조고지에 대한 보호 이

²⁰ 예컨대, 2009년 3월 8일 미국 Impeccable호는 중국 해남도 남쪽 120km에서 해양관측 임무를 수행하던 중 중국 정보함 1척을 포함한 선박 5척의 저지를 받은 바 있으며, 동년 5월 1일에는 미국 해상수송사령부 소속 해양관측선 USNS Victorious호가 황해에서 관측활동을 수행하던 중 중국 어선 2척에 의해 저지를 받은 바 있다.

²¹ 중국 무인도보호 및 이용관리에 관한 규정 제34조 제1항.

²² 중국 도서보호법 제56조.

²³ 중국 도서보호법 제57조 제3호.

²⁴ 중국 도서보호법 제2조.

상의 의미로 해석될 것임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즉, 중국이 ‘무인도’의 범위에 저조고지와 주변수역을 포함하여 해양경계획정에 대비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으며, 필요시 해양보호구역 혹은 별도의 보호 조치를 통해 국제법상의 안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행동으로 연계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진다.

이 외에, 기타 중국의 도서관련 법률로는 <해역사용관리법>과 <해양환경보호법>이 있으나, 전자는 영해 내측 해역에 대한 이용과 관리에 관한 법이라는 점, 후자는 중국 관할해역 내의 해양환경 보호와 생태균형유지를 규정하는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도서 정책을 연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물론, 후자의 <해양환경보호법>이 “도서개발과 그 주변해역의 생태계보호”를 규정하는 내용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²⁵, 이 역시 일반적이고 원칙적 규정에 불과하다.

Ⅳ. 중국 직선기점 및 직선기선 분석

총 49개의 영해기점으로, 서사군도에 대하여는 총 28개의 영해기점으로 구체화되었다. 이중 한중간 황해 경계획정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는 제1번에서 제13번까지의 기점이며, 미국 국무성 보고에 의하면 대부분의 기점이 UNCLOS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²⁶. 우리나라는 적어도 중국의 직선기점 제9번(麻菜珩, Macaiheng), 제10번(外礁脚, Waikejiao), 제12번(海礁, Haijiao), 제13번(東南礁, Dongnanjiao)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외교적 입장을 중국측에 통보한 바 있다고 알려 진다²⁷.

미국 국무성 보고서에 의하면²⁸ 중국이 설정한 제1번 내지 제13번 영해기선의 일부 해안은 만구 봉쇄선을 과잉 적용하거나 해안의 단조로움에도 불구하고 직선

²⁵ 중국해양환경보호법 제2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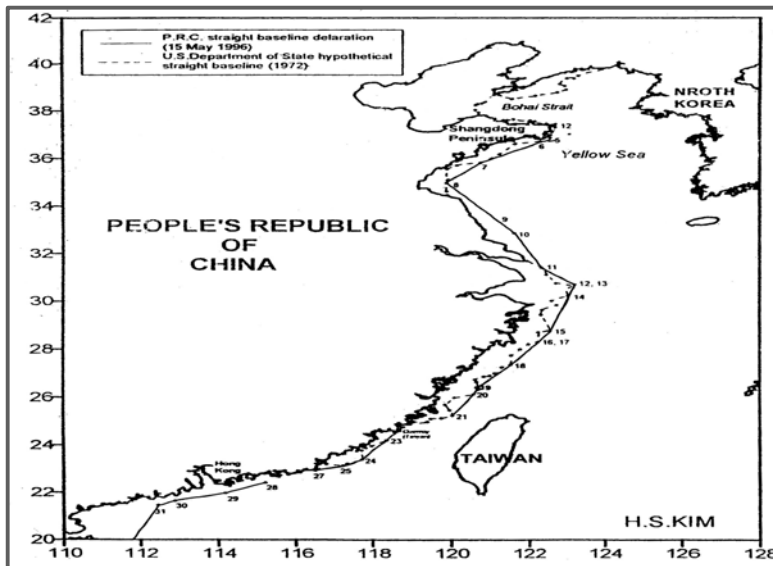
²⁶ US Department of State, Straight Baseline Claim: China, *Limits in the Seas*, No 117 (1996)참조.

²⁷ David Chen, "Baselines for Territorial Waters", *Window* (May 24 1996), p.28. 최낙정, 『한일어업협정은 파기되어야 하는가』, (서울, 세창출판사, 2002), p.218.

²⁸ US Department of State, Straight Baseline Claim: China, *Limits in the Seas*, No 117 (1996), p.6.

기선을 적용한 사례, 해안의 일반적 방향에서 일탈 도서 혹은 간출지에 기점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협약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⁹. 중국이 설정한 직선기점은 미국 국무성이 1972년 설정한 가상 기점³⁰과 비교하여 상당한 변곡점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들 변곡점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점들이 영해의 폭을 넘어서 존재하는 간조노출지를 포함하고 있거나 해안의 일반적 방향에서 일탈하여 설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영해기점 제6번에서 제8번은 총8개의 변곡점으로 구성될 수 있는 해역을 단순화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이들은 직선기선 방법을 적용할 만큼 중국 연안을 따라 “아주 가까이 섬이 흩어져 있는 지역”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 각각의 기점 역시 “a fringe of islands”에 해당되는 도서군으로 함께 고려될 만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중국의 직선기점 중 한중간 해양경계획정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소로는 제



[지도 1] 중국의 직선기점 및 직선기선

9번과 제10번, 제12번과 제13번이다. 제9번과 제10번이 인정되었을 경우 우리는 약 5,671km² 면적에 대한 손실을 입게 되며, 제12번과 제13번이 인정될 경우 약 3,635km²의 면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³¹.

중국 강소성(江蘇省) 염성시(鹽城市) 근해 약 80km 거리에 위치하고

²⁹ Ibid.

³⁰ The Geographer, Bureau of Intelligence and Research of the Department of State, "International Boundary Study Series A, Straight Baselines: People's Republic of China", *Limits in The Seas* No 43 (1972) 참조.

³¹ 면적은 한국해양연구원 상륙수프로그래프 UTM 52 좌표계상에서 계산되었다.

있는 제9번과 제10번 기점은 연안에 잘 발달된 사주(沙洲)에 설정되었는데, 이들 기점이 영해 폭을 넘어서 존재하는 간조노출지, 혹은 수중 모래톱으로 의심된다는 점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중국이 설정한 제9번과 제10번 기점은 수중 사주(沙洲)이거나, 설령 불규칙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난다고 해도 연중 대부분이 수중에 있는 간출지(干出地)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당 문제는 간조노출지의 법적 지위 문제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제9번 기점은 수중 약 1.2m에서 1.5m 사이의 수중 사주에, 제10번 기점은 약 1.0m에서 1.6m 정도의 수중 사주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의할 것은 중국이 최근 제9번과 제10번 기점에 등대와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여, 영해기점으로서의 법적 타당성과 해상안전을 위한 시설물의 기능적 역할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 의하면, 중국은 최근 제9번 마채형에 등대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제10번 외각에는 2002년 설치한 기상관측시스템(2008년 자동화 관측 시스템으로 전환) 외에 2009년 등대사업에 대한 검수와 관리부서를 지정하는 작업을 완료한 바 있다. 이들 기점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중국 외교부가 투자하고, 인민해방군 동해함대 항해보증처가 실시하였으며, 시설은 10개의 강철 말뚝, 기반은 철골콘크리트 방식을 활용하였고, 등대 본체는 철골콘크리트의 통관 구조로 높이 약 25m에 이른다. 이러한 건축방식은 해당 지형물의 약 50m 범위가 모두 연약한 지반구조로 형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된다.

상술한 제9번과 제10번 지형물의 위치와 지리적 특징으로 보건대, 이들을 직선기점 혹은 영해측정을 위한 기점으로 활용하는 데는 협약 및 판례 분석 상 상당한 도전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협약 제7조 4항의 “등대나 이와 유사한 시설”의 조항을 들어, 이들 지형물에 설정된 등대와 기상관측시설, 송신탑 등으로 직선기점 혹은 영해를 측정하기 위한 기점으로서의 적법성을 논하기에도 여전히 설득력은 부족하다. 특히 강소성 염성시 해안에서 이들 기점까지 약 80km의 해안에는 발달된 수중 사주의 존재가 있을 뿐 이들을 연계할 도서나 암초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이들을 기점, 더욱이 직선기점으로 설정하는 것은 협약 위반이 아닐 수 없다. 제9번과 제10번 기점에 이르는 동안 연계 사주에는 간헐적으로 송신탑과 같은 시설물이 존재할 뿐이며, 이들의 존재가 협약의 규정을

달리 해석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현재 중국이 강소성 앞바다에서 진행중인 방파제 및 항만공사 시설과 관련하여서는 관심있게 주시할 필요가 있다. 강소성 염성시 왕항(王港) 입구에 신설중인 방파제는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보이며, 해당 방파제에서 바다쪽으로 상당 거리 동안 뻗어 가면 건축중인 항만시설은 여전히 한중간 해양경제획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접근은 제9번과 제10번 기점에 대한 대체적 기선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중국 영해기점에서 우리의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제12번 기점과 제13번 기점이다. 이들 두 기점은 상해 연안에서 약 69.9해리 위치해 있으며 무인도서로 알려져 있다. Allen과 Mitchell과 같은 학자들은 해초(Haijiao)와 동남초(Dongnanjiao)가 해안선의 일반적 방향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Jeanette Greenfield 교수는 이러한 비판이 단순한 거리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으로 해안선의 일반적 방향이나 근접성 요건을 판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여 중국측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³². 즉, 해당 기점에 대한 판단은 다른 연안의 섬들 및 육지 해안과의 관계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Greenfield 교수가 주장하는 근거에는 1951년 ICJ의 “육지와 바다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구획선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는가(constitute a clear dividing line between land and sea)”³³라는 판결처럼 중국 본토의 해안에 있는 무수한 섬들의 존재로 인해 명확하게 구분선이 없다는데 근거하고 있는 듯 하다. 즉, 1951년 판결과 같이 중국 연안과 같이 섬 조각으로 흩어져 있는 지리적 환경은 직선 기선 방식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논리이다.

이 외에 중국이 대륙 연안에 설정한 직선기점간 거리가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총 48개의 기선중에 24해리를 초과하는 기선은 총 25개 지역으로, 이들 평균 길이는 36.3해리이며, 가장 긴 것은 제8번 기점과 제9번 기점간 121.7해리로 나타난다. 직선 기선의 길이에 대하여는 협상상의 규정은

³² Jeanette Greenfield, 1992. *China's Practice in the Law of the Sea*, New York : Clarendon Press, p.69.

³³ ICJ Reports (1951), paras.127-129.

없으나, 최대 15해리 내지 48해리라고 하는 주장³⁴과 최대 24해리에서 48해리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으며³⁵, 미국은 최대 24해리로 주장하고 있다³⁶. 그러나 이들 기선의 길이는 단지 학자들의 학설과 일부 국가의 주장 혹은 이의 제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영해기점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논리적 증거를 제시하거나 혹은 아국의 전략적 영해기점을 선정하여 양국간 상쇄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으리라 본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직선기선은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기선설정 요건에 부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 해안을 직선기선으로 연결하여 부당 및 과도하게 자국의 내수 및 관할수역을 확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인접국 또는 대항국과의 경계획정시 상대국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이른바 형평한 경계획정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특히 기점의 효과를 줄 수 없는 무인사주 등을 기점으로 사용한 점, 해안에서 상당히 원거리에 있는 무인사주를 기점으로 선정한 점, 과도하게 직선기선의 길이를 설정한 점 및 자국의 완전한 주권하에 있지 아니한 도서에 대하여도 직선기선을 설정하여 해양수역 측정의 기초로 한 점 등이 대체적으로 현행법과 일치하지 않는 부당 또는 불법한 중국의 직선기선 내용으로 보인다.

즉 직선기선을 적용할 수 없는 지역에서 직선기선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기점번호 6-11번까지의 해안은 해안선이 심히 굴곡하고 만입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연안에 근접하여 일련의 도서가 산재하여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통상기선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지역에서 해안선이 어느

34 Daniel J. Dzurek,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traight Baseline Claim", *Boundary and Security Bulletin*, Vol.4(2), p.85.

35 J. Ashley Roach and Robert W. Smith, 1996. *United States Responses to Excessive Maritime Claims*, Boston/Hague/Cambridge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p.64 ; Robert D. Hodgson and Lewis M. Alexander, "Towards an objective analysis of special circumstances: bays, rivers, coastal and oceanic archipelagos and atolls", *Law of the Sea Institute Occasional Paper, No.13* (1971), p.8;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Bureau of Oceans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nd Scientific Affairs. *Developing Standard Guidelines for Evaluating Straight Baselines, Limits in the Seas No. 106* (1987) 참조.

36 US Department of State, 1995. Dispatch Supplement. *Law of the Sea Convention, Letters of Transmittal and Submittal and Commentary*. Vol. 6. p.8.

정도 굴입된 지역이 있으므로 연안에 근접하여 직선기선을 일부 사용할 수는 있다.

V. 우리나라의 중국 영해기점 대응 방향

1. 대응 방안

1) 중국에 대한 지속적 이의제기 필요성

인접국가의 직선기선 설정에 대해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대응하지 않으면, 국제법상 이를 묵인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1951년 영국-노르웨이간 어업분쟁 사건에서 노르웨이가 직선기선을 채택한 1867년 및 1889년 법에 대하여 영국이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은 노르웨이의 직선기선 사용을 묵인한 것이고 이에 따라 노르웨이는 상기 법의 직선기선을 이어받은 1933년의 “어업수역법”을 집행할 국제법적 권리를 지닌다고 판시(1951.12.18.)한 것을 보면 묵인의 효과를 국제법원이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중국이 직선기선을 기점으로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협의시 이를 기초로 자국 해양수역을 주장할 경우에 대비, 우리는 중국의 직선기선 그 자체에 대하여 국제법상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명백한 이의를 제기하여 향후 중국과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협상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표 2〕 중국의 본토와 해남도간 기선

길이 (nm)	개수 (%)
24마일 이내	23개 (18%)
24.1마일~48마일	9개 (19%)
48.1마일~100마일	13개 (27%)
100마일 이상	3 (6%)

출처: US States Department, Limits in the Seas, No.117, Straight Baseline Claim: China, July 9,1996, p.4.

관련 국가의 이의제기 현황을 보면, 미국은 1996년 8월 21일 중국정부에 대한 외교공한으로 중국의 직선기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며,³⁷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정부에 대해 이의 제기(인도네시아는 Paracel Islands의 “군도수역” 지위문제에 대해, 베트남은 중국의 Paracel Islands, Spratly Islands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였다. 영국은 EU 개별회원국 또는 이를 대표한 EU 트로이카가 중국 직선기선에 대한 EU의 입장을 중국측에 전달한바 있다.

2) 이의제기의 형식과 내용

중국의 경우 중·일간 조어도 분쟁추이를 보아 적절한 시기나 기회에 이를 시행해야 할 것인 바, 이의 제기 내용으로 아래 사항을 포함할 것이다. 즉, 중국의 직선기선중 국제법상 요건을 불충족하는 직선기선 지적하고; 중국이 발표한 영해기점이 EEZ나 대륙붕 경계획정의 기점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밝힌다.

국제사법재판소는 1985년 리비아-몰타 사건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연안국에 의해 결정된 기선 그 자체가(per se) 그 국가에 속한 대륙붕의 면적을 계산하기 위한 점들과 같은 것(identical)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면서 형평의 이유를 들어 몰타가 영해직선기점으로 사용해 온 Filfla섬(무인도)을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무시한바 있다.

그러나 대중국관계 전반을 감안, 가급적 문제가 비화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며, 해양법협약의 이행과 관련 이의제기 사실은 유엔에 통보하는 것이 국제관례임을 고려하여 유엔해양법당사국회의나 국제수로기구(IHO) 해양법자문위원회(ABLOS) 등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

2. 중국이 우리의 직선기선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시 대응방안

먼저 1978년 9월 20일부터 시행되어 온 우리의 직선기선에 대해 중국이 이의를

³⁷ US States Department, *Limits in the Seas*, No.117, 'Straight Baseline Claim: China', July 9, 1996, pp.4-8 참조.

제기한 바 없음을 강조함을 국제법상 묵인의 효과를 근거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1978년 영해법 시행령에 따라 굴곡이 심하고 일련의 섬이 복잡하게 위치하고 있는 영일만, 울산만 및 남해안과 서해안 일대에 23개의 기점을 택해 직선기선 설정한바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직선기선에 대한 국제법상 정당성을 설명해야 하는 바, 흑산도와 홍도가 본토로부터 각각 66해리, 58해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에 대한 정당성으로, 소흑산도 및 홍도 주변에는 조그만 섬들이 산재하여 이 두섬은 주변의 섬들과 일련의 섬을 이루고 있으며(a fringe of islands 요건충족), 이 두섬이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도 동 기점을 지나는 기선은 해안선의 일반적 방향과 일치함(convex shape)을 강조한다.

우리나라의 직선기선 기선도 그 길이가 무려 60해리에 달하는 곳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정당성 문제에 관하여는, 직선기선의 합리적 길이에 대해 국제적으로 수락된 명백한 규칙이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는 중국 직선기선 중 그 길이가 최대 123해리나 98해리에 달하는 곳이 있으며 이것이 국제법상 요구되는 ‘합리적 한계’를 벗어난다고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³⁸

VI. 결론 및 제언

중국의 직선기선제도는 해안의 일반적 방향을 유지하고 있지 않으며, 양쯔강 델타 북쪽 해안은 심히 굴곡하거나 도서가 산재하여 있지도 않다. 이들은 중국 기선체제에서 가장 긴 부분으로 그 길이가 186~227km나 된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중국 해안의 지리적 조건을 이유로 직선기선방식이 유일하게 적합한 방식이라는 것은 해양법상 정당화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국 해안선은 노르웨이 해안과 같은 특징이나 굴곡이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동쪽해안에서 양쯔강까지 중국해안의 바로 인근에 산재한 도서도 없다.³⁹

³⁸ 우리나라의 직선기선 중 소흑산도-절명서간 길이는 60.3해리

³⁹ *Ibid.* 국제사법재판소는 “기선선택의 진짜 문제는 동 기선 내측수역이 내수제도에 따르도록 충분히 육

해양자원에 대한 무질서한 쟁탈전을 제도적으로 규제하고 전인류의 해양공동 이익을 위한 종합적인 해양관리를 위한 목적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이 탄생되었으나 각국은 동 협약의 미비 또는 허점을 이용하여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자국에게 유리한 해양관할권을 주장하여 오고 있으며 해양영토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합의에 의한 해양관할권 문제의 해결이 대단히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반도 주변국가의 하나인 중국도 그 예외는 아니어서 자국 해양수역의 폭을 결정하는 데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직선기선을 국내법으로 과감히 선포하여 시행을 하고 있는바, 이들 관련 내용이 유엔해양법협약의 규정을 일탈하여 설정·적용하여 옴에 따라 그 직접적 이해 당사국과의 해양경계획정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중국의 일방적인 직선기선 설정 및 시행은 국제사회의 규범인 해양법협약과도 상당히 많은 부분 일치하고 있지 않으며,⁴⁰ 특히, 중국의 직선기선을 우리가 그 대로 수용한다면 중국과의 황해에서의 경계획정협상에서도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중국과의 서해에서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이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수역을 중국측에 양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중국의 이러한 부당·불법한 행위에 대하여 좀더 신중하고 강력한 대처가 요망되며 또한 동 문제는 고도의 법률적 문제이므로 자칫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한·중간의 외교적 감정대립이 되지 않도록 정치적 접근이 아닌 법률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

그러나 직선기선제도의 불명확성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의 법 개념은 국제법의 일부로 승인되고 있으며, 특히 직선기선제도는 기선제도의 본래 기능인 통상기선 제도를 보완하는 보조적 기능의 성격을 가진 기선으로 동 직선기선이 연안국에 의한 일방적인 해양관할권 확대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중국의 직선기선 설정이 우리의 해양관할수역에 직접적 영향을 초래

지역토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가에 있다"라고 하였다.

40 기점번호 6-11번까지의 연안에서는 통상기선을 적용하거나, 연안에 근접하여 제한된 직선기선을 사용해야 한다, 과도하게 직선기선이 남용된 경우에는 해양법협약 제7조의 요건에 부합하도록 직선기선을 재조정하여야 한다.

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함은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해양법협약 당사국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보여 진다.

이를 위해 즉, 잘못된 국가관행을 고치고 올바른 법 적용 및 이미 설정된 기점의 조정 등을 위하여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요청된다. 왜냐하면 각국의 일방적인 기선확장 현상이 계속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양법협약상의 분쟁해결제도를 이용, 중국의 직선기선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 할 수도 있으나 이는 분쟁 당사국인 중국이 분쟁해결 부탁에 합의하지 않으면 이의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이 방법은 현실성을 결여할 수도 있다.

결국 중국의 직선기선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동 기선의 불법성을 국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최대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동시에 동아시아 국가들이 안고 있는 해양에 관한 문제의 종합적 처리가 시급히 요망되므로, 특히 당사국간 사전합의 즉 분쟁의 사전 해결방식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기구나 관련 학자들의 공식적인 모임을 결성하여 이러한 조직에 분쟁해결을 위한 권고기능을 부여하여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는 방안이 제기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방법의 이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관계국이 응하지 않을 경우 중국이 이미 국내법으로 선포한 직선기선의 불법성은 더 이상 제기하지 않고 이를 향후 서해에서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확정협의를 외교적 leverage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즉 경계확정 협상에서 중국 직선기선의 불법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의 국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당사국 자신들이 유엔해양법협약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관할수역의 지나친 확장경쟁의식을 배제하고 양보와 타협의 자세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충돌이 되고 있는 해양에 관한 문제를 분쟁의 강제적 수단(분쟁의 사법적 해결)에 의해 그 해결을 유도할 수도 있으나 한·중 양국은 정치적 이해관계의 대립, 외교정책의 다변성 및 민족정서의 다양성 등으로 해양문제 해결에 있어 선천적인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음을 주지하여 제도에 의한 해결방식에 지나치게 집착하기 보다는 협상의 실현노력, 외교관계의 개선 및 관련 지역기구 등의 활용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법으로 사료된다.

또한 중국의 해양관할권 확장을 위한 해역조사와 데이터 축적, 해석은 장기적이고 구체적이며 전략적이다. 영해기점과 간조노출지를 포함한 해양관할권 확장에 활용되는 요소에 대한 정밀조사와 보전작업 역시 해양경계획정의 단계별 구체화와 기술적 검토에 대비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의 5개년 국가사회발전계획, 정부부처의 중장기 발전계획, 해역별 및 영역별 해역정밀탐사계획 등의 거시계획과 영역별 기술 및 정보구축 사업이 모두 이에 속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엔해양법협약은 그 전문을 통해 “해양의 여러 문제들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전체로서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여 합의하였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 새로운 해양질서는 연안국의 관할해역을 확대하고, 해양 전체의 종합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양이 지금까지와 같이 단순한 이용의 장소로 보는 것이 아닌 개발이용, 환경보호·보전, 안전보장 등의 여러 영역을 종합적·공간적으로 관리해 가는 시대로 전환된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의 해양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현재보다 확대 될 가능성을 포함하는 것이다. 해양경계획정이 각국에 부여하는 의미 역시 여기에 있다. 단순한 군사적 의미를 넘어 경제적 이익을 함께 내포하는 것으로, 해양경계의 확장이 곧 자국의 경제지도 확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원의 한계가 분명한 우리나라로서는 확고한 관할해역 수호의지와 함께 해양경계획정에 대비한 단계적 대응방안 수립이 요구되는 때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가지 방안을 제안해 본다.

먼저, 한중간 접근가능한 고려요소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와 함께 접근가능한 방법을 중심으로 하는 손익분석 작업이다. 본문을 통해 지적한 바와 같이, 한중간 황해 경계획정은 영해기점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서 결국은 중간선 방법을 활용하되, 국제판례에서 접근되는 삼단 접근법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대상해역을 지정하여 가상중간선을 도출하고, 이를 조정할 특별한 사정 혹은 유관사정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도출된 경계선이 양국의 대상해역 해안선 길이에 비추어 볼 때 형평한지를 검증하는 절차이다. 물론 중국이 이러한 접근 절차에 대하여 동의할 지는 의문이다. 중국이 주장하는 황해에서의

해양경계획정이라는 것이 “형평한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은 경계획정의 접근 방식에 있어서 가상의 중간선 도출보다는 “제반 고려요소”를 도출한 다음, 이에 대한 구체적 효과 경중을 부가함으로써 경계선을 도출하겠다는 접근 방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태도는 해양경계획정 수단의 합리성 혹은 투명성 보다는 모호한 협약의 경계획정 방식에 대한 자의적 여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 외에, 실무적 의의는 없다고 판단된다. 특히, 황해에서 양국의 기점에 대한 쟁의 외에 특별히 고려될 만한 요소가 없다는 판단되는 한, 각국이 의도하는 모든 고려 요소를 도출, 수치화 한다는 접근은 오히려 양국의 해양경계획정 접근과 해결 방법을 복잡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황해 해양경계획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목할 사항이 있다. 해역접근 방법에서의 최적 혹은 최대 관할권에 대한 고려다. 생각건대, 사실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황해 해양경계획정에서 양국이 주장하는 각각의 고려요소가 인정되었을 경우의 최대관할권은 해역 불균형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적용되기에는 제한적이다. 반면, 양국이 우선 요소로 고려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해양경계획정을 추진하는 방식은 각각의 해역에 대한 가치 평가 작업에 근거하여 추진된다는 점에서 양자가 의도하는 최적관할권을 확보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물론 이때의 최적관할권이라 함은 중간선 방법으로 접근하되 광물자원과 어족자원, 해상안전 혹은 방위 등의 요소가 종합된 경제적 평가 가치로서의 최적관할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적관할권을 도출하는 데는 두 가지의 사전 조사 및 접근이 요구된다. 첫째는 주변해역에 대한 지형 및 지질, 해양생태계, 광물 및 어족자원, 무인도서와 주변 암초 등을 포함한 제반 자연과학적 및 사회과학에 대한 해양과 학조사(혹은 조사) 작업이다. 양국의 공유 대륙붕인 황해에서 고려할 특별한 요소가 없다는 것은 중간선을 조정할 만한 지리적 혹은 비지리적 고려요소가 없다는 의미이나, 반대로 광물자원을 포함하는 지질구조에 대한 내부적 평가는 최적관할권을 도출하는데 선행되어야 할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중국이 주장하는 영해기점 혹은 양국간 중간선 도출에 활용가능한 basepoint에 대한 손

익분석이다. 일반적으로 basepoint라 함은 연안국이 EEZ 혹은 대륙붕 외측한계를 측정하기 위해 국내법으로 설정한 영해기점을 의미하나, 해양경계획정에서의 basepoint라 함은 해양경계획정을 위해 별도로 설정, 혹은 지정되는 basepoint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ICJ는 〈Anglo-Norwegian Fisheries Case〉를 통해 일국의 국내법이 국제법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해양과 같은 영역은 국제법적인 일면을 가지며⁴¹, 그 효력이 국제법에 의하여 발생된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⁴². ICJ는 2009년 〈Romania v. Ukraine Case〉에서도 대륙붕이나 EEZ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baseline을 결정하는 문제와 대항국 혹은 인접국간 경계획정을 하기 위해 중간선을 그리기 위한 basepoint를 찾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시한 바 있다는 것으로 이를 재차 확인한 바 있다⁴³. 이는 항해경계획정에서 중국이 중간선을 도출하는 작업은 연안과 연안, 통상기선과 통상기선, 직선기선과 직선기선, 혹은 논쟁이 있는 특정 영해기점을 무시한 중간선 도출을 통해 접근되거나 혹은 양국이 각각 설정한 basepoint간의 중간선 도출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따라서, 한중간 공개된 지리적 현황과 영해기점을 근거로 한 손익분석과 설정가능한 basepoint간 손익분석을 도출, 경제성 있는 해역과 연계하여 아국의 잠재적 전략 basepoint를 설정하는 손익분석이 시급히 요구된다.

41 魏敏, 『海洋法』(北京: 法律出版社, 1995), p.29.

42 ICJ는 본 판결에서 "영해와 영해기선은 연안국의 주권에 속하며 국내법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단, 이는 동시에 기타 국가의 이익에 관련되는 것으로 그 효력은 국제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해역 확정은 항상 국제적인 면을 갖고 있으며, 연안국의 국내법에서 표현하는 의지만으로 결정될 수는 없다. 경계 획정 자체는 연안국만이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 행위임에는 틀림없으나, 경계획정의 기타 국가에 대한 유효성은 국제법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Anglo-Norwegian Fisheries Case, in Reports of Judgements, Advisory Opinions and Orders," ICJ Reports(1951), p.132.

43 Case Concerning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Black Sea(Romania v. Ukraine), Judgment of 3 February 2009, para.137.

Abstract

A Study on counter-schemes and conflicting factors against China of surrounding areas of the Korean Peninsula

Professor Hyun-soo KIM

INHA University Law School

Dr. Hee-cheol Yang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China has lots of islands and the matter regarding how to use the islands became an important issue, and in addition, it introduced several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to implement China's islands policy. In particular, islands in the East China Sea may play a great role from the military perspective and China is interested in the management of these islands. On the other hand, China's straight baseline regime deviates from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in a number of ways, and such discrepancies are likely to induce legal and political conflicts between countries, and also the settlement of which would not be easy, in particular, among the East Asian countries. In consideration of this point, the legal issues surrounding China's straight baselines and basepoints should be analyzed and evaluated not only from the perspectives of UNCLOS but also through comparative analyses based on customary international laws, state practices, and special circumstances. Many of China's state practices and laws based on straight baselines are neither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s, nor generally recognized as being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maritime laws. This paper provides important legal insights into China's straight baselines, which are unlawful from the perspectives of UNCLOS and

state practices, and, in addition, suggest desirable ways to solve the problems in international laws.

Key words: Islands, Marine Policy, East China Sea, Basepoint, Territorial Sea, Straight Baseline, UNCLOS, State Practice, Special Circumstances,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참고문헌 및 자료목록

- 郭院 등 編著, 『海島法律制度比較研究』, (靑島: 中國海洋大學出版社, 2006).
- 권문상·박성욱·양희철, 『중국 해양관련법령 이해』, (서울: 삼신, 2008).
- 최낙정, 『한일어업협정은 파기되어야 하는가』, (서울, 세창출판사, 2002).
- 양희철(梁熙喆) 외 3인. 2009. 「중국 해양관련 법령의 발전과 입법체계에서의 지위 및 해석」, *Ocean and Polar Research*, Vol.30(4), pp.427-444.
- 劉容子·齊連明, 『我國無居民海島價值體系研究』 (北京: 海洋出版社, 2006).
- 魏敏, 『海洋法』, (北京: 法律出版社, 1995).
- Chen, D., "Baselines for Territorial Waters," Window(May 24 1996).
- Dzurek,D.J.,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traight Baseline Claim", *Boundary and Security Bulletin*, Vol.4(2), p.85.
- Greenfield, J., *China's Practice in the Law of the Sea*(New York: Clarendon Press, 1992).
- Hodson, R.D. and Alexander, L.M., "Towards an objective analysis of special circumstances: bays, rivers, coastal and oceanic archipelagos and atolls", *Law of the Sea Institute Occasional Paper, No.13* (1971).
- Nordquist, M.H., Nandan, S.N., Rosenne, S. and Grandy, N.R.(e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 A Commentary*, Vol. II, Dordrecht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3.
- Prescott, V., "Straight Baselines : Theory and Practice", *Monograph, Typescript*, 1985.
- Roach, J.A. & Smith, R.W., *Excessive Maritime Claims*, International Law Studies, 1994.
- Roach, J.A. and Smith, R.W., *United States Responses to Excessive Maritime Claims*, (Boston/Hague/Cambridge: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6).
- Smith, R.W., *Exclusive Economic Zone Claims: An Analysis and Primary Documents*, Dordrecht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6.
- United Nation Office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The Law of the Sea, *Baselines : An Examination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United Natio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New York, 1989.
- US Dept. of State Bureau of Oceans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nd Scientific Affairs, *Limits in the Seas*, No. 106, August 31, 1987.
- US Department of State, Straight Baseline Claim: China, *Limits in the Seas*, No.

117(1996).

US Navy, *The Commander's Handbook on the Law of Naval Operations*, Washington D.C., July 1987.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Bureau of Oceans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nd Scientific Affairs. "Developing Standard Guidelines for Evaluating Straight Baselines", *Limits in the Seas* No. 106(1987).

【부록 1】 영해기선에 관한 성명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1992년 2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대륙영해의 부분기선과 서사군도의 영해기선을 아래와 같이 선포한다.

일. 대륙영해의 부분기선은 아래 각 인접기점간의 직선 연결선으로 한다.

1. 산둥고각(山東高角) (1) 북위 37° 24. 0′ 동경 122° 42. 3′
2. 산둥고각(山東高角) (2) 북위 37° 23. 7′ 동경 122° 42. 3′
3. 목야도(鎭鄒島) (1) 북위 36° 57. 8′ 동경 122° 34. 2′
4. 목야도(鎭鄒島) (2) 북위 36° 55. 1′ 동경 122° 32. 7′
5. 목야도(鎭鄒島) (3) 북위 36° 53. 7′ 동경 122° 31. 1′
6. 소산도(蘇山島) 북위 36° 44. 8′ 동경 122° 15. 8′
7. 조연도(朝連島) 북위 35° 53. 6′ 동경 120° 53. 1′
8. 달산도(達山島) 북위 35° 00. 2′ 동경 119° 54. 2′
9. 마채형(麻菜玢) 북위 33° 21. 8′ 동경 121° 20. 8′
10. 외개각(外碯脚) 북위 33° 00. 9′ 동경 121° 38. 4′
11. 사산도(佘山島) 북위 31° 25. 3′ 동경 122° 14. 6′
12. 해초(海礁) 북위 30° 44. 1′ 동경 123° 09. 1′
13. 동남초(東南礁) 북위 30° 43. 5′ 동경 123° 09. 7′
14. 양형제서(兩兄弟嶼) 북위 30° 10. 1′ 동경 122° 56. 7′
15. 어산열도(漁山列島) 북위 28° 53. 3′ 동경 122° 16. 5′
16. 대주열도(臺州列島) (1) 북위 28° 23. 9′ 동경 121° 55. 0′
17. 대주열도(臺州列島) (2) 북위 28° 23. 5′ 동경 121° 54. 7′
18. 도도산(稻挑山) 북위 27° 27. 9′ 동경 121° 07. 8′
19. 동인도(東引島) 북위 26° 22. 6′ 동경 120° 30. 4′
20. 동사도(東沙島) 북위 26° 09. 4′ 동경 120° 24. 3′
21. 우산도(牛山島) 북위 25° 25. 8′ 동경 119° 56. 3′
22. 오구서(烏丘嶼) 북위 24° 58. 6′ 동경 119° 28. 7′
23. 동정도(東碇島) 북위 24° 09. 7′ 동경 118° 14. 2′
24. 대감산(大柑山) 북위 23° 31. 9′ 동경 117° 41. 3′
25. 남팽열도(南澎列島) (1) 북위 23° 12. 9′ 동경 117° 14. 9′
26. 남팽열도(南澎列島) (2) 북위 23° 12. 3′ 동경 117° 13. 9′
27. 석비산각(石碑山角) 북위 22° 56. 1′ 동경 116° 29. 7′
28. 침두암(針頭岩) 북위 22° 18. 9′ 동경 115° 07. 5′
29. 가봉열도(佳蓬列島) 북위 21° 48. 5′ 동경 113° 58. 0′

30. 위험도(圍夾島)	북위 21° 34. 1′	동경 112° 47. 9′
31. 대범석(大帆石)	북위 21° 27. 7′	동경 112° 21. 5′
32. 칠주열도(七洲列島)	북위 19° 58. 5′	동경 111° 16. 4′
33. 쌍범(雙帆)	북위 19° 53. 0′	동경 111° 12. 8′
34. 대주도(大洲島) (1)	북위 18° 39. 7′	동경 110° 29. 6′
35. 대주도(大洲島) (2)	북위 18° 39. 4′	동경 110° 29. 1′
36. 쌍범석(雙帆石)	북위 18° 26. 1′	동경 110° 08. 4′
37. 능수각(陵水角)	북위 18° 23. 0′	동경 110° 03. 0′
38. 동주(東洲) (1)	북위 18° 11. 0′	동경 109° 42. 1′
39. 동주(東洲) (2)	북위 18° 11. 0′	동경 109° 41. 8′
40. 면모각(綿母角)	북위 18° 09. 5′	동경 109° 34. 4′
41. 심석초(深石礁)	북위 18° 14. 6′	동경 109° 07. 6′
42. 서구도(西鼓島)	북위 18° 19. 3′	동경 108° 57. 1′
43. 앵가취(鶯歌嘴) (1)	북위 18° 30. 2′	동경 108° 41. 3′
44. 앵가취(鶯歌嘴) (2)	북위 18° 30. 4′	동경 108° 41. 1′
45. 앵가취(鶯歌嘴) (3)	북위 18° 31. 0′	동경 108° 40. 6′
46. 앵가취(鶯歌嘴) (4)	북위 18° 31. 1′	동경 108° 40. 5′
47. 감은각(感恩角)	북위 18° 50. 5′	동경 108° 37. 3′
48. 사갱사각(四更沙角)	북위 19° 11. 6′	동경 108° 36. 0′
49. 준벽각(峻壁角)	북위 19° 21. 1′	동경 108° 38. 6′

이. 西沙群島 영해기선은 아래 인접 기점간의 직선 연결선으로 한다.

1. 동도(東島) (1)	북위 16° 40. 5′	동경 112° 44. 2′
2. 동도(東島) (2)	북위 16° 40. 1′	동경 112° 44. 5′
3. 동도(東島) (3)	북위 16° 39. 8′	동경 112° 44. 7′
4. 낭화초(浪花礁) (1)	북위 16° 04. 4′	동경 112° 35. 8′
5. 낭화초(浪花礁) (2)	북위 16° 01. 9′	동경 112° 32. 7′
6. 낭화초(浪花礁) (3)	북위 16° 04. 5′	동경 112° 31. 8′
7. 낭화초(浪花礁) (4)	북위 16° 01. 0′	동경 112° 29. 8′
8. 중건도(重建島) (1)	북위 15° 46. 5′	동경 111° 12. 6′
9. 중건도(重建島) (2)	북위 15° 46. 4′	동경 111° 12. 1′
10. 중건도(重建島) (3)	북위 15° 46. 4′	동경 111° 11. 8′
11. 중건도(重建島) (4)	북위 15° 46. 5′	동경 111° 11. 6′
12. 중건도(重建島) (5)	북위 15° 46. 7′	동경 111° 11. 4′
13. 중건도(重建島) (6)	북위 15° 46. 9′	동경 111° 11. 3′
14. 중건도(重建島) (7)	북위 15° 47. 2′	동경 111° 11. 4′

15. 북초(北礁) (1)	북위 17° 04. 9'	동경 111° 26. 9'
16. 북초(北礁) (2)	북위 17° 05. 4'	동경 111° 26. 9'
17. 북초(北礁) (3)	북위 17° 05. 7'	동경 111° 27. 2'
18. 북초(北礁) (4)	북위 17° 06. 0'	동경 111° 27. 8'
19. 북초(北礁) (5)	북위 17° 06. 5'	동경 111° 29. 2'
20. 북초(北礁) (6)	북위 17° 07. 0'	동경 111° 31. 0'
21. 북초(北礁) (7)	북위 17° 07. 1'	동경 111° 31. 6'
22. 북초(北礁) (8)	북위 17° 06. 9'	동경 111° 32. 0'
23. 조술도(趙述島) (1)	북위 16° 59. 9'	동경 112° 14. 7'
24. 조술도(趙述島) (2)	북위 16° 59. 7'	동경 112° 15. 6'
25. 조술도(趙述島) (1)	북위 16° 59. 4'	동경 112° 16. 6'
26. 북도(北島)	북위 16° 58. 4'	동경 111° 18. 3'
27. 중도(中島)	북위 16° 57. 6'	동경 112° 19. 6'
28. 남도(南島)	북위 16° 56. 9'	동경 112° 20. 5'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향후 기타 영해기선을 선포 한다.

독도 영유권에 비추어 본 이어도 해양관할권과 남해 해양주권*

최병학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겸임정교수,
한국갈등관리학회 회장

I. 서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지형으로 동아시아의 강대국들인 중국, 일본, 러시아의 가운데에 자리한 전략적 요충지이다. 지난 16세기 임진전쟁부터 19~20세기 동아시아에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비롯하여 동아시아지역 ‘전쟁의 시기’에 이들 각국이 우리나라의 주요한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하거나 영토편입한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의 동쪽은 일본과의 독도영유권 논란, 서쪽은 중국과의 EEZ에 관련한 불법어업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즉, 일본의 끊임없는 독도침탈과 독도교과서 왜곡 문제, 얼마 전 미국의 일본해 표기사용 문제와 최근 2013 ‘외교청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명시,¹ 그리고 중국의 경우 어선들의 불법조

* 이 논문은 필자의 근간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이어도 해양관할권과 남해 해양주권” 맥락에서 재구성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해양영토 분쟁과 독도영유권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4권 2호, 한국지방정부학회(2010); “최근 미국의 일본해 공식표기가 독도영유권 및 해양영토 갈등에 미치는 영향,” 「한국미래군사논총」, 창간호, 미래군사학회(2012a); “해양주권 확보와 국가위기관리체계 구축: 이어도 해양관할권 및 남해 해양주권 확보와 국가위기관리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비상대비연구논총」, 제37집, 행정안전부(2012b); “해양영토 주권의 역사적 권원 및 영유권에 대한 논리적 고찰,” 「해양전략」, 제153호, 합동군사대학교(2012c); “동북아지역 해양영토 분쟁과 한국의 해양안보,” 「해양전략」, 제154호, 합동군사대학교, 외.

1 2013년 4월 5일 각의를 통과한 일본의 ‘2013 외교청서’에는 변함 없이 독도는 역사적·법적으로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담았다. 즉, “일·한간에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유권에

업으로 인한 각종 사건발생 등 동북아 주변국들의 해양영토 분쟁·갈등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그 해결이 난망해지고 있다.

우선 독도영유권 문제는 한일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이미 독도영유권에 대하여 한국은 역사적 권원(權原), 국제법적 지위, 실효적인 점유라는 세 가지 측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독도는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 우산국(于山國)이 신라에 병합된 때부터 한국의 고유영토이며, 따라서 독도 영유권은 확고부동한 역사적 권원을 갖고 있다.² 그러나 일본이 ‘한국의 실효적인 점유’만을 전제해 놓고, 각종 협상과 협정을 통해 독도를 국제적 영토분쟁지로 만들고, 독도문제를 국제사법법원으로 갈 경우 문제는 매우 복잡해진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도 실효적인 점유에서나 명백한 한국영토이고 ‘영토분쟁지’가 아니므로 일본의 국제사법법원 제소에 대한 제의는 단호히 거부하며, 한국정부의 보다 능동적인 독도수호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어쨌든 독도문제는 한·일 양국간의 민족적 감정대립으로 치달을 수 있는 아주 민감한 해양영토 분쟁·갈등사안이 분명하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해양영토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미온적 대처로 국민들의 불안감은 계속 높아져가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제대로 인식되지 않은 해양영토 분쟁·갈등의 대상지역이 또 하나 엄존하고 있다. 바로 이어도인 것이다. 이어도(離於島·Jeodo, 중국명 쑤옌자오, 蘇岩礁, 苏岩礁)는 한반도 남해상의 수증암초로 한국의 최남단 도서인 제주도 마라도에서 서남방으로 149km, 중국 유인도 서산다오(余山島)로부터 287km, 통타오(童島)로부터는 북동쪽으로 247km, 일본 토리시마(鳥島)로부터 서쪽으로 276km 떨어져 있고, 경위도 좌표로는 북위 32-07-32N, 동경 125-10-58E에 위치하고 있다. 국내법상 1952년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을 선언한 평화선 선포수역 내에 있어 한국의 해양관할권(maritime jurisdiction)에 속하며, 1970년 제정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상 해저광구 중 제4광구에 위치

관한 문제가 있는데,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돼 있다”는 문안이 포함됐다. 「연합뉴스」(2013. 4. 5).

2 신용하(2003), 「한국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논쟁」(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pp.109-111 ; 최병학 외(2012c), “해양영토주권의 역사적 권원 및 영유권에 관한 논리적 고찰,” 「해양전략」, 제153호, 합동군사대학교, pp.205-206 각각 참조.

한 우리나라 대륙붕의 일부지역이다.

이미 1900년 영국 상선인 6,000톤급의 소코트라(Socotra)호가 일본에서 중국 상해로 항해하다가 이 암초에 의해 배 밑바닥에 손상을 입은 것을 계기로 영국 해군본부에 보고를 하였고, 이에 영국 해군본부는 1901년 해군측량선 워터위치(Water Witch)호를 파견, 암초의 위치와 수심(당시 수심 5.5m)을 확인 후 최초의 손상을 입은 선박명인 소코트라암(Socotra Rock)이라고 국제적으로 명명된 이후, 2000년 12월 중앙지명위원회는 지금의 이어도(leodo)로 결정·고시하여 통용되고 있다.³

우리의 중요한 해양영토인 이어도는 태평양으로 나가는 바다의 중앙에 있어 한반도로 연간 25만척의 선박이 오는 해상교통의 요충지로서 한반도에 들어오는 선박은 반드시 이곳을 통과해야만 한다. 거리상으로는 대한민국과 가장 가깝다. 이어도는 수면 밑 4.6m에 있어 파도가 6m 친다면 1.4m만 볼 수 있다. 그리고 춘분과 추분 바닷물이 가장 얇을 때 잠깐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어도는 섬이 아니고 암초이며, 이러한 연유로 파랑도(波浪島)라고도 불리운다. 그러므로 이어도를 중심으로 영해도, 배타적 경제수역(EEZ)도 그을 수 없다. 그러나 이어도는 한·중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상 ‘중간선 원칙’에서 본다면 「국제해양법」상 대한민국의 해양관할권 안에 위치한다. 그렇지만 중국은 이러한 중간선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대륙붕의 연장선으로 중국 본토에 가깝다고 강변을 하고 있다.⁴

2003년 6월에 건설된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는 태풍의 예측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한반도의 재해를 줄일 수 있고, 주변해역의 각종 해양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어도가 위치한 제4광구에 72억톤의 천연가스와 약 1,000억 배럴로 추정되는 원유의 경제적 가치를 빼놓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이어도는 언제나 물 밑에 잠겨 있는 암초로서 해양법상 도서(島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도와 이어도 주변수역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

3 심재설(2007. 1. 25), “해양과학의 보고, 이어도,” 「이어도, 지금 우리에게 무엇인가」, 강창일의원실 주최 정책토론회, pp.1-2.

4 「국방일보」(2012. 4. 9); 윤연, “아! 이어도”.

에,⁵ 이를 우리가 실효적으로 관할하기 위해서는 실로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이어도 및 이어도 주변수역의 법적 지위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근거로 중국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대응전략을 강구해 나가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양영토 갈등·분쟁은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어도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⁶

여기서는 독도 영유권(Sovereignty over Dokdo Islets)에 비추어 앞으로 해양영토 분쟁·갈등의 쟁점으로 비화될 수 있는 이어도 해양관할권(maritime jurisdiction over Ieodo Islets)과 함께 남해의 해양주권(maritime sovereignty) 수호를 위한 우리의 해양안보전략과 관련한 논의를 펼쳐보고자 한다.

II. 독도 영유권과 동해 해양주권

한국은 독도를 신라시대(서기 512년) 이래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라고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료는 UN해양법 협약과 이에 따른 동해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 획정 협상 등 최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영유권 주장에 뒷받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

그동안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국측 주장들을 보면 첫째, 역사적 사실자료를 근거로 한 접근방법으로서 당위성을 내세우는 주장으로 가장 설득력이 있는 주

⁵ 김부찬(2007), “이어도 및 이어도 주변수역의 해양법적 지위,” 『법과정책』, 제13권 2호,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2.

⁶ 대표적으로 그린랜드는 현재 덴마크령(자치정부)이지만 수백년간 주인이 수차례 바뀌었던 굴곡의 역사를 안고 있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모두 한때 이곳을 지배했던 이유로 저마다 영토주권을 주장했다. 노르만족 3,000여명이 10~15세기 경에 거주했고, 1721년 노르웨이 탐험대가 식민지를 세운 곳이 현재 수도 누크이다. 1814년 나폴레옹 전쟁 후 그린랜드가 덴마크 영토로 편입되고 노르웨이가 스웨덴에 예속되면서 분쟁이 증폭되었다. 이어 1905년 노르웨이가 스웨덴에서 독립한 뒤 노르웨이와 덴마크 간 분쟁으로 비화되었으나, 종지부를 찍게 된 계기는 1933년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의 판결이었다. 국제사법재판소(ICJ) 전신인 PCIJ는 판결문에서 “덴마크 주권행사에 주변국 누구의 반대도 없었고, 덴마크가 그린랜드 전역에서 정치·경제적 이익의 확대조치들을 취할 때 당사국인 노르웨이가 어떤 항의도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Denmark vs. Norway) PCIJ Rep. Series A/B No.53, Hereinafter “Eastern Greenland Case”; 윤영민 외(2010), “해양영토와 관련된 2000년 이후 ICJ 판결 분석: 독도문제 해결을 위한 시사점 연구,” 『해사법연구』, 제22권 1호, 한국해사법학회, pp.165-167.



[그림 1] 독도 관련 고지도(1)



[그림 2] 독도 관련 고지도(2)

* 자료: 길병욱, 독도/대마도: 강역(疆域)과 영토주권의 통사론, 이종학·길병욱·최병학, 『독도·대마도: 영토주권과 강역사』(대전: 도서출판 MB, 2009), pp.26-30.

장들이다. 그러한 예로 안용복(安龍福)의 도일(渡日)활동은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숙종실록(肅宗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통문관지(通文館誌)”,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등 한국측 사료와 “조선통교대기(朝鮮通交大記)”, “백기민담기(伯耆民譚記)”, “초려잡기(焦廬雜記)”, “교린고략(交隣高略)”, “죽도고(竹島考)”, “인부연표(因府年表)” 등의 일본측 사료에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둘째, 법적 측면에서의 국제법, 해양법 상 독도의 위치이다. 현재 독도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국제법인 “UN해양법 협약”으로 다각적 시각에서의 법적 논리 및 타당성 분석, 특히 제121조⁷⁾의 당위성 부족을 주장하는 연구가 이를 뒷받

7 121조 섬들의 정체(Article 121 Regime of islands)

1항 “섬이란 수면으로 둘러싸이고 고조시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토지(육지지역)를 말한다(An island is a naturally formed area of land, surrounded by water, which is above water at high tide).”

2항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섬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붕은 다른 육지(영토)에 적용 가능한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Except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3, the territorial sea, the contiguous zone,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 continental shelf of an island ar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pplicable to other land territory).”

3항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암석은 영해와 접속수역만을 갖는다.-배

침한다. 이는 독도가 도서지역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법적 권원과 주변 해양공간에 대한 관할권 확보에 불리해지기 때문에 해양경계 획정에 대한 세계의 여러 분쟁지역을 비교·참조하고 국제사법기관의 판결을 예의 주시한다. 또한, “UN기본헌장”의 제2조 4항인 ‘영토보존의 원칙’, “한일기본조약”의 제4조인 ‘주권존중의 원칙’ 등을 강조하여 국제법상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장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수용, 수락될 수 있는 객관적인 법 논리 개발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었다.⁸

셋째, 정책적 측면에서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에 대한 대응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일본의 독도 관련 정책을 경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소극적, 수동적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연구소나 종합적인 해양부서의 설치, 단순한 쟁점화의 거부 차원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외교활동 및 협상대안의 개발 등을 이용한 문제해결을 주장한 측면이 강하다. 사실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외국에 조직적, 정책적으로 홍보하는 일에는 소홀해왔다. 독도의 영유권은 영역 귀속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인정 받을 수 있을 때 그 점유가 보다 명확해지므로, 대외적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넷째, 군사안보 차원의 대응으로 해·공군력을 증강해야 할 뿐 아니라 단순한 섬의 영유권 문제를 넘어 민족문제로 전환되었음을 강조하는 연구를 토대로 한 주장도 다수를 이룬다.⁹ 그러나 이들 역시 한국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타당한 논리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보여준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역사적, 국제법적으로나 한국 고유의 영토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책적, 전략적 대응뿐 아니라 논리적인 반박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와 관련 (가칭) ‘국립영토문제연구소’ 등의 전문기관을 창설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는 처방을 내놓는 경우도 있어 눈길을 끈다.¹⁰

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Rocks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 shall have no exclusive economic zone or continental shelf).”

⁸ 김석현, “독도 영토의 해결방안 무엇인가,” 『통일로』, 제92호(1996), p.559.

⁹ 최병학, “일본의 독도영유권 논리와 정책대응,” 이종학·길병욱·최병학, 『독도·대마도: 영토주권과 강역사』(대전: 도서출판 MB, 2009), p.62.

¹⁰ 이종학, “한·일관계와 독도 영유권의 문제점: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이종학·길병욱·최병학, 앞의

어떻든 일본의 독도연구 및 영유권 주장은 정부 당국의 적극적, 능동적인 정책활동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해양기본법」을 토대로 해양행정 및 정책을 강화하며 자원확보를 위한 관할권 확대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¹¹ 이미 수차례 독도주변 해역에서 각종 연구, 조사활동을 벌이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독도 영유권과 동해 해양주권과 관련하여 영해기선 개념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해기선은 자국의 영해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선이며, 이 지점부터 12해리(22.2km) 안이 영해, 200해리(370.4km) 안이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다. 이 기준은 1982년 유엔 해양법회의에서 확정되었으며, 그 이후 바다영토는 보통 ‘영해+EEZ’를 의미한다. 영해 안에서는 연안국가가 사법권을 포함, 영토 관할권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며, 외국 선박은 통과만 할 뿐 어업활동은 금지된다. 이 영해기선을 정하기 위해서는 인접국가들과의 협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법상으로 중국이 선포한 영해기선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¹²

한국정부는 1996년 8월 EEZ법을 공포했다. 200해리까지의 해역에서 우리 ‘경제주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이다. EEZ는 자원의 탐사·개발·보전·관리에 대한 권리가 모두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 때부터 중국과 16차례, 일본과 11차례 각각 EEZ 경계획정을 논의했으나 허사였다. 일본은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면서 독도를 일본 측 EEZ 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중간선을 그어서 양측의 EEZ로 나뉘야 한다는 것이다. 바다 경계선 역할을

책, p.12.

11 Hiroshi Terashima, *Ocean Governance and the Japanese Basic Act on Ocean Policy*, The United Nations - Nippon Ocean Policy Research Foundation(14 Apr. 2009), pp.8-12 ; 조동오·최재선·김경신·김민수·이주하, 「동북아 주요국의 해양관할권 확대 전략과 우리나라 대응방안」(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8), pp.22-24 각각 참조.

12 영해기선은 영해를 측정하는 기준선으로 기선은 영해뿐만 아니라 접속수역, 대륙붕,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 등 모든 해양관한수역의 범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러한 기선의 내부는 내수를 구성하고 외부는 영해가 된다. 보통의 경우, 기선은 원칙적으로 연안국에서 공인된 대륙적해도상에 기재된 해안의 저조선을 말하며 이를 통상기선이라 한다. 한·중·일 해역의 양안 거리는 모두 400해리 이내로 좁다. 이로 인해 3국은 ‘해상 국경선’인 EEZ를 이제껏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은 각각 독도와 이어도를 구실내지는 핑계로 우리와의 EEZ 경계획정 회담을 무기한 지연시키고 있으며, 이들이 동북아 지역에서 해양영토 분쟁·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그림 3] 한·일 방공식별구역

* 자료: dongA.Com(2011. 6. 27).

하는 EEZ가 공전되는 이유는 한·중·일 3국이 저마다 ‘미래자원의 보고’인 바다영토 확보를 위한 계산 때문이다.¹³

그런데 독도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안에 포함되어 있음이 미국 공군의 항법지도(1987년판)가 공개되었으며, 이는 비행물체가 적대적 의도가 있는 항공기인지 군용·민간 항공기인지 등을 식별 및 통제할 수 있도록 설정된 공역(空域)으로, 1951년 3월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극동방위를 목적으로 최초 설정한 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고지도연구회

장인 김신 교수가 공개한 지도에 따르면, 독도 상공은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이 아닌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의 동해권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¹⁴

¹³ 앨빈 토플러는 수산양식 등 해양산업이 정보화시대 4대 주력산업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측했고, 피터 드러커는 21세기에 인터넷보다 수산양식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망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바다의 중요성을 주목하고 있다. 유럽은 인구의 약 40%가 해안에 거주하며, 해양경제가 약 4,500억 유로(714조원)에 이를 정도다. 중국도 지난해 해양생산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10%인 3조 8,000억위안(629조 6,220억원)이다. 중국해양국 산하 해양발전전략연구소(CIMA)는 중국의 해양산업 성장잠재력이 최대 4조 9,000억 달러(5,321조원)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해양 영토전쟁 갈수록 치열,” 「한국경제」, (2011. 5. 31). 또한 최근 국가해양국의 ‘해양부’ 승격 추진 관련 중국의 해양진출 강화와 주변국들과의 해양갈등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YTN」(2012. 12. 30).

¹⁴ 이는 독도가 한국의 실질적 지배를 받을 뿐 아니라 방공식별구역상으로도 한국의 관할권 하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50년 이상 한국·미국·일본 정부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 경계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뒷받침하는 국제법적 근거가 된다. KADIZ의 범위는 8개의 지리상 좌표를 직선으로 연결한 것으로 동해지역은 북위 37도17분, 동경 133도~북위39도, 동경133도, 동남지역은 북위 35도13분, 동경 129도48분~북위 36도, 동경 130도30분~북위 37도로 독도(북위 37도14분, 동경 131도52분)를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1955년 자위대법(법률 제165) 84조에 JADIZ를 설정하면서 이 경계선을 최초로 명시한 데, 이어 1974년 방위청훈령 제32호에 구역을 구체화, 1978년 방위청훈령 제36호에 구역비행요령을 적시한 바 있다. 「연합뉴스」(2006. 4. 27).

III. 이어도 해양관할권과 남해 해양주권

해양영토의 귀속과 관련한 해역은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구분된다. 문제는 이들 해역을 설정하는 출발점인 기점(base point) 및 기선(base line)이다.¹⁵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는 경우에 그 경계획정이 문제가 된다. 기본적으로 양국은 해양법상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합의로서 그 경계를 획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합의에 있어서는 한국과 중국 간에 관할수역 범위를 기산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기선을 어디로 하는가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¹⁶ 현대 해양법상 기선은 영해뿐만 아니라 EEZ 및 대륙붕 그리고 접속수역 등 여러 중요한 해양 관할수역 범위 획정에 기준이 되므로 그 규범적 의미는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어느 국가이든 이제 기선의 획정은 해양법상의 기준에 엄격히 따라야 한다.¹⁷

이러한 국제법적 문제에 대해 한국은 독도 사례와 같이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어도나 독도는 명백한 우리의 영토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문제가 아닐뿐더러, 만일 ‘법적 분쟁화’된다면 판결에 따라야 하므로 구태여 위험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어도 해양관할권은 한국과 중국의 EEZ 주장이 서로 달라 갈등과 긴장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1만 8,000km에 이르는 해안선과 500m² 면적에 이르는 도서가 6,500여 개나 되는 300만km²의 관할해역을 보유하고 있는 ‘해양대국’으로 이미 발돋움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개혁개방의 경제정책을 시행하면서 내륙보다는 해양지역에 대해 경제특구를 만드는 등 개발을 지원해 왔고, 이 연안지역의 경제규모는 이미 중국경제의 10%에 달한다고 한다. 따라서 중국은 앞으로 계속되는 ‘해양굴기’(海洋崛起)를 통해 G2 국가의 위상을 확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¹⁸

15 이정태(2007), “중국의 해양영토 귀속판단,” 「한국동북아논총」, 제44권, 한국동북아학회, p.310.

16 김영구(1998),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p.458.

17 강효백(2009), “한·중 해양경계 획정문제: 이어도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50권, 한국동북아학회, p.90.

18 중국이 이처럼 해양력을 강화하는 이유로는 대만문제, 곧 중국이 대만의 통일을 위한 모종의 군사작전을 취할 때 예상되는 미국의 대만 지원과 군사적 개입, 전통적인 해양국가로서 중국의 서태평양으로의



[그림 4] 이어도 해양관할권과 남해 해양주권에 관한 주변국들간의 역학구도

중국 외교부는 지난 2006년 9월 “이어도에 대한 한국의 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이후, ‘이어도는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기 시작해 언필칭 이어도의 ‘독도화’를 노리기 시작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이어도는 국제법상 영토가 될 수 없는 수중 암초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중 사이에 이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러한 입장변복을 통해 ‘이어도의 독도화’를 노리는 게 아니냐고 우려한다. 그렇게 될 경우 한국과 중국, 일본이 각각 동해(독도)와 남해(이어도), 동중국해(다오위다오섬·센카쿠)에서 해양경계를 둘러싼 해양영토 분쟁·갈등에 휘말리는 상황도 배제

해양력 확대에 직접적으로 맞설 수 있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가능성, 러시아의 역할 약화, 곧 동북아시아에서의 러시아 군사능력의 저하는 일본의 상대적인 해양력 강화로 이어지고, 이에 대한 대비 차원 때문이다. 이상윤(2011), 「과학기술과 국제정치: 한국의 글로벌 해양전략」(서울: 도서출판 높은새), pp.184-185 참조.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¹⁹

급기야는 2007년 12월 24일 중국 국가해양국의 공식발표자료 등을 신는 인터넷 사이트인 ‘중국해양신식망(中国海洋信息网)’²⁰에서는 이어도(영어식 명칭: Leodo)와 관련한 내용을 손질하면서 ‘이어도는 중국영토’라고 기술한 것으로 밝혀졌다.²¹ 중국 민간단체나 학자들이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적은 있으나, 정부기관이 이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어도에 대해 중국이 자국영토라고 주장하며 영토편입 시도를 노골화하고 있어 한국의 대응이 시급하다.

중국 해양신식망은 이어도에 대해 쑤옌자오(蘇岩礁; 苏岩礁)는 당·송·명·청의 문헌에 기록되어 있으며, 고대역사 서적에도 중국 땅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하면서, 현재도 중국영해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있는 중국영토라고 기술했다.²² 중국은 2006년 9월 외교부 브리핑에서도 이어도에 대한 한국의 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지난 번에는 국가해양국이 발간하는 격월간지와 월간 군사잡지에 중국의 분할될 수 없는 일부분인 쑤옌자오가 현재 소리 없이 한국에 의해 침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기고를 싣기도 했다. 해양신식망은 “쑤옌자오는 중국의 어민들이 수천 년 전에 처음 발견한 이래로 산둥(山東)·장쑤(江苏)·저장(浙江)·푸젠(福建)·타이완(臺灣) 등 5개 성(城)의 어민들이 줄곧 활동하던 어장”이라고 주장했으며, 역사적 기술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해양영토 확장을 위한 의지를 알 수 있다.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인정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기준으로 하면 중국도 관할권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인접국과 EEZ가 겹칠 경우 적용되는 국제해양법의 중간선 또는 근거리 우선 원칙에 따르면 이어도는 당연히 한국의

19 「한겨레 연변통신」(2008. 8. 9), “한국도 망할라고 하는구나, 申 ‘이어도는 우리땅’, 정부에 시정을 요구할 것”;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303151.html.

20 중국은 국가해양국 산하기구인 ‘중국해양신식망’ 홈페이지(www.coi.gov.cn) 해양문화 코너에서 이어도의 중국식 표기인 ‘쑤옌자오’(蘇岩礁; 苏岩礁)를 자국 영토로 소개하고 있으며, 이는 공식 해양정보 네트워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1 「베타뉴스」(2008. 8. 8.), “중국, ‘이어도는 중국땅’ 노골적 영토편입 시도”; <http://www.coi.gov.cn/>

22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 심추(星球)지도출판사가 2006년 펴낸 ‘중화인민공화국 지도집’의 이어도(중국명 蘇巖)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 ‘후피자오(虎皮礁)’, ‘야자오(鴨礁)’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



[그림 5] 이어도(쑤옌자오) 해역 주변의 중국 해도(海圖)

* 자료: 데일리안(2018. 8. 6)

관할해역 내에 존재한다. 한국이 2003년 이곳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여 실효적 지배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중국은 한동안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그렇던 중국이 2006년 갑자기 관할권을 주장하며 관공선(官公船)을 보내 우리 선박의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활동에 경고를 하고, 3,000t급 해양감시선까지 투입해 주변해역에 대한 감시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은 이어도를 장차 분쟁수역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의도

로 간주될 소지가 아주 많다. 이어도를 통해 동중국해에 대한 해양지배권 강화라는 전략적 목적이 더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도는 섬이 아니고 암초인 까닭에 파랑도(波浪島)라고도 불리운다.²³ 이어도는 언제나 물 밑에 잠겨 있는 암초로서 해양법상 도서(島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나, 이어도를 기점으로 EEZ를 설정하면 한반도의 두 배 면적인 약 40만km²의 엄청난 해양지역이 우리측 배타적 관할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이어도는 서해와 동중국해의 분계선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형적으로는 중국 양자강의 바다 입구를, 종적으로는 중국 남북해상의 요충지를 장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어도 주변해역은 천연가스와 원유 부존량이 풍부하고 고급어종이 서식하는 대형어장이다.

²³ 옛부터 “환상의 섬 이어도”...사시사철 꽃이 피고, 근심걱정 하나 없는, 지상낙원 ‘환상의 섬’...먹을 걱정 필요 없고, 걸칠 걱정 없는 세상, 꿈속 같은 ‘환상의 섬’...사랑하는 아내와 부모님과 알뜰 모두 한 배에 가득 태워, 휘어지 휘어지 노를 저어 돌아가고 싶은 땅...환상의 섬 ‘이어도’로 인식되어 왔다. 송성대(2010), “지리적 팩트에 기반한 제주해민들의 이어도 픽션” / 송상일(2010), “이어도를 찾아서,” ‘이어도연구’, 창간호, 이어도연구회 ; 김기훈, “이어도 전설에서 현실이 되기까지: 이어도의 유래”, http://www.gando.or.kr/bbs/?doc=bbs%2Fgnuboard.php&bo_table=free_board&sslect=&stext=&ssort=wr_datetime&sorder=asc&soperator=&page=1&wr_id=11.

특히 이어도는 군사부문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 되고 있다. 또한 중국이라는 이름의 황색 항공모함이 ‘연청색 바다’(light blue)에서 ‘감청색 바다’(navy blue)로 항진하고 있으며, 연안방위를 임무로 했던 중국해군은 대양해군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은 발해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내해로,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영해로 간주한다. 이는 중국이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있는 이어도 해역을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되고 있다.²⁴

중국전문가인 강효백 경희대 중국법학과 교수는 중국이 지속적으로 이어도를 침탈하려는 이유로서 한국과 중국의 해양경계 확정문제와 직접적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는 중국은 이어도가 국제해양법에 근거, 한국령으로 확정되면 한국이 프랑스 면적만한 해역을 영유하게 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하면서, 반면 중국이 조어도와 이어도를 상실하면 동중국해의 관할해역은 협소해지고 중국 남북해상 운수통로는 극심한 제한을 겪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조어도(다오위다오, 센카쿠)는 현재 대만의 영토에 속하고 있는데, 중국과 일본이 해양영토분쟁을 일으키는 곳으로 ‘중국의 독도’라 불리울 정도이다.²⁵

문제는 이어도가 해양법상의 섬이 아니고 암초이기 때문에 해양경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섬이 아닐 경우 ‘유엔해양법 협약 121조’에 의거하여 그 자체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등 관할수역을 가질 수가 없다. 더구나 이어도의 위치가 한·중·일 3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권원이 중첩되는 한·중 어업협정상 현행 조업질서유지수역으로 현재 해양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그렇지만 이어도에 설치된 해양과학 기지로 인해 기지 주위에 있는 반경 500m의 안전수역을 설정(협약 제60조 5항)할 수 있다.²⁶

²⁴ 보통 미사일 탄도탄의 사정거리를 감안하면 이어도에서 상하이까지 요격가능거리가 된다. 레이더 무선 감측으로 중국군함의 입·출항, 공군기의 이·착륙 일체는 한국의 감측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에 있어 ‘이어도’는 군침이 도는 지역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데일리안」(2008. 8. 9) 및 “중국, 제주-이어도 점령이 제일 쉬웠어요 한다면,” 「데일리안」(2011. 12. 3) 각각 참조.

²⁵ 전일옥, “중·일 영토분쟁의 전개과정과 분쟁구조의 특징: 조어도(釣魚島)를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14권 1호, 한국평화연구학회(2013), pp.105-124.

²⁶ 우리가 2003년에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여 운영하는 것은 매우 잘한 일이며, 이어도 암초 자체는 특별한 법적 지위가 부여될 수 없지만 중국이 주장하는 경계획정 방식에도 해양과학기지가 한국

해양경계에 있어 한국은 이어도를 중간선 방식으로 주장해 왔고 중국은 대륙붕의 경계획정 원칙을 주장했다. 대륙붕의 경계획정 원칙이란 중국의 황해와 동중국해 대륙붕은 실트라인까지 나아간다는 것이다. 황하와 양자강을 타고 상류에서 흘러내려온 퇴적물이 쌓이면서 형성된 이 선을 따르게 되면 한국과 중국간 수역의 3분의 2가 중국에 속하게 되어 형평에 크게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사실 이어도는 한국과 중국이 1996년부터 벌이고 있는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협상의 핵심이다. 두 나라가 각각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그으면 중복수역이 생기는데, 여기에 이어도가 들어간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기준인 중간선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은 해안선 길이나 배후인구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 중국은 이어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이어도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할 때도 일방적인 행위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으며, 중국은 지금도 수시로 해양감시용 관공선과 군용기를 띄워 이어도를 감시, 정찰하고 있다.

중국은 제주도 남단 이어도 수역 관할권 주장에서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수중암초’인 이어도는 우리나라 최남단인 마라도에서 149km, 중국의 최동단 유인도인 위산다오에서 287km 떨어져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면 이어도는 우리의 해양관할권에 들어간다. 중국은 이런 불리한 상황을 감안하여 인구, 대륙의 크기, 해안선 길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²⁷

더욱이 지난 2011년만 해도 벌써 수차례나 중국 관공선(官公船) 및 어선들이 이어도 주변해역을 침범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졌다. 중국이 이어도 해역을 정기순찰 대상 해역에 포함시킨 것은 우리나라와 벌일 해양경계 획정협상에

이 축조한 구조물로 국제법상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결과를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다. 강효백 (2012), 「중국의 습격: 류큐로 보는 한중일 해양 삼국지」(서울: 휴먼&북스) ; <http://blog.daum.net/busanpeaceaction/58>.

²⁷ 중국은 현재 서해 말고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 수많은 나라와 EEZ 경계획정을 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 어쩌면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만큼 중국의 셈법은 우리보다 훨씬 어려울 수도 있다는 측면도 존재한다.

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이어도 주변해역은 원유와 천연가스 등 풍부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군사적 요충지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국가해양국에 속한 감시선과 항공기의 순찰 범위에 대해 “북으로는 압록강 하구, 동으로는 오키나와 해구(海溝), 남으로는 난사군도(南沙郡島) 쩡무안사(曾母暗沙·제임스 사주)에 이르며, 쑤옌자오(이어도)와 다포위다오(釣漁島·일본명 센카쿠 열도), 중사군도(中沙郡島)의 황옌자오(黃巖礁) 및 난사군도의 제도가 중국의 전체 관할 해역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2012년 3월 3일 당시 류츠구이(劉賜貴) 중국 국가해양국장(장관급)은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다포위다오와 그 부속 섬 71곳에 대한 중국식 명칭 부여 조치와 함께 단호하게 중국의 해양권익을 보호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²⁸

특히 한국정부는 ‘이어도 분쟁 가능성’과 관련하여, 이어도는 한국과 중국의 영해인 12해리를 모두 벗어나 있기 때문에 영유권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중국 역시 우리와 의견이 같다는 것이 외교부 당국의 설명이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UN해양법」에 의하면 각국의 연안에서 200해리 내의 EEZ를 인정하는데, 양국간 거리가 400해리가 되지 않을 경우는 당사국들의 협의를 통해 결정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어도는 한국의 대륙붕에 속한 주변 해저의 일부분으로 간주된다. 꼭대기가 물에 잠긴 암초여서, 「국제해양법」상 영토에 해당하지 않아 영유권 분쟁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이어도를 포함한 주변의 해저는 우리나라의 대륙붕이어서 영유권의 근거가 되고 있다.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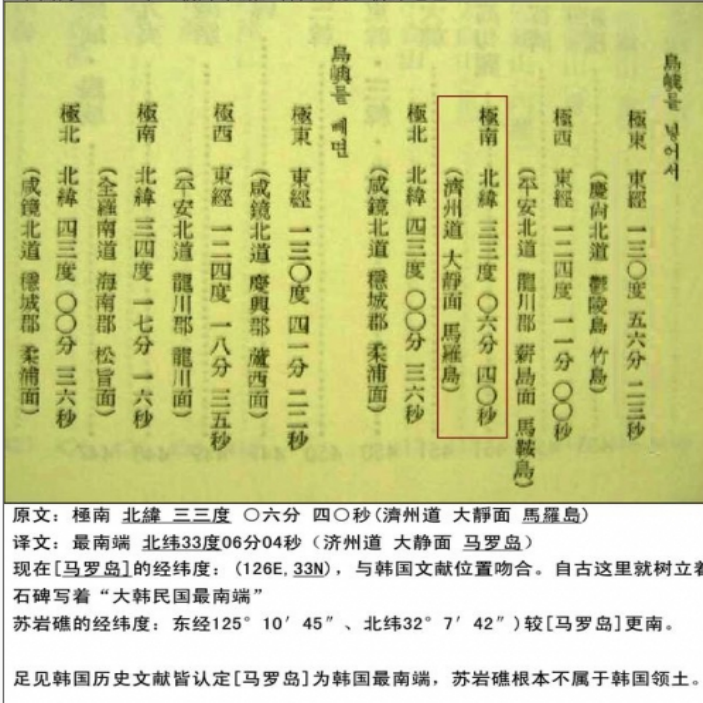
그러나 중국은 이어도(소암초, 蘇岩礁)와 관련한 한국문헌의 증거로서 1948년 도판 「조선상식(朝鮮常識)」 조선지리 편에 나와 있는 독도(獨島)와 마라도(馬羅

²⁸ 「한누리신문」(2012. 3. 10).

²⁹ 한편, 무주지(無住地) 선점(先占)이론에 따라 이어도를 보면, 실효적인 지배(effective control)는 짧게는 2003년 6월 이어도 해양중합과학기지 완공시로, 길게는 인접해역에 대한 주권을 선언한 평화선 선포수역 내에 1952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실효적 지배주장은 무주지 선점이론에서의 실효적 점유이나, 시효취득에서 요구되는 실제 행사된 주권과도 다른 개념인 것이다. 최병학, “해양주권 확보와 국가위기관리체제 구축: 이어도 해양관할권 및 남해 해양주권 확보와 국가위기관리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비상대비연구논총」, 제37집(2012. 12) 참조.

苏岩礁考证1 -- 韩国文献证据1

下图为：1948年《朝鮮常識》韓国出版 朝鮮地理



[그림 6] 중국의 한국 도서 마라도의 명시와 이어도(苏岩礁)의 부정

* 자료：韓對我蘇岩礁維權橫加指責 “質問”我外交官圖(4)(2012. 3. 12), 周旭 環球時報.

온전히 행사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영토주권이 반세기 이상 행사되어 왔고, 이의 포기나 양도를 타국에게 공식적·합법적으로 진행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굳이 무주지 선점이론에 의한 이어도 영유권 주장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중국이

島)를 제시하면서, 마라도가 제주도 대정면 마라도로 대한민국의 최남단이지만 소암초(苏岩礁), 즉 이어도는 근본적으로 한국영토에 속하지 않는다고 강변하고 있다.³⁰

이미 국토정보원(현 국토지리정보원)에서도 2000년 12월 30일자로 마라도의 행정구역명을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마라도 서남쪽 150km’로 고시해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에 편입시켜 왔으며,³¹ 해양종합과 학기지 역시 해양수산부가 설립을 주도하고 운영 및 관리권한이 국립해양조사원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주권이 현재에도

30 韓對我蘇岩礁維權橫加指責 “質問”我外交官圖(4)(2012. 3. 12), 周旭 環球時報 ; http://big5.china.com/gate/big5/military.china.com /important/11052771/20120312/17086534_3.html.

31 국토지리정보원(2006. 10. 31), “우리 영토, 우리 지명 제대로 알리자”, 국토지리정보원 창립 32주년 기념 대한민국 전도(영문판) 발행; <http://www.ngii.go.kr/kor/board/view.do?rbsldx=48&idx=46>(검색일: 2012년 4월 11일).

최초로 영유권을 주장한 2006년 이전에 한국이 이어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행정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보다 정확하고 근거 있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법기관에서의 도서영유권 판례를 보면 판결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분쟁도서의 실효적 점유나 지배사실이었음을 알 수 있다.³² 최악의 경우, 일본이 독도를 국제법상 영토분쟁지로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는 것처럼, 중국이 이어도를 국제법상 영토분쟁지로 만들고, 장차 이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려는 것에 대비하여 충분한 법적 논리와 대응근거를 철저히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협정(GSOMIA)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영토인 이어도 상공이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 Jap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에 포함되지 6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어, 독도와 이어도의 상황은 아주 다르다.

이어도는 2003년에 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된 명백한 우리의 영토이지만, 이곳 하늘 길을 항공기로 지나가거나 헬기를 이용, 해



〔그림 7〕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에 포함된 제주 마라도 및 이어도 상공

* 자료: 「노컷뉴스/제주CBS」(2012. 6. 29). 구글캡처

³² 예컨대, 미국-필리핀 간 팔마스(Palmas) 도서 사건, 프랑스-멕시코 간 클리퍼튼(Clipperon) 도서 사건, 영국-프랑스 간 멩끼에 및 에크레오(The Minquiers & Echrehos) 도서 사건, 에리트레아-에멘 간 도서분쟁 사건 등이 실효적 지배국가의 영유권을 인정한 대표적 판례라 할 수 있다. Sumner, Brian Taylor(2004), "Territorial Disputes at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Duke Law Journal*, Vol. 53, April, pp.1779-1812; 이석용(2006), "국제사법재판소의 도서영유권 및 해양경계획정 관련 분쟁해결," 「국제법학회논총」, 제51권 1호, 대한국제법학회; Brian Taylor Sumner(2004), "Territorial Disputes at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Duke Law Journal*, Vol.53, April, pp.1779-1812; 이석용(2006), "국제사법재판소의 도서영유권 및 해양경계 획정 관련 분쟁해결," 「국제법학회논총」, 제51권 제1호, 대한국제법학회; 김영기(1998), 「국제법상 시효에 관한 고찰」, 「독도연구」(서울: 법률출판사), pp.153-154; 최병학(2010), 「해양영토분쟁과 독도영유권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4권 2호, 한국지방정부학회, p.15 각각 참조.

양과학기지에 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일본 측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 이어도 상공은 현재 일본이 통제하는 항공구역이기 때문이다.³³

Ⅳ. 비교논의 및 정책적 함의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많은 해양영토 분쟁 및 갈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독도 영유권 갈등과 관련해 볼 때도 일본은 2007년 「해양기본법」의 제정, 발효로 해양정책 추진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을 이끌어내는 시도를 추진하였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모든 해양문제를 관리하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한국이나 중국 등 영유권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주변국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특히 일본의 독도연구 및 영유권 주장은 「해양기본법」을 토대로 한 해양행정 및 해양정책의 강화·발전을 거듭하며 관할권 확대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독도점유권 주장에 대한 반박, 무주지 선점이론을 이용한 영토편입의 정당성을 들어 국제법상 일본영토로 인정받으려는 연구노력 등 시도는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³⁴

현재 국제사회의 입장은 당사국들간의 합의에 의한 문제해결을 지지하는 쪽이

³³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은 1951년 미 태평양 공군이 극동 방어를 위해 설정한 것으로 독도 상공은 포함됐지만 이어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미 태평양 공군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정한 이후 우리 정부는 방공식별구역 조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은 1969년 자위대법에 근거해 JADIZ를 설정할 때와 1972년 오키나와 반환에 따라 범위를 늘릴 때 독도 상공을 모두 제외하기도 했다. 또한 제주도 남쪽 지역이 한국비행정보구역(FIR: Flight Information Region)과 한국방공식별구역 라인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방부는 2008년 7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범위를 고시했으나, 이어도는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에서 제외된 상태로 고시됐다. 2004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시급히 시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이 있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실제로 현재 제주에 배치된 P-3C 해상초계기도 이어도 상공을 지나가는 작전을 펼칠 때는 일본 측에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땅 ‘이어도’ 상공…왜 국방위청이 통제하나?”, 「노컷뉴스/제주CBS」(2012. 6. 29).

³⁴ 이러한 근거로는 한국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인(부정)의 논리 제시, 조선시대 1438년 이후의 공도(空島)정책은 사실상 영유권 포기라는 점, 1696년 도쿠가와 막부(幕府)의 울릉도 포기 및 금항(禁航)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의 도향은 금한 일이 없을 뿐더러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 「대일본강화조약」 제2조 a의 자의적 해석 등을 들 수 있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에 독도가 누락되어 일본령으로 잔류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최병학(2010), 앞의 논문, pp.18-20.

며, 이는 역사적 혹은 국제법적 양국의 주장이 어느 한 쪽으로 기울지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미국과 영국 등 국제기구가 ‘일본해’ 표기를 지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일본이 지속적으로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겠다는 강경 발언을 한 것을 보면, 국제사회의 여건이 일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판단되면 일본은 언제라도 독도를 ‘분쟁지역화’할 저의를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다.³⁵

최근 2~3년 사이 중국과 동남아 일부 국가 사이에 남중국해, 특히 남사군도에서 영유권을 놓고 벌이는 경쟁이 격화되어 중요한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으며, 남중국해에서 최근 갈등은 비슷한 시기에 불거진 주변지역의 전략경쟁, 특히 영토분쟁, 해양문제와 맞물려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남중국해를 필두로 한 동아시아 지역 해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사례는 해양관할권 및 도서영유권 분쟁의 한 사례의 당사자일 뿐 아니라,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해양수산업은 물론 에너지 수급, 무역, 그리고 미래 대체에너지 개발 등에서 바다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특히 이것이 중국의 공세적인 해양우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이어도 해양관할권 확보 문제는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³⁶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국가간의 문제는 힘의 논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최근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영토분쟁에서도 이와 같은 힘의 논리가 크게 작용되고 있다.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국제법적 절차에 따른 해결을 외면하고, 이 지역에서의 중국의 모습은 ‘무력행사’까지 시사하고 있다. 우리 역시 중국과 이어도 해양관할권을 둘러싼 긴장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현행 국제법상 어떤 규정을 적용해도 이עד가 우리의 관할수역 내에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것은 분명하나,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지난 2003년

³⁵ 정민정(2011), “동해 표기문제 및 일본의 ICJ 발언관련 대응방안,” 「이슈와 논점」, 제284호, 국회입법조사처, p.4.

³⁶ 이와 같은 중요성에 비추어 여기에서는 남중국해 문제를 국제법적 차원보다는 국가간의 전략경쟁이란 측면에 초점을 두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개별국가들이 가진 이슈별 주장의 내용과 지형학, 지경학, 지전략, 국제법적으로 다층적으로 얽힌 남중국해 해양영토 갈등·분쟁의 거시적 이해를 통한 향후 동향과 전망이 중요하다. 외교통상부(2012), 「남중국해 분쟁의 이해와 향후 전망」 참조.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한 것이 우리의 일방적인 조치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도 해역은 북상하는 태풍의 길목이어서 해양기상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며, 동중국해의 황금어장이고, 연간 수십만 척의 선박이 통항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곳이다.

어떻든 만에 하나라도 중국이 ‘이어도 공정’(工程)을 벌일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 UN 안전보장이사국인 중국보다 우리의 외교력이나 경제력이 강하다고 보기 어렵고,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영토분쟁 시 당사국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깊이 관여하지 않을 것을 예상치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이어도를 지나가는 항로를 통해서 원유의 수입 등 수출입을 하고 있는데, 만일 중국해군과 분쟁이 발생하여 이어도를 침탈당하고, 중국이 자칭 ‘반도봉쇄’를 시행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어도를 중국에게 내주는 사태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중국이 1~3개월만 해양봉쇄를 한다면 정상적인 수출·입이 불가능하여 한국경제는 파탄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어도를 중국에게 내주고 더 이상의 공정을 방지하는 내용의 굴욕적인 협상문 작성에 임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시나리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³⁷

언필칭 ‘중국의 좌향좌’와 ‘일본의 우향우’가 동아시아를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 센카쿠 갈등은 그러한 표면적 증상일 뿐, 중·일 양국 내부의 사정과 역학관계가 연결되어 있다. 여기에 미·중간 경쟁이 더해지면서 사태는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다. 그동안 제해권을 미국에 내줘야 했던 중국은 G2 국가로서 이제 아·태지역에서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요구하는 형국으로 변모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이 지역의 복잡한 영유권 분쟁을 적절히 이용, 중국 포위망을 짜보려고 한다. 현재는 중·일이 충돌하고 있지만, 한국을 비롯한 이 지역의 국가들은 언제든지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그것은 민족주의를 넘어 국익우선, 즉 엄청난 해양자원과 해양이익과 관련한 것이다.³⁸

³⁷ 서상문(2012. 3. 31), “중국의 해양작전권 안에 들어간 이어도, 우리의 대응 무엇이 문제인가?,” 「군사저널」, 4월호 참조.

³⁸ 민족주의적 정치와 역사적 앙금을 앞세운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그러

원래 분쟁이란 “양립될 수 없는 이해관계에 대해 어느 한 집단(종족·인종적, 종교적, 정치적, 사회경제적 등)과 다른 집단(들)간의 상호 대립상태”³⁹라고 정의된다. 여기서 “양립될 수 없는 이해관계(incompatible goals)” 부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의 기득권 상실을 초래하는 것들로서 부족한 자원, 현상, 세력, 가치 등을 둘러싼 주장 또는 대립”⁴⁰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분쟁 중에서도 분쟁의 주체가 국가인 경우가 국제분쟁이 된다. 국제분쟁은 국제법상의 법률관계 또는 국제정치상의 이해관계에 관한 국가간의 의견충돌이라고 할 수 있다.⁴¹ 따라서 여기서는 해양영토분쟁을 “양립될 수 없는 해양영토의 이해관계에 관한 다수의 국가간 상호 대립상태”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지역에 산재해 있는 20여건의 영토 관련 분쟁의 특징을 보면, 우선 영토분쟁들 중 1/3 이상인 9건이 해양경계선 및 도서영유권 분쟁이라는 것과 석유나 천연가스 등의 자원문제가 중요한 요소로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된다. 냉전의 종식 이후 무엇보다도 경제적 실리가 더욱 중시되는 현재의 세계적 추세를 감안해 본다면, 자원과 연관된 이러한 특징은 영토분쟁의 심각성을 더욱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⁴²

특히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영유권 분쟁은 ‘영토의 권원’(territorial title)에 관한 다툼 또는 영토주권의 행사 및 유지에 관한 다툼을 의미한다. 영유권 분쟁은 ‘영토적 청구’(territorial claims)를 다루는 분쟁으로서 특히 당해 영토의 발견, 선점, 정복, 할양, 시효 등 권원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국제법 규범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분쟁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분쟁은 동일한 지역에 대하여 2개국 이상의 국가의 영유권 주장이 경합할 때 발생한다.⁴³ 그리하여 영유권 분

나 그 뒤에는 동중국해에 매장된 석유와 가스라는 또 다른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가 보도한 바 있다. 「연합뉴스」(2012. 10. 30).

39 James E. Dougherty and Robert L. Pfaltzgraff(1990), *Contending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New York: Harper & Row), p.187.

40 Lewis A. Coser(1956), *The Function of Social Conflict*(New York: The Free Press), p.3.

41 Mavrommatis Case에 관한 PCIJ의 판결은 다음을 참조. 이한길(1992), 「국제법 강의」(서울: 박영사), p.622.

42 윤종래·최진태(1996), “남사군도 영유권 분쟁과 중국의 해군력 증강정책,” 「사회과학연구」, 제8권, 순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이요한(1998), “남중국해 분쟁과 중국 및 ASEAN의 대응,” 「국제지역연구」, 제2권 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쟁은 한 국가가 더 나은 권원을 이유로 타국의 특정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배제하려는 상황에서 흔히 발생하게 된다.

해양영토분쟁은 다른 분쟁과 비교하여 일단 해결된 뒤에도 다시 재연되는 빈도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 즉 해결에 불만을 가졌던 당사국이 다시 새로운 분쟁으로 발전시키기도 하며, 당사국들의 편의나 주변사항에 의하여 잠재된 상태에 있다가 다시 ‘분쟁화’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해결내용의 불만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연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하여 영토분쟁이 수차례에 걸쳐 잠복과 발생을 거듭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영토분쟁은 국경의 지역별 생성배경의 차이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가지게 된다. 즉 지역별로 국경획정의 기준, 분쟁해결방식에 대한 태도, 지역적 기국(旗國)의 존재 여부와 그 기능의 효율성, 지역-국가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분쟁해결방식을 선택해야 영토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가져올 수 있다. 신생국들은 영토·국경과 관련한 전통 국제법 이론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자신의 주권적 의사에 기초한 해결방식인 외교적 해결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⁴⁴

우리나라의 영토분쟁은 대부분 해상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해양영토분쟁은 오랜 시간동안 지속적이고 표면적으로는 잠재적 성격을 띠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 문제를 이슈화하기도 어려울뿐더러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한다 해도 주변국들과의 역학관계상 적극적인 정책시행이 매우 부담스럽다. 따라서 독도나 이여도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해양영토관리의 핵심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의 세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는 분쟁의 발생 소지를 예방한다. 우선 역사적 정통성을 바탕으로 법·논리를 체계적으로 개발해 실효적인 점유를 확보하고, 국제법적 분쟁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치밀하고도 종합적인 관할권·영유권 분쟁해결시스템을 갖추고, 이와 관

43 신각수(2001), “국경분쟁의 국제법적 해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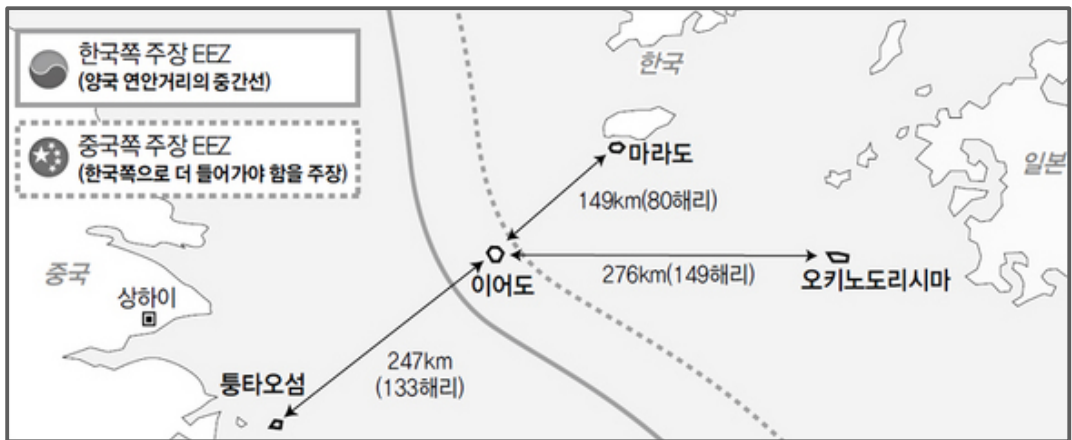
44 최태현(2007), “외교적 방식에 의한 영토분쟁의 해결,” 『법학논총』, 제24권 4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p.74.

련하여 분쟁관련 전문가를 양성함은 물론 이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화시켜 지속가능한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셋째, 전술한 예방책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발생하여 상황이 점점 악화된다면 결국 군사안보적 차원의 대응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해양영토관리는 국가영역 주권의 귀속에 관한 문제이므로 한시적 정책이나 외교적 문제로는 분쟁의 진행을 지연시킬 뿐, 그 해결은 불가능하다. 이는 해당국민들의 애국심과 직결되기 때문에 쉽게 정치적 가치문제로 그 성격이 변화하게 된다. 결국 국경의 안정성과 영토주권의 일체성으로 귀결되어 당사국들은 간혹 국가의 흥망을 담보로 무력충돌도 불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다만 해양영토관리는 정통성을 가지고 실효적인 점유를 해오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영토주권의 지속을 위한 방어 개념일 뿐, 역으로 해석하여 영토침탈의 도구로 이용할 수는 없다.

더욱이 이어도와 잘 비교되는 일본의 산호섬인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는 섬과 암초 문제를 둘러싼 논란의 대표적 실례가 아닐 수 없다.⁴⁵



[그림 8] 이어도, 오키노토리시마를 둘러싼 한·중·일 해양분쟁 관계도

* 자료: 「한겨레뉴스」(2012. 9. 23).

⁴⁵ 위도 20° 25', 경도 36° 05'의 필리핀해 팔라우 큐슈해령에 자리잡고 있으며, 히가시코지마(Higashikojima)와 기타코지마(Kitakojima) 두 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쿄에서 남쪽으로 1,740km 지점에 위치한 산호초인 오키노토리시마는 대부분 물에 잠겨 있고 만조 때 바위 2개가 수

일본의 고타니데쓰오(일본 해양정책연구재단 연구위원)은 오키노도리시마의 보전은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동북아 국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오키노도리시마의 등대는 호주와 동북아를 향해하는 많은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고, 오키노도리시마에서의 기상관측은 재난예방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안보 측면에서 오키노도리시마의 보전은 지역 해양질서의 안보를 유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⁴⁶

그러나 중국의 입장은 오키노도리시마는 암초이며, 암초는 대륙붕을 갖지 못한다는 해양법 규정에 입각하여 대륙붕이나 경제수역 설정의 기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며, 한국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입장에 서있다. 어쨌든 2012년 5월 CLCS 의장의 성명으로 2008년 11월부터 시작된 오키노도리시마 분쟁은 일단락되었지만, 여전히 지속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⁴⁷

그렇다면 이어도 해양관할권-남해 해양주권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겠는가?

원래 동북공정(東北工程)은 2002년 2월부터 중국사회과학원 변경사연구중심(센터)에서 5개년 계획으로 중국 동북지방을 개발하는 ‘동북변강사여현상계열(東北邊疆史與現狀系列)’이라는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이 동북공정의 예산은 연구비용과 개발비용을 합쳐 200만위엔(약 3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들은 자기 국토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은 중국사람이고, 그들의 역사는 모두 중국사라고 주장한다. 이른바 ‘고위금용’(古爲今用) 이론인 것이다.⁴⁸

면 위로 70cm 정도 드러난다. 이 점에서 수중암초인 이어도와는 다르다. 그러나 그 바위 2개의 면적은 약 10㎡에 불과하다. 일본은 이 조그만 바위를 '섬'이라면서 이미 개발에 나섰으며, 콘크리트 방파제를 설치한 다음 헬기장과 관측소를 만들었고,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유엔에 공식적으로 섬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를 일본의 최남단 섬으로 간주하고 이를 기준으로 국토 면적(약 38만 km²)의 66%에 이르는 25만km²의 대륙붕을 설정하면서, 중국과 결정적으로 마찰을 빚어왔다.

46 고타니데쓰오(2009), "일본의 오키노도리시마 정책," 「독도연구저널」, Vol.7, 가을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 p.42.

47 고충석·강병철 (2012. 11), "오키노도리시마 분쟁이 이어도 이슈에 주는 시사점," 「이어도연구」, 제3호, 이어도연구회, p.18.

48 「국방일보」(2008. 8. 26), 이성무, "우리 국토 지키기: 독도·이여도의 분쟁지역화를 막아야 한다"; 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 簡稱東北工程, 是中國2002年開始進行的一項歷史研究項目, 計劃爲時5年, 由中國社會科學院和東北三省聯合主辦。東北工程課題包括三大系列: 研究類、翻譯類和檔案資料類。主要研究古代中國疆域理論、東北地方史和民族史、古朝鮮、高句麗和渤海國; 中朝關係史等。「維基百科」(2009. 7. 8) 自由的百科全書跳轉到: 導航, 搜索 此條目需要補充更多來源。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국은 한때 정화(鄭和)함대를 아프리카까지 원정 보낸 적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해양과 거리가 먼 국가였다. 19세기 중엽 아편전쟁에서 충격 받은 중국은 해양국가를 건설하려고 했으나, 해양중국을 향한 시도는 실패하였고, 1980년대까지 중국해군은 해안의 방어와 육군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포클랜드해전과 걸프전을 통해 대륙지향적 사고가 해양지향적으로 바뀌었으며, 경제력 발전에 힘입어 류화칭(劉華清) 제독이 해군참모총장이 되면서 중국해군은 급속히 성장했다.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핵잠수함을 진수하는 등 중국해군은 마치 알프레드 마한(Alfred T. Mahan)이 주장했던 강력한 해군력⁴⁹을 재현하려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 이른바 ‘해양굴기’(海洋崛起)인 것이다.⁵⁰

21세기 들어서면서 중국에서는 ‘도련선(島鏈線·Island Chain)’이라는 ‘이익선’ 이야기가 자주 흘러나왔다. 도련선은 원래 1951년 美國무장관 존 델레스가 주장한 공산권 봉쇄라인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를 중국은 바꿔 자신들의 ‘이익선’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중국 공산당정부는 21세기 들어 ‘도련선(島鏈線)’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도련선에는 ‘제1 도련선(First Island Chain)’과 ‘제2 도련선(Second Island Chain)’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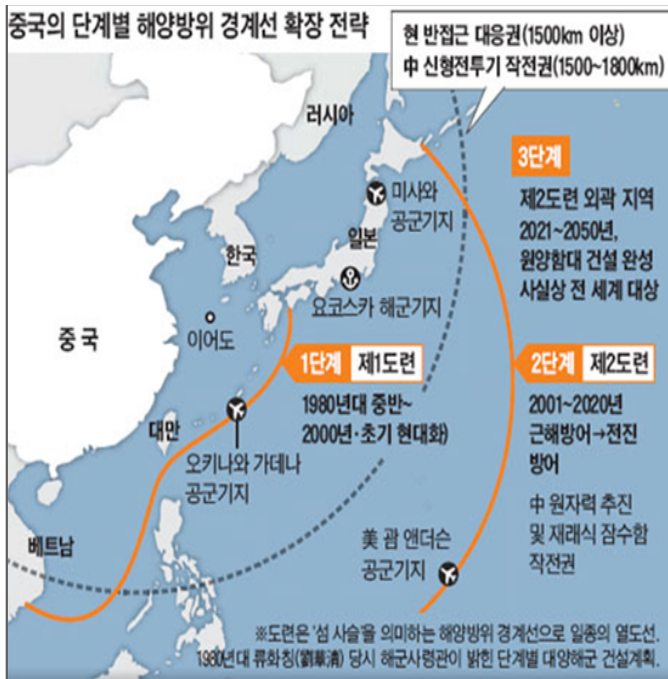
‘제1 도련선’은 한반도-일본 규슈-대만-필리핀-말레이시아-베트남을 잇는 선으로 전시 1차 방위선이며 평시에는 집중 감시한다. 대략 본토에서 1,000km 거리이며, 그 안에 서해·동중국해·남중국해가 포함된다.

‘제2 도련선’은 사이판-괌-인도네시아를 잇는 선이다. 중국 공산당은 이 ‘도련선’ 안을 자신들의 ‘영해’처럼 지배하고 싶어한다. 중국은 이 ‘도련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제해양법」에서 인정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조차 무시하고자 한다.⁵¹

⁴⁹ Alfred T. Mahan(1889),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⁵⁰ 윤명철(2012. 3. 25), “중국의 해양굴기”; <http://blog.daum.net/windada11/8760733>.

⁵¹ 「뉴데일리」(2011. 8. 26), “[특집] 100년만에 다시 중-일에 끼인 한반도, 우리 땅 지킬 수 있을까; 해군력 폭풍성장 中 “태평양 절반은 내꺼야!”, ‘(上)중국의 도련선 지키기와 해군력 증강...‘태평양 동서 나누지’ 제안, 美 거절.



[그림 8] 중국의 제1 도련선 및 제2 도련선과 주요 해군전력

* 자료: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군사력균형」 등

중국의 이러한 주장은 미국에 ‘1도련선을 인정하고 개입을 말라’는 압박인 것이며, 이를 받아들이면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 영향 아래 들어간다. 한국·일본·호주도 중국 위협에 노출된다. 중국의 힘이 더 커지면 방어선은 2,000km 밖인 ‘2도련선’으로 확장된다. 이 선은 일본 중부-필리핀-사모아 군도를 넘어 태평양 안쪽 깊숙이 설정되어 있다. 해안선이 긴 중국은 ‘거부(Areal denial) 전략’을 컨셉으로 ‘2도련선’까지 뻗어난 해상에 ‘진입불가지역’(no-go-zone)을 설정하고자 한다.⁵²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해군의 역할은 전쟁억제, 해양통제, 해상교통로 보호, 군사력 투사, 국가대외정책 지원 및 국위선양이며, 특히 이 중 언론과 여론을 통해 부각된 것이 바로 해상교통로 보호이다.⁵³

군사전문가들은 한반도를 삼키려는 중국의 야욕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생존을 위해서는 제주도에 해군기지와 공군기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1990년대부터 ‘우리 국력에 맞게, 우리 힘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워 추진해 오고 있다(공식명칭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⁵² 「중앙일보」(2010. 7. 1), “태평양 패권싸움 본격화, 美는 스텔스함으로 파고들기”.

⁵³ 대한민국 해군 홈페이지; http://www.navy.mil.kr/sub_guide/navy_about.jsp?menu=4&smenu=1 (검색일: 2012년 4월 11일).

어떻든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될 경우, 중국해군은 이어도에 대한 도발을 감행하기 어려워지며, 북한 또한 제주해협이나 한반도 주변에서 함부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이어도 지역은 확실한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실질적 해양관할권 속에 들어가게 된다. 즉, 제주해군기지에 배치될 전력까지 감안하면 중국해군은 ‘감히’ 이어도를 중국 땅이라고 우기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는 사실이다.

또한, 제주해군기지는 한반도 해역의 지리적 중앙위치로 유사시 전력의 집중과 분산에 유리하여 바다로부터의 위협을 막아내는 최전방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제주기지에 전개하는 기동전단은 북한의 우회침투로를 차단하고, 동·서해 전장(戰場)상황에 따라 전력을 융통성 있게 투입할 수 있게 된다. 평시에는 기동전단 함정에 대해 체계적이고 향상된 교육과 전비태세 유지 그리고 정비, 보급 등 근무지원이 용이하게 되며, 따라서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됨으로써 전력의 배치와 운용의 효율성이 증진되어 해군력이 증강된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과의 ‘충돌’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 일본이 독도를 문제 삼을 때마다 오키(隠岐)열도 주변에 우리 해군 기동전단이나 공군 전폭기를 보내게 된다면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⁵⁴ 이처럼 제주해군기지와 전폭기 기지를 함께 건설하면 제주도는 말 그대로 ‘한반도의 불침항모’로 변신, 이어도는 물론 우리나라의 보급선을 무사히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소말리아에 한 해 선박 500척이 드나드는데, 이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 해군함정까지 나가 목숨을 걸고 지키는데, 하물며 제주해협에서는 연간 약 50만척이 움직이는데 무방비 상태로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⁵⁵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독도’와 ‘이어도’라는 두 지역에 대해서 상대국들과 분

⁵⁴ 국회 국방위원회 정미경의원은 2010년 10월 18일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유사시 우리 해군함정이 경북 울진 죽변항이나 동해항에서 출발하여 독도에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은 각각 4시간 1분, 4시간 26분인데 비해 일본함정은 오키섬에서 출동하면 독도까지 2시간 50분, 시네마현 에토모항(シネマ縣 江藤母港)에서 출동하면 3시간 18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2010. 10. 18), “독도 유사시 한국해군 日보다 1시간 도착 늦어”.

⁵⁵ 공감 정책정보, “장보고의 청해진처럼, 안보 전초기지로 우뚝, 안보측면서 본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http://jejunavybase.korea.kr/newsWeb/pages/special/jejunavy/news/newsView.do?newsDatald=148729686§ionId=jejunavy_01

쟁 아닌 분쟁을 하고 있지만 실효적 점유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장은 불리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상대국들은 그렇지 않고, 절박할 정도로 치밀하고 때로는 무력사용도 불사할 정도로 관할권·영유권에 집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눈과 귀를 닫은 채 ‘점유상태’만을 유지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특히 한번 빼앗긴 영토는 결코 되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상대국들은 점유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국가적 정책으로 내세우고, 이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동해-일본해’ 이슈에서도 나타났듯이 방임적이고 방어적인 태도의 결과는 ‘영유권 피탈’로 나타날 수도 있다.⁵⁶

이러한 점을 심사숙고한다면, 우선 대내적 차원에서 국가위기관리를 위한 구축과제내지는 추진전략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먼저, 이어도가 한국의 영토이면서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지역인 ‘제2의 독도’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해서 범국민적인 해양영토수호 의식을 확산시켜야만 한다. 독도와 관련한 홈페이지는 전국민적인 독도수호 열망과 관심에 힘입어 상당히 많으나, 대표적인 민간단체인 반크(Vank)의 홈페이지⁵⁷에서 오히려 간도(間島)의 내용은 그나마 보이지만 아직도 이어도에 대한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심지어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서 영토·해양관련 이슈에 독도와 동해표기 문제는 있지만 이어도에 관한 별도의 페이지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렇듯 국민적 관심도 이끌어내지 못한 채 해양영토관리를 제대로 펼칠 수도 없을 것이다.

또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과제로서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에 대비한 국제법적 연구와 대륙붕에 관한 자료준비 등 분쟁의 소지가 발생치 않도록 상대국과의 외교관계 추진, 한·미 군사동맹 유지와 다자간 안보협력으로 상호신뢰를 획득해야 할 것이다.⁵⁸ 특히 아직 확정되지 않은 중국과의 EEZ 경계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⁵⁶ 최병학(2012), “최근 미국의 일본해 공식표기가 독도 영유권 및 해양영토 갈등에 미치는 영향,” 『한국 미래군사논총』, 창간호, 미래군사학회, pp.76-77.

⁵⁷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는 1999년도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가홍보와 교류를 위해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비정부민간단체이다. www.prkorea.com

⁵⁸ 최병학(2010), 앞의 논문, pp.229-237 참조.

특히 해양관할권 및 영유권 분쟁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은 매우 중요하다. 누차 강조되었듯이 독도문제에 미온적 대처로 일관한 결과는 UN산하 IHO의 초판 가이드라인인 Limits of Oceans and Seas (S-23)에 동해가 'Sea of Japan'으로 단독표기된 결정이 현재까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⁵⁹

이제는 해양영토관리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동아시아 해역은 강대국들의 물리적 거리가 짧아 EEZ 경계가 복잡하고, 풍부한 천연자원을 비롯하여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는 지형이 많은 만큼 영유권 분쟁이 전세계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지역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중국의 해양정책총괄부서인 「국가해양국」이나,⁶⁰ 일본의 「종합해양정책본부」⁶¹ 등 국가적 차원의 해양정책기구나 혹은 해양정책연구기관의 설치, 그리고 적극적 외교정책 및 협상대안 개발을 토대로 효과적인 해양영토관리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이미 중국은 해양영토 확대와 해양관할권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적인 도서개발 전략을 적극 추진해 왔다. 특히 2008년 7월 국가해양국에 '해역·해도관리사'(海域和海域管理司)를 신설하여 무인도서에 대한 생태보호 및 관리기능을 추가한 데 이어, 「해도(海島)보호법」 제정을 통해 2010년 이후에는 본격적인 무인도서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⁶² 이로써 최근 잇달아 추진되는 중국의 해양관할권 강화전략의 일환으로 향후 주변국과 해양자원 확보와 해양경계 획정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59 유코피아(2012.4.27), "동해/일본해 병행표기 무산...IHO총회 결론 못낸 채 종료".

60 최근 중국 국가해양국이 기능, 기구, 인원 등을 확정하는 '三定' 방안에 의거 기구를 개편하였으며, 특히 해양전략연구 강화와 해양사무의 종합조정, 직책의 증가(중국 관할해역의 정기적 권익수호 순찰 항해실시의 법적 제도, 해도(海島)생태보호와 무인도의 합법적 사용 관리를 포함한 7개 직책에서 11개로 증가), 기구증설(무인도 합법 사용에 대한 책임 중대, 행정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복해, 동해, 남해분국과 중국 해감총대(海監總隊; 한국의 해양경찰에 해당) 등의 법률적 지위 명확화 추진) 등이다. 독도본부 홈페이지, <http://www.dokdocenter.org/dokdonews/index.cgi?action=detail&number=8425&thread=26r03r01>.

61 2007년 4월에 성립된 해양기본법을 토대로, 2007년 7월에 수상을 본부장으로 하고 전각료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합해양정책본부」 발족으로 특히, 대륙붕연장에 관한 유엔위원회 신청서 제출 및 심사대응, 해저천연자원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륙붕구역을 유엔해양법조약 기준에 따라 EEZ 외측에 설정하는 작업, 낙도에 대한 기본방침 설정, 영해와 EEZ 등의 기선인 저조선(低潮線)의 손괴방지 대책 등을 담당한다. 독도본부 홈페이지, <http://blog.dreamwiz.com/dokdo8118/13794331>.

62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2010. 12. 31), "중국의 해도(海島) 보호관리업무 효과 현저," 「中国海洋報」; <http://www.ckjorc.org/ka/view.asp?id=932>(검색일: 2012년 4월 13일).

우리나라도 중국과 해양경계 획정과제를 안고 있으며, 중국의 「해도(海島)보호법」 시행으로 무인도서 관리가 강화될 경우, 현재 불합리한 영해기점에 대한 타당성 주장이 강화될 수 있으며, 이는 국립해양조사원에 의하면 중국의 마채형(麻菜珩), 외개각(外磕脚), 해초(海礁) 등을 영해기점으로 인정할 경우 우리나라는 약 9,000km²에 달하는 해역이 손실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⁶³ 또한 향후 황해 북부해역 영해기점이 추가로 선정되는 경우 중·북한 해양경계 획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양영토 분쟁관리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 역시 외교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양한 협상대안의 개발과 예상치 못한 사건에 대한 외교적 대처역량을 키우고, 정부의 국력도 외교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과 같이 적극적이고 때로는 모험적인 해양정책과 일본의 치밀한 로비로 이루어진 외교정책에 주목하여 예의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위기관리체제의 새로운 구축을 위하여, 보다 심화된 형태의 물리적 분쟁에 대비하여 상대국의 물리적·정치적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전략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제주해군기지 건설과는 별개로 제주지역 해양경찰력 증강과 인근 공군기지의 항공력 운용을 이어도 해역까지 확대하는 군사전략 역시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향후 중·일 양국은 국익 차원에서 갈등의 확대 대신 위기해소를 위해 다양한 접촉을 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센카쿠(다오위다오) 분쟁에서 먼저 물러서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센카쿠는 중국의 국가적 핵심이익이다. 일본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상실감, 국내정치의 무력감, 역사와 국제정세의 무감각이 심각하다. 일본어선이 이 해역에 들어오면 중국어선도 들어올 것이며, 일본순시선이 들어오면 중국순시선이, 일본함정이 들어오면 역시 중국함정이 들어올 것이다. 결국 양국의 복잡한 국내·외 사정 속에 센카쿠 사태는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국은 ‘우경화’하는 일본과는 독도분쟁을, ‘민족주의화’ 하는 중국과는 이어도를 사이에 두고 갈등하고 있다. 대응책은 무엇인가? 중·일 양국의 분쟁전략

63 박문진(2009), “중국의 해도(海島)보호법: 해양관할권 강화가 핵심,” Global Ocean Focus, *Dokdo Research Journal*, Vol.7 (Autumn), p.115.

과 행태, 수단과 전술의 강·약점을 분석해 이에 대비해야 한다. 독도나 이어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국은 국제분쟁화 하려는 일·중의 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된다. 나아가 독도와 이어도를 개별적 영토갈등이 아닌 미·중간 세력경쟁의 거시적 흐름에서 이해해야 하며, 우리의 대외정책과 통일정책의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센카쿠(다오위다오) 분쟁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⁶⁴

V. 결 론

최근 중·일간 센카쿠(다오위다오)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는 중국과 일본이 외교당국자 협의에서 ‘대화 계속 방침’을 확인했다.⁶⁵ 그러나 양국은 갈등 타개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은 센카쿠 국유화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는 반면 일본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12년도는 해양에 관한 헌법전격인 「유엔해양법협약」 채택 30주년이 되는 해였다. 이 협약은 연안국들에게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광범위한 해역 창출 권리를 부여하였으나, 동시에 해양영토 분쟁·갈등을 제공한 원인도 되었다. 각국이 협약 규정을 자국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 또한 협약규정이 갖는 한계에 기인한다. 결국 우리는 지금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평범한 법언(法諺)의 시험대 위에 놓여 있음⁶⁶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원래 이어도는 제주도 사람들에게 전설에 나오는 환상의 섬, 피안의 섬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곳이며, 뱃사람들이 바다로 나갔다 돌아오지 못하면 이어도로 갔다고 믿었다. 제주인의 의식세계에 깊이 뿌리박힌 이어도는 수많은 신화와 전설을 낳은 이상향의 섬으로 신비하고 원초적 힘을 자아내는 ‘이어도토피아’(leodotopia)이자 ‘이어도환타지아’(leodo fantasia)의 대상이었다.⁶⁷

64 황재호, “센카쿠와 국제정치,” 『경향신문』(2012. 10. 14)

65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의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중국 외교부의 뤼자오후이(羅照輝) 외교부 아시아 국장은 4일부터 이틀간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센카쿠 갈등으로 악화된 외교관계 개선방안을 협의했다. 『연합뉴스』(2012. 11. 5).

66 양희철(2012), “바다, 갈등, 2012년이 문제다,” 『포세이돈』, Vol.6, 해양경찰청, p.19.

이처럼 아름답고 평화로운 제주를 항구적으로 지켜내기 위해서는 여기에 상응하는 조건과 방법이 필히 강구되어야 한다. 평화는 그 자체로 유지되거나 지켜질 수 없으며, 주변과의 관련 속에서 능동적으로 존재양식을 확보할 수 있을 때만이 실로 가능하다. 이어도는 이제 단순한 수중암초가 아니라, 해양영토를 확보하려는 한국·중국·일본 3국이 각축하는 현실의 섬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어도를 대한민국의 해양영토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제주인들이 늘고 있어 주목을 끈다. 중국과 바다를 맞대고 있는 14개 국가 중 분쟁을 겪고 있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으며, 분쟁국들의 경험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사)이어도연구회’(이사장 고충석)에서는 ‘이어도 해양아카데미’ 및 ‘이어도 청년지킴이’ 운영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이어도 해양분쟁과 중국 민족주의」를 출간하는 등 다양한 학술조사 및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이다.⁶⁸ 특히, 2012년 9월 20~21일 타이베이 중앙연구원 아·태지역연구센터(CAPAS)에서 열린 「동아시아 해양의 지리적인 특질과 해양법」 주제의 국제세미나 개최는 눈에 띄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조례안의 상정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국가적 분쟁 등이 우려된다는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번번히 성사되지 못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강경찬·박규현 의원 등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한 상태로 2014년 6월 30일까지 상정되지 않고 제9대 의회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⁶⁹

이제는 이어도가 중국의 해양관할권에 속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한국은 책임 있는 해양영토관리 차원에서 과거 해양정책의 실패를 필히 경계해야 한다.⁷⁰ 중국의 해양위협에 대응하는 이어도 해양관할권은 남해 해양주권의 핵심

⁶⁷ 홍정순(2011. 9), “제주자원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장소마케팅 스토리텔링 활성화방안: 이어도 환타시아(IEODO Fantasia),” *JDI FOCUS*, No.122, 제주발전연구원, pp.18-19.

⁶⁸ 이어도연구회(2010), 「또 하나의 제주섬, 이어도」; 이어도연구회(2010), 「이어도에 대한 서구의 인식」 및 고충석·강병철(2013), 「이어도 해양분쟁과 중국 민족주의」, 서울: 한국학술정보 각각 참조.

⁶⁹ 「제주인뉴스」(2013. 4. 21), “강경찬 의원, ‘이어도의 날 조례’제정 언제까지 연기할 것인지 불만 토로”.

⁷⁰ 최병학 외(2012. 3), “해양영토 주권의 역사적 권원 및 영유권에 대한 논리적 고찰,” 「해양전략」, 제153호, 합동군사대학교.

이며, 동시에 일본의 해양위협에 대응하는 독도 영유권은 동해 해양주권의 보루임을 알아야 한다. 스스로 강해지지 않으면 결코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해양영토 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할 것이다. 해양영토 문제란 단순히 국경을 정해서 서로 공해(公海)를 적당히 나누어 갖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그 속에는 국가의 미래와 존망이 달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최근 정부가 독도, 이어도를 포함하여 해양영토 전반적 관리를 위한 법제정을 추진하고 정부기구도 확대 개편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국토해양부는 해양경계가 정해지지 않아 발생하는 주변국과의 갈등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해양영토관리법」을 제정하기로 하였다.⁷¹ 이로써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수역을 포함, 관할해역을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한편 해역별 종합관리기본계획 수립, 주변국과의 상시적 갈등발생에 대응, 해역별 국내법의 집행력 강화방안과 해경을 활용한 해양경비계획 수립 및 해양전진기지 건립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21세기 동북아지역에서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확고히 담보하기 위해서는 해양력을 충분히 갖추어야만 하며, 이러한 점에서 이제는 이어도 해양관할권과 남해 해양주권의 확보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된다.

2012년 12월 6일, (사)이어도연구회 주최로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에서는 ‘이어도 노래 음반제작 발표 기념 콘서트’가 열려 가곡 ‘이어도’와 대중가요 ‘이어도가 답하기를’이 선보였다. “...파도가 잠들지 않고 용솟음치는 것은 내님이 바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서, 새삼 ‘내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 보면서, 국가 차원의 모든 공식석상에서 우리나라 해양영토 최동단 독도와 함께 최남단 이어도가 어깨를 나란히 한 모습이 속히 제시되기를 간곡히 기대한다.

71 이데일리(2013. 4. 19), “‘독도·이어도 등 해양주권 강화’……해양영토관리법 제정”.

Abstract

Securing the Maritime Jurisdiction over Jeodo and the Maritime Sovereignty over the Southern Sea in Consideration of Korean Ownership of Dokdo Island

Choi, Byoung Hahk

Senior Fellow,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In recent days, disputes and conflicts over the maritime territory are high in the south Asian countries including China, Russia, and Japan, with a focus on 4 islands in the north(Kuril Islands), Senkaku Islands, Nansha Islands, Paracel Islands, and Dokdo and Jeodo.

Specifically, securing the maritime sovereignty over Jeodo which is the southernmost isle on the Korean peninsula is a key point for establishing Korea's marine roads, maritime resources and maritime sovereignty in parts where conflicts and disputes over the maritime territory are happening in the northeastern Asia, over against Japan's policies to be an army mum which comprise the negation of Korean sovereignty over Dokdo the southernmost part of Korea and the Eastern Sea marked as Japan Sea and over against China's increase of military power and claims for national sovereignty according to China's naval strategies.

Moreover, recently the Japanese government decided and officially notified Korea that the Dokdo issue should be brought in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ICJ) and China maintains the far-fetched argument that Jeodo is the southernmost part of Korea but Jeodo does not belong to the Korean territory. Korea must be fully and thoroughly prepared in terms of international laws against the worst case, in which Japan turns Dokdo into an territorial

dispute place and China turns Jeodo into another territorial dispute place and both countries refer the issues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Subsequently, a naval advance base on Ulneung Island and a naval base on Jeju Island should be effectively constructed, and Korea must secure a maritime power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according to the concept of air-sea battle operations.

However, compared to Korean ownership of Dokdo Island and maritime sovereignty over the Eastern Sea, fewer researches have been conducted into maritime jurisdiction over Jeodo and maritime sovereignty over the Southern Sea; and therefore, developing military and/or non-military countermeasures is a critical task of policy. This thesis is aimed to develop comparative discussions about the construction of Korean maritime security systems so as to secure maritime jurisdiction over Jeodo and maritime sovereignty over the Southern Sea, in favor of Korean ownership of Dokdo Island and maritime sovereignty over the Eastern Sea.

Key words: Maritime Jurisdiction over Jeodo, Maritime Sovereignty over the Southern Sea, Korean ownership of Dokdo Island, Maritime Sovereignty over the Eastern Sea, Disputes & Conflicts over the Maritime Territory

참고문헌

- 강호백 (2009), “한·중 해양경계 획정문제: 이어도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50권, 한국 동북아학회.
- 경기대학교 학군단 (2012), 「동아시아 영토전쟁」.
- 고충석·강병철 (2012. 11), “오키노토리시마 분쟁이 이어도 이슈에 주는 시사점,” 「이어도연구」, 제3호, 이어도연구회.
- _____ (2013), 「이어도 해양분쟁과 중국 민족주의」, 서울: 한국학술정보.
- 고충석 외 (2010), 「대한민국 최남단 이어도」, 쌤별디앤피.
- 국토연구원·제주발전연구원 (2011. 8),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관련 일본 해외출장보고서」.
- 국토지리정보원 (2006. 10. 31), “우리 영토, 우리 지명 제대로 알리자,” 국토지리정보원 창립 32주년 기념 대한민국전도(영문판) 발행.
- 김경민 (1995), “남사군도와 중·일본쟁 가능성,” 「사회과학논집」, 제14권, 한양대학교.
- 김기수 (2011. 12. 15), “중국 불법 어업과 중국이 치러야 할 대가,” 「세종논평」, No.233, 세종 연구소.
- 김기훈, “이어도 전설에서 현실이 되기까지: 이어도의 유래”.
- 김부찬 (2007), “이어도 및 이어도 주변수역의 해양법적 지위,” 「법과정책」, 제13권 2호,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영구 (1998),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김영구 (2008), 「이어도 문제의 국제법적 해결방법」, 고구려역사재단.
- 김영기 (1998), “국제법상 시효에 관한 고찰,” 「독도연구」, 서울: 법률출판사.
- 노준현·구영환·김승년 (2008), “제주해군기지 건설 및 운용이 제주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경제학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응용경제학회.
- 문세홍 (2010. 8. 17), “해양강국의 꿈, 이어도 사랑,” *Jejusori.net*.
- 박문진 (2009), “중국의 해도(海島)보호법: 해양관할권 강화가 핵심,” *Global Ocean Focus, Dokdo Research Journal*, Vol.7 (Autumn).
- 박이선 (2011), 「eBook 이어도 전쟁」, 서울: 울도국.
- 박천호 (1997), “국제해양법법원을 통한 해양분쟁의 해결에 관한 소고,” 「안암법학」, 제6권, 안암법학회.
-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
- 송상일 (2010), “이어도를 찾아서,” 「이어도연구」, 창간호, 이어도연구회.
- 송성대 (2010), “한·중간 이어도海 영유권 분쟁에 관한 지리학적 고찰,” 「대한지리학회지」, 제5권 3호, 대한지리학회.
- 신각수 (2001), “국경분쟁의 국제법적 해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심재설 (2007. 1. 25), “해양과학의 보고, 이어도,” 「이어도, 지금 우리에게 무엇인가」, 강창일의 원실 주최 정책토론회 발표논문집.
- 양희철 (2012), “바다 그리고 갈등, 2012년이 문제다,” 「포세이돈」, Vol.6, 해양경찰청.
- 윤명철 (2012. 3. 25), “중국의 해양굴기”; <http://blog.daum.net/windada11/>
- 윤종래·최진태 (1996), “남사군도 영유권 분쟁과 중국의 해군력 증강정책,” 「사회과학연구」, 제8권, 순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이상운 (2011), 「과학기술과 국제정치: 한국의 글로벌 해양전략」, 서울: 도서출판 높은새.
- 이석용 (2006), “국제사법재판소의 도서영유권 및 해양경계 획정 관련 분쟁해결,” 「국제법학회논총」, 제51권 1호, 대한국제법학회.
- 이어도연구회 (2010a), 「또 하나의 제주섬, 이어도」.
- _____ (2010b), 「이어도에 대한 서구의 인식」.
- 이요한 (1998), “남중국해 분쟁과 중국 및 ASEAN의 대응,” 「국제지역연구」, 제2권 3호, 한국의 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 이정태 (2007), “중국의 해양영토 귀속판단,” 「한국동북아논총」, 제44권, 한국동북아학회.
- 이한길 (1992), 「국제법 강의」, 서울: 박영사.
- 자주국방네트워크 (2011. 6. 14), “중국의 이어도 공정, 손도 못써보고 한달만에 백기”.
- 전일욱 (2013), “중·일 영토분쟁의 전개과정과 분쟁구조의 특징: 조어도(釣魚島)를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14권 1호, 한국평화연구학회.
- 정민정 (2011), “동해 표기문제 및 일본의 ICJ 발언관련 대응방안,” 「이슈와 논점」, 제284호, 국회입법조사처.
- 최기출 (2009), “남사군도 분쟁: 협력적 구성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최병선 외 (2008), “해양영토의 가치와 합의,” 「신해양시대 신국부론」, 나남.
- 최병학 (2009), “일본의 독도영유권 논리와 정책대응,” 이종학·길병욱·최병학, 「독도·대마도: 영토주권과 강역사」, 대전: 도서출판 MB.
- _____ (2010), “해양영토 분쟁과 독도영유권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4권 2호, 한국지방정부학회.
- _____ (2012a), “최근 미국의 일본해 공식표기가 독도영유권 및 해양영토 갈등에 미치는 영향,” 「한국미래군사논총」, 창간호, 미래군사학회.
- _____ (2012b), “해양주권 확보와 국가위기관리체제 구축: 이어도 해양관할권 및 남해 해양주권 확보와 국가위기관리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비상대비연구논총」, 제37집, 행정안전부.
- _____ (2012c), “동북아지역 해양영토 분쟁과 한국의 해양안보,” 「해양전략」, 제154호, 합동군사대학교.
- 최병학·길병욱 (2012. 3), “해양영토 주권의 역사적 권원 및 영유권에 대한 논리적 고찰,” 「해양전략」, 제153호, 합동군사대학교.
- 최태현 (2007), “외교적 방식에 의한 영토분쟁의 해결,” 「법학논총」, 제24권 4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2010. 12), “중국해도(海島) 보호관리업무 효과 현저.”

홍정순 (2011. 9), “제주자원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장소마케팅 스토리텔링 활성화방안: 이어도 환타지아(IEODO Fantasia),” *JD/ FOCUS*, No.122, 제주발전연구원.

고타니데쓰오(2009), “일본의 오키노도리시마 정책,” 『독도연구저널』, Vol.7, 가을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

http://www.dokdocenter.org/dokdo_news/index.cgi?action=detail&number=842

<http://www.truthofdokdo.com/>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63&pn=0&num=1725

<http://blog.daum.net/morningpia/17459781>

<http://blue-paper.tistory.com/215>, “세계 최고의 미항(美港) 군항(軍港)”.

http://ieodo.khoa.go.kr/open_content/main/

<http://jejunavybase.korea.kr/newsWeb/pages/special/jejunavy/news/>

<http://koreadefence.net/>

http://www.bookrail.co.kr/view/product_detail.asp?co_id=N0605374

<http://www.coi.gov.cn/>

<http://www.duduchina.co.kr>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303151.html.

<http://www.historyfoundation.or.kr/>

<http://www.ieodo.kr/>

<http://www.ieodo.or.kr/index.htm>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59264>

<http://www.mofat.go.kr/press/hotissue/dokdo/index.jsp>

<http://www.ngii.go.kr/kor/board/view.do?rbsldx=48&idx=46>

<http://www.ngii.go.kr/kor/board/view.do?rbsldx=48&idx=46>

<http://www.prkorea.com>

<http://www.sasebo99.com/>

<http://zh.wikipedia.org/wiki/>

독도연구센터; <http://www.ilovedokdo.re.kr/>

국립해양조사원; <http://www.khoa.go.kr/>

대한민국 영토 이어도: <http://www.ieodo.or.kr/>

대한민국 해군; <http://www.navy.mil.kr/>

연안 및 해양영토관리; <http://www.coast.kr>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이어도연구회; <http://ieodo.kr/>

제주해군기지사업단; <http://jejunbase.navy.mil.kr/>.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http://www.kiost.ac/>
한국해양연구원; <http://www.kordi.re.kr/>
한국해양수산개발원; <http://www.kmi.re.kr/>
해양영토대장정; <http://www.oceanpilgrim.or.kr/>
해양영토전략연구센터; twitter.com/Jongyun_s_korea

韓對我蘇岩礁維權橫加指責“質問”我外交官圖(7)(2012. 3. 12), 周旭 環球時報 ; http://big5.china.com/gate/big5/military.china.com/important/11052771/20120312/17086534_6.html

韓對我蘇岩礁維權橫加指責“質問”我外交官圖(4)(2012. 3. 12), 周旭 環球時報 ; http://big5.china.com/gate/big5/military.china.com/important/11052771/20120312/17086534_3.html

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簡稱東北工程，是中國2002年開始進行的一項歷史研究項目，計劃為時5年，由中國社會科學院和東北三省聯合主辦。東北工程課題包括三大系列：研究類、翻譯類和檔案資料類。主要研究古代中國疆域理論、東北地方史和民族史、古朝鮮、高句麗和渤海國；中朝關係史等。「維基百科」(2009. 7. 8) 自由的百科全書跳轉到：導航, 搜索 此條目需要補充更多來源。

「中國海洋報」; <http://www.ckjorc.org/ka/view.asp?id=932>.

中國海軍力現代級驅逐艦(俄文:Эскадренные миноносцы типа)(2012. 3. 22).

Blake, Gerald H., ed.(1994), *Maritime Boundaries*, London: Routledge.

Coser, Lewis A.(1956), *The Function of Social Conflict*, New York: The Free Press.

Dissenting Opinion of Judge Oda, para. Judgement of 1985.

Dougherty, James E. and Pfaltzgraff, Robert L. (1990), *Contending Theories of Internaional Relations*, New York: Harper & Row.

Hiroshi Terashima (2009), "Prospects for Dffective Marine Governance in the NW Pacific Region," *Marine Policy*, Vol. 24, Issue 4, July.

Mahan, Alfred T. (1889),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Opinion of Judge Oda, para. Judgement of 1985.

Smith, Esmund D.(1996), "China's Aspirations in the Spratly Islands," *Contemporary Southeast Asia*, 16, Dec.

Sumner, Brian Taylor (2004), "Territorial Disputes at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Duke Law Journal*, Vol.53, April.

서구 시각에서 본 남중국해 해양영유권 분쟁과 중국의 패권주의*

김희열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독일학과

남중국해는 태평양의 한 해역으로 2,975,000km² (동중국해보다 두 배 이상 큰 면적)의 크기를 가진 영해로서 지구상에서 가장 큰 영해이다. 남중국해는 중국과 대만 이외에 동남아시아 8개국으로 에워싸여 있으며, 오늘날 가장 중요한 국제 해로로서 해마다 물품 선적한 화물선의 50%가 이곳을 지나고 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이 지역에 부존하는 천연가스와 기름이며, 현재 약 3천만 배럴 석유와 7,500 km³의 천연가스가 부존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남중국해는 엄청난 정치·지정학적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이다. 중국은 남중국해 거의 전 해역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중국과 분쟁을 겪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특히 베트남과 필리핀이 미국의 도움으로 중국에 맞서는 형국으로 가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 이후 아시아·태평양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도움을 요청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중국의 패권주의 저지에 나서고 있다. 이로 인해서 중국의 경제 실리적 패권주의와 미국의 전통적 패권주의가 남중국해 해양 분쟁을 계기로 서로 충돌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아·태 지역 국가들의 군비 증강으로 이어지고 있다.

* 위 글은 제주대학교 탈라문화연구소의 탈라문화 제 42호(2013.2)에 실린 논문 「서구 시각에서 본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의 패권주의 연구」의 내용을 보완 및 축약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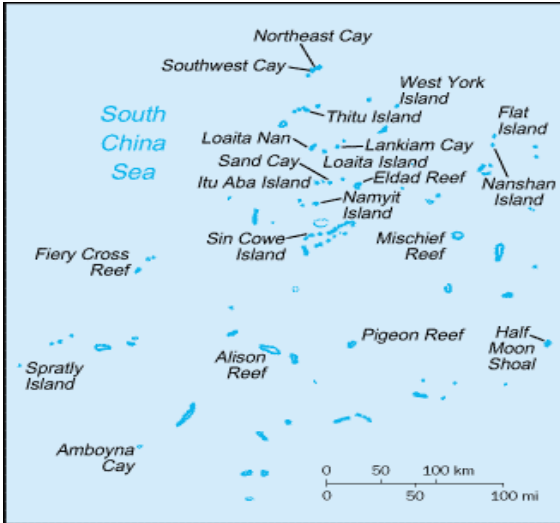
I. 남중국해 분쟁지역

1. 분쟁원인과 과정

중국은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30년 이상 남중국해 인접국들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1995년부터 그 인접국들과 공동협력을 통해서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²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최근 몇 년 사이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공세적 입장으로 말미암아 베트남 및 필리핀과의 분쟁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 밖의 국가들은 현재 분쟁수역과는 직접 연관성이 적거나 없기 때문에 소극적 주장에 머무르고 있다. 남중국해 인접국들의 분쟁원인은 크게 보면, 1) 남중국해가 해외무역의 주요한 국제해로라는 점, 2) 남중국해는 풍부한 어장자원을 가지고 있는 점, 3)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 가스 및 석유자원이 부존하는 점이 분쟁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중국과 남중국해 인접국들 사이의 영유권 갈등은 주로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제도)와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제도) 및 스카보로(중국명: 황옌다오) 사구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다. 파라셀 제도는 130여개의 산호섬과 암초로 이뤄진 군도이며, 이 제도를 놓고 중국, 대만, 베트남이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1974년 베트남을 이 제도로부터 축출한 후 실질 점령·관리하고 있다. 스프래틀리 제도(베트남명: 쑤엠포 군도, 필리핀명: 카라얀 군도) 역시 수백 개의 암초, 산호초 및 섬들로 이뤄져 있으며, 이 제도를 놓고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가 각각 스프래틀리 군도 전체 혹은 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브루나이를 제외하고 현재 다른 국가들은 각기 이 제도의 일부 섬들을 점령 관리하고 있다. 스카보로 사구는 파라셀 제도에서 필리핀해역에 가까이 있고 필리핀이 관리하고 있는데, 2012년 4월 중국이 이 사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중국과 필리핀 사이에 분쟁이 일었다.

² Su Hao & Ren Yuan-zhe(2011), “Drowning the Rocks of Disputes in the Sea of Cooperation: The Role of the South China Sea in the Process of East Asian Cooperation”, *The South China Sea. Towards a Region of Peace, Security and Cooperation*, Tran Truong Thuy (ed.), Vietnam, 22쪽. 이하 각주 인용 시 책제목으로 함.



스프레틀리 제도 내의 섬들



파라셀 제도 내의 섬들

그동안 분쟁과정을 살펴보면, 1864년 스프레틀리 제도의 몇몇 섬들이 영국 연합에 의해 점령된 후 영국령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로 인해서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와 같은 이전 영국 식민지국가들이 남쪽으로 뻗은 스프레틀리 제도의 몇 개의 섬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1884년 프랑스가 베트남을 식민지로 만든 이후 파라셀 제도와 스프레틀리 제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고³, 1933년에서 1955년까지 프랑스가 스프레틀리 제도를 인도차이나 식민지의 일부라고 천명하였다. 제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해군이 1939년 4월 이 제도를 점령하였고, 이 제도 중 가장 큰 섬인 이투 아바에 잠수함 전진기지를 구축하였다. 1945년 일본이 항복한 이후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정에 의해서 일본은 스프레틀리 제도를 포기했다. 그래서 인도차이나 식민지배 국가로서 프랑스가 다시 이 제도의 소유자가 되었다. 중국 본토에서 국민당이 대만으로 후퇴하는 과정에서 이투 아바를 점령하였으며, 이후 대만이 이 섬을 관리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중국은 1950년대가 되어서야 이 제도에 대한 권한을 주장하였

³ Ning Lu(1993), *The Spratly Archipelago: The Origins of the Claims and Possible Solutions*, International Center, Washington, D.C, 165쪽.

다. 베트남과 벌인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프랑스가 패배한 이후 프랑스는 이 제도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고, 1973년 베트남은 내전 중 스프래틀리 군도를 훈령으로 남베트남에 소속시켰다가, 1976년 베트남이 통일된 후 사회주의 베트남이 이 제도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였다. 1992년 중국은 자국 해양법으로 남중국해의 프라타스 제도 (동사), 파라셀 제도 (시사), 매클레스필드 제도 (중사), 스프래틀리 제도 (난사)에 대한 영유권을 명시하였다.⁴

2. 남중국해 분쟁수역에 대한 분쟁국들의 주장과 문제점

남중국해의 분쟁지역에서 중국은 파라셀 제도 이외에 스프래틀리 제도에 7개 암초를 점령하고 있으며, 차이나 위크리에 따르면, 베트남은 스프래틀리 제도의 27개, 필리핀은 9개, 말레이시아는 5개, 대만은 1개를 실질 점령하고 있다.⁵ 스카보로 사구는 필리핀이 관리하고 있다. 위의 지도(그림 1)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요구하는 라인과 각 국가의 UNCLOS에 입각한 영해기선으로부터 200



(그림 1: 가운데 붉은 선은 중국이 주장하는 관할권 영역, 파란 선은 인접국들의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른 200해리 EEZ 라인임.)⁴

⁴ Peter Dutton(2011), "Three Disputes and Three Objectives: China and the South China Sea", *The South China Sea. Towards a Region of Peace, Security and Cooperation*, 60쪽.

⁴ WELTINNENPOLITIK.NET. 2010.8.24. 사진자료 참조. <http://www.weltinnenpolitik.net/24/08/2010/china-offnet-die-buchse-der-pandora>.

⁵ Jehnny Erling(2012), "Rote Linien im 'brodelnden' Südchinesischen Meer.", *Die Welt*. 2012.8.21.

해리 EEZ라인을 보여주고 있다. 남중국해의 분쟁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있어서 “베트남,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가 확장된 해안선을 주장하고 있고 UNCLOS에 의해서 보장되는 EEZ를 주장하고 있다.”⁶ 이 지도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중국은 남중국해 거의 전 수역이 자국의 관할권에 놓여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남중국해 해양 분쟁이 격화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1)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문제점

중국은 남중국해 해역 거의 전체에 대한 권리 주장의 근거로 크게 두 가지 점을 들고 있다. 하나는 역사적 근원으로 볼 때 남중국해가 중국에 속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과거 국민당 정부가 남중국해 다도해 공식지도에 표기한 ‘9개의 저지선들’을 근거로 하여 남중국해 분쟁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비평가들은 중국이 “설득력 있는 역사적 증거들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게다가 1928년 중국의 공식보고서에는 “중국 영토의 남쪽 끝 경계가 파라셀 제도 (시사군도)로 되어 있고, 스프레틀리 제도 (난사군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⁷는 점을 지적한다.

그런데 중국은 1974년 베트남을 축출한 후 파라셀 제도를 무력으로 점령하였고, 1992년 2월 5일 “해양 영유권과 인접지역에 관한 중국 법”을 공표하면서 스프레틀리 제도를 중국의 영토라고 명시하였다.⁸ 또 중국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는 1947년 발표된 ‘9개의 저지선들’은 한국이 과거 이승만 라인으로 한국의 해양수역을 표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UNCLOS가 제정되기 이전 자국의 수역에 대한 표시이다. 당시 중국정부(중국국민당)는 “중국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섬들, 작은 섬들, 암초들, 사구들 및 인접해역 등의 경계를 나타내는 11개의 저

⁶ Christoph Hein(2012), “Südchinesisches Meer Säbelrasseln über dem Meer.”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2012.8.9.

⁷ Lee G. Cordner(1994), “The Spratly Islands Dispute and the Law of the Sea”, *Ocean Dev. & Intl. Law*, Vol. 64, 61-62쪽.

⁸ Mark J. Valencia/ Jon M. Van Dyke/ Noel A. Ludwig (1999), *Sharing the resources of the South China Se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2쪽. 이하 각주에서는 책 제목으로 표기함.

지선들을 사용해서 남중국해의 다도해 공식지도를 발간했다.”⁹ 이들 저지선들 중에서 톡킨 만에 있는 두 개의 저지선들은 나중에 배제되어서 이 지형은 ‘9개의 저지선들’로 알려졌다. 1984년 중국 광조우 남중국해 해양연구소가 출판한 수심 측량 차트에는 남중국해의 거의 전 지역을 커버하는 ‘9개 저지선들’이 포함되어 있다.¹⁰

그밖에 1992년 5월 중국은 크레스톤 에너지 회사에 방야드 사구와 프린스 웨일즈 사구(두 곳 모두 베트남에 의해 점유) 사이의 7347평방해리의 석유탐사를 위한 채굴권을 허용하였는데, 그 근거가 바로 이 ‘9개의 저지선들’이다. 그런데 중국의 탐사지역은 베트남 연안의 160해리 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은 즉각적으로 이에 항의 했다. 지리적으로 보면 스프래틀리 제도가 중국보다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에 더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1994년 7월 스프래틀리 제도 모두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지도를 배포하면서, 중국이 사실상 남중국해 전역에 대한 권한이 있음을 다른 나라에 시사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가 엑손사에 개발을 의뢰한 나투나 가스 지역도 들어 있어서 중국의 주장에 강력히 반발 했다.¹¹ 또한 2012년 4월 필리핀과 첨예하게 갈등을 빚은 스카보로 사구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 역시 이 ‘9개의 저지선들’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역사적 근원이나 ‘9개의 저지선들’을 들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상 국제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남중국해 분쟁에 있어서 대만의 참여는 남중국해 문제를 훨씬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대만은 그동안 중국전역에 대한 합법정부임을 주장해 왔으며, 1947년 ‘9개 저지선들’이 포함된 지도를 발간한 중국국민당 정부의 정통후계라고 주장한다. 대만은 1993년 3월 1일 스프래틀리 제도, 파라셀 제도, 마케레스필드 제도, 프라타스 제도 등에 대한 통치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정책 가이드라인”을

⁹ Pan Shiyong(1994), “South China Sea and the International Practice of the Historic Titl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Conference on the South China Sea*, Sept. 7-9, 5쪽.

¹⁰ Daniel J. Dzurek(1994), “Southeast Asian Offshore Oil Disputes”, *Ocean Yearbook* 11, 157쪽.

¹¹ John McBeth(1995), “Oil-rich Diet”, *Far Eastern Economic Review*, April 25, 28쪽.

채택하면서 역사적 수역 한계안의 남중국해는 중국공화국의 관할권 하의 해역이며 이에 대한 모든 권한은 대만이 소유한다고 주장했다.¹² 중국과 대만이 남중국해 분쟁에 공동으로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으나 대만과 중국 사이의 정통성에 대한 내부 갈등상황은 분쟁당사국 간의 협상에 어려움을 더해 주고 있다.

2) 베트남과 필리핀의 스프래틀리 제도 영유권 주장과 문제점

베트남은 1974년 파라셀 제도에 대한 중국의 점령 후에도 지속적으로 파라셀 군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파라셀 제도를 실질적으로 점유한 상황은 베트남에게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베트남은 스프래틀리 제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근거는 7세기의 지도에 이 분쟁지역들이 베트남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고, 15세기 문서에는 스프래틀리와 파라셀 제도들이 베트남 영토로 기록되어 있는 점에 있다. 또한 1884년 프랑스가 베트남에 보호령을 수립하고 스프래틀리와 파라셀 제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으며, 프랑스가 물러난 후 독립국이 된 베트남이 과거의 모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한다.¹³

베트남은 현재 스프래틀리 제도에서 가장 많은 섬들을 점령하고 있으며, 1973년 이후 스프래틀리 다도해의 20여개 이상의 작은 섬들에 수비대를 계속 주둔시키고 있다. 남중국해 인접국들 사이에서 EEZ 경계획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지역 주위의 어떤 구역도 영해로 제한될 수 없다는 것이 베트남의 입장이다. 베트남은 UNCLOS에 입각해서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EEZ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며, 200해리 이상은 국제 해저당국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베트남은 자국의 연안으로부터 남동쪽으로 연장된 200해리 이상의 대륙붕을 주장하는데, UNCLOS 제 76조 3항과 8항에 따르면 자연적으로 연장된 대륙붕은 최대 350해리까지 허용되지만 사전에 대륙붕경계획정위원회의

¹² *Sharing the resources of the South China Sea*, 29쪽에서 재인용.

¹³ *Sharing the resources of the South China Sea*, 30쪽.

결정이 있어야 EEZ가 350해리까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¹⁴ 그러나 1982년 베트남이 자국의 해안선에 입각한 직선 기선들 중 일부는 UNCLOS의 관련 조항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베트남은 기선들을 재조정해왔다.¹⁵

현재 베트남에 유리한 점은 스프래틀리 제도의 많은 섬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며, 베트남은 남중국해 관련분쟁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되기를 바란다.¹⁶ 결론적으로 본다면, 스프래틀리 제도에 대한 베트남의 영유권 주장은 역사적 근거보다는 EEZ의 관점에서 그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EEZ 200해리를 넘는 수역의 경우 어느 나라도 그 영유권을 확보할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공동협력이나 타협도 나오지 않는 점에 있다. 그밖에 베트남은 여러 차례 중국과 해양 분쟁을 겪으면서 2012년 6월 하순 스프래틀리와 파라셀 제도가 “하노이의 자국 영토라는 것을 천명하는 법안을 결정하였다.”¹⁷ 베트남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자국 법에 의해서 영유권을 강화하고 있다.

필리핀이 카라얀(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는 1956년 필리핀 국민인 토마스 콜마가 최초로 이 섬들을 발견했고, 이것을 1978년 마르코스 당시 대통령이 필리핀 영토의 일부로 편입시켰다는 것이다. 필리핀은 스프래틀리 제도가 필리핀 본토와 인접해 있다는 점, 이 지역이 국가안전과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 2차 세계대전 이후 이 지역이 방치되었다는 점, 몇몇 섬들을 필리핀이 점유한 것은 발견 혹은 관례적 획득의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¹⁸ 또한 필리핀은 대륙붕연장을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지만 실제 육지의 자연연장 대륙붕이 없기 때문에 이 주장은 인정받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스프래틀리 제도에 대한 역사적 근원이나 대륙붕의 자연

14 UNCLOS(1982), Article 76 (3, 8).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ceans and Law of the Sea. 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47쪽.

15 *Sharing the resources of the South China Sea*, 32쪽.

16 *Ibid.* 33쪽.

17 Steffen Richter(2012), "Südchinesisches Meer: China demonstriert seine Macht mit einem Fischerdorf." *Zeit Online*. 2012.7.24.

18 *Sharing the resources of the South China Sea*, 33-34쪽.

연장 설에 의거한 필리핀의 영유권 주장 역시 근거가 약하다. 다만, 어느 나라도 스프래틀리 제도 전체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증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EEZ와 실질적 점유를 하고 있는 섬들에 대한 영유권 주장만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스카보로 사구는 UNCLOS의 200해리 EEZ 기준으로 본다면 필리핀에 속하며, “이 암초는 필리핀 북쪽 섬 루손으로부터 124해리 떨어져 있고, 중국의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는 550해리 떨어져 있다.”¹⁹ 중국은 이 사구를 포함 남중국해 거의 전체가 중국에 속한다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분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스카보로 사구 분쟁은 이어도의 경우와 유사하고, EEZ 경계획정 합의가 이뤄지면 해결되는 문제이다.

3)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의 스프래틀리 제도 영유권 주장과 문제점

말레이시아는 남중국해의 12개 섬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그 중 6개를 점유하고 있고 그 중 3개는 점유되지 않았는데 하나는 필리핀이, 다른 2개는 베트남이 점유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주장은 1960년 자국이 서명한 영해와 대륙붕경계와 관련된 1958년 제네바 협약에 따른 대륙붕 자연연장과 발견 및 소유 이론 두 가지를 근거로 하고 있다. 자신들의 대륙붕을 말레이시아 연안과 인접한 것으로 정의하면서 1966년과 69년에 자기들만의 대륙붕법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된 1966년의 석유시추법에는 천연자원 탐사와 개발을 관리한다고 되어있다.²⁰ 말레이시아의 대륙붕 주장이 가장 분명하게 표출된 것은 1979년 발간된 영해와 대륙붕을 보여주는 지도이다. 여기에는 자신들의 대륙붕 지역을 지정하고 그곳에서 솟은 모든 섬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²¹ 그런데 말레이시아의 주장은 대륙붕 이론으로는 정당화하기 어렵다. UNCLOS 76 (1)은 “육지의 자연 연장선에서 대륙붕 가장자리의 외부 모퉁이까지 연장된 해저 지역의 해저 및 하층토”²²라고 대륙붕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대륙붕이 해수면 이상으로 올라온

¹⁹ Hans Spross(2012), “Spannungen im Südchinesischen Meer”. DW 2012.4.18.

²⁰ R. Haller-Trost(1994), “International Law and the History of the Claims to the Spratly Islands”,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Conference on the South China*, 32쪽.

²¹ *Sharing the resources of the South China Sea*, 36-37쪽.

땅이나 바위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브루나이는 현재 루이자 리프와 리플맨 사구, 두 곳과 자신의 대륙붕 연장에 근거하여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브루나이가 주장하는 경계선은 영국이 자신들의 보르네오 소유 경계를 대륙붕에서 영해까지 포함한다는 1954년 법령에서 그 유래를 찾고 있다. 브루나이는 1982년에는 200해리 어업구역을, 1984년에는 200해리 EEZ를 주장했다.²³ 브루나이가 루이자 리프에 대해 권리 주장을 하고 있지만 만조 때만 물위로 나오는 작은 돌 두 개만 있는 이곳을 해역에 대한 권리의 근거로 삼기에는 너무 취약하다. 이것은 UNCLOS 121(3)에 따르면 바위로 분류되기 때문에 EEZ나 대륙붕의 기점이 될 수 없다. 또한 “연장된 대륙붕에 대한 브루나이의 주장은 이스트 팔라완이 대륙붕의 자연연장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UNCLOS의 요구 조건에도 부합되지 않는다.”²⁴ 이런 점에서 본다면 브루나이의 주장 역시 역사적 근원이 취약하며, EEZ 200해리 범위 안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역사적 문헌만으로는 남중국해 분쟁수역에 대한 각 국가의 영유권 주장은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실효적 지배와 200해리 EEZ 경계획정 합의에 의해서 영유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각 국가의 EEZ 경계 확정 밖에 놓여 있는 남중국해 수역은 인접국들의 공동 관리와 공동 협력을 통한 개발이 가능할 수 있으나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일방적 영유권 주장 앞에서 평화적 해결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EEZ 경계획정을 하는 경우, 그림 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중국은 파라셀 제도를 제외하고 스프래틀리 제도와 스카보로 사구에 대한 영유권 획득은 사실상 불가하기 때문에 협상에 임하는 대신 자국 법에 의한 실효적 지배의 방법에 매진하고 있다.

²² UNCLOS, Article 76 (1). *Oceans and Law of the Sea. 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47쪽.

²³ Ning Lu, op. cit., 76쪽.

²⁴ Ibid.

II.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패권과 인접국들 사이의 갈등

1. 중국의 경제 실리적 패권주의의 본질

중국은 세계 전 지역에서 자국의 경제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에너지를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남중국해는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다. 그렇지만 중국은 남중국해 인접국들과 분쟁을 겪으면서도 미국이 남중국해 분쟁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조심하였다.²⁵ 그러다가 최근 2-3년 사이 중국이 남중국해 거의 전 수역에 대한 영유권을 다시 주장함으로써 분쟁이 격화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2012년 10월 현재까지는 중국과의 분쟁 당사국은 주로 베트남과 필리핀이지만, 과거에는 필리핀과 베트남의 갈등,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의 갈등도 간헐적으로 있었다. 독일의 *Weltinnenpolitik*은 중국이 남중국해의 인접국들과 분쟁을 격화하는 상황을 두고 드디어 “중국이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²⁶에 비유하였다.

그동안 남중국해 갈등완화를 위한 노력도 있었는데, 중국은 2002년 ASEAN 국가들과 ‘남중국해 행동선언’ (DOC: Declaration of Conduct in the South China Sea)에 서명을 해서 남중국해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고, 2005년 3월 필리핀 및 베트남과 함께 “해역지진탐사 공동협정”을 맺는 등 화해적 입장을 보였다.²⁷ 그러다가 이듬 해 중국은 자신들의 입장을 공격적으로 바꾸어서 “남중국해와 그 곳에 있는 섬들은 ‘국가의 핵심 관심사안’이며, 대만과 티베트에 못지않은”²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도 2005년 중국 지도부는 조화로운 세계와 모든 국가들과의 선린관계를 추구한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2008년에는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외교정책은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다고 천명했다.”²⁹ 뿐만 아니라 중국은 남중국해 두 개의 분쟁제도 전부와 그

²⁵ Christoph Prantne(2012), “Konflikt im Südchinesischen Meer: Geopolitischer Testfall”, *DER STANDARD*, 2012.5.11.

²⁶ *WELTINNENPOLITIK.NET*, op. cit.

²⁷ Su Hao & Ren Yuan-zhe, op. cit., 23쪽.

²⁸ *WELTINNENPOLITIK.NET*, op. cit.

사이 놓여 있는 해역을 중국이 발간한 지도에 자국의 수역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은 자신들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도들로 고고학자 대표단을 파견하였고 발견된 도자기 파편에 의거해서 중국인들이 오래 전에 그곳에 거주하였음을 증명하고자 하였다.”³⁰ 이렇게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항상 양면적인 태도를 보여 왔는데 그 이유는 중국이 경제 실리적 그리고 군사적 관점에서 남중국해 제도들을 둘러싼 분쟁을 국가의 명예로운 이슈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남중국해의 파라셀 군도, 스프래틀리 군도, 스카보로 사구 근처에 석유와 가스 자원이 풍부하게 부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관련 국가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가스 및 석유자원 탐사에 들어가 있다. 중국의 경우, 시추를 위한 플랫폼까지 최초로 건설하여 2012년 5월부터 가동에 들어가 있으며, 중국은 다른 나라의 탐사활동에 항의하거나 직접적인 방해로 하기도 하였다.³¹ 이렇게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은 치열한 자원 확보경쟁과 군비확장을 낳고 있으며, 남중국해가 국제 무역해로라는 관점은 분쟁대상국들 사이에 그리 중요한 화두가 아니다. 특히 중국은 남중국해 해계모니를 위해서 하이난에 새로운 주요 해군기지를 구축하였고, 이곳은 핵 잠수함 기지이며, 2020년 이후 항공모함 기지가 구축될 예정이다.³² 중국은 수년 전부터 해군을 재편하거나 구조를 바꾸고 있으며, 군대를 숫자보다는 질적으로 개편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인력을 줄이면서도 군사 장비를 현대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 중국은 국가방어구조도 개편하고 있으며, 연안 방어를 새롭게 정비하였다.³³

그런데 문제는 가장 최근 중국의 조치들이 남중국해 인접국들과 영유권 갈등을 다룰 때 장애가 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통일된 대외정책을 보여주지

²⁹ Ibid.

³⁰ Andreas Seifert(2012), “Konfliktzone im Südchinesischen Meer. Über die Bedeutung des Konflikts um die Spratly-und Paracel-Inseln”. *Informationsstelle Militarisation (IMI)-Studie*. Nr. 09/2012, Tübingen, 2쪽.

³¹ Hans Spross, op. cit.

³² Bronson Percival (2011), “The South China Sea: An American Perspective”, *The South China Sea. Towards a Region of Peace, Security and Cooperation*. 38쪽.

³³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2012),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2쪽.

못하고 있으며, 대외 외교정책이 여러 부서에 의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서 2012년 4월 ICG의 ‘아시아 보고서’는 중국 당국과 기관들 사이의 경쟁과 외교부의 구조적 약화가 중국의 통일된 입장을 방해하고 이로써 남중국해 갈등을 첨예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³⁴ 중국에는 외무부와 민족해방군(해군) 이외에도 어업국, 해상 감시국, 관세국, 연안 감시국 및 지방정부들이 분쟁지역의 외교정책에 관여하고 있다. 그래서 “분쟁지역에서의 긴장과 충돌은 이런 조건하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기관들의 독자적 ‘무장’을 정당화하는데 쓰이고 있다.”³⁵

그리고 중국은 경제 실리적 패권주의를 남중국해 분쟁에서 보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2012년 5월부터 남중국해 분쟁수역에서 석유 시추를 시작한 것이다.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첫 시추 플랫폼³⁷

중국국영석유회사(CNOOC)는 2020년 이전에 남중국해에 290억 달러를 투자하여 800개의 원유시추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이 시설들을 이용하여 2015년까지는 2.5억톤, 2020년까지는 5억톤의 원유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³⁶ 대략 남중국해에 부존하는 석유자원은 중국 연간소비의 60배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에너지 소비국이다. 북경 국제학 중국연

³⁴ International Crisis Group(2012), “Stirring up the South China Sea (I)”, *Asia Report* 223. 2012.4.23.

³⁵ Andreas Seifert, op. cit., 3쪽.

³⁶ Li Mingjiang(2012), “Chinese Debates of South China Sea Policy: Implications for Future Developments,” *RSIS Working Paper*, No. 239, S.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ingapore, 21쪽.

³⁷ Frankfurter Allgemeiner Zeitung. 2012. 5. 20일자 사진에서.

구소의 에너지 전문가 “씨아 위샨은 2020년까지 지금의 51%에서 70%까지 에너지 수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³⁸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석유 채굴지역은 에너지 확보 및 주권 사수라는 측면에서 전략적 무기인 것이다. 현재 채굴은 파라셀과 매클레스필드(동사 제도) 사이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채굴 지역은 홍콩으로부터 동남쪽으로 320킬로 떨어져 있다. 이 수역은 1500m 깊이에 최대 깊이는 10,000m이다.”³⁹

이렇게 중국은 자국에 필요한 에너지를 바다에서 얻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가장 먼저 플랫폼 건설을 하고 석유를 캐내고 있다. 필요한 경우, 무력 및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에너지자원을 확보하려는 공세적 자세로 중국은 동중국해에서는 센카쿠 열도에서 멀지 않은 춘샤오 유전지대에서 석유를 시추하고 있으며, 남중국해의 분쟁수역에서도 석유를 생산해내고 있다. 이로써 중국은 한편으로는 공격적으로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석유와 가스 자원개발에 착수해서 중국 경제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확보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이 특히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경제적 필요성과 실용성에 입각한 새로운 패권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중국이 분쟁을 오래 끌면서 유전개발을 하는 경우, 그 자원은 고갈될 수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2012년 6월 21일 중국 국가위원회는 중국이 점령하고 있는 파라셀 제도에 속한 용시양 (永興島 영어명: 우디 아일랜드)에 새로운 자국의 658번째 초미니 도시 산샤를 건설하였다. 남중국해의 관리와 영유권을 확실히 하기 위한 산샤 시 창설은 남중국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오래된 전략의 산물인데, 2007년 11월 중국 인민위원회는 하이난 지방정부가 제출한 산샤 신도시 계획을 허가하였다. “이 새로운 시는 200개의 섬들에 있는 13㎡의 육지, 모래 사구와 암초들에 대한 행정적 주권을 행사하여 2백만㎡ 이상의 남중국해 수역을 다스린다.”⁴⁰ 산샤 시가 있는 우디 아일랜드는 천 명이 채 살지 않는 작은 어촌 마을이지만, 이곳에는 “항구, 비행장, 병원, 은행, 우체국”⁴¹ 등의 사회적 인프라가

³⁸ Christian Geinitz(2012), “Tiefseebohrung China sichert sich im Meer Öl und Einfluss.” *Frankfurter Allgemeiner Zeitung*. 2012.5.20.

³⁹ Ibid.

⁴⁰ Lan Xinzhen: Sansha, die neue Stadt am Meer. Im Focus. 2012.7.10.

이미 구축되어 있다. 또 2012년 7월 19일 북경의 국방위원회는 산샤 시에 자국의 군대주둔을 허락하였다.

중국은 일방적으로 자국 법에 의거해서 남중국해의 주요 제도들을 산샤 시 관할 하에 두겠다고 공표했고, 자국 및 해외 국가와 컨소시엄으로 이 지역 일대의 석유와 가스 자원 개발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분명하게 표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이 치밀하고 발 빠른 행보에 분쟁당사국들은 분노, 내셔널리즘 확산, 군비확산 및 미국의 협력강화 등을 통해서 대치하고 있다. 이에 대해 ICC는 “권리주장을 하는 모든 국가들은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 사이 점점 커져가는 내셔널리즘이 각 국가마다 영유권 문제에서 점점 더 부상하고 있다”⁴²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ICC는 결론적으로 남중국해 분쟁에서 벌어지는 각 이해 당사국들이 취하는 일련의 조치는 “이 지역에서의 모든 경향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⁴³고 경고하고 있다.

그밖에 중국의 산샤 시 창설보다 먼저 베트남이 2012년 6월 의회에서 남중국해의 분쟁 제도들인 파라셀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를 자국 영토라는 것을 천명하는 법안을 가결하였다.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이미 준비되어 있던 산샤 시 창설 발표로 나왔다. 이렇게 베트남과 중국은 경쟁적으로 자국 법을 통해서 남중국해 분쟁수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2. 중국과 미국의 패권주의 충돌

2012년 7월 9일부터 13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 19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회원국들은 평화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이 회의에는 ASEAN 10개 회원국뿐만 아니라 태평양 연안국들의 외무장관도 회의에 참여하였는데, 특히 남중국해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ASEAN 회원국들, 그 중에서 필리핀과 베트남은 공동선언을 통해서 중국의 일방적 영유권 주장을 저지해 보

⁴¹ Ibid.

⁴² Christoph Hein, op. cit.에서, 재인용.

⁴³ International Crisis Group(2012). *Asia Report No. 229*. 2012.7.24.

려고 하였다. 그러나 중국에 우호적인 ARF 개최국 캄보디아가 45년 만에 처음으로 이 협의체의 공동선언 채택에 반대하였다. 이러한 교착상태에는 직·간접적으로 미국 또한 영향을 끼쳤다.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2012년 7월 ARF에서 ASEAN 국가들의 다자간 협상을 하도록 유도하였지만, 이에 대해 중국은 관련국 간의 협상문제이기 때문에 포럼의제가 될 수 없다고 반발하였다.⁴⁴

ASEAN 외무장관회의에서 베트남과 필리핀은 중국의 일방적 독주를 막기 위해서 ‘남중국해 행동수칙’(COC: Code of Conduct in the South China Sea)을 공동성명으로 채택하도록 촉구하였으나 실패하자 필리핀 외무장관 알버트 델 로사리오의 남중국해 지역에서 중국의 패권은 아·태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저해하는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협상 “과정 중에 생겨나는 점점 격화되는 긴장들이 조정되지 못할 때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물리적 싸움으로 고조될 수 있다”⁴⁵고 말했다. 이 COC는 2002년 11월 중국과 ASEAN 10개국이 합의한 내용인 DOC 선언 및 UNCLOS에 바탕을 둔 것이었으나 중국과 우호적 관계에 있는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가 반대했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는 중립 입장을 보임으로써 공동성명은 실패하였다. 이로 인해서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스카보로 사구를 둘러싸고 2012년 4월 8일 필리핀과 중국의 분쟁이 첨예화된 이후 그리고 ASEAN 협의체의 평화적 중재가 불가한 상황에서 현재 남중국해는 중국의 경제 실리적 패권과 미국의 전통적 패권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중국의 경제성장과 중국군의 무장에 대해서 불편함을 보이는 ASEAN 국가들은 중국이 추구하는 경제 실리적 패권 앞에 무력함을 느꼈으며, 중국에 대한 견제로서 미국이 이 지역에 존재하기를 바라는 상황이 되었다. 남중국해 해양 분쟁은 중국이 영유권 주장들을 둘러싼 혼돈을 해소하지 않는 한 갈등이 고조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서 분쟁당사국들의 정찰선, 어선, 순시선들은 늘 충돌

44 Peter Symonds: “ASEAN-Gipfel scheitert an Konflikten ums Südchinesische Meer”. World Socialist Web Site. wsws.org. 2012.7.17.

45 Peter Symonds, op. cit.

위험을 안고 있다.

실제 중국군함들은 2011년 2월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어부들을 호위하는 베트남 전함을 위협했고, 같은 해 3월 중국 배들이 필리핀 석유탐사선을 공격하였다. 5월에는 베트남과의 갈등이 다시 격화되었는데, 베트남이 미국석유회사에게 분쟁 지역에서의 탐사허가권을 내주자 중국 배들이 탐사선의 케이블을 절단해 버렸다. 중국과 베트남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자 2011년 9월 말 중국 관영지 「글로벌 타이즈」에 중국 정치분석가 룡 타오가 이제 중국은 분쟁대상국들에게 군사적 교훈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선동적인 글을 실었다. 그는 베트남과 필리핀과 벌이는 제한된 전쟁은 이 국가들의 “공격적 태도”⁴⁶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썼다.

이러한 상황은 베트남과 필리핀 정부로 하여금 더욱 더 미국에 의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중국의 패권주의로 말미암아 남중국해 분쟁에 미국이 개입하게 됨으로써 미국의 영향력과 역할은 더욱 “상황을 침예하게 만들고 있다.”⁴⁷ 이점에서 독일의 한 언론은 남중국해가 “강대국들의 욕조”⁴⁸가 되고 있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중국의 공세적 입장으로 말미암아 갈등을 겪는 남중국해 인접국들은 군비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특히 동중국해와 인도양에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두 강대국, 일본과 인도”⁴⁹로까지 군비확산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편, 오바마가 대통령직을 시작했을 때 특히 중국을 우호적 동반자로 간주하여서 함께 협력하고자 했으나, 중국이 파트너로서보다는 경쟁자로서 미국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미국은 우호적 파트너 전략을 포기하게 된다. 특히 남중국해 분쟁을 둘러싸고 중국은 분쟁당사국들과 이미 공격적 헤게모니 싸움을 시작하였고, 남중국해 거의 전체가 중국에 속한다는 주장은 인접 국가들에게 큰 도

⁴⁶ Long Tao(2011), “The Time to Use Force Has Arrived in the South China Sea”. *Global Times*, 2011.9.27.

⁴⁷ Andreas Seifert, op. cit., 5쪽.

⁴⁸ Till Fährnders(2012), “Südchinesische Meer Unfallgefahr in der Badewanne”,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2012.4.25.

⁴⁹ Andreas Seifert, op. cit., 4쪽.

발이 되었다. 미국의 외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은 2010년 7월 하노이에서 열린 ASEAN 회의에 참석했을 때, 미국은 태평양의 전통적 영향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은 미국의 “국가적 관심사”⁵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이 건방진 도발을 막아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중국은 무릎까지만 물에 잠기지만 다른 국가들은 목까지 물에 잠기게 될 것이다”⁵¹라고 중국 관영신문 “글로벌 타임즈”의 사설은 호전적으로 분쟁당사국들에 대해서 경고의 글을 썼다. 결국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에 보호를 구하게 되었고, 심지어 싱가포르의 국부 이관유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은 너무나 커져서 앞으로 20년에서 30년까지는 중국의 무게와 가능성에 맞선다는 것은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로서는 불가능하며, 우리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필요하다.⁵²

결국 동남아 국가들의 요청이 미국의 아·태 전략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힘으로 등장한 것이다. 미국이 아·태 지역에서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단지 중국의 패권을 자제시키기 위한 목적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열세에 놓여 있는 동맹국들을 안도시키는 측면도 강하다. 또한 오바마 정부가 미국의 아시아 귀환을 천명하는데에는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하나는 경제적 이유에서, 즉 중국과의 대외무역에서 큰 손실을 경험하고 있는 미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동남아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고자 한다. 그래서 “미국과 동남아 국가들과의 경제관계 강화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본질적 요인”⁵³이 되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외교 및 안보 전략 관점에서 미국은 동남아 약소국들과의 관계개선 및 군사, 정치, 경제협력 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기존의 군사 동맹국들(한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 이외에도

⁵⁰ Mark Landler(2010), “Offering to Aid Talks, US Challenges China on Disputed Islands”, *The New York Times*, 2010.7.23.

⁵¹ Christoph Hein, op. cit.

⁵² mic, “China öffnet die Büchse der Pandora.” *WELTINNENPOLITIK.NET*. op. cit.

⁵³ Andreas Seifert, op. cit., 5쪽.

특히 중국과 긴밀한 경제관계에 놓여 있는 버마,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와 같은 국가들로 하여금 북경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의도도 있다. 그래서 2012년 7월 힐러리 클린턴은 미국 대표로서 라오스를 50년 만에 방문했다. 또 캄보디아의 부채 탕감 요구에도 화답했다. 그밖에도 버마의 대통령을 만나서는 이 나라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 이후 미국의 경제협력을 언급했다.

결국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의 패권주의는 각 개별 국가들로 하여금 더 강력한 미국의 참여를 원하는 결과를 낳았다. 예를 들면, 1990년 미군 기지를 철수시켰던 필리핀은 오히려 미국이 귀환하기를 바라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분쟁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들의 소망을 받아드리고 이 지역에서 미국의 입지와 중요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을 포함해서 “남중국해 영토 분쟁과 경제적 관심에 관련된 많은 당사국들과 관여로 말미암아 군사적 균형의 틀에서 군비확산으로 고조되는 경향을 지닌 복잡 미묘한 상황이 아시아 전체에서 형성되고 있다.”⁵⁴

독일의 한 언론은 남중국해가 국제해로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수출국 독일은 남중국해 분쟁이 COC 제정과 같은 평화적 해결이나 아니면 국제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와 조속히 진정되기를 바라고 있다.”⁵⁵고 보도하였다. 그러면서 베트남과 필리핀은 중국의 호전적 출현으로 말미암아 미국에 접근하였으며, 분쟁수역에 민간인 배들과 군사용 배들의 잦은 충돌로 인해서 충돌, 도발 및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보았다. “특히 이곳은 인접국들이 해군과 공군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해지고 있다.”⁵⁶ 그밖에 중국은 ASEAN 회원국들을 미국의 주도권을 약화시키는 완충지대로 삼고자 했으나 결과적으로 미국을 불러들인 셈이 되었다. 왜냐하면 남중국해 인접국들은 “중국에 대한 증가하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으로 반응하고 있기”⁵⁷ 때문이다.

또 다른 독일 언론은 중국의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중

⁵⁴ Andreas Seifert, op. cit., 6쪽

⁵⁵ Till Fähnders(2012), “Gefährlicher Wettlauf. Wem gehört das asiatische Mittelmeer?”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2012.8.9.

⁵⁶ Ibid.

⁵⁷ Ibid.

국의 패권과 내셔널리즘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중국과 분쟁을 겪는 다른 당사국들이 미국의 관여와 개입을 요청함으로써 현재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헤게모니 다툼이 대두”⁵⁸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 인도가 대치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이 다국적 석유회사에 베트남 연안에서 약 70km 떨어져 있는 9개의 유전지대를 제공하였고, 인도는 이미 베트남으로부터 이 유전지대 가운데 2곳을 약속받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인도석유회사 ONGC와 중국의 CNOOC가 베트남 근처 수역에서 대치하게 된 것이다. 러시아와 최근 인도의 국영에너지 기업들을 끌어 들인 베트남의 결정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 결정인 것이다. 왜냐하면 다국적 “공동기업은 재정적,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정치적 위험부담도 나누는 것”⁵⁹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고찰한 바와 같이, 남중국해의 분쟁지역에 대한 영유권의 근거가 각국마다 명확하지 못함으로써 힘을 앞세운 중국의 공격적 주장에 분쟁대상국들이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방어하는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과 필리핀의 공동해상훈련이 남중국해에서 2012년 4월 15일부터 27일까지 12일 간 실시되었고, 미국과 베트남의 합동 해상군사훈련도 4월 23일에서 27일까지 5일 간 다낭에서 실시되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거의 비슷한 시기인 4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러시아와 함께 서해에서 공동 해상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2년 10월 20일 미국은 핵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를 남중국해로 파견했고, 5천명 군인이 승선한 이 핵 항공모함은 “지난 3년 사이 세 번째로 베트남 해안으로”⁶⁰ 갔다. 함대선장 그레고리 펜톤은 이 항공모함의 파견목적은 이 “해역을 갈등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국제법 준수를 감시하는 것이라 했다.”⁶¹ 미국의 항공모함 파견은 중국이 2012년 10월 19일 남중국해 섬들 앞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에 대한 대응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에 경고로

⁵⁸ Christoph Hein, op. cit.

⁵⁹ Ibid.

⁶⁰ dapd(2012), “US-Machtdemonstration im Südchinesischen Meer.” *DIE WELT*, 2012. 10.20.

⁶¹ Roman Elsener(2012), “Amerikaner demonstrieren Macht im Pazifik.” *NZZ am Sonntag*, 2012.10.21.

보내는 군사력의 과시이자,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진행되는 분쟁에 관여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와 관련 미 국방장관 레온 파네타는 남중국해는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해서”⁶²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중국에 비해서 미국은 전통적인 패권, 다시 말하면 지역안보와 세계무역해로 보호 및 중국과 분쟁하는 ASEAN 국가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아·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중국해 센카쿠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분쟁에서 미국은 간접적으로 동맹국 일본을 지원하는 입장을 취했고, 남중국해에서는 ASEAN 분쟁 대상국들과 함께 분쟁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중국과 미국이 대립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분쟁을 겪고 있는 사이 중국은 자국 경제발전에 필요한 에너지자원을 바다에서 채굴함으로써 실질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중국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영유권 주장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산샤’ 시 창설과 같이 자국 법을 동원해서 정치적인 공세도 동시에 구사하고 있다.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경제 실리적 패권과 베트남 및 필리핀의 요청에 의한 미국의 전통적 패권이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지난 2년 그 어느 때보다도 극명하게 충돌하였다. 앞으로도 중국의 패권주의로 말미암아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둘러싸고 평화보다는 분쟁이 더 빈번하게 발발하는 양상이 두드러질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해양 분쟁에서 협상의 여지를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1996년 이후 UNCLOS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의 테두리와는 상관없이 자국 법으로 남중국해 분쟁제도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중국은 분쟁지역의 실효적 지배를 통한 영유권 주장이나 EEZ 경계획정 미합의를 통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남중국해 분쟁수역을 둘러싼 해결은 쉽지 않다. 물론 남

⁶² News ORF.at(2012), “USA wollen Signal senden”, ORF, 2012.10.20.

중국해처럼 넓은 바다의 경우, 인접국들의 EEZ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UNCLOS에 의거해서 200해리 EEZ 경계획정을 하고 나머지 수역은 관련 인접국들의 공동개발이나 관리를 하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EEZ 경계획정을 하지 않은 채 분쟁을 일으키면서 에너지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만 크게 관심을 둔다면 평화로운 해결방안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이로 말미암아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초강대국의 패권 경쟁은 아·태 지역에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군비확장은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국가들에게까지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패권을 억제할 수 있는 평화적 방안이나 공동개발협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에 맞서서 미국과 함께 아시아 국가들이 대항해야 하는 대척상황으로 더욱 빠져들 것이 자명하다. 실질적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중국의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남중국해를 둘러싼 이러한 대치상황은 미래의 불안요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의 패권을 억제시킬 다양한 평화적 방안이나 협상이 ASEAN, ARF, 미국, 유럽연합과 함께 시급히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의 실효적 지배 전략에 비추어볼 때, 한국이 동아시아의 거대한 이웃 국가들과 힘겨운 해양 분쟁을 겪고 있으나 독도와 이어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점은 한국에 결코 불리하지 않다. 왜냐하면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제도를 실효적으로 점령하거나 점령하기 위한 시도가 오히려 이어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한국에 유리한 입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은 한국과 EEZ 경계획정 합의를 하지 않은 채 대륙붕 자연연장에 의거해서 동중국해에서도 패권주의를 고수하겠지만 중국은 이미 논리적 모순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어도와 관련한 중국의 주장에 맞설 수 있는 국제법적 증거확보와 더욱 더 실효적 지배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EEZ경계획정 촉구를 하지 않으면 남중국해 분쟁사태처럼 중국의 패권주의에 한국 또한 미국의 협력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Abstract

Analysis of the Chinese Supremacy in the South China Sea: A Western Point of View

Kim, Hi-Youl

Professor. German Studies, College of Humanities, Jeju National University.

This analysis is divided into two parts, analysis of the conflict zones in the SCS and how China shows its supremacy. The SCS is the most important marginal sea in the world through which more than 50% of the world's ships transit. More importantly the SCS is known to have a reservoir of huge oil and gas reserves beneath its seabed, adding to its importance in geopolitics. The sovereignty claims to the SCS have been a source of dispute between China, which claims its sovereignty over almost all of this territory, including Paracel Islands, Spratly Archipelago, and Scarborough Shoal in the SCS and other Southeast Asia countries (Vietnam claiming the Paracel Islands, Vietnam, the Philippines, Malaysia, Brunei claiming the Spratly Islands, the Philippines claiming the Scarborough Shoal). As China has been reinforcing its supremacy by increasing its military force, strengthening national law, and establishing a new city 'Sansha' to exercise authority over the SCS, the disputing countries, especially Vietnam and Philippines have – with the help of the US – raised the issue against China.

The US, along with Southeast Asia countries which ask for help, has been in the lead to impede China's supremacy since it solidified the Policy of the Asia-Pacific Region in 2010. Accordingly the dispute over the SCS has led to a conflict between US's hegemonism and China's supremacy and led to a build up of the military equipment in Asia-Pacific countries, which has

caused considerable political unrest in the Asia-Pacific region. Unless there is a peaceful scheme or a joint development treaty to restrain China's supremacy, the conflict between China and other Southeast Asian countries as well as the US would be intensified. While China keeps causing conflicts against other neighboring countries, it is gaining economical profit through development of oil deposits. Thus China is exercising its practical supremacy over the East China Sea as well as over the SCS.

Although presently Korea is undergoing hardships in disputes about Dokdo and Jeodo with huge neighboring nations, Korea is in a more favorable position but needs to find various ways of practical governing of those regions. The historical evidence of governing is important, but through the case analysis of China's supremacy it is concluded that practical governing is the most important way for Korea to claim the authority over those regions against Japan, which itself claims its sovereignty over Dokdo against Korea and China, that ignore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of 1982, reinforcing its own practical governing and claims of sovereignty over Jeodo.

교신: 김희열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독일학과
(E-mail : hiyoul@jejunu.ac.kr)

주제어: 남중국해 해양영유권 분쟁, 중국의 패권주의

참고문헌

- Cordner Lee G (1994), "The Spratly Islands Dispute and the Law of the Sea". *Ocean Dev. & Intl. Law*, Vol. 64.
- dapd, "US-Machtdemonstration im Südchinesischen Meer". *DIE WELT*, 2012.10.20.
- Dzurek Daniel J. (1994), "Southeast Asian Offshore Oil Disputes", *Ocean Yearbook* 11.
- Ebbighausen Rodion, "Chinas Konflikte im Südchinesischen Meer." *DW* 2012.4.24.
- Elsener Roman, "Amerikaner demonstrieren Macht im Pazifik". *NZZ am Sonntag*, 2012.10.21.
- Erling Jehnny, "Rote Linien im 'brodelnden' Südchinesischen Meer." *Die Welt*. 2012.8.21.
- Fähnders Till, "Südchinesische Meer Unfallgefahr in der Badewanne",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2012.4.25.
- Fähnders Till, "Gefährlicher Wettlauf. Wem gehört das asiatische Mittelmeer?"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2012.8.9.
- Gao, Zhiguo(1994), "The South China Sea: From Conflict to Cooperation?", *Ocean Dev. & Int'l Law*. 345.
- Geinitz Christian, "Tiefseebohrung China sichert sich im Meer Öl und Einfluss".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2012. 5. 20.
- Haller-Trost R. (1994), "International Law and the History of the Claims to the Spratly Islands",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Conference on the South China Sea, Sept. 7-9.
- Hein Christoph, "Südchinesisches Meer Säbelrasseln über dem Meer".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2012.8.11.
- International Crisis Group(2012), *Asia Report* 223.
- International Crisis Group(2012). *Asia Report* 229.
- Li Mingjiang(2012), "Chinese Debates of South China Sea Policy: Implications for Future Developments," *RSIS Working Paper*, No. 239,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ingapore.
- McBeth John (1995), "Oil-rich Diet", *Far Eastern Economic Review*, April 25.
- mic, "China öffnet die Büchse der Pandora." *WELTINNENPOLITIK. NET*. 2010.8.24.
<http://www.weltinnenpolitik.net/24/08/2010/china-oeffnet-die-buchse-der-pandora>. 접속일 2012. 5.5.
- News ORF.at, "USA wollen Signal senden." 2012.10.20.

- Nguyen Hong Thao(2010),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Hanoi.
- Ning Lu (1993), "The Spratly Archipelago: The Origins of the Claims and Possible Solutions", International Center, Washington, D.C.
-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2012),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Pan Shiyong(1994), "South China Sea and the International Practice of the Historic Titl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Conference on the South China Sea, Sept. 7-9.
- Prantne Christoph. "Konflikt im Südchinesischen Meer: Geopolitischer Testfall", *DER STANDARD*, 2012.5.11.
- Richter Steffen, "Südchinesisches Meer: China demonstriert seine Macht mit einem Fischerdorf." *Zeit Online*. 2012.7.24.
- Seifert Andreas(2012), "Konfliktzone im Südchinesischen Meer. Über die Bedeutung des Konflikts um die Spratly- und Paracel-Inseln". *Informationsstelle Militarisierung (IMI)-Studie*. No. 09/2012.
- South China Sea. www.eia.doe.gov/emeu/cabs/South_China_Sea/pdf. 접속일: 2012. 6.8.
- Spross Hans, "Spannungen im Südchinesischen Meer." *DW* 2012.4.18.
- Symonds Peter, "ASEAN-Gipfel scheitert an Konflikten ums Südchinesische Meer". *World Socialist Web Site*. wsws.org. 2012. 7. 17.
- Tao Long, "The Time to Use Force Has Arrived in the South China Sea". *Global Times*, 2011. 9. 27.
- Thieke Thilo, "USA, Russland und China. Kriegsspiele im Gelben Meer", *Spiegel*, 2012.4. 26.
- Tran Truong Thuy (ed. 2011), *The South China Sea. Towards a Region of Peace, Security ad Cooperation*, Vietnam.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December 10] , *Oceans and Law of the Sea. 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 Valencia Mark J. / Van Dyke Jon M./ Ludwig Noel A(1999). *Sharing the resources of the South China Se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Valero Gerado M.C(1994), "Spratly Archipelago Dispute", *Marine Policy* 314.
- Xinzhen Lan, "Sansha, die neue Stadt am Meer". *Im Focus*. 2012.7.10.
- Zhang Liangfu (1995), "Review on the Informal Conferences on 'Settle the Potential Conflict in the South China Sea'", *International Politics Quarterly* http://www.eia.gov/EMEUCabs/South_China_Sea/images/scs_II.map.gif. 접속일

2012.5.6.

http://www.goruma.de/Wissen/Naturwissenschaft/Weltmeere_Meere/Suedchinesisches_Meer.html. 접속일: 2012.5.9.

<http://www.southchinasea.org/files/2011/08/South-China-Sea-reference-map-US-CIA.jpg>. 접속일: 2012 5.9.

일반논문

일반논문

마라도 방문객의 이어도에 대한 인식과 기념공원 조성 타당성 분석_김태일

이어도 기지 기상관측 기기의 자료 검증 및 개선 방안

_이동인 · 박성화 · 김정창 · 이준호

이어도 문화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_강병철 · 프리다크리스틴밀러 · 양금희

마라도 방문객의 이어도에 대한 인식과 기념공원 조성 타당성 분석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해양영토 및 해양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 중국의 해양진출로 인한 해양영토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학술적 대비뿐만 아니라 영토주권 확보차원에서 이어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과 중국, 일본 사이에는 영토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독도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이 분쟁중이고 한국과 중국과의 사이에 분쟁이 일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어도이다. 이어도는 해양영토의 확보라는 측면과 주변 지역의 해양생물자원 확보라는 측면에서 독도만큼이나 중요한 섬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이어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리에 관할권을 갖고 있으며 해양과학기지가 건립되어 있어 실질적인 점유를 통해 해양영토권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의 해양영토분쟁을 조속히 종결시키고 항구적인 점유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학술적인 조사연구와 함께 한국의 영토임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 이어도체험관 건립 타당성 검토보고서」에서는 1차적으로 이어도 체험관 건립과 연계한 소규모 공원 건립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2단계에서 이어도 체험관건립 사업추진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0년 이어도체험관 건립 타당성 검토보고서」에 근거하여 이어도

기념공원 조성 적정지역으로서 마라도가 타당한지 여부를 파악하고 타당성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접근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이 주요 목적이다.

II. 연구방법 및 조사대상자의 특성

1. 연구방법

이어도 기념공원이 마라도에 조성될 경우 실질적으로 공원을 이용하게 될 방문객들이 이어도 기념공원 조성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조성방식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어도에 대한 인지도는 있는지, 그리고 이어도 기념공원으로 적절한 장소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마라도 방문객이 어떠한 공간이용형태를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마라도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기간은 2012년 10월 14일부터 2012년 10월 28일로 2주에 걸쳐 마라도 현장에서 이루어졌다. 설문대상자는 마라도 방문을 끝내고 돌아가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직접 배포하여 간단한 설명후 직접기입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완료후 직접회수 하였다. 설문지는 총 200부를 배포하여 200부 회수하였으며 설문지 기입이 미비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197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2. 조사대상자의 특성

1) 조사대상자의 속성

조사대상자를 연령별로 보면 50대의 비율이 34.5%로 가장 높고 이어 40대가 21.3%로 40대와 50대가 50%를 차지하고 있다. 직업별로는 공무원/회사원의 비

율이 20.8%, 이어 「사업/자영업」 「주부」가 각각 18.8%, 18.3%로 사무직과 자영업 종사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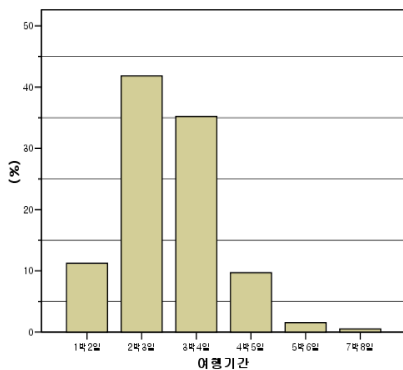
한편 거주지의 경우 「경기도」가 26.4%로 가장 높고 「경상도」가 22.8%, 「서울」 16.2%로 수도권지역에서의 방문자 비율이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1>.

2) 여행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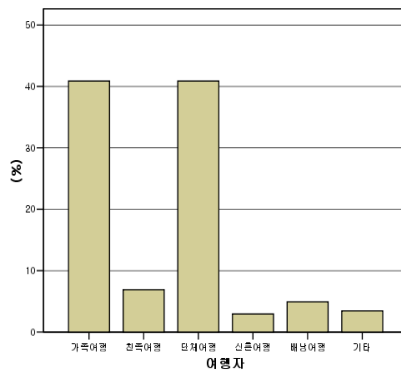
조사대상자의 여행기간은 「2박3일」 「3박4일」이 각각 41.8%,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박2일」이 11.2%, 「4박5일」이 9.7% 순으로 나타났고, 비교적 여행기간이 긴 「5박6일」 「7박8일」 등은 각각 1.5%, 0.5%로 낮게 나타났다<그림 1>.

〈표 1〉 조사대상자의 연령 및 직업, 거주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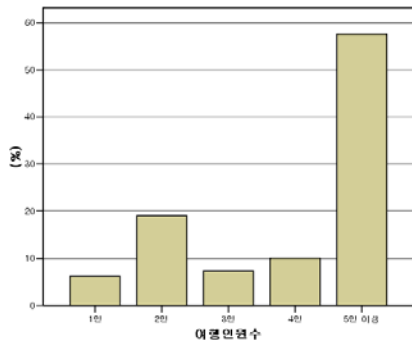
	구분	빈도(명)	비율(%)
연령	20세이하	13	6.6
	21-30세	30	15.2
	31-40세	34	17.3
	41-50세	42	21.3
	51-60세	68	34.5
	60세이상	10	5.1
	계	197	100
직업	공무원/회사원	41	20.8
	서비스업	10	5.1
	사업/자영업	37	18.8
	주부	36	18.3
	학생	32	16.2
	전문/관리직	23	11.7
	기타	18	9.1
	계	197	100
거주지역	서울	32	16.2
	경기도	52	26.4
	강원도	3	1.5
	충청도	22	11.2
	경상도	45	22.8
	전라도	29	14.8
	제주도	10	5.1
	기타	4	2.0
	계	197	100



〈그림 1〉 여행기간 (N=196)



〈그림 2〉 여행형태 (N=203)



〈그림 3〉 여행인원수 (N=179)

나타났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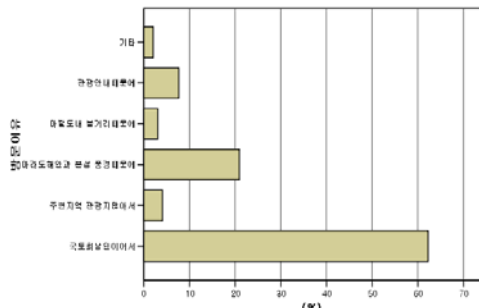
여행의 형태는 「가족여행」과 「단체여행」이 각각 40.9%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친족여행」 「배낭 여행」 「신혼여행」 등의 여행형태가 총 18.2%로 비교적 비율이 낮은 편이다〈그림 2〉.

여행인원수는 「5인 이상」이 5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행형태에서 알 수 있듯이 가족여행과 단체여행의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인 여행」이 19%, 「4인 여행」이 10.1%, 「3인 여행」이 7.3%, 「1인 여행」이 6.1%로

Ⅲ. 마라도 방문목적과 공간이용형태

1. 마라도의 방문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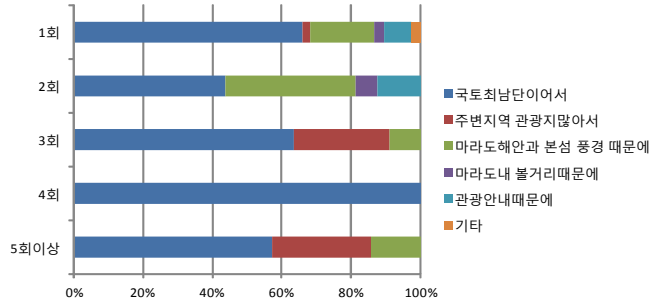
마라도의 방문목적으로는 「국토최남단이어서」라는 이유가 62.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마라도해안과 본섬 풍경 때문에」라는 이유가 20.9%로 나타났는데 이는 마라도의 가치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된다. 즉 최남단 도서라는 장소성은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최남단 섬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그림 4〉 방문이유 (N=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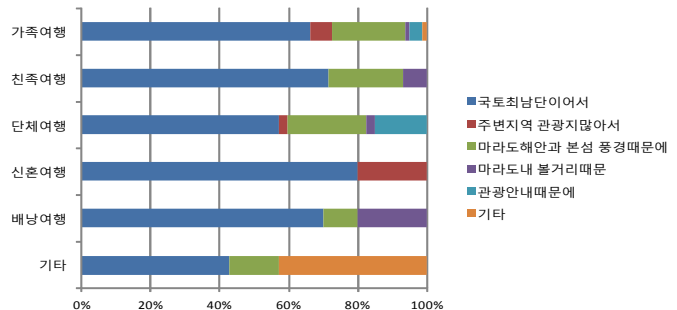
있을 뿐만 아니라 마라도의 뛰어난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를 다양하게 갖고 있으며 이야기 거리와 볼거리를 동일한 장소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이어도 기념공원 조성에 있어서 가장 큰 강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밖에도 「관광안내 때문에」 「주변지역 관광지가 많아서」 「마라도 내 볼거리 때문에」라는 이유들이 있었다〈그림 4〉.

방문횟수에 따른 마라도 방문목적을 살펴보면 연령대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국토최남단이어서」라는 이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회 방문」「5회 방문」한 방문객은 「주변지역 관광지가 많아서」라는 의견도 각각 27%, 28% 나타났으며, 「1회 방문」「2회 방문」 방문객들은 「마라도 해안과 본섬 풍경 때문에」라는 이유도 각각 18%, 37%로 나타나〈그림 5〉, 방문횟수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5〉 방문횟수별 마라도 방문목적 ($P<0.003$ $df=20$ $\chi^2=41.64$)

그리고 여행형태별 마라도 방문목적을 보면, 전체적으로도 「국토최남단이어서」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고, 신혼여행 방문객들이 「국토최남단이어서」 방문한다는 이유가 80%로 가장 많았으며, 배낭여행 방문객들은 「마라도내 볼거리 때문에」 방문한다는 의견도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그림 6〉, 마라도라는 지정학적 가치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6〉 여행형태별 마라도 방문목적 ($P<0.000$ $df=25$ $\chi^2=8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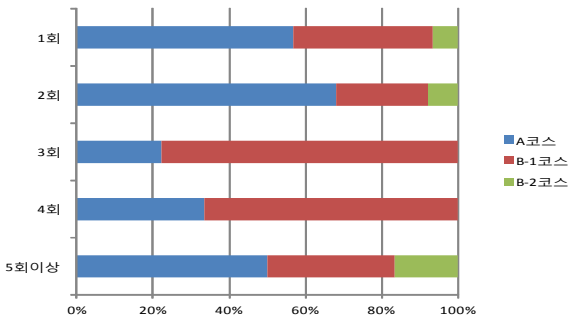
2. 공간이용형태

1) 방문객의 이동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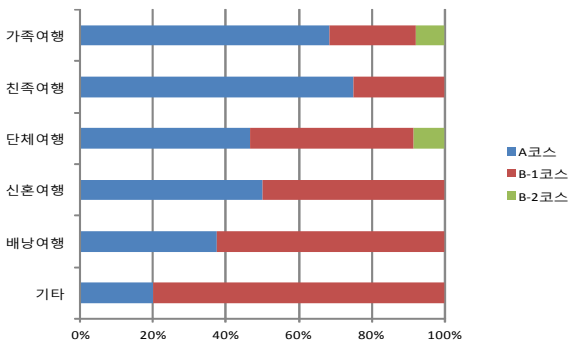
방문객들이 마라도를 어떠한 형식으로 탐방을 하는지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1차 및 2차답사에서의 관찰조사를 근거로 작성한 3개의 코스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3개코스의 내용은 A 코스는 자리덕 선착장, 마라분교, 복지회관,

기원정사, 최남단비, 성당, 마라도등대, 자리덕 선착장, B-1 코스는 살레덕 선착장, 마라분교, 복지회관, 기원정사, 최남단비, 성당, 마라도등대, 살레덕 선착장, B-2 코스는 살레덕 선착장, 마라도등대, 성당, 최남단비, 기원정사, 복지회관, 마라분교, 살레덕 선착장으로 구성되어 방문횟수별, 여행형태별 특징을 살펴보았다.

방문횟수에 따른 답사코스를 살펴보면 5회 이상 방문한 방문객은 A코스 50%, B-1코스 약 35%, 방문하였고, 3 - 4회 방문한 방문객들은 B-1코스를 각각



〈그림 7〉 마라도 방문횟수별 답사코스
($P(0.401 \text{ df}=8 \chi^2=8.339)$)



〈그림 8〉 여행형태에 따른 답사코스
($P(0.058 \text{ df}=10 \chi^2=17.80)$)

63%, 66%로 선호하였고, 1 - 2회 방문한 방문객들은 각각 58%, 63%가 A코스를 선호하여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그러나 유의수준이 $P<0.401$ 로 방문횟수별 통계학적 의미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방문횟수와 답사코스는 그다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행형태별로 보면 가족여행, 친족여행과 같은 경우는 A코스를 각각 68%, 75%로 선호하였고, 신혼여행이나 배낭여행의 경우 각각 50%, 62%가 B-1코스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 즉 여행형태별 마라도내 답사코스가 다르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에도 기념공원의 위치선정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답사코스를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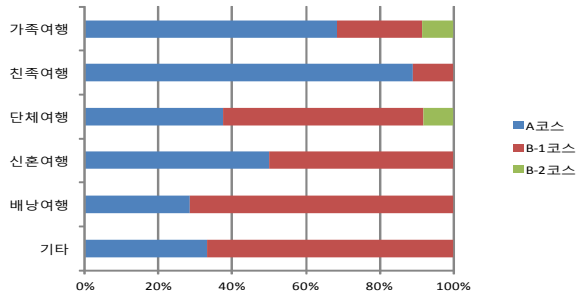
2) 인상적인 코스와 장소

가족여행과 친족여행은 각각 A코스를 68%, 88%로 인상 깊은 코스로 선택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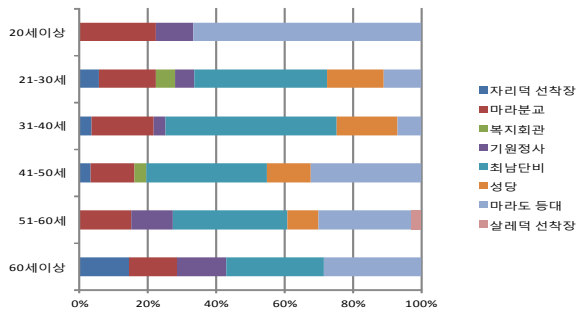
고, 배낭여행 방문객은 B-1코스를 71.4%, 신혼여행 방문객의 경우 50%가 A코스와 B-1코스를 선택하였는데<그림 9>, 여행형태별 통계학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연령별 선호장소가 확실히 구분되었는데 20세 이하 방문객은 「마라도 등대」를 66.7%로 가장 인상적인 코스로 선택하였고, 21 - 40세는 「최남단비」를 각각 38.9%, 50%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41세 - 60세 이상 까지 방문객은 「최남단비», 「마라도등대», 「마라분교」를 다양하게 선호하였으나<그림 10>, 통계학적 의미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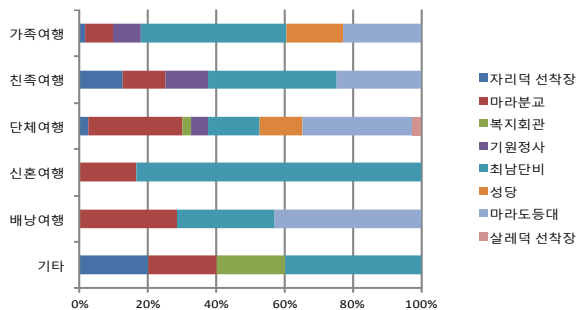
그러나 여행형태별로 보면 신혼여행 83.3%, 가족여행, 친족여행 방문객의 37.5%, 42.6%는 「최남단비」를 가장 인상적인 장소로 선택하였다. 반면 배낭여행 방문객과 단체여행 방문객들은 마라도 등대를 선택하는 등<그림 11>, 연령별로 확실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 여행형태별 마라도의 인상적인 코스
($P<0.009$ $df=10$ $\chi^2=23.55$)



〈그림 10〉 연령별 인상적인 장소
($P<0.385$ $df=35$ $\chi^2=36.81$)



〈그림 11〉 여행형태별 인상적인 장소
($P<0.059$ $df=35$ $\chi^2=48.97$)

IV. 이어도에 대한 인식과 기념공원 조성에 대한 평가

1. 이어도에 대한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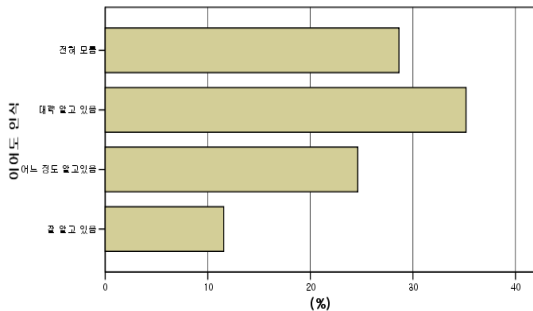
이어도 기념공원 조성의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이어도의 존재와 가치를 홍보하여야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이는 이어도에 대한 인지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부분이기도 하다. 최남단이라는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마라도를 방문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마라도에서 가장 가까운 이어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

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방문객의 35.2%가 이어도에 대해 「대략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전혀 모른다」가 28.6%,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24.6%, 「잘 알고 있다」는 11.6%로 나타나<그림 12>, 이어도를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약 60%정도이지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비율도 높은 편이어서 이어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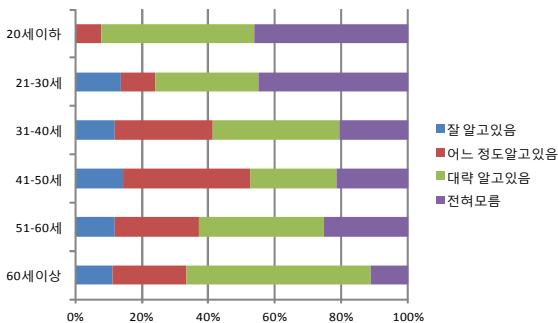
연령별 이어도 인식에 대해 살펴보면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20대 이하, 30대의 비율은 각각 44.8%, 46.2%로 가장 많았으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21세 - 60세 이상 연령에서의 비율은 각각 11% ~ 14%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31세에서 60세 이상의 방문객은 과반수 이상이 「대략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그림 13>. 그러나 연령별 통계학적 의미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방문횟수에 따른 이어도 인지도를 보면, 5회 이상 방문한 방문객은 「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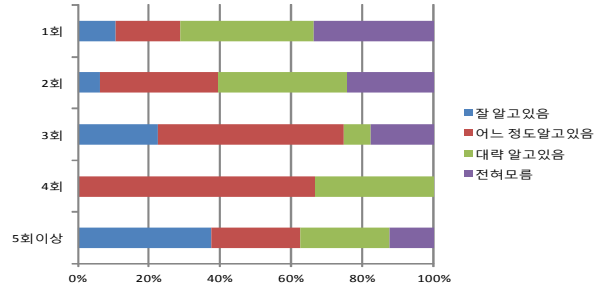


〈그림 12〉 이어도에 대한 인지도 (N=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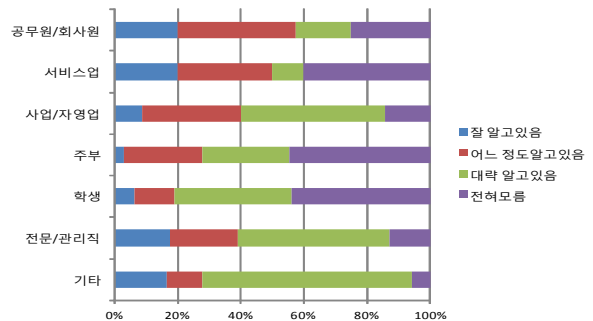
〈그림 13〉 연령별 이어도의 인지도
($P < 0.226$ $df = 15$ $\chi^2 = 18.74$)

알고 있다」는 방문객이 37.5%로 가장 높았고 4회 이상 방문객은 「전혀 모른다」는 인원은 없었으며, 「어느 정도 알고 있다」가 66.7%, 「대략 알고 있다」가 33.3%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1 - 2회 방문한 방문객들은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24.2%, 33.6%로 높은 편이었다<그림 14>.



〈그림 14〉 마라도 방문횟수별 이어도의 인지도
($P<0.003$ $df=12$ $\chi^2=29.65$)

한편 직업별로 살펴보면, 사업/자영업에 종사하는 방문객 총 86%가 이어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주부 와 학생 서비스업 종사자 각각 44%, 43%, 40%가 이어도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공무원/회사원, 전문/관리직 종사자 방문객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그림 15>, 직업별 이어도의 인지도에 대한 차이는 갖고 있으며 이어도기념공원 조성에 있어서 위치선정과 조성방식, 홍보방법 등에 있어서 연령별 접근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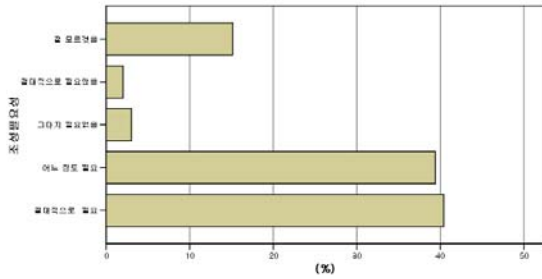


〈그림 15〉 직업별 이어도의 인지도
($P<0.001$ $df=18$ $\chi^2=4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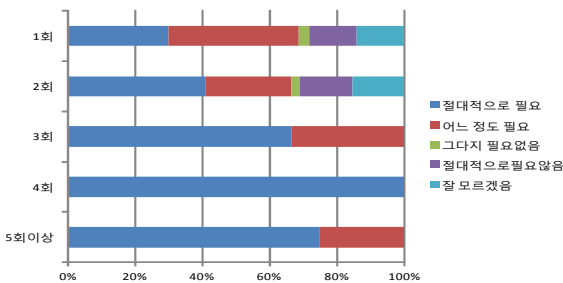
2. 이어도 기념공원 조성에 대한 필요성과 평가

1) 이어도 기념공원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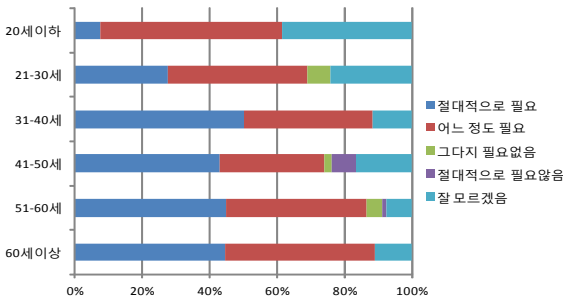
이어도 기념공원 조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가 40.4%,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39.4%, 「잘 모르겠음」이 15.2%, 그리고 「그다지 필요 없음」 3%, 「절대적으로 필요 없음」이 2%로 나타나<그림 16>, 전반적으로 기념공원



〈그림 16〉 이어도 기념공원 조성의 필요성 (N=198)



〈그림 17〉 방문회수로 본 이어도 기념공원 조성 필요성
($P<0.015$ $df=16$ $\chi^2=30.63$)



〈그림 18〉 연령별 이어도 기념공원 조성의 필요성
($P<0.121$ $df=20$ $\chi^2=27.51$)

나타났다.

한편 직업별 이어도 기념공원 조성 필요성을 보면, 공무원/회사원, 서비스업, 사업/자영업에 종사하는 방문객들이 각각 55%, 50%, 51.4%로 가장 기념공원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고 하였고, 주부, 전문/관리직 종사 방문객들 중

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방문회수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 기념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1회, 2회 방문한 방문객의 경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각각 18%, 16%로 나타났고, 「절대적으로 필요 없다」는 응답도 18%, 16%로 나타났다(그림 17). 특히 4회 - 5회 이상 방문객의 경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회수가 많을수록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 방문 횟수별 통계학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기념공원 조성 필요성에 의한 인식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기념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많았다. 20세 이하, 21 - 30세의 연령대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각각 38.5%, 24.1%인 반면, 41세-50세, 51세-60세 연령대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대략 43%정도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18). 그러나 유의수준이 $P<0.121$ 로 연령별 통계학적 의미는 없는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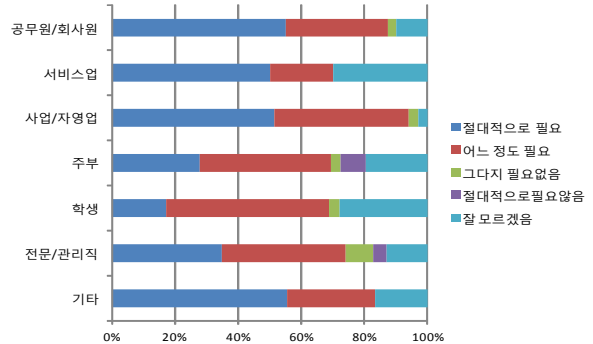
에서 각각 8.3%, 4.3%가 기념공원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여<그림 19>, 직업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이어도 기념공원조성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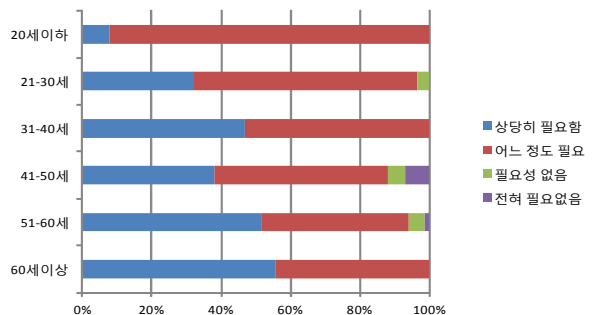
연령별로 마라도에서 이어도 기념공원 조성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마라도에 기념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20세 이하, 21 - 30세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 비율이 높았고 51 - 60세, 60세 이상에서는 「상당히 필요하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그림 20>,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 마라도에서의 조성필요성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기념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선택하였으며, 공무원/회사원, 서비스업, 주부, 사업/자영업 종사자 방문객들 중에서는 「필요성이 없다」가 3 - 10% 정도 나타났다. 주부와, 사업/자영업 종사자 일부에서는 전혀 필요 없다는 의견이 각각 5.6%, 2.9%로 나타났으나<그림 21>, 직업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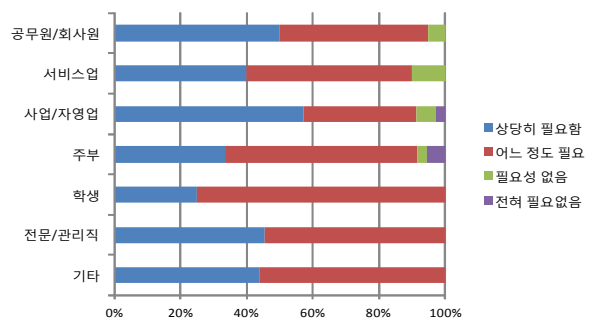
방문횟수로 살펴보면, 5회 이상 방문한 방문객은 「상당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85.7%로 가장 높았으며, 3회 방문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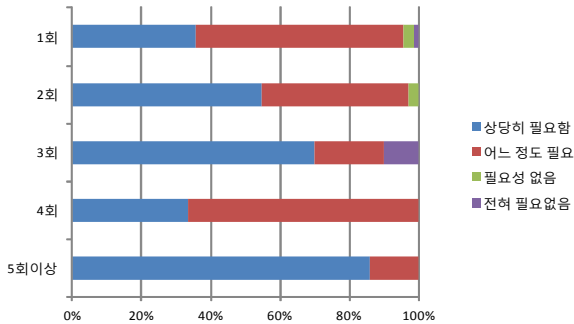
<그림 19> 직업별 이어도 기념공원 조성의 필요성 (P<0.041 df=24 $\chi^2=37.23$)



<그림 20> 연령별로 본 마라도에서의 이어도 기념공원 조성의 필요성 (P<0.043 df=15 $\chi^2=25.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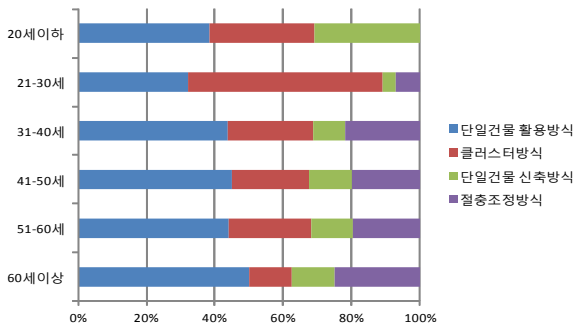


<그림 21> 직업별로 본 마라도에서의 이어도 기념공원 조성의 필요성 (P<0.225 df=18 $\chi^2=2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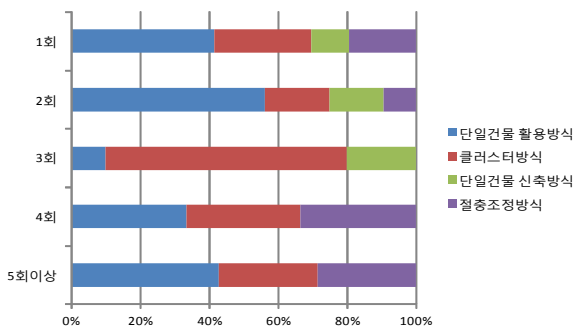


〈그림 22〉 방문횟수에 따른 마라도에서의 이어도 기념공원 조성의 필요성 ($P<0.082$ $df=12$ $\chi^2=19.28$)

식과 신축하는 방식으로 구분하여 4가지 조성방식 즉 1)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



〈그림 23〉 연령별 이어도 기념공원 조성방식 ($P<0.122$ $df=15$ $\chi^2=21.48$)



〈그림 24〉 방문횟수에 따른 이어도 기념공원 조성방식 ($P<0.133$ $df=12$ $\chi^2=17.46$)

방문객 일부는 「전혀 필요 없다」는 의견이 10%로 나타났으나〈그림 22〉, 방문 횟수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이어도 기념공원 조성방식에 대한 평가

이어도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방식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조성 방식에 대하여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방식 주변을 공원화하는 방식 (단일건물활용방식), 2) 복수의 기존건축물을 활용하되 마을전체를 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식 (클러스터방식), 3) 부지를 매입하여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방식(단일신축방식), 4) 상기의 방식을 절충하여 조성하는 방식(절충조정방식)으로 세분화하여 조사하였다.

연령별 이어도 기념공원 조성 방식을 살펴보면, 21 - 30세 연령대는 57.1%가 「클러스터 방식」을 선호하였고, 그 외 연령층에서는 32% - 50% 정도가 「단일건물 활용방식」을 더욱 선호하였다.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절충조정방식」을 선호하는 비율이 약 23% 정도 나타났다〈그림 23〉, 연령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방문횟수에 따른 이어도 기념

공원 조성 방식을 살펴보면, 4-5회 이상 방문객들은 「단일건물활용방식」이 42.9%, 「클러스터방식」이 28.6%, 「절충조정방식」이 28.6%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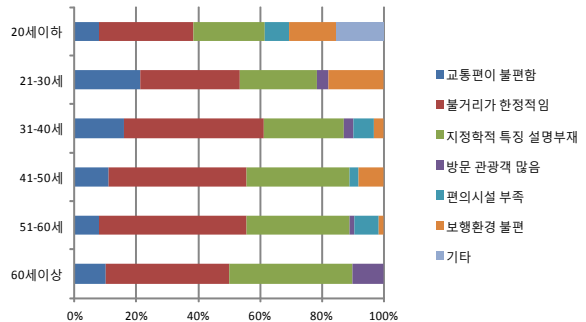
V. 이어도 기념공원 조성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

1. 개선되어야 할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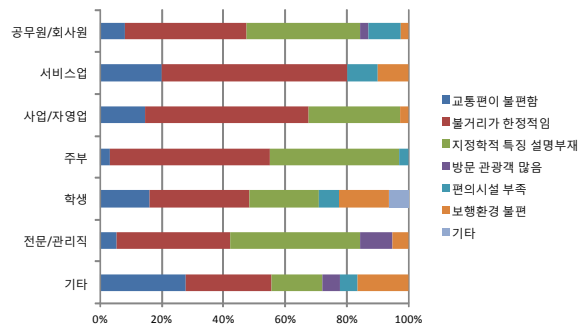
연령별 개선점을 알아보면 전 연령 방문객의 전체적 의견이 「불거리가 한정적」이라는 의견이 30% - 4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지정학적 특징 설명부재」 의견이 23% - 40%를 차지하였으며, 「교통편 불편」「보행환경 불편」등 의견도 제시되었다<그림 25>. 이는 연령대별로 불거리와 지정학적 특징에 초점을 둔 다양한 서비스제공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직업별로 살펴보면, 연령별 개선점과 마찬가지로 「불거리가 한정적」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공무원, 서비스업, 학생 방문객 일부에서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3% - 10% 정도 나타나<그림 26>, 직업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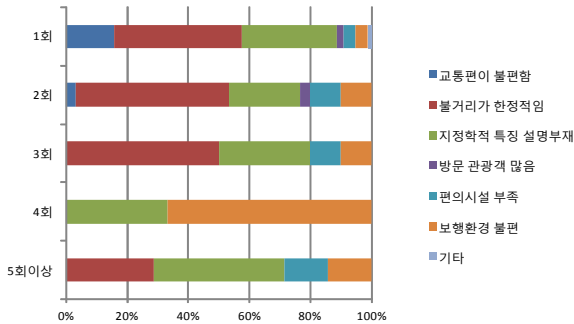
방문횟수에 따른 개선점을 살펴보면, 4회에서 5회 이상 방문한 방문객들은 「지정학적 특징 설명이 부족」하다는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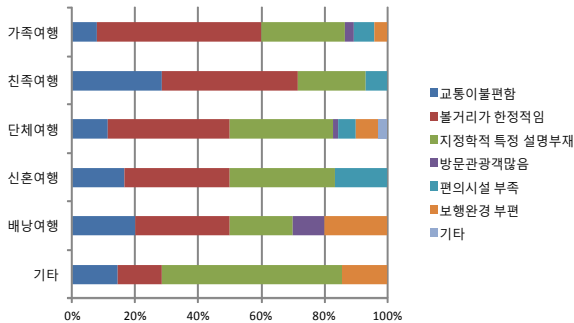
<그림 25> 연령별로 본 마라도에서의 개선사항
($P<0.010$ $df=30$ $\chi^2=50.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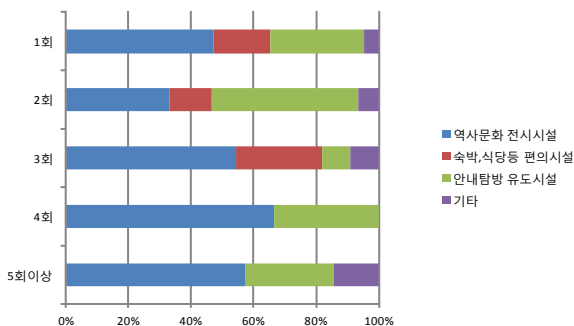
<그림 26> 직업별로 본 마라도에서의 개선사항
($P<0.021$ $df=36$ $\chi^2=55.27$)



〈그림 27〉 방문횟수별로 본 개선사항
($P<0.104$ $df=24$ $\chi^2=32.98$)



〈그림 28〉 여행형태별로 본 개선사항
($P<0.689$ $df=30$ $\chi^2=25.73$)



〈그림 29〉 방문횟수별로 본 마라도의 필요시설
($P<0.606$ $df=12$ $\chi^2=10.11$)

이 33.3%, 42.9%로 높게 나왔고, 4회 방문한 방문객에서는 「보행환경이 불편」하다는 의견도 66.7%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1회에서 3회 방문한 방문객들은 「볼거리가 한정적」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나〈그림 27〉, 방문횟수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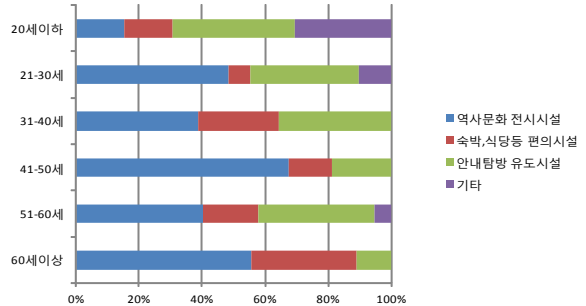
그리고 여행분류별 개선점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볼거리가 한정적」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지정학적 특징 설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외에 배낭여행 방문객은 「보행환경이 불편」이 20%, 신혼여행 방문객 일부는 「편의시설이 부족」이 16.7% 나타났으나〈그림 28〉, 여행형태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마라도에 필요한 시설

방문횟수에 따른 마라도 필요시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역사문화 전시시설」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1회-3회 방문한 방문객의 경우 「숙박, 식당 등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4%, 6%, 9.1% 등으로 나타났다〈그림 29〉. 그러나 방문횟수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역사문화 전시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31세에서 60세 이상 방문객의 경우 약 24%가 「숙박, 식당 등 편의시설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그림 30〉 연령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0〉 연령별로 본 마라도의 필요시설
($P<0.002$ $df=15$ $\chi^2=36.13$)

VI. 결론

1. 종합정리

이어도에 대한 인식과 이어도 기념공간 조성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이어도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이어도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어도 기념공원의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비율이 높아 일정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어도 기념공원을 조성해야 할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이어도 기념공원 조성방식에 대해서는 기존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마라도내 폐가로 방치되어 있거나 유희시설의 활용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기념공원을 조성하기 보다는 마라도 전체를 시야에 넣고 폐가, 마을회관, 관광객쉼터 등의 유희시설과 주변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길을 중심으로 연계하여 마라도 전체를 하나의 작은 기념 공원화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볼 때 마라도가 갖고 있는 다양한 공간자원, 마라도 사람들의 생활사, 그리고 최남단이라는 장소성을 이용한 이어도 홍보기능이 결합된 기념공원 조성이 타당성이 있으며 구체적인 조성사업을 통해 관광객들이 마라도의 이해와 이어도의 인식과 가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향후 과제

기본적으로 마라도에서의 이어도 기념공원 조성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사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해결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치유를 위한 마라도정비계획의 수립이다. 마라도 특유의 여유롭고 자연미 넘치는 느낌의 미학적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마라도라는 지역성을 확보하면서 이어도의 가치를 전달하고자 하는 역사교육 장소성 확보,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마라도 주민의 삶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1차적으로는 집중적인 생태와 경관적 가치를 복원시키고 2차적으로는 마라도 전체로 확대해 나가는 정비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커미셔너(Commissioner)로서의 건축가가 주도하는 마라도정비사업 및 기념공원조성 사업 추진이다. 커미셔너(commissioner) 건축가는 기본적으로 마라도 정비계획과 이어도 기념공원 프로젝트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프로젝트를 시행하며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세부적인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실행건축가를 선정하여 직접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브랜드화 전략 및 창출방안 수립이다.

마라도와 이어도의 통합적 가치와 현실에서의 변화 과정을 토대로 마라도와 이어도의 통합된 이미지를 창출한다. 마라도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과 노력을 통해 마라도와 이어도의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문화(관광)자원의 통합적 재정리 실시이다. 마라도와 이어도의 문화관광자원의 체계적 정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학술조사가 될 것이고 지속적인 문화관광자원의 개발과 업데이트를 실시 할 수 있다. 또한 추후 이를 통한 다양한 문화 및 관광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지역주민의 참여와 공동체 강화이다.

마라도 정비는 새로운 형태로의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이 향상을 꾀하여 지역의 역량을 강화시켜나가는 것이 주목적이다. 따라서 지역민의

참여가 바탕이 된 상태에서 찾아가고 싶은 마라도를 구상하고, 알고 싶은 마라도를 구상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민의 자유로운 소통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이런 방향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참여와 의식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Summary

A Study on Marado visitor's recognition with regard to leodo and property of leodo memorial park construction in Marado

In the midst of the recent territorial disputes among South Korea, China and Japan, there have been ongoing disputes between Korea and Japan on Dokdo Islet and between Korea and China on Jeodo Islet. Although Jeodo Islet is but only the rocky reef, it is as important as Dokdo Islet in terms of securing the marine living resources and securing the maritime territory as well as the surrounding area. In addition, the public who visit the southernmost Islet of Marado should be informed of the entity of the legendary island of Jeodo Islet providing with a space for people to find a spade to enjoy the beauty of the scenery around Marado Islet and the Jeodo Memorial Park as a space where the new value of Jeodo Islet can be revealed. The validity and necessity of the Jeodo Memorial Park ar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f the Jeodo Memorial Park is built in Marado, it has to be sure what the composition of the visitors have any idea about the approach of establishing the park and Jeodo Islet. In order to identify the right place for the memorial park, it is necessary to conduct the basic analysis of the Marado visitors' any form of space utilization. To do so, Marado visitors were survey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survey took place in the field of Marado over two weeks from October 14 to October 28, 2012. The survey subjects were randomly selected to target the visitors to return at the end of the visit to Marado Islet. It was recovered after a brief description of the questionnaire and completion of fill was done. A total of 200 questionnaires

were, and 200 copies of them were collected. The filled out questionnaire, a total of 197 except for the incomplete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awareness in Jeodo Islet and its memorial space in the evaluation of the feasibility study are in the presence of modest ratio; therefore, the high need of publicity for Jeodo Islet is necessary.

As for establishing Jeodo Islet Memorial Park, there has been in the composition of the necessity for a certain part of the high percentage of positive consensus with the validity. For the Jeodo Memorial Park on the composition approach, the ratio of desirable increases to utilize existing facilities actively that are left lungs in Marado, and they were able to identify the need and justification for the utilization of idle facility.

Fundamentally the validity is checked for the composition of the Jeodo Memorial Park in Marado; however, in order to continue the project in the concrete, it needs as follows: (1) establishing the maintenance plan of Marado for healing, (2) leading to concrete and practical business led the Marado maintenance and memorial park projects by the commissioner as an architect (3) establishing branding strategy and the creation of plans (4) unifying reorder conduct of cultural tourism resources (5) strengthening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and community, and (6) enhancing the ability of the leader of the group.

Keywords: Marado Islet, Jeodo Islet, memorial park, resources, citizen participation, commissioner

참고문헌

1. 김인, 박수진 편, 2006, 「도시해석」, 푸른길
2. 문화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 2007, 「문화도시조성 국제컨퍼런스-지속가능한 문화도시의 형성과 운영-」
3. 유환중 외 역, 1999, 「현대도시의 변화와 정책」, 푸른길
4. 진영환 외 역, 2006,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시리즈1, 도시계획의 신조류」, 한울아카데미
5. 통영시, 2007, 「〈가고싶은 섬〉 시범사업 마스터플랜 학술연구용역 매물도」

이어도 기지 기상관측 기기의 자료 검증 및 개선 방안

이동인

부경대학교 환경대기과학과

박성화

부경대학교 대기환경연구소

김정창 · 이준호

부경대학교

1. 서론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의 강도 및 빈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2년 10월 29일 미국 북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샌디(Sandy)’는 뉴저지, 롱아일랜드, 뉴욕에 사망자 130여명과 약 60조에 이르는 피해액을 기록하였다[1]. 한반도에서는 집중호우, 장마 및 태풍 등의 악기상 현상으로 8명의 인명피해와 1조3102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2]. 자연재해에 의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기상현상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동중국해에서 발달되는 강수시스템과 대기의 상하층에 대한 기상조건은 한반도 악기상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지구적 기상 및 기후현상의 예측을 위해서도 해양에서의 관측이 매우 중요하다. 해양의 기상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상에서의 관측자료가 축적되어야 하지만 지리적, 관측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료 획득과 분석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해상에서의 자료는 주로 기상위성을 이용하거나, 해상에 설치된 부이나 선박관측에 의존하고 있다[3]. 그러나 위성 관측자료의 경우, 넓은 면적의 관측으로 관측자료의 시·공간적인 해상도와 관측오차가 크고, 특성상 해상의 표면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고도별 기상자료의 관측이 불가능하다. 선상관측은 지속적인 관측이 불가능하며 부이는 연근해에서만 관측이 수행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관측환경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국토해양부에서는 마라도 남서쪽으로 149 km에 위치한 수중 암초인 이어도에 해양종합과학기지를 건설하여 2003년 6월부터 고정 해상관측소로 운영하고 있다[4].

이어도 해양종합과학기지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의 약 40 ~ 50 %가 이어도 해역을 통과하며 약 10시간 뒤 남해안에 상륙하는 등, 지리적으로 중요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기상관측기지로서 매우 적합한 곳이다. 현재 이어도 해양종합과학기지에서는 주 기상관측탑에 풍향풍속계, 기압계, 기온계 및 습도계 등 13종의 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하고 사용자와 기상청을 비롯한 유관기관에 실시간으로 관측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관측기기들의 유지 보수의 어려움으로 인해 관측된 자료의 질에 문제가 제기 되고 있으며[5], 이로 인해 해상의 기상자료를 활용하여 악기상 현상의 발생 및 발달, 그리고 해양과 기상현상의 상호 영향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2년 7월 1일에서 5일에 걸친 집중관측을 통하여 이어도 과학기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상관측기기의 상태를 파악하고, 비교 관측이 가능한 기기에 대한 정밀도 분석을 하고자 한다.

2. 관측 지점 및 자료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내 설치된 기상관측 기기의 점검 및 관측 자료의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2012년 6월 30일에서 7월 5일까지 이어도 해양종합과학기지에서 집중관측을 실시하였으며, 관측일정은 Fig. 1에 나타내었다. 이어도 해양종합과학기지(높이 36 m, 북위 32.07°, 동경 125.10°)는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49 km, 일본의 도리시마에서 서쪽으로 276 km, 중국의 서산다오로부터 북동쪽으로 287 k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해양 및 기상 자료를 연속 관측하는 최초의 해상구조물이다(Fig.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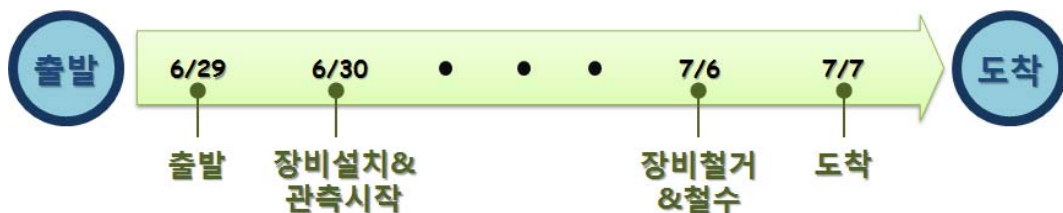


Fig. 1. The schedule of intensive observation at Jeodo ocean research s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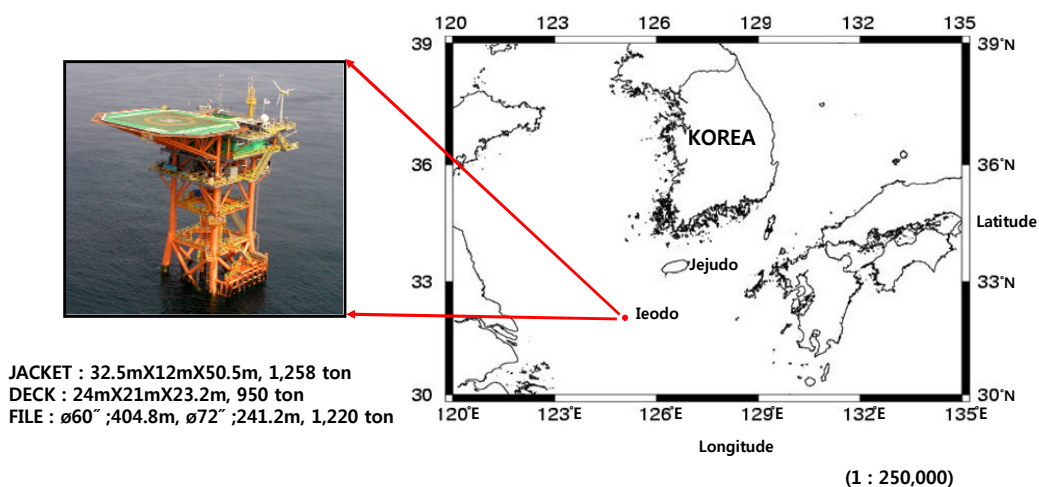


Fig. 2. The location of sampling and observation site.

집중관측기간 동안 기상 자료의 비교검증을 위하여 부경대학교 기상관측기기를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에 설치된 관측기기와 동일한 위치에 설치하였다. 이어도 기지에서 관측되는 기상요소는 풍속, 풍향, 최대풍속, 온도, 습도, 기압, 일사량, 일조시간, 강수량, 가시거리 등이 있으며, 매 1초마다 자료가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기상 관측요소 중 기온, 습도, 풍향, 풍속, 기압, 강수량 및 일사량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검증에 이용된 기기에 대한 세부 설명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2는 WMO-No. 544에 따른 기기 오차 허용 기준을 나타낸 것이며, 관측 자료 중 강수를 제외한 항목은 10분 평균자료를 이용하였고, 강수는 일 누적 강수량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Table 1. The data verification list and observation instrument

Variable	IEODO (Manufacturer/Model)	PKNU (Manufacturer/Model)
Temperature, Humidity	RM YOUNG, 05106	RM YOUNG, 05103
Wind direction/speed	VAISALA, HMP45A	VAISALA, HMP155
Pressure	VAISALA, PTB210B	VAISALA, PTB110
Precipitation	VAISALA, RG13	0.1mm tipping bucket rain-gauge
Radiation	EKO, MS-802	Cambell Scientific Inc, PTB330

Table 2. The requirement of operational measurement uncertainty requirements by WMO

Variable	Range	Required measurement uncertainty
Air temperature	-80 ~ 60 °C	0.3 °C for ≤ -40 °C
		-40 °C < 0.1 °C $\leq$ +40 °C
		0.3 °C for $> +40$ °C
Relative humidity	0 ~ 100 %	1%
Pressure	500 ~ 1080 hPa	0.1 hPa
Wind Speed	0 ~ 75 m/s	0.5 m/s for ≤ 5 m/s
		10% for > 5 m/s
Wind Direction	0 ~ 360 °	5 °
Precipitation (daily)	0 ~ 500 mm	0.1 mm for ≤ 5 mm
		2 % for > 5 mm
Radiation	Not specified	0.4 MJ m ⁻² for ≤ 8 MJ m ⁻²
		5% for > 8 MJ m ⁻²

3. 결과

3.1 기상관측 기기의 상태 점검

Fig. 3(a)와 3(b)는 이어도 과학기지에 설치되어있는 온습도계와 기압계를 나타낸 것이다. 2011년 태풍의 피해로 인하여 기상타워에서 등대설비쪽으로 온습도계의 위치가 이동되었으나 적절한 이동으로 인하여 기기의 상태가 양호하였으며, 관측자료 또한 잘 수신됨을 확인하였다. 기압계는 기상타워 옆의 데이터 로거 안

에서 관측이 되고 있으며 기기의 상태가 양호하였으며, 관측자료 또한 잘 수신됨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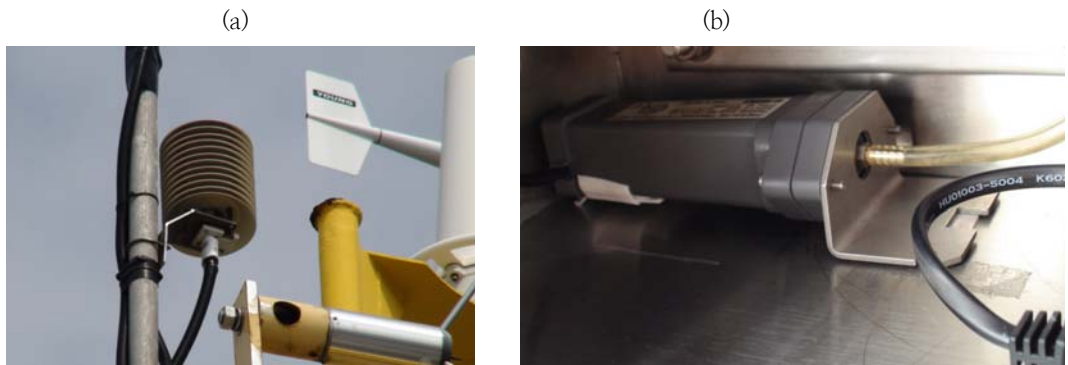


Fig. 3. The pictures of (a) temperature, humidity and (b) barometric sensor.



Fig. 4. The pictures of (a) wind monitor and (b) rain-gauge sensor.

Fig. 4(a)와 4(b)는 이어도 과학기지에 설치되어있는 풍향풍속계와 우량계를 나타낸 것이다. 2011년 태풍의 피해로 인하여 기상타워에서 등대설비쪽으로 풍향풍속계의 위치를 이동시켰으며, 적절한 이동으로 인하여 기기의 상태가 양호하였으며, 관측자료 또한 잘 수신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2011년까지 사용된 우량계를 2012년 7월에 Lufft사의 레이더식 강우센서로 교체를 하였다. 강우센서는 성공적으로 설치되었으며 기기의 상태는 양호하였다.

Fig. 5(a)와 5(b)는 이어도 과학기지에 설치되어있는 자외 일사계와 일사계, 그리고 일조계를 나타낸 것이다. 자외일사계와 일사계의 상태 점검 결과 전체적으로 양호하였으나, 주변의 등대설비의 그림자에 따라 관측 자료의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일조계의 점검결과 전체적으로 위치 및 상태가 양호하였으며, 자료수신 또한 잘 되었다.

(a)



(b)



Fig. 5. The pictures of (a) UV-B ultraviolet radiometer, pyranometer and (b) sunshine duration meter sens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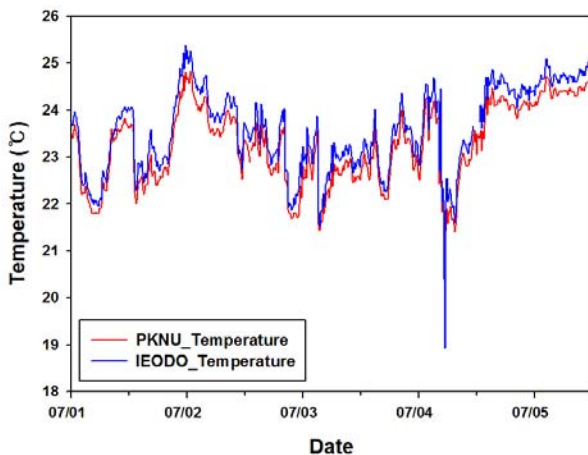


Fig. 6. The comparison of temperature data between IEODO and PKNU from 1 to 5 July 2012.

3.2 자료 검증

2012년 7월 1일에서 7월 5일 12시까지 부경대학교 AWS (이하 PKNU AWS) 기온자료와 비교한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7월 4일 11시 2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이어도 기지 AWS (이하 IEODO AWS)가 관측이 되지 않아 그 공백영역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IEODO AWS 기온자료는 파란 선, 검증에 이용된 PKNU AWS 기온

자료는 붉은 선으로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IEODO AWS의 기온 값이 PKNU AWS 기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기온의 측정오차범위는 $-0.7 \sim 2.4$ °C, 평균 측정오차는 0.3 °C로 나타났다. 이는 PKNU AWS와 IEODO AWS 두 관측기기의 불확실성이 WMO 오차 허용기준인 0.1 °C에 비해 3배 초과함을 나타내었다. 특히, 7월 4일 05시 25분의 관측 자료에서는 PKNU AWS 21.3 °C, IEODO AWS 18.9 °C의 값이 관측되어 2.4 °C의 큰 오차 값을 보였다. Table 3에 최소 및 최대 오차가 나타났던 시간과 기온을 나타내었다.

Table 3. The error range of temperature data

Date	Time	PKNU AWS	IEODO AWS	Error
2012. 07. 04	05:45	21.9 °C	22.5 °C	-0.7 °C
2012. 07. 04	05:25	21.3 °C	18.9 °C	2.4 °C

7월 1일에서 7월 5일 12시까지 IEODO AWS와 PKNU AWS 습도자료를 Fig. 7에 나타내었다. 7월 4일 11시 2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이어도 기지 AWS가 관측되지 않아 그 공백영역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IEODO AWS의 습도 값이 PKNU AWS 습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습도의 측정오차범위는 $-1.6 \sim 3.4$ %, 평균 측정오차는 1.4 %로 나타났다. 이는 PKNU AWS와 IEODO AWS 두 관측기기의 불확실성이 WMO 오차 허용기준인 1 %를 약간 초과하였음을 나타낸다. 특히, 7월 3일 19시 55분의 관측자료에서는 PKNU AWS 86.6 %, IEODO AWS 83.3 %의 값이 관측되어 3.4 %의 오차 값을 보였다(Tabl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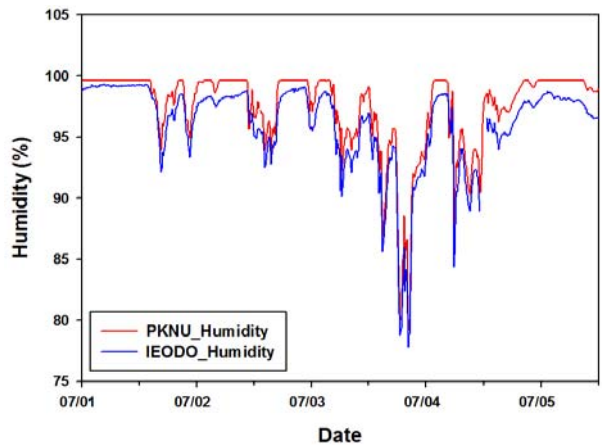


Fig. 7. The comparison of humidity data between IEODO and PKNU from 1 to 5 July 2012.

Table 4. The error range of humidity data

Date	Time	PKNU AWS	IEODO AWS	Error
2012. 07. 02	10:55	95.7 %	97.3 %	-1.6 %
2012. 07. 03	19:55	86.6 %	83.3 %	3.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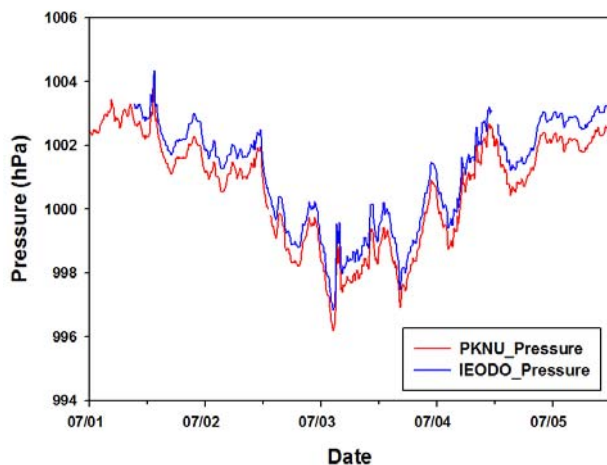


Fig. 8. The comparison of pressure data between IEODO and PKNU from 1 to 5 July 2012.

Fig. 8은 2012년 7월 1일에서 7월 5일 12시까지의 IEODO AWS와 PKNU AWS 기압자료를 나타낸 것이다. 7월 1일 00시부터 09시까지, 7월 4일 11시 2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이어도 기지 AWS가 관측되지 않아 그 공백영역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IEODO AWS의 기압 값이 PKNU AWS 습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기압의 측정오차범위는 $-0.9 \sim -0.1$ hPa, 평균 측정

오차는 0.6 hPa로 나타났다. 이는 PKNU AWS와 IEODO AWS 두 관측기기의 불확실성이 WMO 오차 허용기준인 0.1 hPa에 비해 6배 초과함을 나타내었다. 특히 7월 3일부터 10시 45분경에는 IEODO AWS 1000.2 hPa, PKNU AWS 999.3 hPa의 기압을 나타냄으로서 -0.9 hPa의 높은 오차를 보였다(Table 5).

Table 5. The error range of pressure data

Date	Time	PKNU AWS	IEODO AWS	Error
2012. 07. 03	10:45	999.3 hPa	1000.2 hPa	-0.9 hPa
2012. 07. 04	05:15	1001.5 hPa	1001.6 hPa	-0.1 hPa

Fig. 9는 2012년 7월 1일에서 7월 5일 12시까지의 IEODO AWS와 PKNU AWS 풍속자료를 시계열로 나타낸 것이다. 7월 1일 00시부터 11시 40분까지, 7

월 4일 11시 2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이어도 기지 AWS가 관측되지 않아 그 공백영역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풍속에서는 뷰퍼트 풍력 계급(Beaufort wind force scale)에 따라 0.3 m/s 이하를 무풍으로 구분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Table 3.1.6는 WMO 오차 허용 범위에 따라 풍속이 5 m/s 이하일 때와 5 m/s 초과 했을 때로 나누어 오차의 범위와 평균 오차를 나타낸 것이다. 풍속이 5 m/s 이하일 때, -0.8 ~ 3.5 m/s의 측정오차 범위를 보였으며, 평균 측정오차가 0.1 m/s로 WMO 기준인 0.5 m/s에 만족하는 값을 보였다. 풍속이 5 m/s를 초과한 경우, 측정오차 범위는 0.0 ~ 61.1 %로 나타났으며, 평균 측정오차는 4.8 %로 WMO 기준인 10 %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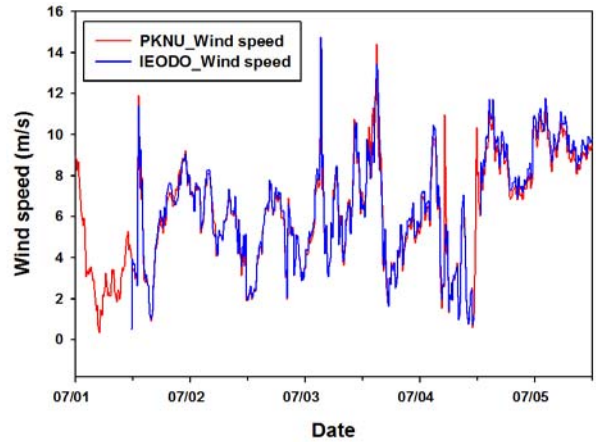


Fig. 9. The comparison of wind speed data between IEODO and PKNU from 1 to 5 July 2012.

Table 6. The error range of wind speed data

	Date	Time	PKNU AWS	IEODO AWS	Error	Average error
for ≤ 5 m/s	2012. 07. 04	04:25	2.3 m/s	3.0 m/s	-0.8 m/s	0.1 m/s
	2012. 07. 01	11:45	4.0 m/s	0.5 m/s	3.5 m/s	
for > 5 m/s	2012. 07. 03	10:25	10.4 m/s	10.4 m/s	0.0 %	4.8 %
	2012. 07. 04	05:15	11.0 m/s	4.0 m/s	61.1 %	

Fig. 10은 2012년 7월 1일에서 7월 5일 12시까지의 PKNU AWS 풍향을 기준으로 IEODO AWS 풍향과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7월 1일 00시부터 11시 40분까지, 7월 4일 11시 2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이어도 기지 AWS가 관측되지 않아 그 공백영역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뷰퍼트 풍력 계급(Beaufort wind force scale)에 따라 풍속이 0.3 m/s 이하인 시간의 풍력자료도 제외한 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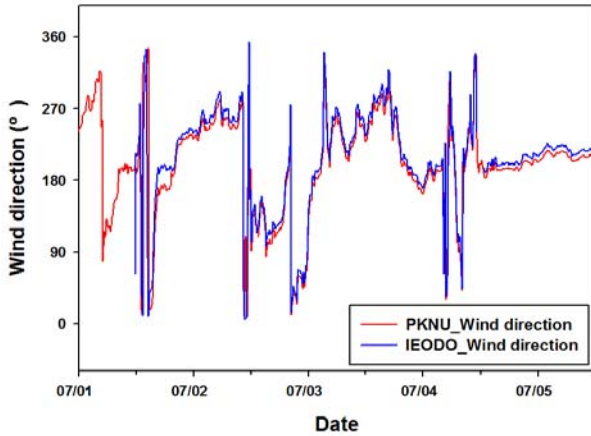


Fig. 10. The comparison of wind wind direction data between IEODO and PKNU from 1 to 5 July 2012.

Table 7. The error range of wind direction data

Date	Time	PKNU AWS	IEODO AWS	Error
2012. 07. 02	11:25	262.8 °	300.6 °	-37.8 °
2012. 07. 01	14:35	345.9 °	9.5 °	156.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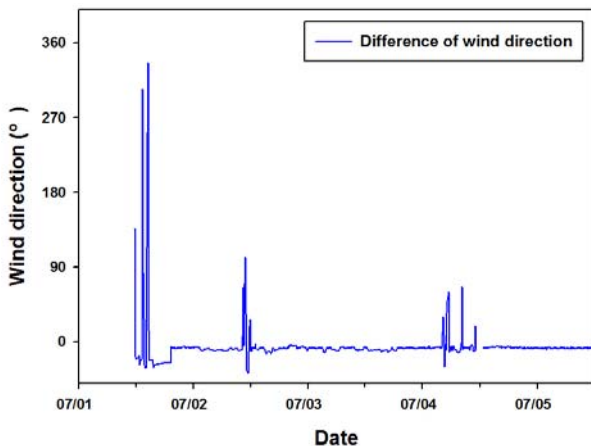


Fig. 11. The error range of difference of wind direction.

을 실시하였다. 전체적으로 IEODO AWS의 풍향 값이 PKNU AWS 풍향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풍향의 측정 오차범위는 $-37.8 \sim 156.4^\circ$ 까지 나타났으며, 평균 측정오차는 6.8° 로, 이는 PKNU AWS와 IEODO AWS 두 관측기기의 불확실성이 WMO 오차 허용기준인 5° 를 약간 초과함을 나타내었다(Table 7).

Fig. 11은 2012년 7월 1일에서 7월 5일 12시까지의 PKNU AWS와 IEODO AWS의 풍향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오차가 크게 나타난 7월 1일 11시부터 15시까지, 2일 11시경, 4일 08시경에는 관측기기 점검으로 인해 발생한 오차로서,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PKNU AWS와 IEODO AWS의 풍향차이는 거의 0에 가깝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012년 7월 1일에서 7월 5일 12시까지 관측기간 동안의 PKNU 우량계로 관측한 일강수량을 Fig. 12에 나타내었다. 이어도 기지 우량계의 교체 작업으로 인하여 IEODO 우량계는 관측하지 못하였다. PKNU 우량계에서는 7월 1일부터 5일까지 평균 20 mm이상의 높은 일강수량을 기록하였다. 특히 7월 3일과 4일에는 40 mm 이상의 많은 일강수량이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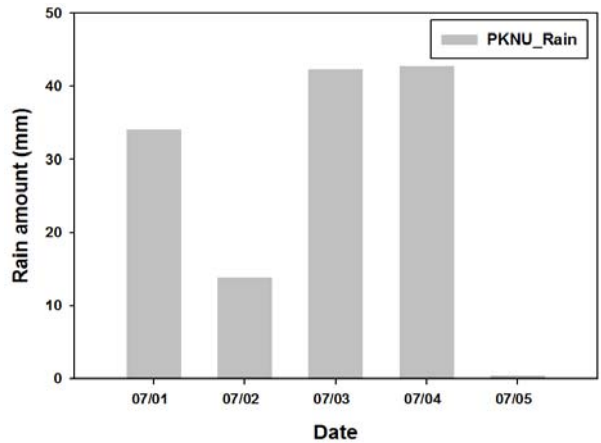


Fig. 12. The comparison of daily rainfall amount using PKNU rain gauge data from 1 to 5 July 2012.

2012년 7월 1일에서 7월 5일 12시까지 관측기간 동안의 IEODO AWS와 PKNU AWS 일사계에서 관측한 일사량을 Fig. 13에 나타내었다. 7월 4일 11시 2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이어도 기지 AWS가 관측되지 않아 그 공백영역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IEODO AWS의 일사량이 PKNU AWS 일사량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Table 8은 WMO 오차 허용 범위에 따라 일사량이 8 MJ m^{-2} 이하일 때와 8 MJ m^{-2} 초과 했을 때로 나누어 오차의 범위와 평균 오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 기간동안 일사량이 8 MJ m^{-2} 이하일 때, $-1048.6 \sim 2.2 \text{ MJ m}^{-2}$ 의 측정오차 범위를 보였으며, 평균 측정오차가 11.6 MJ m^{-2} 로 WMO 기준인 0.4 MJ m^{-2} 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은 값을 보였다. 일사량이 8 MJ m^{-2} 를 초과한 경우, 측정오차 범위는 $0.1 \sim 2184.9 \%$ 로 나타났으며, 평균 측정오차는 60.8% 로 WMO 기준인 5% 를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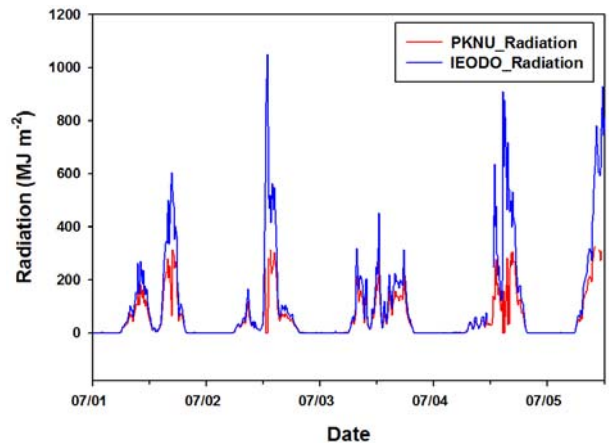


Fig. 13. The comparison of radiation data between IEODO and PKNU from 1 to 5 July 2012.

12배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월 2일 12시 45분의 관측 자료에 서는 PKNU AWS 0.0 MJ m^{-2} , IEODO AWS $1048.56 \text{ MJ m}^{-2}$ 의 값이 관측되 어 $-1048.6 \text{ MJ m}^{-2}$ 의 큰 오차 값을 보였다.

Table 8. The error range of radiation data

	Date	Time	PKNU AWS	IEODO AWS	Error	Average error
for $\leq 8 \text{ MJ m}^{-2}$	2012. 07. 02	12:45	0.0 MJ m^{-2}	1048.6 MJ m^{-2}	$-1048.6 \text{ MJ m}^{-2}$	11.6 MJ m^{-2}
	2012. 07. 03	05:55	4.9 MJ m^{-2}	2.7 MJ m^{-2}	2.2 MJ m^{-2}	
for $> 8 \text{ MJ m}^{-2}$	2012. 07. 03	06:25	22.78 MJ m^{-2}	22.80 MJ m^{-2}	0.1 %	60.8 %
	2012. 07. 04	15:35	31.4 MJ m^{-2}	718.1 MJ m^{-2}	2184.9 %	

4. 결론 및 요약

2012년도 관측을 통한 기온, 습도, 기압, 풍속, 풍향, 강수, 일사 등 기상관측자 료에 대한 검증 결과를 Table 9에 나타내었다.

기온의 측정오차는 $0.3 \text{ }^{\circ}\text{C}$ 로 WMO 기준인 $0.1 \text{ }^{\circ}\text{C}$ 보다 3배 높은 값을 나타내

Table 9. The summary of verification results

Variable	Range	Required measurement uncertainty	Measurement uncertainty
Air temperature	$-80 \sim 60 \text{ }^{\circ}\text{C}$	$0.3 \text{ }^{\circ}\text{C}$ for $\leq -40 \text{ }^{\circ}\text{C}$ $-40 \text{ }^{\circ}\text{C} < 0.1 \text{ }^{\circ}\text{C} \leq +40 \text{ }^{\circ}\text{C}$ $0.3 \text{ }^{\circ}\text{C}$ for $> +40 \text{ }^{\circ}\text{C}$	$0.3 \text{ }^{\circ}\text{C}$
Relative humidity	$0 \sim 100 \text{ } \%$	1%	1.4 %
Pressure	$500 \sim 1080 \text{ hPa}$	0.1 hPa	0.6 hPa
Wind Speed	$0 \sim 75 \text{ m/s}$	0.5 m/s for $\leq 5 \text{ m/s}$ 10 % for $> 5 \text{ m/s}$	0.1 m/s 4.8 %
Wind Direction	$0 \sim 360 \text{ }^{\circ}$	5 °	6.8 °
Precipitation(daily)	$0 \sim 500 \text{ mm}$	0.1 mm for $\leq 5 \text{ mm}$ 2 % for $> 5 \text{ mm}$	No data No data
Radiation	Not specified	0.4 MJ m^{-2} for $\leq 8 \text{ MJ m}^{-2}$ 5% for $> 8 \text{ MJ m}^{-2}$	11.6 MJ m^{-2} 60.8 %

었다. 습도의 측정오차는 WMO 기준인 1 %에 비해 약 1.4배의 오차를 보였다. 기압의 측정오차는 0.6 hPa로 WMO 기준보다 6배 높게 나타났다. 풍속은 5 m/s 이하의 경우와 5 m/s를 초과하는 경우로 구분하였는데, 5 m/s 이하의 풍속에서는 오차가 0.1 m/s로 WMO 기준인 0.5 m/s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5 m/s를 초과하는 풍속에 대해서는 WMO 기준값보다 낮은 오차 값을 보였다. 풍향의 측정오차는 6.8° 로 WMO 기준인 5° 보다 1.3배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풍향의 오차는 기기 점검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실제 풍향 차이는 매우 적게 나타났다. 우량계의 경우, 이어도 우량계의 교체작업으로 인하여 비교가 불가능하였다. 일사계는 8 MJ m^{-2} 이하의 경우와 8 MJ m^{-2} 를 초과하는 경우로 구분하였는데, 8 MJ m^{-2} 이하의 일사량에서는 오차가 11.6 MJ m^{-2} 로 WMO 기준인 0.4 MJ m^{-2} 보다 약 30배 가량 높게 나타났으며, 8 MJ m^{-2} 를 초과하는 일사량은 60.8 %로서 WMO 기준인 5%보다 매우 높은 오차 값을 나타내었다.

이어도 기지에서의 기상관측장비를 살펴보면 기압계, 일사계에서는 오차 값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온도계, 습도계 또한 WMO 기준보다 약간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특히 우량계는 값이 관측되지 않아 비교가 불가능 하였다. 향후 양질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이어도 기지의 기상관측장비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 및 보정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내륙에 상륙하기 전 발달하는 구름이나 강수 배경장 조사, 해수온의 분포, 해양기상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대기 상하층의 기상관측, 해양관측, 환경배경농도 관측 등 고정점에서의 연속관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한반도에 미치는 강수 시스템을 사전에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는 X-band Vertically Pointing Radar (VertiX) 와 Micro Rain Radar (MRR)과 같은 소형 강우레이더를 이어도 과학기지에 설치할 필요가 있고, 고층바람성분의 관측을 위한 wind profiler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이어도 해양종합과학기지, 기상관측, 자료검증, 측정 불확실성

Abstract

Scientific Operation of Jeodo Ocean Research Station and Its Improvement Planning

Dong-In Lee, Sung-Hwa Park, Jeong-Chang Kim, Jun-Ho Lee

In recent years, natural disasters are increasing with climate change affected by global warming and their damages have also increased every year. To reduce this damage for human life and property, accurate forecast of the various weather phenomena are necessary. In order to analyze the weather phenomena which are developed on the sea, direct meteorological observations in the ocean should be investigated and accumulated. However it is difficult due to geographical reasons. In this scenario, the Jeodo Ocean Research Station (IORS) was establish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2003, in order to observe the oceanic and atmospheric environment of East Asia through direct measurements and to recover the disadvantage of other meteorological observations. However, it poses a problem for observed data because of the difficulty of instrument mainten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tain more qualified data and improved operating instruments at IOR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The error of temperature was 0.3 °C, humidity was 1.4 %, pressure was 0.6 hPa, wind direction was 6.8 °, wind speed for ≤ 5 m/s was 0.1 m/s and for > 5 m/s was 4.8 %, radiation for ≤ 8 MJ m⁻² was 11.6 MJ m⁻² and for > 8 MJ m⁻² was 60.8 %, rain gauge, daily rainfall was not detected the precipitation, respectively. Except wind speed, all instruments exceeded operational

measurement uncertainties which was required by WMO.

Meteorological instruments of IORS need to be inspected and calibrated continuously for collecting the high quality data. Also, in order to analyze moist environment, wind fields, kinematics, thermodynamics and microphysical characteristics, it is required to observe sequentially at IORS such as oceanographical observation. Furthermore, for the quantitative precipitation estimation and wind field measurements of oceanic precipitation system, X-band Vertically Pointing Radar (VertiX), Micro Rain Radar and wind profilers are required to set up at the IORS.

Keywords: Jeodo Ocean Research Station, Meteorological observation, Data validation, Measurement uncertainty

참고 문헌

- (1) “神의 입자 ‘릭스’의 희망…허리케인 ‘샌디’의 절망” 『국제신문』 (2012. 12. 30)
- (2) “기상이변, 피할 수 없다면 피해 줄여라” 『동아일보』 (2013. 03. 19)
- (3) 종합 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활용연구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활용연구”, 『해양수산부』 p.172
- (4) “1999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사업 보고서”, 『해양수산부』 p.678
- (5)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집중 기상관측”,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
- (6) “2000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사업 보고서”, 『해양수산부』 p.6
- (7) http://ieodo.nori.go.kr/open_content/introduce/position.asp (검색일: 2009. 12. 09)
- (8) Durre, I., R. S. Vose, and D. B. Wuertz, “Overview of the integrated global radiosonde archive”, 『*Journal of Climate*』, vol.19, 2006, pp. 53-68
- (9) Shimizu, S., H. Uyeda, T. Shinoda, K. Tsuboki, H. Yamada, and B. Geng, “The relationship between distribution of humidity and types of rainfall on three rainbands near Shanghai during Meiyu period in 2001”, 『*The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esoscale Convective Systems and Heavy Rainfall/Snowfall in East Asia*』, 2002, pp. 13-18
- (10) Neiman, P. J., and M. A. Shapiro, “Retrieving horizontal temperature gradients and advection from single-station wind-profiler observations”, 『*Wea. Forecasting*』, vol.4, 1989, pp. 222-233
- (11) 심재설, 오병철, 전인식,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주변 바람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해안·해양공학회지』, 2003, vol.15, pp. 138-145.

이어도 문화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강병철

이어도연구회 연구실장

프리다 크리스틴 밀러

대구가톨릭대학교 조교수

양금희

제주인뉴스 편집국장

I. 서론

이어도 문화는 제주를 대표하는 상징중의 하나로 전설 속에서 고통이 없는 이상향으로 그려지고 있다. 제주의 노인들 특히 해녀들에게 이어도는 위안의 섬이었다. 그들은 바다에서 실종되는 사람들은 이어도로 갔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서로 위안을 얻었다.

문화에 대하여 신학, 인류학, 사회학, 교육학 등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인류학자들은 ‘인간 삶의 유형(patterns of Life) 혹은 생활양식(Life style) 그 자체’라고 설명하고 있다. 테일러는 “문화 또는 문명은 사회 성원으로서의 인간이 습득한 지식, 믿음, 예술, 도덕, 법, 관습, 기타 모든 습관을 다 포함하는 복합적인 총체이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념을 근거로 본다면 이어도에 대한 제주사람들의 믿음을 제주의 생활환경에서 형성된 문화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제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은 이어도와 친숙하다. 전설에서만 이어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생활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위에서 이어도라는 이름의 상호를 심심찮게 볼 수 있으므로 이어도는 제주인과 함께 살아 숨 쉬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금도 제주도민들의 생활 속에서 이어도라는 상호

나 단체명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어도 문화를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갖고 활동하는 시민사회가 형성되는 것은 이어도문화가 제주도민들의 삶에 얼마나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보통 국가와 시장을 제외 한 나머지 영역으로 각종 종교단체와 이익단체를 포함하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사회단체를 망라한다. 시민사회는 정부와 시장을 견제하고 감시하기도 한다. 시민사회에 대해 키인(J. Keane)은 국가제도와 항구적으로 상호긴장관계에 있는 복합적이고 동적인 비정부 제도들의 총체(ensemble), 합법적으로 보호받는 비폭력적이며 자주적인 조직 결성의(self-organizing), 그리고 자기 성찰적(self-reflexive) 경향을 지니는 진보정치의 장소(Keane, 1998)로 이해한다.¹ 이 논문에서는 시민사회의 이러한 입장보다는 정부와 시장의 미비한 역할을 보완하는 역할을 강조하고자 한다. 다이아몬드(S. Diamond)에 의하면 시민사회란 법질서나 공유된 규칙들의 한계 내에서 국가로부터 자율성을 지닌 사회 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사회적 삶의 영역이다.²

이 논문에서는 제주의 시민사회가 이어도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망하여 보고자 한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이어도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이어도와 관련한 전설을 살펴보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검토하겠다. 제3장에서는 이어도와 관련하여 중국과 갈등하는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 분석하여 이어도 쟁점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관계론적인 시각에서 시민사회가 심사숙고할 사항을 검토하겠다. 제4장에서는 이어도에의 날 조례제정을 둘러싼 논란을 검토하고 시민사회의 활동을 살펴보겠다. 결론적으로 이어도를 지키기 위하여 제주 시민사회가 전개해나가야 할 활동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제주의 바람과 돌과 바다와 같이 이어도는 제주인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삶의 여정에서 떼어낼 수 없는 생의 한조각일 것이다. 이러한 이어도를 지키고자하는 제주시민사회의 의지는 이어도로 상징되는 이어도해양과학기지가 있는 이어도 해역을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포함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

¹ 엄묘섭, “시민사회의 문화와 사회적 신뢰,” 『문화와사회』 통권3권(한국문화사회학회, 2007), p.13.

² 위의 글, p.13.

을 것이다.

II. 이어도 문화의 이해

1. 전설속의 이어도

이어도와 관련한 전설은 문서화 된 것은 거의 없으며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과거에는 뱃돌노랫말로 이어도가 전래되면서 비교적 광범위하게 제주도민들이 이어도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으나 뱃돌이 실생활에서 사라지면서 이어도에 대한 인지도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구비문학에 대한 연구가 192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구비문학의 분류를 위한 설화, 민담, 동화와 같은 용어들의 명확한 정의가 없어 논란이 되었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구비문학분야에서 구비설화의 하위갈래로 ‘신화(myth)’, ‘전설(legend)’, ‘민담(folktale)’으로 정리되었다.³ 김상헌의 연구에서 신화의 ‘발생목적’이라는 측면을 보면 ‘신성성(神聖性)’을 전승하려하고 전설의 경우에는 ‘진실성(眞實性)’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신화가 ‘전승집단의 단결’을 핵심적인 기능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면, 전설은 일정한 지역의 민중들을 대상으로 ‘지역적인 유대감을 고취하는 것’을 그 기능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⁴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어도에 대한 구비설화는 신화라기보다는 전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어도전설은 오랜 기간 제주지역의 또 다른 곳에 존재하는 이상향의 섬이라는 제주 지역 공동체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여 식민지화 한 시기에 조선학연구가였던 다카하시 토오루(高橋 亨)가 1929년부터 1935년까지 한국의 민요를 조사하여 기록으로 남겼

³ 김상헌, “구비설화의 갈래분류와 세르비아 구비민담의 형식적 구조단위에 관한 연구,” 『동유럽발칸학』 제 9권 1호, (2007), pp.64-65.

⁴ 위의 글, p.68.

는데 그 중에 이어도와 관련하여 기록된 모슬포의 ‘이어도’ 전설⁵이 있다.

옛날 고려시대 충렬왕(忠烈王) 3년 원(元)의 지배를 받아 목관이 와서 통치하기 시작한 때부터 원말(元末)까지 제주에는 매년 공물을 중국에 보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공선(貢船)은 북쪽의 산둥(山東)에 가기 위해 섬의 서북쪽 대정의 모슬포에서 준비하여 출발했다. 언제인지 모르나 대정에 강(姜)씨라는 해상운송업의 거간인 장자(長者)가 있어서 이 공물선의 근거지를 이루고 그때마다 수척의 큰 배가 공물을 만재하여 항해를 가로질러 출발했다. 그런데 이들 공물선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강씨에게는 늙은 부인이 있었다. 그녀는 슬픔은 이기지 못하고 “아아, 이허도야 이허도”로 시작하고 끝나는 노래를 짓고 이를 불렀다. 그 곡조는 처참하도록 슬펐다.

국립해양조사원의 통합해양교실란에서 소개하고 있는 진성기가 조천에서 채록한 장귀동산당의 고동지전설⁶이 있다.

옛날 조천리에는 고동지라는 사나이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해에는 중국으로 국마진상을 가게 되었다. 그날따라 바람 한 점 없이 바다는 잔잔하여 고동지는 동료배들과 함께 말을 잔뜩 싣고 순풍에 돛을 달아 배는 조천포구수진개를 떠나게 되었다. 그런데 배가 수평선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폭풍이 불어 닥쳐 배는 나뭇조각처럼 흔들리며 표류하기 시작하였다.

몇날 며칠을 표류했던지 마침내 배는 한 섬에 표착하게 되었는데, 이 때 고동지는 동료들을 모두 잃고 자기만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표류하여 도착한 땅은 ‘이어도’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이어도’에는 큰 태풍 때 고기잡이 간 어부들이 수중 고힌이 되는 바람에 이른바 과부들만의 섬이었다.

과부들은 고동지가 표착하자 그에 대한 환영이 대단하였다. 과부들은 고동지에게 이 집에서도 묵도록 했고 저 집에서도 묵도록 했다. 고동지는 날이면 날마다,

⁵ 이어도연구회, 『이어도 바로알기』(도서출판 선인, 2011), p.52.

⁶ 국립해양조사원 통합해양교실 ‘이어도 이야기’ 참조.

(http://www.khoa.go.kr/UOC/study/dokdo/ieodo_story.asp 검색일 : 2013.7.8)

밤이면 밤마다 이 여자에게서 저 여자에게로 전전하면서 애정을 나누었다. 그러던 어느 하루는 비가 와서 처마에서는 낚싯물이 푹푹 떨어지고 있었다. 고동지는 불현듯 고향의 아내와 부모 형제가 그리워졌다. 아내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불길같이 일어났다.

그 날 밤은 초승달이 반달이었으나, 달이 유난히 밝았다. 고동지는 바닷가를 배회하면서 멀리 수평선 너머로 바라보며 아내의 이름을 열백번도 더 불러 보았다. 달 밝은 밤이면 더욱 고향이 그리워졌고, 고향이 그리워지면 바닷가를 찾는 고동지였다 바다는 부드러운 가락으로 노래를 부른다. 파도의 가락에 따라 스스로를 달래며 구슬프게 노래를 부르는 고동지였다.

강남으로 가는 절반쯤 길에 ‘이어도’가 있으니, 나를 불러 달라는 애절한 내용의 노래인 것이다. 이어도 사람들은 이 고동지의 노래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고, 많은 여인네들이 그의 처지를 동정하게 되었다. 고동지의 노래를 듣고 흐느껴 우는 과부들도 많았다. 이윽고 이어도 노래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되었다.

그 후 고동지는 뜻밖의 중국 상선을 만나, 그 배의 도움으로 귀향하게 되었다. 이 때 ‘이어도’의 한 여인이 이 고동지를 따라 제주에 들어오게 되었다. 고향에서는 태풍으로 죽은 줄로만 알았던 고동지가 살아 돌아오자 잔치가 벌어졌고, 이들은 모두 한 가족이 되어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 때 ‘이어도’에서 고동지를 따라 온 여인을 마을 사람들은 ‘여dot할망(이어도의 할머니라는 뜻)’이라 하여, 사후에는 마을 당신으로 모시게 되었으니, 지금 조천리 ‘장귀동산당’이 바로 그 여인의 제단인 것이다.

현용준, 김영돈이 동김녕리에서 채록한 ‘이어도’전설⁷도 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남편이 아내를 버려두고 무인도인 ‘이어도’로 가서 첩을 정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남편을 잃어버린 아내는 늙은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아버지에게 부탁하였다.

7 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 大系 -북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0), pp.203-206.

“아버님, 배 한 척만 지어 주십서.”

“뭘 하젠?”

“남편을 찾아 보쿠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소원을 들어 선흘고지(조천읍 선흘리) 로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배를 지어주었다. 어느 화창한 날을 택하여 며느리는 시아버지와 함께 남편이 살고 있는 이어도를 향하여 배를 띄웠다. 이어도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다.

며느리가 노를 저으며 어서 ‘이어도’에 가자고,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소리[노래]를 불렀다. 드디어 힘겹게 이어도에 이르렀다. 과연 남편은 새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다.

남편은 아버지와 본처가 귀향할 것을 설득하자 하는 수 없어 가족 모두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기로 결정을 내렸다.

온 가족이 한 배에 타서 고향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풍파가 몰아치니 다 몰사 당하고 말았다. 그 후, 그 고향 사람들은 풍파를 만나 몰사한 그 가족들을 불쌍하게 여겨 당제(堂祭)를 지내듯 늘 제사를 올렸다.

이어도의 전설들 외에도 해녀 노래에서 이어도가 나타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 제1호 ‘해녀노래’속에서 이어도는 소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어도하라 이어도하라/ 이어도 길은 저승길이어/ 신던 보선을 볼 받아 놓고 / 입던 옷을 풀질하여 다림질해 놓아”라는 내용이나 “이어도문은 대문이어/대문 뒤엔 방축이어/ 방축 뒤엔 연꽃이라/ 연꽃구경 좋더라마는”과 같이 소박한 옷이나 연꽃 구경과 같은 내용을 보면 과거 제주의 민초들의 힘든 삶을 연상할 수 있을 것이다. 가난과 궁핍 속에서 삶을 이어가던 민초들은 최소한의 생존과 물질적 풍요와 관련한 이상향을 노래하고 있으며 “전복이 많은 이어도/ 미역이 많은 이어도”와 같이 소박한 물질적 풍요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⁸

그 외에 땃돌노래 등 이어도와 관련한 내용이 제주민요에서 나타나고 있다. 제주민속박물관 진성기관장은 “이어도는 땃돌노래와 함께 광범위하게 사람들에게

⁸ 좌혜경·권미선, 『이어 이어 이어도 사나』,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2010), pp.136-138.

게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뗏돌노래가 사장되다시피 하면서 이어도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인식도 많이 감소하였다”면서 “채록 당시에 모두가 이어도가 이상향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고 일부는 이어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회고하였다.⁹

2. 생활 속의 이어도

이어도는 전설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주위에서 이어도라는 상호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와 함께 문학과 예술로도 이어도를 만날 수 있다.

제주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던 이어도가 이청준의 소설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후에 유명세를 떨치지는 못했지만 영화나 연극, 시, 소설의 소재가 되고 많은 작품들이 양산되기도 하였지만 생활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제주일보』기사에 등장하는 경우를 몇가지 추려보면, ‘극단 이어도’, ‘이어도민속예술단’, ‘이어도환경사진연구회’, ‘서귀포 이어도문화센터’처럼 문화예술단체의 명칭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 밖에도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이어도라이온스클럽’, ‘제주시이어도게이트볼팀’, 한국가스공사의 ‘이어도사회봉사팀’등 시민사회단체가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¹⁰

이어도가 생활속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면 제주도민들의 문화로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어도라는 용어 및 이미지의 사용은 권장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20대의 청년들에게 맡겨진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일 것이다.

⁹ 『제주인뉴스』, 2012년 6월29일, “양금희가 만난 진성기관장, 이어도 전설을 기록하였던 민속학자” 참조.

¹⁰ 조성윤, “이어도에 관한 제주도 주민들의 이미지,” 『이어도연구』 3호(이어도연구회, 2012), p.217.

III. 이어도와 국제관계

1. 유엔해양법협약과 배타적경제수역의 등장

국제사회는 해양에 대한 규범을 세우려고 시도하면서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합의를 이루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17세기 그로티우스(Hugo Grotius)는 ‘자유해양론’(Mare Liberum, 1609)에서 바다는 소유가 불가능하고 바다를 통한 국제통상은 자연법상 인정된 권리라고 주장하였으며 영국의 셀던(John Selden, 1584-1654)은 ‘폐쇄해양론’(Mare Clausum, 1635)에서 국가가 바다를 지배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¹¹ 1609년 그로티우스의 해양자유 주장과 1635년 영국의 존 셀덴이 ‘폐쇄해양론’을 통해 어업면허 제를 실시하고 있던 영국의 입장을 옹호하고 나선 것은 개별 국가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해양법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상호 대립되는 국가주권(territorial sovereignty)의 원칙과 공해자유(freedom of high seas)의 원칙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시대의 요구에 따라 두 원칙 간에 계속적인 갈등과 타협의 산물로 형성되어 발전하여왔다.¹²

해양강대국들은 ‘자유해양론’을 선호하였으며 약소연안국가들은 자국의 관할수역을 확대하려고 하였으며 ‘폐쇄해양론’을 선호하였다. 세 차례에 걸친 유엔해양법회의 끝에 탄생한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에 미국은 서명하였으나 의회의 인준을 받지 못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¹³

국제해양규범으로 유엔해양법협약이 국가 간 협상을 거쳐 1982년 4월 30일 채택되고 1994년 11월 16일 발효되면서 한·중·일 동북아 3국은 모두 200해리

¹¹ 강병철, “이어도 쟁점과 중국 해군전략의 변화,” 『STRATEGY21』, Vol. 16, No.1.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3), p.144.

¹² E. D. Brown.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Volume I(1994). p.6.

¹³ 유엔해양법체제에 대하여 1980년대에 레이건대통령은 거부하였으며 1990년대에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행정부는 가입서명을 하였으나 미국의회에서 비준을 받지 못하여 효력이 발생되지 않고 있다.

EEZ를 선포하였으며 200해리 수역이 상당 부분 중복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 해양경계 획정을 둘러싼 갈등이 증가하게 되었으나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경계 획정 방법이 모호하면서 갈등해결이 어렵게 되었다.

유엔해양법이 1994년 발효되자 유엔해양법 협약 내용 중에서도 12해리 영해 외측의 수괴(water column)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대륙붕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결합한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의 도입은 연안국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해양 강대국들의 입장도 반영하여 EEZ 내에서 모든 국가들이 항행의 자유, 상공 비행의 자유, 해저전선 및 도관(導管) 부설의 자유, 그리고 이들 자유와 관련된 해양 사용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관할권에 대한 해석에서 아직도 국가 간 차이가 있으며 갈등의 한 요소가 되고 있다. 중국을 포함하여 27개국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이 경제적활동에 대한 관할 외에도 외국해군의 군사활동을 규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¹⁴

한국과 중국이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한 후 바다의 폭이 400해리 미만이어서 중첩되는 수역에 대한 경계획정 문제가 대두되었다. 과거에 공해였던 시기에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었던 해역이 배타적경제수역이 도입되고 연안국의 관할권을 확장시키면서 중첩된 지역에서 갈등이 시작된 것이다. UN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한 규정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은 1982년 리비아 -투니시아 대륙붕사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¹⁵

연안 국가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범위 내에서 영해를 선포하며 200해리까지 생물 및 비생물 자원의 탐사개발과 수역의 경제적 개발, 인공 도거나 해상구조물의 설치와 이용, 해양오염의 방지 및 해양의 과학적 조사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하여 EEZ 안에서는 연안국이 전면적으로 어업활동을 관할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어도해역이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선포되면서 이어도해양과학기지를 설립할 명분이 생긴 것이다.

14 Ronald O'Rourke, *Maritime Territorial and Exclusive Economic Zone (EEZ) Disputes Involving China*,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s, December 10, 2012), p.4.

15 박춘호, “1982년 UN해양법협약”, 『考試界』 Vol.30 No.11(고시계, 1985), p.130.

2. 배타적경제수역획정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입장

1) 배타적경제수역 획정에 대한 한국의 입장

한국은 중국과의 배타적경제수역 획정에서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관계국과의 합의원칙’¹⁶을 바탕으로 하여 중간선으로 나누는 것이다. 중국과의 배타적경제수역 획정협상을 진행시키면서 이어도는 수중암초로 영토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중국과 같은 입장이다. 또한 ‘배타적경제수역법’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권리는 대한민국과 관계국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대한민국과 관계국의 중간선 외측 수역에서는 행사하지 아니한다¹⁷고 명시하여 중간선을 중심으로 경계를 획정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 당국자 간에 배타적경제수역 획정협상이 16회 진행된 것¹⁸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그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어도에 관한 한국정부나 중국정부의 입장은 원론적 수준의 내용만 제한적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어도해양과학기지에 대한 중국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한국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대한 중국의 문제제기 관련 당국자 논평’¹⁹에서 한국정부의 입장이 나타난다.

한국은 이어도해역의 경제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유엔해양법에 근거하여 중간선 원칙에 따라 양 국가가 경계를 획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적어도 이어도해역

¹⁶ 1996년 8월 8일 공포한 법률 제5151호 ‘배타적경제수역법’(排他的經濟水域法) 제2조 2항 大韓民國과 對向하거나 인접하고 있는 國家(이하 “關係國”이라 한다)간의 排他的經濟水域의 境界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國際法을 기초로, 關係國과의 合意에 따라 劃定한다.

¹⁷ 제5조(大韓民國의 權利行使 등) 2항,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大韓民國의 排他的經濟水域에 있어서의 權利는 大韓民國과 關係國간에 별도의 合意가 없는 경우 大韓民國과 關係國의 中間線 外側의 水域에서는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中間線”이라 함은 그 線上의 각 點으로부터 大韓民國의 基線상의 가장 가까운 點까지의 直線距離와 關係國의 基線상의 가장 가까운 點까지의 直線距離가 같게 되는 線을 말한다.

¹⁸ Jeremy Page, “China, South Korea in Row Over Submerged Rock,” *Wall Street Journal*, (March 14, 2012).

¹⁹ 외교통상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대한 중국의 문제제기 관련 당국자 논평,” 『외교통상부보도참고자료』, (외교통상부 국제법규과, 2006. 9.15)

까지는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 명박대통령도 “이어도 쟁점이 근본적으로 영토분쟁이 아니며, 중국과 수역이 겹치는 구간을 조정하면 자연스럽게 한국 관할에 들어올 것”²⁰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어도해양과학기지 건설 초기에 중국의 항의에 대하여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치는 지점에 이어도가 위치하고 있으나 한국 쪽에 훨씬 가까우므로 중간선으로 획정하면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²¹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양국이 선포한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치는 지점에 이어도가 위치하고 있으나 한국쪽에 훨씬 가까우므로 중간선으로 획정하면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 일관된 한국정부의 입장이다.²²

2) 배타적경제수역 획정에 대한 중국의 입장

배타적경제수역의 획정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보면 형평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데 대륙 국가이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중국은 중간선에 의한 해양경계의 획정에 반대한다.²³

2006년 9월 14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 친강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이어도 해양종합과학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하자 중국정부는 2000년과 2002년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한국정부는 이어도해양과학기지가 배타적경제수역획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하였다고 밝히면서 중국은 국제법 규범에 따라 대화와 협상으로 배타적경제수역을 획정할 것이며 한국이 중첩되는 경제수역에서 진행하는 일방적인 활동을 반대한다²⁴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

²⁰ Korea Times, “Lee: leodo will remain under Korea's control,” *Korea Times*, (2012.3.12)

²¹ Kang Byeong-cheol, “South Korea should prepare to defend leodo research station,” *Korea Times*, (2010.12.10)

²² 강병철, “이어도 쟁점과 중국 해군전략의 변화,” 『STRATEGY21』, Vol. 16, No.1.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3), p.148.

²³ 고충석·강병철, 『이어도 해양분쟁과 중국민족주의』, (파주시: 한국학술정보, 2013), pp.249-250.

²⁴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eign Ministry Spokesman Qin Gang's Regular Press Conference on 14 September 2006,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6)(<http://www.fmprc.gov>).

핑을 하면서 ‘쑤옌자오’(蘇岩礁; 이어도)는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첩된 해역에 위치하고 있는 암초로서 이어도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의 일방적인 행동은 아무런 법률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면서 한국과 중국 사이에 영토분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나섰다.

중국당국에서는 이어도쟁점에 대하여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2007년부터 공세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중국 국가해양국의 공개 자료를 신는 ‘해양신식망’은 2007년 12월24일 이어도 관련 항목을 기술하면서 “쑤옌자오는 중국의 영해이자 배타적경제수역 안에 있는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했는데 중국 민간단체나 학자들이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적은 있으나, 정부 기관이 이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²⁵ 중국은 2008년 8월 15일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蘇岩礁〉)에 대한 최신자료를 올려 “이어도는 중한 양국의 200해리 경제 수역이 겹치는 지역에 있다”면서 “귀속 문제는 양국간 협상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임박한 방한을 앞두고 이어도 문제가 더 이상 양국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²⁶

2011년 12월 13일 중국 국가해양국은 닌저오다오와 이어도 등 분쟁 수역의 정기 순항을 위해 최신 해양순시선인 3천톤급의 ‘하이저엔 50호’를 출범하였다.²⁷ 2012년 3월 3일 중국국가해양국장인 류츠구이(劉賜貴)가 신화통신(新華通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해양국이 선박과 비행기를 동원해 관할해역을 정기순찰하며 중국의 해양권익을 지키고 법을 집행하는 체제를 마련했다”며 “현재 해양국 소속 감시선과 비행기의 정기 순항 범위에 이어도도 포함된다”고 발표하자 한국정부는 강력히 항의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3월 1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통령과 편집·보도국장 토론회’에서 중국과의 이어도 분쟁 가능성에 대해 “이어도 문제는 근본적

cn/eng/xwfw/s2510/t272110.htm ;검색일 2013. 7.6)

²⁵ 『한겨레신문』 2008년 8월 8일. “이어도 ‘제2의 독도’ 되나” 참조.

²⁶ 『조선일보』 2008년 8월 16일. “중(中), 이어도 영유권 주장 다시 철회” 참조.

²⁷ Xinhua, “China sends leading patrol ship to East China Sea on maiden voyage”, *Xinhua*, (2011.12.1).

으로 영토분쟁이 아니다”면서 “이 문제는 수역이 겹치는 문제를 조정하면 자연스럽게 한국 관할에 들어올 것”이라며 “양국이 이 문제에 대해 16차례 협상했지만, 아직 진전을 못 보고 있다”면서도 “수역을 조정하는, 겹치는 구간을 조정하면 자연스럽게 한국관할에 들어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3.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포위전략

미국은 중국이 아시아지역의 강대국으로 등장하여 지역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패권국이 되는 것을 방지하려하고 있다. 미국은 ‘2006년도 4개년 국방 검토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포위 전략을 밝히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장래에 부상하는 강대국이 호전적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위하여 동맹국 및 협력국들과 함께 울타리로 가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⁸ 미국을 위시한 해양강대국들은 항행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으나 중국을 포함한 27개국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이 경제적활동에 대한 관할 외에도 외국해군의 군사활동을 규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²⁹

클린턴 미국무장관은 2011년에 아시아태평양으로 미국의 외교중심이 옮겨지고 있다면서 “전략적으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 지구적 발전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남중국해의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고 북한의 핵확산을 저지하고 지역의 주요국의 군사적 투명성을 높이는 것들을 실현하는지 못하는지가 중요하다”³⁰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중국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중국은 비대칭전략(asymmetric strategy)에 기반해 미사일 공격능력을 중심으로 잠수함, 대위성무기, 사이버전쟁수행능력 등을 강화해 소위 반접근/지역거부(anti

²⁸ U.S.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February 6, 2006), 27 - 28.

²⁹ Ronald O'Rourke, *Maritime Territorial and Exclusive Economic Zone (EEZ) Disputes Involving China*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s, December 10, 2012), p.4.

³⁰ Hillary Clinton, "America's Pacific Century," *Foreign Policy* (November 2011). (http://www.foreignpolicy.com/articles/2011/10/11/americas_pacific_century. 검색일: 2013.7.8.)

access/area denial: A2/AD) 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³¹ 중국의 해양전략인 A2/AD 전략은 미국은 물론 적성국가의 해양력이 중국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 (Anti Access)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격퇴(지역거부, Area Denial) 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중국의 국제정치 관념에 입각해서 볼 때 대단히 공격적인 전략이다.³²

지난 2011년 7월 11일 중국을 방문 중인 미합참의장인 마이크 멀린 제독이



〈그림 1〉 중국해군의 훈련 및 순찰수역

출처: Office of Naval Intelligence, The People's Liberation Army Navy: A Modern Nav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Office of Naval Intelligence, 2009), p.38.

³¹ 최우선, “중국의 지역접근저지 능력 증강과 미국의 대응”,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2011) p.1.

³² 이춘근, “해양교통로의 안전 확보가 국가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 『STRATEGY21』 pp.57-58.

DF-21D에 대하여 중국 중앙 군사위원회 위원 천빙더(陳炳德)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에게 질문하자 “아직 연구단계”라는 답변을 하여 공식적으로 동평-21미사일 개발을 시인하였다.³³

중국의 해양팽창과 미국이 견제하는 패권갈등에 한국이 끼어들었을 때 한국이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 이어도해역을 포함한 동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자유로운 통항은 중국의 중요한 핵심이익이 될 것이다.

중국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遼寧)함은 2012년 9월 25일 랴오닝 성 다롄(大連)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귀보송(郭伯雄) 중앙군사위 부주석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역식을 갖고 정식으로 군 편제에 들어갔다. 랴오닝함은 칭다오(靑島)에 사령부를 둔 북해함대에 배속되었는데 중국국방부 경옌성(耿雁生)대변인은 “지역상황을 고려한 것은 전혀 아니다”³⁴라고 밝혔다.

IV. 이어도와 제주정치

1.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 논란

제주도민들의 이상향에 대한 수호의지는 대한민국의 건국초기인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연안수역의 수산 및 광물 자원 보호를 위한 해양주권선, 일명 ‘이승만 라인’을 관보(국무원 고시 제14호)에 실어 대내외에 공포하면서 천명하였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008년 이승만 라인을 공포한 1월 18일을 ‘이어도의 날’로 제정해 기념행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술연구 및 탐사활동을 전개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시도하였다.

³³ The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NIDS China Security Report 2011*, (2012) p.14.

³⁴ Xinhua, “Liaoning anchoring not due to regional situation: spokesman,” *Xinhua*, (2013.2.28).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조례안은 2007년 11월에 강창식·임문범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민 사회에 구비(口碑)·전승(傳乘)되어 온 환상의 섬 이어도가 이승만 정부에서 1952년 1월 18일 인접해양에 관한 주권선언에 의해 대한민국이 해양관할권에서 속하도록 고시하였고, 1984년 제주대학교와 KBS가 공동으로 학술탐사가 이루어졌으며, 2003년 6월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는 등 국가적인 요충지화 되고 있음에 따라서 제주인의 영원한 이상향으로서의 이어도를 대내외에 각인시키고 도민의 자긍심을 높여나가기 위하여 이어도의 날을 제정하고 기념행사 및 학술연구활동 등을 개최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였다. 이어도의 날 조례안은 2007년 12월 6일 접수되었으며 제245회 임시회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이어도는 수중 암초로서 도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해양관리업무부서 소관이 아니라는 점과 이어도의 날 제정 취지를 도민화합 시책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회송되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제주시의회 강창식 의원과 임문범 의원은 “제주인의 영원한 이상향으로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낸 환상의 섬 이어도를 대내외에 홍보하고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이어도의 날을 제정,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 마련 이유를 밝혔다.³⁵ 제주시의회가 이어도의 날 조례안을 제정하려고하자 외교통상부가 공식문서를 보내서 반대의사를 전달하였다. 제주시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안동우)는 강창식·임문범 의원 등이 발의한 ‘이어도의 날 조례안’을 2008년 3월 17일 오후 심의하여 유보하였다. 외교통상부는 2008년 3월 14일 제주시도에 보낸 공문에서 “국제법상 이어도가 우리나라 관할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어도를 소재로 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중국 등 인접국과의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이 예상된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³⁶

중국의 언론에서 ‘이어도의 날 조례안’과 관련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중국 인민일보사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 2008년 6월 27일 보도를 보면 “한국

³⁵ 『제주투데이』 2007년 8월 7일. “도의회 ‘이어도의 날’ 조례안 입법예고” 참조.

³⁶ 『경향신문』 2008년 3월 18일. “제주시, ‘이어도의 날’ 지정 난항” 참조.

이 ‘이어도의 날’을 제정해 우리의 바다암초를 빼앗으려고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가 최근 매년 1월18일을 ‘이어도의 날’로 제정하는 조례안을 가결해 본회의에 상정한 사실을 보도하고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놓고 한국이 강력히 반발했던 사례와 이어도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³⁷

제주도의회는 2008년 6월 제250회 임시회에서 강창식·임문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인의 영원한 이상향’ 이어도의 기념을 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으나 제주도의 요청에 의해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였고 이 조례안은 2010년 6월 제8대 제주도의회 임기가 끝남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국감에서 윤상일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이어도의 날 제정 및 번지 부여’주장을 하였다. 윤상일 의원은 2010년 10월 21일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국감을 진행하면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하여“외교부가 이어도의 날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표 1〉 이어도의 날 조례안 제정 활동 주요 일지

연도	주요행위자 및 기관	주요 내용
2007년 11월	강창식·임문범 발의	제주인의 영원한 이상향으로 이어도를 대내외에 각인시키고 도민의 자긍심을 높여나가기 위하여 이어도의 날을 제정. 기념행사 및 학술 연구활동 등을 개최하도록 지원함
2008년 3월	외교통상부 반대	국제법상 이어도가 우리나라 관할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어도를 소재로 한 조례를 제정하여 중국 등 인접국과의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 발생 우려.
2010년 6월	제주도의회	2010년 6월 22일 제8대 제주도의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자동 폐기
2012년 12월	박규현·강경찬 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 후 수정하여 가결처리
2012년 12월	박희수 의장 상정 보류	제주도의회는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

³⁷ 『제주일보』 2008년 6월 27일. “중언론, 제주도 ‘이어도의 날’ 재추진에 촉각” 참조.

고 하고 있으나 우리 영토에 우리가 기념일을 제정하는데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는 것은 외교부의 외교능력과 영토수호 능력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³⁸

제주도의회는 2012년 4월 다시 이어도의 날 조례제정을 시도하였다. 박규헌 의원과 강경찬 교육위원이 공동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조례안’을 지난 24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5일 밝혔다.³⁹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 추진 과정에서 중국을 자극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이어도해역에 대하여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양국이 수역을 가지고 논의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한국 관할에 들어온다”⁴⁰고 밝힌 상황에서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2012년 12월 14일 제301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박희수 도의회 의장은 강경찬·박규헌의원이 발의한 ‘제주도 이어도의 날 조례안’을 “조례 발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이 조례가 공포됐을 때 주변국에 미칠 외교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밝히면서 의장 직권으로 상정 보류했다. 오익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날 심사에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조례 제정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어도를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데다 조어도(일본명 센카쿠, 중국명 댜오 위다오)를 놓고 중국과 일본이 외교적 마찰을 겪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 시기를 늦춰주길 바란다”고 말했다.⁴¹

강경찬 의원은 2013년 4월 19일 속개된 제305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우근민 제주도지사에게 제주도의 연기요청으로 제정이 미뤄지고 있는 ‘이어도의 날 조례’와 관련하여 “언제까지 조례제정을 연기할 것인지 답변을” 요청하면서 “정부 시책과 차별화 된 행정”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우근민도지사는 “현재 외교문제가 민감한 상태로 손자병법을 최대한 활용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이어도해양아카데미나 이어도홍보체험관 건립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며 “강경찬·박규헌 의원님이 대승적 차원에서 고려 해주길 바란다”고 답변하였다.⁴²

38 『제주일보』 2008년 6월 27일. “국감서 이어도의 날 제정 및 번지수 부여 주장 ‘주목’” 참조.

39 『한국일보』 2012년 4월 25일. “제주도의회 ‘이어도의 날’ 지정 재추진” 참조.

40 『조선일보』 2012년 3월 12일. “李대통령 “이어도, 한국 관할에 들어올 것” 낙관” 참조.

41 『제주일보』 2012년 12월 14일.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 또 다시 무산” 참조.

42 『제주인뉴스』, 2013년 4월21일, “강경찬 의원,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 언제까지 연기할 것인지 불만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논란은 상당한 기간 해법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의 지역정치인들은 이어도의 날 조례제정의 당위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데, 중국의 민족주의를 자극하여 제주발전과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2. 이어도와 시민사회의 활동

이어도문화와 전통이 제주도를 넘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는 소설가 이청준이 1974년 『문학과 지성』 가을호에 “이어도”를 발표하고 1983년 3월 19일 KBS의 ‘TV 문학관’을 통하여 방송되면서였다. 이청준의 ‘이어도’가 소설로 소개되면서 제주도민들만이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알려졌고 이어도와 관련한 많은 활동에 자극제가 되었다.

이어도를 연구하는 대표적인 민간단체로 2007년 이어도연구회가 출범하여 활발한 홍보활동과 연구 업적을 축적하고 있다.

이어도연구회에서는 2011년 9월에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세계적인 석학들이 함께 이어도쟁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2012년도에도 대만국립중앙연구원과 공동으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국제적으로 이어도 쟁점에 대한 연대를 모색하였다. 고충석 이사장은 해양의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원오션포럼’을 제안하여 호응을 얻었다. 학술적인 업적을 엄선하여 ‘이어도연구’와 영문으로 된 ‘이어도 저널’을 발간하고 있으며 사진전 및 시집발간 등의 문화역량 강화 및 홍보활동에도 적극적이다.

이어도연구회가 협력 후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도 이어도 홍보와 문화 확산을 촉진하고 있는데 일조하고 있다.

양금희 시인이 이끄는 ‘이어도문학회’는 60여명의 문인들이 이어도를 소재로 한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유안진, 한분순, 이근배 등을 포함하여 60여명의 저명한 문인들이 이어도와 관련한 문학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국제펜클럽 한

토로” 참조.

국본부 기관지 『펜문학』 2011년 9·10월호에 이어도를 소재로 한 양금희 회장의 시작품인 “이어도가 보일 때는”이 소개되었으며 한국문인협회 기관지 『월간문학』 2012년 6월호에 강병철 회원의 단편소설 “이어도만물상”이 소개되었다. ‘이어도 문학회’의 문학 활동은 이어도를 널리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어도문화를 저변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복희 회장이 이끄는 ‘이어도여성지킴이’도 활발한 이어도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 현직 중등교사와 대학강사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할 예정인 제주여성 이어도지킴이는 향후 교육현장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의 체계적인 이어도 지식 보급과 함께 국제적 관광지인 제주도에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이어도 이슈를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결성되었다.⁴³ 제주여성이어도지킴이 정복희 회장과 회원들은 지난 2012년 4월 8일 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제 21회 왕벚꽃 축제에 참여하여 ‘이어도 바로알기’행사를 진행했는데 3일간에 걸친 행사에서 제주여성이어도지킴이는 이어도에 대한 관광객과 시민들의 인식수준을 조사하고 이어도 위치에 부스 방문객이 직접 스티커를 붙이도록 유도하며 이어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이정훈 회장이 ‘이어도청소년지킴이’의 활동은 학업외의 여가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장홍보 활동외에도 카페 등을 이용하여 이어도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제주도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어도에 대한 바다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순수한 봉사활동단체인 ‘청소년 이어도 지킴이’에서는 UCC를 제작하여 이어도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청소년 이어도 지킴이’ 카페 회원수는 108명이다.⁴⁴

‘이어도 청년지킴이’는 제주도내 20대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되어 2013년 3월 23일 제주웰컴센터 1층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왕성한 활동을 전개

43 『제주인뉴스』 2012년 2월10일, “이어도 수호에 나선 제주여성 이어도지킴이” 참조.
(http://jejuinnews.com/news/service/article/mess_01.asp?P_Index=32464&flag= 검색
일; 2013.7.6)

44 『제주인뉴스』 2013년 3월15일, “청소년 이어도 지킴이, UCC제작하여 이어도 홍보” 참조.
(http://jejuinnews.com/news/service/article/mess_01.asp?P_Index=40507&flag= 검색
일; 2013.7.6)

하고 있다.⁴⁵

이외에도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이어도홍보를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어도연구회가 출범한 후에 이어도연구와 홍보활동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어도연구회는 학술연구 외에도 대 국민 홍보와 이어도문화 확산을 위하여 등 이어도관련 단체의 활동에도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V. 맺음말: 이어도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이어도가 제주도민들에게 더 친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삶에 이어도문화가 녹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어도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제주시민사회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선조들이 제주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면서 발전시켜온 문화를 꽃피우는 것이야말로 제주번영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활동은 지방정부와 기업들에게도 중요하다. 지방정부와 기업들도 일정한 역할을 하여야 하겠지만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이어도문화의 계승발전 의지가 정부나 시장의 활동과 합쳐진다면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어도 문화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위하여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 국민적인 이어도 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확정의 쟁점에서 이어도가 부각되고 있으며 이어도와 관련한 문화역사적 논거가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경계를 획정하는 협상과정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한국과 중국 간 협상 과정에서 유엔해양법을 중심으로 자국에 유리한 법리해석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민주공화국의 특징 중의 하나인 대의 여론 정치적 관점에서 정부의 주요 공직자들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유권자의 의견은 정책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이어도해역의 절대적인 수호라는 국민적의식의 정도는 협상에

45 『제주인뉴스』 2013년3월15일, “이어도청년지킴이’ 첫 행사 ‘제주청년, 海에서 길을 묻다’ 좌담회 개최” 참조.
(http://jejuinnews.com/news/service/article/mess_01.asp?P_Index=40758&flag= 검색일: 2013.7.6)

영향을 끼치게 된다. 과거 제주선조들이 힘든 노동일을 할 때 불렀던 노래 중의 땃돌노래에서 “이어도 호라 이어도 호라/ 이어이어 이어도 호라/ 이어호민 나눈 물난다/ 이어말은 마랑근가라/ 강남을 가는 해남을 보라/ 이어도가 반이엔 해라”라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부르면서 제주도민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에는 땃돌사용이 쇠퇴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어도에 대한 인식도 위축되었다. 따라서 이어도와 관련한 노래의 제작과 보급은 이어도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최근 이어도연구회에서 김희갑·양인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이어도관련 노래들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된다면 이어도에 대한 인식이 저변으로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제주 시민사회는 이러한 이어도를 소재로 한 문화상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맹목적인 민족감정을 배제하며 합리적으로 국익을 고려하는 건전한 시민사회의 활동이 필요하다. 한·중 양국관계는 1992년 공식수교 이래 경제, 통상 분야에서 발전하여 2005년 기준으로 중국은 한국의 제1위 교역대상국이자 제1위 수출대상국 및 제1위 흑자대상국(234억불)으로 변화하였고 한국도 중국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 되었으며 한·중 양국은 1997년 ‘선린우호관계’에서 2002년 ‘협력동반자관계’로 2007년 ‘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로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고 있으므로 우호적인 관계가 바람직하다. 따라서 중국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이어도쟁점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자세이다. 중국과의 경제협력과 미국과의 동맹을 기초로 한 안보협력 모두가 한국에게 필요하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이 갈등하게 된다면 한국의 대외정책은 방향을 잡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비합리적이고 맹목적으로 중국에 대한 적대감을 표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셋째, 시민사회는 이어도활동과 관련하여 이어도문화전반에 대한 이해와 함께 해양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법리에 맞는 논리를 전개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이어도 쟁점이 부각된 것은 유엔해양법이 효력을 발생하면서 과거에 공해였던 수역을 배타적경제수역제도를 도입하여 연안국에게 관할 권리를 부여하면서 부상된 것이다. 따라서 제주시민사회는 유엔해양법협약에서 도입한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여야 하며 국제관계

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냉철한 이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제주도의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조례안’을 상정하였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현명한 판단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 시민사회는 이러한 정책결정과정에 관심을 두고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논리를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고민하는 제주정치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검토하고 찬성이든 반대든 지지를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대의를 따르는 것이 바른 길이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Abstract

The Role of Civil Society in the Development of Ieodo Culture

Byeong-Cheol Kang

Society of Ieodo Research

Frieda Christine Miller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Geum-Hee Yang

Jejuin News

Ieodo is one of the main symbols of Jeju, which is described as a painless utopia in legends. Ieodo gave comfort to Jeju's old people, especially the women divers. They get comfort and peace of mind from the idea that people who go missing at sea actually end up in Ieodo, and that it is a burial ground of sorts for lost fishermen.

The Ieodo submerged rock, located south of Jeju Island and 4.6 meters below sea level, is the foundation for the Ocean Research Station, which was launched in 2003 by the Korean government to study ocean currents and collect data for weather forecasts, and fishery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Culture has been defined as the system of shared beliefs, values, customs, and behaviors. Culture represents patterns of life and lifestyle itself. Considering this concept, Ieodo culture came from the Jeju people's living circumstances and beliefs. Jeju people are familiar with Ieodo culture, because they are living in Ieodo culture. It is a common phenomenon in Jeju to see Ieodo used in store and restaurant names. This is one way in which the citizens of Jeju have long been able to identify with and express their connection with

Ieodo.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civil society's activities for the development of Ieodo culture. Chapter 2 reviews Ieodo culture in Jeju people's lives and the legends about Ieodo. Chapter 3 analyzes the Ieodo issue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hapter 4 reviews civil society's activities for the development of Ieodo culture. The conclusion, suggests some advice for future activities of civil society for development of Ieodo culture.

Key word: Ieodo, utopia, Ieodo culture, civil society's activity, development of Ieodo culture.

참고문헌

- 강병철, “이어도 쟁점과 중국 해군전략의 변화,” 『STRATEGY21』, Vol. 16, No.1.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3).
- 강석규, “이어도 어장의 경제성 평가,” 『이어도연구』, 창간호 (이어도연구회, 2010).
- 고충석·강병철, 『이어도 해양분쟁과 중국민족주의』, (파주시: 한국학술정보, 2013).
- 김상헌, “구비설화의 갈래분류와 세르비아 구비민담의 형식적 구조단위에 관한 연구,” 『동유럽발칸학』 제9권 1호, (한국동유럽발칸학회, 2007).
- 박춘호, “1982년 UN해양법협약,” 『考試界』 Vol.30 No.11 (고시계, 1985).
- 엄묘섭, “시민사회의 문화와 사회적 신뢰,” 『문화와 사회』 통권 3권 (한국문화사회학회, 2007)
- 외교통상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대한 중국의 문제제기 관련 당국자 논평” 『보도참고자료』, (2006년 9월 15일).
- 이어도연구회, 『이어도 바로알기』, (도서출판 선인, 2011).
- 이윤철,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항해학회지』, 제17권 제4호, (한국항해항만학회, 1993).
- 이춘근, “해양교통로의 안전 확보가 국가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 『STRATEGY21』, Vol.15, No.2.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2).
- 조성윤, “이어도에 관한 제주도 주민들의 이미지,” 『이어도연구』 3호, (이어도연구회, 2012)
- 좌혜경·권미선, 『이어 이어 이어도 사나』,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2010).
- 현웅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 大系 -북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 『경향신문』, “제주시, ‘이어도의 날’ 지정 난항” (2008. 3. 18).
- 『노컷뉴스』, “中 순찰범위에 ‘이어도’ 포함...韓·中 신경전” (2012.3.10).
- 『동아일보』, “中 해군력, 남한 어디든 하루 새 수천명 상륙 가능”(2012. 3. 13).
- 『세계일보』, “美 조지워싱턴호 항모강습단 방한”(2011.9.28)
- 『제주인뉴스』, “이어도 수호에 나선 제주여성 이어도지킴이” (2012. 2.10).
- 『제주인뉴스』, “청소년 이어도 지킴이, UCC제작하여 이어도 홍보” (2013. 3.15).
- 『제주인뉴스』, “‘이어도청년지킴이’ 첫 행사 ‘제주청년, 海에서 길을 묻다’ 좌담회 개최” (2013.3.15).
- 『제주일보』, “국감서 이어도의 날 제정 및 번지수 부여 주장 ‘주목’” (2008. 6. 27).
- 『제주일보』, “中언론, 제주도 ‘이어도의 날’ 재추진에 촉각” (2008. 6. 27).
- 『제주일보』,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 또 다시 무산” (2012. 12. 14).
- 『제주투데이』, “도의회 ‘이어도의 날’ 조례안 입법예고” (2007. 8. 7).
- 『조선일보』, “중국 이어도 편입시도 노골화” (2008. 8. 7).
- 『조선일보』, “중(中), 이어도 영유권 주장 다시 철회” (2008. 8. 16).
- 『조선일보』, “李대통령 “이어도, 한국 관할에 들어올 것” 낙관” (2012. 3. 12).
- 『중앙일보』, “미·중, 하와이 ‘TPP 충돌’” (2011. 11. 14).

『중앙일보』, “한중 국방전략대화…軍 “北 도발하면 단호히 응징” 中에 전달” (2012. 7. 31).

『한겨레신문』, “이어도 ‘제2의 독도’ 되나”(2008. 8. 8).

『한국일보』, “中 ‘항모킬러’ 동평-21 미사일 배치 완료” (2011. 2. 20).

Brown E.D.,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Volume I*, (Aldershot, England: Dartmouth Publishing Company, 1994).

Clinton, Hillary, “America’s Pacific Century,” *Foreign Policy* (November 2011).

Jiao, Wu, “Defense budget growth slows,” *China Daily*(2013.3.6).

Korea Times, “Lee: leodo will remain under Korea’s control,” *Korea Times*, (2012.3.12).

Kang Byeong-cheol, “South Korea should prepare to defend leodo research station,” *Korea Times*, (2010.12.10).

Lee, Pak K., “China’s Quest for Oil Security: Oil (Wars) in the Pipeline?” *Pacific Review*, Vol.18, No.2 (June 2005).

Logan, Justin, “China, America, and the Pivot to Asia,” *Policy Analysis*, No.717, Cato Institute, (2013).

Mearsheimer, John J.,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01).

Odom, Jonathan, G., “What Does a “Pivot” or “Rebalance” Look Like? Elements of the U.S. Strategic Turn Towards Secur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Its Waters,” *Asian-Pacific Law & Policy Journal*, Vol.14, No.1, (2012).

O’Rourke, Ronald, *Maritime Territorial and Exclusive Economic Zone (EEZ) Disputes Involving China*,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s, December 10, 2012).

Office of Naval Intelligence, *The People’s Liberation Army Navy: A Modern Nav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Office of Naval Intelligence, 2009).

Page, Jeremy, “China, South Korea in Row Over Submerged Rock,” *Wall Street Journal*, (March 14, 2012).

Qingguo, Jia, “Learning to Live with the Hegemon: Evolution of China’s Policy toward the US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14, No.44, (August 2005).

Singh, Mandip and Kumar, Lalit, “China’s Defence Budget 2012: An Analysis”, *IDSa Issue Brief*,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and Analyses (2012), p.2.

The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NIDS China Security Report 2011*, Japan (2012) p.14.

US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February 6, 2006).

- Wu, Xu, *Chinese Cyber Nationalism: Evolution,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7.
- Xinhua, "China sends leading patrol ship to East China Sea on maiden voyage", *Xinhua*, (2011.12.1).
- Xinhua, "U.S. owes China convincing explanation of true intentions of its Asia Pivot policy," *Xinhua*(2012.9.3).
- Xinhua, "China issues white paper on national defense," *Xinhua*, (2013.4.16).

서평

서평

이어도 분쟁에 대한 중국의 민족주의적 접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_윤항
고충석 · 강병철, {이어도 해양분쟁과 중국 민족주의}(서울: 한국학술정보, 2013)에
대한 서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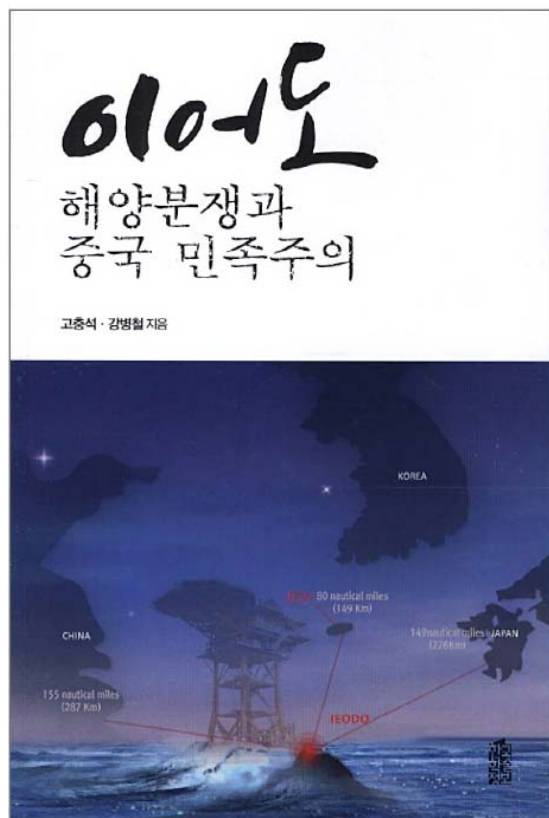
이어도 분쟁에 대한 중국의 민족주의적 접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고충석 · 강병철, 『이어도 해양분쟁과 중국 민족주의』(서울: 한국학술정보, 2013)에 대한 서평

윤 황
선문대 교수

동아시아의 해양영토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다오위다오)를 둘러싼 분쟁은 일촉즉발의 충돌 위기를 내포하고 있다. 명백한 역사적·법리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실효 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억지도 계속되고 있다. 한·중·일의 외교관계가 섬 때문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지구화, 세계화 속의 한·중·일 3국 관계는 ‘가깝고도 먼 나라’일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지도 모른다.

현재 중·일간, 그리고 한·일간 도서 영유권문제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 특히 우리의 ‘이어도’를 놓고 중국이 겉으로 분쟁을 크게 만들지 않는 채 속으로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특히 제주도민에게 ‘이어도’는 역



사적, 문화적, 실제적 섬이다. 제주도가 생긴 이래 이어도는 물밑에 있다가 드러나온 파랑도의 섬이고, 오랜 역사 속에서 제주도민에게 늘 희망과 기대감을 준 피안의 섬이고, 비록 물밑 4.6m 아래로부터 시작된 암초지만 현재 해양과학기지를 품에 안고 있는 기지의 섬이다. 이렇게 중요한 제주도의 섬, 이어도가 오늘날 더욱 중요시된 이유는 해양경계획정, 특히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를 결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영토, 해양권에서 차지하게 될 아주 중요한 가치와 역할을 가진 이어도문제는 제주도민, 한국민 모두가 진한 애정을 갖고 끝없는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할 국가생존의 문제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출간된 고충석·강병철의 『이어도 해양분쟁과 중국 민족주의』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느끼고, 깨닫고, 시사해주고 있다.

이 책의 기본적인 시각은 국제관계를 설명하는 기존의 현실주의나 기능주의(자유주의) 시각이 동아시아 해양분쟁에서는 적실성이 약하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각으로 민족주의적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사실, 민족주의가 그동안 한·중·일 3국 간 관계의 분쟁을 촉발하는 동인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논자들이 동의한다. 민족주의가 역사 및 영토분쟁의 핵심 동인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그다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점에서 이 책은 그다지 새로운 접근은 아닐 지도 모른다.

그러나 민족주의 시각을 가지고 중국의 영토분쟁의 역사와 사례를 총체적으로 접근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또한 우리 학계에 이어도에 관한 민족주의적 시각의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어도와 관련된 몇 편의 연구들도 주로 국제법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이 책은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연구라고 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책은 이어도 이슈에 대해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접근한 독창적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충석·강병철의 『이어도 해양분쟁과 중국 민족주의』는 이어도를 둘러싼 한·중간 분쟁의 가능성과 그에 대한 대비를 적극 주문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중국이 이어도 주변수역의 경계획정시 민족주의적으로 접근할 경우에 대비한 다각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이 책의 묘미라고 이해된다.

이 책은 단지 시각 면에서만 새로운 것은 아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이 책은 중국의 민족주의만이 아니라 중국의 해양정책과 해양전략에 대해서도 일목요연하게 다루고 있으며, 중국의 민족주의를 대외관계와의 연계 맥락에서 그동안 발생했던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대외관계에서 나타나는 중국의 민족주의적 대응의 특징이 적실하게 분석되어 있다. 이렇게 분석된 중국의 민족주의가 이어도 이슈로 확산될 경우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중국의 민족주의와 이어도 분쟁에 대한 민족주의적 대응에 관한 국내 초유의 역작이라 평가할 만하다.

또한 이 책은 중국 민족주의의 특성과 진화, 그리고 중국의 대외관계에서의 민족주의의 이용, 나아가 21세기 ‘중화민족주의’의 천명 등을 세심하게 분석했다는 점에서도 중국 민족주의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이 책은 중국 민족주의에 관한 탁월한 분석서라고 평가된다.

그리고 이 책은 이어도 문제에 대한 본질과 중국의 이해관계, 그리고 중국 민족주의와 이어도 이슈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이어도 이슈에 대한 전략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 언론의 이어도 이슈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그 분석적 가치는 상당히 중요하다.

중국이 이어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아직까지는 분명치 않다. 이는 곧 우리의 입장에서 다각적인 대응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대목이다. 이 책은 중국이 이어도 문제에 민족주의적으로 대응할 경우에 대비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응전략의 아키텍처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전략적 대응의 틀로 갈등에 대비한 반응적(reactive) 전략과 협력에 대비한 주도적(proactive)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이어도 분쟁의 다각적 전략의 기본 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다층적이고 다자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유의해야 할 대응방식인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필자들이 이어도연구회라는 사단법인을 조직하고 그동안 연구해 온 성과를 책으로 발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이 분야와 이슈에 대한 전문성

이 돋보이며, 대응 방안 역시 일방적이고 일차원적인 대응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대응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활용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이어도 분쟁에 대한 이해와 특히 중국이 민족주의적으로 이어도 문제에 대응할 경우에 대비한 보다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대응책들이 모색되고 준비되기를 기대한다.